

2011

불법체류에 관한  
50 가지 법률상식



미국 이민생활 참고서

그늘집 대표 미국변호사 최경규 著

2011-03-23



많은 사람들이 서류미비자들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혹자는 비난을 하기도 하고 혹자는 그 어려움에 대하여 동정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류미비자들 문제를 “인권”(human rights)의 문제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저는 서류미비자들 문제를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신분문제로 인하여 제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개혁 운동은 1960년대의 민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은 아시안에 속하므로 히스패닉과 같은 심한 인종차별은 받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백인 우위의 사회에서 타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 서류미비자들에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미비자는 1960년의 흑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편견을 받으며, 공권력 내지는 백인사회 아래에서 공포 속에서 살기를 강요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Ester J. Cepeda 같은 사람은 민권 운동은 “시민”들에 의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이었지만, 이민개혁 운동은 “서류미비” 성격상 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며, 민권 운동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민권” 혹은 인권이 보편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단순한 생각입니다. 미국 헌법상 서류미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느냐의 논의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류미비자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Cepeda는 무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늦긴 하였지만 국제 인권규약에도 가입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을 불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권력이 서류미비자에게도 미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미국의 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찾기 위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이민개혁은 “민권” 운동과 같은 활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받은 UN 인권위는 심사 보고서를 통하여, SB 1070과 같은 법률은 폐지하여야 하며, 아리조나 이민법을 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12개 기관(U.N. Agencies) 및 World Bank, 국제 이주자 연합(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모든 이주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성명에서는 또한, 불법 이주자(irregular migrants, illegal migrants)는 특히 가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순전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Navy Pillay는 또한, “이주자 문제를 단지 국가 안보 혹은 국경통제라는 좁은 시각에서 보려는 경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각국은 자국 국경을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그러한 통제도 국제 인권법을 포함하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을 만든 이유 중 또 하나는 서류미비자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길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책을 읽어 보면 아시겠지만, 합법적으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려 십여가지에 달하며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길을 통하여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간이 더 걸리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신분 회복시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으며, 다시는 미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 이민법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합법적인 길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길을 통하도록 하시고, 길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America’s Voice의 의장인 Frank Sharry는, 미국의 인권 역사상 아리조나 주는 인권 침해자로 기록이 남을 것이며, 아리조나 주는 “미국식 인종 청소”(American Style Ethnic Cleansing)의 선두에 섰다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는 극우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 단지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양심을 버리고 이러한 미국식 인종청소를 시도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 마음이 상하고 삶의 의욕을 많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괴이치 마십시오. 그리고 새벽이 오기전이 항상 제일 어둡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길고 어두운 터널을 하루 빨리 지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규 (Choi, Kyoungkyou)  
그늘집 대표, 미국 변호사  
info@shadedcommunity.com

## 목차

|   |    |
|---|----|
| 제 1 장 : 불법체류의 의의 .....                          | 17 |
| <b>I. 불법체류의 의미 및 기간의 계산</b> .....               | 17 |
| 1. 불법체류의 종류.....                                | 18 |
| 2. 불법체류의 효과.....                                | 18 |
| 3. 불법체류 기간의 계산 .....                            | 19 |
| 가. 222(g)의 불법체류 .....                           | 19 |
| 나. 212(a)(9)(B)상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 | 22 |
| 다. 이민법 212(a)(9)(C)상의 불법체류 .....                | 33 |
| 4.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으로부터의 구제.....                   | 33 |
| 제 2 장 : 합법적인 신분 회복의 길.....                      | 36 |
| <b>II. 시민권자와의 결혼</b> .....                      | 36 |
| 1. 의의 .....                                     | 37 |
| 2. 절차 .....                                     | 37 |
| 가. 체류기간 초과자.....                                | 37 |
| 나. 밀입국한 서류미비자 .....                             | 47 |
| <b>III. 가족 초청</b> .....                         | 55 |
| 1. 21 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에 의한 서류미비 부모의 초청 .....        | 56 |
| 가. 대상자 .....                                    | 56 |
| 나. 신분초과 및 밀입국 여부의 차이.....                       | 56 |
| 다. 절차.....                                      | 56 |
| 라. 자격 요건 .....                                  | 58 |
| 2. 시민권자 부모에 의한 서류미비 자녀의 초청 .....                | 58 |
| 가. 21 세 미만의 자녀 .....                            | 59 |
| 나. 21 세 이상 혹은 기혼 자녀의 경우.....                    | 59 |
| 3. 영주권자 가족에 의한 초청.....                          | 59 |
| <b>IV. 불법체류의 면제 (waiver)</b> .....              | 60 |
| 1. 이민비자 신청시 면제 (212(a)(9)(B)(v)).....           | 61 |
| 2. 비이민비자 신청시 면제(212(d)(3)).....                 | 62 |
| 가. 의의.....                                      | 62 |

|   |           |
|---|-----------|
| 나. 판단의 기준.....  | 62        |
| 다. 면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                                 | 63        |
| 라. 신청 절차.....   | 64        |
| 마. 유효 기간.....   | 64        |
| 바.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64        |
| <b>V. 245(i)</b> .....                                  | <b>65</b> |
| 1. 의의.....  | 66        |
| 2. 245(i) 혜택을 보기 위한 요건.....                             | 66        |
| 가. 신분 위반.....   | 66        |
| 나. 이민비자 혹은 노동허가 신청(과거).....                             | 66        |
| 다. 영주권 신청 사유의 존재(현재).....                               | 67        |
| 라. 벌금 1,000 달러의 지불.....                                 | 68        |
| 마. 자격의 제한.....  | 68        |
| 3. 기득권 (“Grandfathered”) 유지의 의미.....                    | 69        |
| 4. 245(i) 의 종료.....                                     | 70        |
| <b>VI. 245(k)</b> .....                                 | <b>71</b> |
| 1. 의의.....  | 72        |
| 2. 규정.....  | 72        |
| 3. 해설.....  | 72        |
| 가. 해당 되는 이민비자.....                                      | 72        |
| 나. 허용되는 신분 위반 행위 및 기간의 계산.....                          | 72        |
| (1)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 (out of status) 및 신분 조건 위반..... | 73        |
| (2) 불법적인 노동에 종사 (unauthorized employment).....          | 73        |
| 4. 신청 및 심사 절차.....                                      | 74        |
| <b>VII. 추방의 취소</b> .....                                | <b>75</b> |
| 1. 의의.....  | 76        |
| 2. 자격 요건.....   | 76        |
| 가.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 취소.....                                 | 76        |
| 나. VAWA 의 규정에 의한 추방 취소 (서류 미비자 포함).....                 | 77        |
| 3. 추방의 취소를 받을 자격이 안되는 사람.....                           | 80        |

|                                      |    |
|--------------------------------------|----|
| 4. 추방의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 .....             | 81 |
| 가. 이민법원에의 신청 .....                   | 81 |
| 나. ICE 법무담당관에게의 송부 .....             | 81 |
| <b>VIII. 추방의 연기</b> .....            | 83 |
| 1. 의의 .....                          | 84 |
| 2. 관련 규정 및 판례 .....                  | 84 |
| 3. 판단의 기준 .....                      | 85 |
| 4. 신청의 시기 및 형식 .....                 | 85 |
| 5. 기간 및 기간의 연장, 합법적 신분의 회복 .....     | 86 |
| <b>IX. 망명 및 추방의 중지</b> .....         | 87 |
| 1. 의의 .....                          | 88 |
| 2. 망명 및 추방의 중지의 혜택 .....             | 88 |
| 가. 망명 .....                          | 88 |
| 나. 추방의 중지 .....                      | 88 |
| 3. 자격 요건 (Eligibility) .....         | 89 |
| 가. 망명 .....                          | 89 |
| 나. 추방의 중지(241(b)(3)) .....           | 91 |
| 4. 신청절차 .....                        | 91 |
| <b>X. U 비자</b> .....                 | 93 |
| 1. 의의 .....                          | 94 |
| 2. 자격 요건 .....                       | 94 |
| 3. 신청 요령 .....                       | 96 |
| 4. 구제의 범위 .....                      | 96 |
| 5. U 비자의 성격 .....                    | 96 |
| <b>XI. S 비자</b> .....                | 97 |
| 1. 의의 .....                          | 98 |
| 2. 자격 요건 .....                       | 98 |
| 가. 범죄 조직 정보제공 (S-5 비자) .....         | 98 |
| 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 (S-6 비자) ..... | 98 |
| 다. 제보자 가족 (S-7) .....                | 98 |

|  |            |
|--|------------|
| 3. 신분 조정.....                            | 99         |
| 가. 자격 요건 .....                           | 99         |
| 나. 신분조정 신청 절차 .....                      | 100        |
| 4. S 비이민자 신분의 유지 .....                   | 100        |
| <b>XII. T 비자.....</b>                    | <b>101</b> |
| 1. 의의 .....                              | 102        |
| 2. 자격 요건.....                            | 102        |
| 가.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                    | 102        |
| 나. 미국에의 물리적 체류 .....                     | 103        |
| 다. 수사, 소추에의 협조(18 세 이상의 경우).....         | 103        |
| 라. 추방 당하는 경우, 극심한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것 입증 ..... | 104        |
| 3. T 비자 신청의 접수 .....                     | 104        |
| 가. 신청서의 접수 .....                         | 104        |
| 나. 가족을 위한 신청 .....                       | 105        |
| 4. T 비자의 혜택.....                         | 105        |
| 가. 비자의 유효기간 및 영주권 신청.....                | 105        |
| 나. T 비자의 혜택.....                         | 105        |
| <b>XIII. 특별 이민 소년 .....</b>              | <b>107</b> |
| 1. 의의 .....                              | 108        |
| 2. 자격 요건.....                            | 108        |
| 3. 제출 서류.....                            | 109        |
| <b>XIV. 밀입국 가입국 허가 .....</b>             | <b>110</b> |
| 1. 의의 .....                              | 111        |
| 2. 근거 .....                              | 111        |
| 3. PIP 의 사용 .....                        | 111        |
| 4. PIP 의 활용 가능 분야.....                   | 112        |
| 5. PIP 혜택 (Parole 의 혜택).....             | 112        |
| 6. 논란 및 예상.....                          | 113        |
| <b>XV. 개인 구제법안(Private Bill).....</b>    | <b>114</b> |
| 1. 의의 .....                              | 115        |

|   |     |
|---|-----|
| 2. 절차 .....   | 115 |
| 3. 의원의 발의를 끌어내는 방법(현실적 문제).....                       | 116 |
| 4. 발의 후의 신분 .....                                     | 116 |
| <b>XVI. 입양</b> .....                                  | 118 |
| 1. 입양의 의의 .....                                       | 119 |
| 2. 입양의 조건 .....                                       | 119 |
| 3. 입양의 절차 .....                                       | 119 |
| 가. 입양의 종류.....  | 120 |
| 나. 입양할 수 있는 사람 .....                                  | 120 |
| 다. 입양의 절차.....  | 121 |
| (1) 양육권의 포기 .....                                     | 121 |
| (2) 대가의 지불 금지 .....                                   | 121 |
| (3) 입양 부모의 자격 검증.....                                 | 121 |
| (4) 입양의 최종 결정 .....                                   | 121 |
| 라. 이민국의 절차 (시민권 취득) .....                             | 122 |
| 4. 해외 입양 (Inter-county adoption).....                 | 122 |
| 5. 한국의 국적 문제.....                                     | 122 |
| <b>XVII. 구제법</b> .....                                | 123 |
| 1. 포괄적 이민개혁법 .....                                    | 124 |
| 가. 과거의 불체자 구제 .....                                   | 124 |
| 나. 지금까지의 포괄적 이민개혁법 (안) .....                          | 125 |
| 다. 앞으로 논의될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예상) .....                      | 130 |
| <b>XVIII. 유타주 구제법</b> .....                           | 136 |
| 1. 의의 .....   | 137 |
| 2. 노동허가증(Permit) .....                                | 137 |
| 3.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                             | 138 |
| 4. 가족의 자격 요건 및 근친가족 허가서(immediate family permit)..... | 139 |
| 5. 신청 및 갱신 절차 .....                                   | 139 |
| 가. 신청시 제출할 서류 .....                                   | 140 |
| 나. 심사 및 거절 .....                                      | 140 |



|  |            |
|--|------------|
| 6. 노동 자격 유지의 조건 .....                                    | 140        |
| 7. 영어 능력 기준 .....  | 141        |
| 8. 노동허가의 확인.....   | 141        |
| 9. 일시적 노동자 프로그램의 시행.....                                 | 141        |
| 가. 금지된 행위.....   | 141        |
| 나. 민사 처벌 .....   | 142        |
| 다. 형사 처벌 .....   | 142        |
| 10. 시행일.....   | 142        |
| 11. 연방정부로부터의 면제(waiver) .....                            | 142        |
| 12. 세금의 유보 .....   | 142        |
| <b>제 3 장 추방과 관련된 문제.....</b>                             | <b>143</b> |
| <b>XIX. 추방 재판 없는 추방.....</b>                             | <b>143</b> |
| 1. 입국시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                   | 144        |
| 2. 입국한 이후의 신속 추방.....                                    | 144        |
| <b>XX. 추방 사유 및 절차.....</b>                               | <b>146</b> |
| 1. 추방, 축출, 배제(deportation, removal, exclusion)의 구분 ..... | 147        |
| 가. 추방.....   | 147        |
| 나. 배제 (exclusion, 입국불허) .....                            | 147        |
| 다. 축출(removal, 추방).....                                  | 148        |
| 2. 추방의 사유 .....  | 148        |
| 가. 추방될 수 있는 행위(8 USC 1227) .....                         | 148        |
| 3. 추방의 개시 .....  | 151        |
| 가. 적발.....   | 152        |
| 나. 구속 불구속.....   | 152        |
| 4. 추방의 절차 .....  | 153        |
| 가. 출석고지서의 전달.....  | 153        |
| 나. 변호사의 선임 .....   | 154        |
| 다. 재판.....   | 154        |
| 5. 재판의 진행 .....  | 154        |
| 가.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 NTA) .....                   | 155        |
| 나. 추방 재판의 진행 .....                                       | 155        |

|   |     |
|---|-----|
| (1) 예비 재판 (Master Calendar Hearing) .....   | 155 |
| (2) 본재판 (Individual Calendar Hearing) ..... | 157 |
| (3) 추방재판에 걸리는 시간 .....                      | 157 |
| 6. 추방으로부터의 구제 .....                         | 157 |
| 가. 추방 사유의 면제 (waiver) .....                 | 158 |
| 나.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    | 158 |
| 다. 추방의 중지(구법) .....                         | 158 |
| 라. 신분조정 .....                               | 159 |
| 마. 난민 신청 .....                              | 159 |
| 바. 등록 .....                                 | 159 |
| 사. 자발적 출국 (voluntary departure) .....       | 159 |
| 아. 재심 요청 (motion to reconsider) .....       | 159 |
| 자. 재개 요청 (motion to reopen) .....           | 159 |
| <b>XXI. 정지, 체포, 구금 시 행동 준칙</b> .....        | 161 |
| 1. 신체적 숙박 .....                             | 162 |
| 2. 정지 및 질문 시 .....                          | 162 |
| 가. 침착하게 대응할 것 .....                         | 162 |
| 나.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                    | 162 |
| 다. 수색에 대하여 동의할 필요는 없다 .....                 | 162 |
| 라. 차량의 정지시 안전하게 행동할 것 .....                 | 163 |
| 3.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이 집을 찾아온 경우 .....            | 163 |
| 4.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 .....           | 164 |
| 가.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경우 .....                   | 164 |
| 나. 이민국 직원에 의하여 체포, 구금되는 경우 .....            | 164 |
| 5. (무료) 변호사의 도움 .....                       | 165 |
| <b>XXII. 안전 공동체 프로그램</b> .....              | 166 |
| 1. 의의 .....                                 | 167 |
| 2. 범죄의 구분 .....                             | 167 |
| 3. 현황 .....                                 | 168 |
| <b>XXIII. 287(g)</b> .....                  | 1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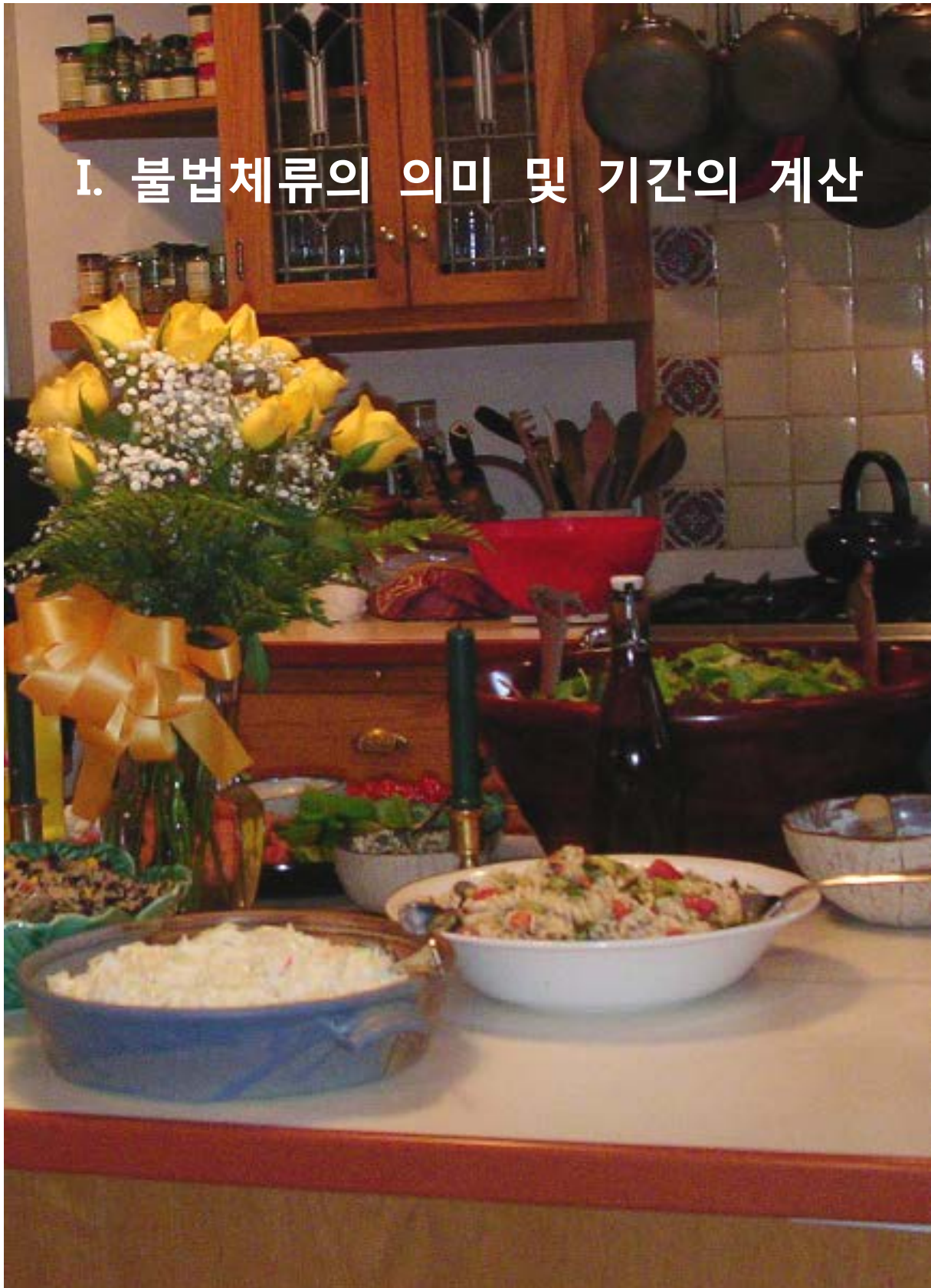
|   |            |
|---|------------|
| 1. 의의 .....                                 | 171        |
| 2. 운영 절차.....                               | 171        |
| 가. ICE 교육 .....                             | 171        |
| 나. 287(g) 경찰관의 권한 .....                     | 171        |
| 다. 권한 행사 시기 및 방법 .....                      | 172        |
| 3. 287(g) 경찰기관 (2010년 10월 29일 현재).....      | 173        |
| <b>XXIV. 형사절차의 간략한 설명 .....</b>             | <b>176</b> |
| 1. 최초의 출두(First Appearance).....            | 177        |
| 2. 유죄인부 절차(Arraignment) .....               | 177        |
| 3. 재판 .....                                 | 179        |
| 4. 항소 .....                                 | 179        |
| <b>제 4 장 : 경제 활동과 서류미비자 .....</b>           | <b>180</b> |
| <b>XXV. SSN(소셜번호)과 신분도용 .....</b>           | <b>180</b> |
| 1. SSN(social security number)의 의미 .....    | 181        |
| 2. SSN의 종류 및 형태.....                        | 181        |
| 3. SSN의 의무적 사용 .....                        | 182        |
| 4. SSN의 문제점 및 사용 축소.....                    | 182        |
| 5. SSN이 도용 당한 경우의 조치 .....                  | 184        |
| 6. SSN의 보호 (요약).....                        | 185        |
| <b>XXVI. 전자 노동허가 확인(E-Verify).....</b>      | <b>186</b> |
| 1. E-Verify의 운용 .....                       | 187        |
| 2. 사용현황 .....                               | 187        |
| 3. 주별 운용 현황 .....                           | 188        |
| <b>XXVII. Tax ID (ITIN) 만드는 방법.....</b>     | <b>191</b> |
| 1. ITIN의 의의.....                            | 192        |
| 2. ITIN의 신청.....                            | 192        |
| 3. 발급 .....                                 | 193        |
| 4. 세금환급 신청서(Federal Income Tax Return)..... | 193        |
| 5. ITIN 발급 및 세금 납부의 이점 .....                | 194        |
| <b>XXVIII. 은행 계좌 열기.....</b>                | <b>195</b> |

|  |     |
|--|-----|
| 1. Bank of America .....   | 196 |
| 2. Citibank .....  | 197 |
| 3. Chase .....   | 197 |
| 4. 소규모 은행, 지역 은행 .....   | 197 |
| <b>XXIX. 서류미비자와 납세</b> .....   | 198 |
| 1. 세금 납부의 의의.....  | 199 |
| 2. 납세자의 자격 .....   | 199 |
| 3. 세금 납부의 방법.....  | 200 |
| 가.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 200 |
| 나. 세금의 계산.....   | 201 |
| 다.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환급 혜택(EITC) .....                                     | 201 |
| 라. 중산층을 위한 CTC.....  | 201 |
| 4. 현금 소득에 대한 세금 .....  | 202 |
| 5. 자영업자 및 법인의 세금 .....   | 202 |
| 가. 자영업자 세금(SE Tax) .....   | 202 |
| 나. 법인세 (Corporate Tax) .....   | 202 |
| <b>XXX. 서류미비자와 고용주의 관계</b> .....                                     | 204 |
| 1. 고용주와의 관계 정리 필요성 .....   | 205 |
| 2.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   | 205 |
| 가. 임금의 보호.....   | 206 |
| 나. 고용주와의 임금 분쟁의 처리.....  | 207 |
| 다.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Worker's Compensation and illegal immigrant). 208 |     |
| 라.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Unemployment Benefit) .....                           | 209 |
| <b>XXXI. 사업체의 운영</b> .....   | 211 |
| 1. 서류미비자의 고용 및 자영업 .....   | 212 |
| 2. 서류미비자의 기업 설립(incorporating).....                                  | 213 |
| <b>제 5 장 : 비경제활동과 서류미비자</b> .....                                    | 214 |
| <b>XXXII. 운전면허</b> .....   | 214 |
| 1. 운전면허의 필요성 .....   | 215 |
| <b>XXXIII. 교통 수단의 이용</b> .....                                       | 221 |

|   |            |
|---|------------|
| 1. 항공기.....                               | 222        |
| 2. 버스 및 열차.....                           | 222        |
| 3. 자동차.....                               | 223        |
| <b>XXXIV. 교통사고 처리와 이민자 신분 .....</b>       | <b>225</b> |
| 1. 전제되는 조건.....                           | 226        |
| 2. 사고 직후의 처리.....                         | 226        |
| 3. 보험회사에서의 처리.....                        | 228        |
| 4. 음주 운전 및 음주 사고.....                     | 230        |
| <b>XXXV. 부동산 구입.....</b>                  | <b>232</b> |
| 1. 가능여부 .....                             | 233        |
| 2. SSN 과 모기지.....                         | 233        |
| 3. 서류미비 신분으로 인한 어려움.....                  | 233        |
| 4. 부동산의 처리.....                           | 234        |
| 5. 부동산의 처리와 세금문제 .....                    | 234        |
| <b>XXXVI. 아파트 렌트.....</b>                 | <b>236</b> |
| 1. 현황 .....                               | 237        |
| 2. 서류미비자 축출 시도 및 판결 .....                 | 237        |
| 3. 불체자 렌트 금지 조례의 예 (Summerville, SC)..... | 237        |
| <b>XXXVII. 병원의 이용.....</b>                | <b>239</b> |
| 1. 의료보험 개혁의 내용 .....                      | 240        |
| 2. 서류미비자와 의료보험 개혁.....                    | 240        |
| 3. 응급실의 이용 .....                          | 240        |
| <b>XXXVIII. 미국에서의 교육 .....</b>            | <b>244</b> |
| 1. 초, 중등 교육.....                          | 245        |
| 2. 대학교육 .....                             | 245        |
| <b>XXXIX. 밀입국과 체류신분 초과 불법체류의 차이.....</b>  | <b>247</b> |
| 1. 신분조정 자격의 차이 .....                      | 248        |
| 2.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                     | 249        |
| <b>XL. 취업이민(스폰서)의 가능성.....</b>            | <b>251</b> |

|  |     |
|--|-----|
| <b>XLI. 이민사기 예방법</b> .....                                       | 255 |
| 1. 나 “잘 알아” 형.....   | 256 |
| 2. “나 이민국 직원 알아” 형.....  | 257 |
| 3. “조금만 고치면 돼” 형.....  | 258 |
| 4. 충고.....   | 259 |
| <b>XLII. 신분증</b> .....   | 260 |
| 1. 신분증의 의미.....  | 261 |
| 2. 시 정부 발급 신분증.....  | 261 |
| 3. 멕시코 영사관 발부 신분증(Matricula Consular).....                       | 262 |
| <b>XLIII. 안전 도시 (Sanctuary Cities)</b> .....                     | 264 |
| 1. 안전 도시 (Sanctuary Cities)의 의미.....                             | 265 |
| 2. 안전 도시의 예.....   | 266 |
| 3. 반-안전 정책.....  | 266 |
| 4. 구분의 어려움.....  | 267 |
| <b>XLIV. 출국 및 재입국의 제한</b> .....                                  | 268 |
| 1. 불법체류 후 재입국 제한.....  | 269 |
| 2. 재입국 방법.....   | 269 |
| <b>XLV. 이민법 위반 행위</b> .....                                      | 270 |
| 1. 이민관련 신청에 “거짓말”을 하는 행위(misrepresentation, 212(a)(6)(C)(i)).... | 271 |
| 2.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행위(212(a)(6)(C)(ii))             | 271 |
| 3. 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 및 위조, 변조된 이민서류를 사용하는 행위(이민법 274C).....        | 272 |
| 4. 밀입국 및 밀입국을 돕거나 고무하는 행위.....                                   | 273 |
| 5. 고용주가 노동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 주선, 모집하는 행위(이민법 274A)..                | 275 |
| 6. 영주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하는 행위(Marriage Fraud).....                | 278 |
| 7.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행위.....  | 279 |
| 8. 불법체류 자체 (비자 기간 초과).....                                       | 281 |
| <b>제 6 장 : 군복무 관련</b> .....                                      | 282 |
| <b>XLVI. 선발 징병제도</b> .....                                       | 282 |
| 1. 등록 의무자.....   | 283 |

|  |            |
|--|------------|
| 2. 미 등록 .....                            | 283        |
| 3. 징집 .....                              | 284        |
| 4. 미등록자의 대처요령.....                       | 284        |
| 5. 등록(증명)이 필요 없는 사람.....                 | 284        |
| <b>XLVII. 군복무를 통한 시민권 획득.....</b>        | <b>285</b> |
| 1. 영주권자 .....                            | 286        |
| 2. 비이민비자 소지자 .....                       | 286        |
| <b>XLVIII. 한국에서의 병역 문제 .....</b>         | <b>288</b> |
| 1. 2 중 국적자의 병역 의무.....                   | 289        |
| 2. 이중 국적 허용 .....                        | 290        |
| 3. 재외국민 2 세제도.....                       | 291        |
| 4. 모국 수학제도.....                          | 292        |
| 5. 입영의 연기 .....                          | 292        |
| 6. 전문 연구 요원 및 산업 기능요원 제도.....            | 293        |
| 7. 병역의무 미이행의 결과 (미귀국에 대한 조치).....        | 293        |
| <b>제 7 장 : 기타 .....</b>                  | <b>295</b> |
| <b>XLIX. 캐나다 이민.....</b>                 | <b>295</b> |
| 1. 의의 .....                              | 296        |
| 2. 전문직 이민 (Skilled Worker Program) ..... | 296        |
| 3. 가족 초청 (Family Class Immigration)..... | 300        |
| 4. 기업 이민 (Entrepreneur Program) .....    | 300        |
| 5. 투자 이민 (Investor Program) .....        | 301        |
| 6. 자영업 이민(Self-Employment Program).....  | 301        |
| <b>L. 불체자의 신고 .....</b>                  | <b>302</b> |
| 별첨.....                                  | 304        |
| HR 5281 하원 통과 드림법안 (원문 번역).....          | 304        |





## 1. 불법체류의 종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밀입국과 체류기간 초과가 그것이다. 밀입국은 입국 심사 없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말하며, 체류기간 초과는 이민국에서 주어진 체류기간을 지나서 계속하여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드문 경우이지만, 신분조건을 위반한 경우도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 즉, 학생 신분으로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하다가 이민국 관리 혹은 이민관사로부터 신분위반의 결정을 받은 경우와 같이 주어진 신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위반이 있고 그에 대한 결정이 있게 되면 그 이후의 체류는 불법체류가 된다. 한편, 이러한 신분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학생 신분으로 불법 노동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민국/이민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불법체류가 아니며 체류신분 위반(status violation)에 불과하다. 다만, 현재는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후에 발각이 되어 불법체류로 결정될 가능성은 있다.

### ※ 신분위반(Unlawful Status)과의 구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학생(F)이 허가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과 같이, 신분조건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신분위반(unlawful Status)이 발생한다. 이것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와 구분하여야 하는 개념이다. 이민법 245(k)에서는 불법체류가 아닌 “신분위반”을 따지기도 한다. 즉, 신분위반을 하고 있는 날짜의 합이 180일을 넘지 않아야 취업에 근거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하루도 없지만 신분위반이 180일을 넘길 수 있다.

## 2. 불법체류의 효과

불법체류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는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이민법 222(g)에서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비자신청의 장소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두번째는 이민법 212(a)(9)(B)에서 180일 혹은 1년 이상의 불법체류를 3년, 또는 10년의 비자제한(입국불허)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평생 입국을 제한하는 212(a)(9)(C)도 있다.

222(g)의 장소적 제한은 비자 자체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며, 단지 신청자가 자신의 국적국(한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만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불법체류를 하였으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라’는 의미이다.

212(a)(9)(B)의 제한 역시 비자 신청의 시간적 제한에 불과하나, 그 영향이 출국 후 3년 혹은 10년에 걸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다만, 222(g)의 제한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이민비자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체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비록 불법체류에 따른 제한이 있고, 밀입국으로 인하여 미국을 출국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기도 하지만, 미국내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불법체류 후 한국으로 출국하여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민법 212(d)(3)에 따르는 면제를 신청하고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12(a)(9)(B)에 의한 제한은 이민비자,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되며, 예외적인 경우, 즉,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부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다.(아래에서 설명) 또한,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인 경우, 신분조정시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친가족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모(자녀가 21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불법체류 기간의 계산

#### 가. 222(g)의 불법체류

##### (1) “허가된 체류기간”의 해석

222(g)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체류는 비이민비자의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212(a)(9)(B)와는 달리, 밀입국에 의한 불법체류가 포함되지 않으며, 비자를 전혀 받지 않은 무비자 입국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민비자로 입국한 자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캐나다 시민의 경우와 같이, 8 CFR 212.1(c)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도 해당사항이 없고, 임시입국허가(parole)를 받아 입국한 사람도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 비록 222(g)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분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며, 별도로 신분위반을 사유로 처벌을 받거나 추방 당할 수는 있다. 다만, 222(g)상의 비이민 비자 신청의 장소적 제한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의 의미이다. 이민국과 국무부는 불법체류 기간의 계산에 관한 이민법 규정이나 시행령이 없는 상황에서,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의 의미를 아래와 같은 경우로 해석하도록 통일된 해석 지침을 마련하였다. (9 FAM 40.92 note)

(1) I-94에 체류 허가기간이 찍힌 경우, 신분의 연장이나 변경 신청 없이 그 날짜를 넘기는 경우(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2) 이민판사가 신분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하는 경우(이민 판사가 추방 절차에서 신분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하고, 이로써 해당 외국인의 비이민 비자 신분이 종료된 경우, 신분위반이 발각된 날부터가 아니라 이민판사가 신분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한 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3) 이민국에 이민법 관련 신청이 접수된 상태에서, 이민국의 판단으로 신분위반이 있었다고 하고, 그 신분위반을 이유로 비이민자 신분을 종료시킨 경우(신분위반이 발각된 날부터가 아니라 이민국에서 신분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한 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 신분위반이라는 것은, 해당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F-1(학생)신분에 있는 사람이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 F, G, J, A 혹은 I 비자의 경우와 같이, I-94에 허가 체류기간이 찍힌 것이 아니라 “D/S”(duration of status)로 찍힌 경우, 특정된 만료기간이 없으므로, 위의 (1)은 해당사항이 없고, (2),(3)의 경우에만,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 된다. 따라서, 신분위반이 있었으나(예를 들면 허가 없는 고용, 체류기간 초과), 이민 판사 혹은 이민국의 신분위반 결정이 없었던 경우는, 비록 신분위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222(g)상의 벌칙은 받지 않는다.

즉, I-20 혹은 DS 2019상에 주어진 기간을 넘어 체류하는 것 자체가 222(g)상의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F, G, J, A 비자의 경우,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이민국이나 이민판사의 결정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222(g)의 목적상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I-20 기간을 넘기는 경우, 일반적 의미에서는 “불법체류”가 되고, 다른 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이민국/이민판사의 결정이 있을때까지는 이민법 222(g)에 따르는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 (2) 벌칙

222(g)의 불법체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의 비이민 비자는 무효가 되고, 장래의 모든 비이민 비자는 국적국(영사관)에서 발부 받아야 한다. 비이민비자가 무효가 되면 추방대상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 만일 비자가 두개인 경우, 그중 하나의 체류허가기간이 만료한 경우, 입국시 사용한 비자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비자는 유효하나, 만일 나머지 비자도 나중에 종료하게 되면, 결국 국적국가로 되돌아가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경우”는 예외이다. 특수한 상황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신청자를 국적국가로 되돌아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아래에 적시된 상황에서는 영사가 단독으로, 그 벌칙을 면제해 줄 수 있으나, 이에 열거되지 않은 상황의 경우, 반드시 미 국무부 비자 오피스의 사전 권고 의견을 듣고 그 벌칙을 면제받아야 한다.

※ 특수한 상황

- 이민법 214(l)에 따라 미국에 일하고 있는 의사로서, J-1 2년 귀국의무면제를 신청하고, H-1B자를 신청한 사람
- 국적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는, 국적국이 아니라 거주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영사관이 없는 나라의 국민들은 국무부가 지정한 곳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은 거주 국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무국적자는 여행서류를 발부한 국가를 국적국으로 본다.
- H-1B로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그 상한선(CAP)때문에 신분변경을 받지 못한 자로서, 신청이 접수되기 전이나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 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지 않은 자

또한, A-1, A-2, C-2, C-3, G-1, G-2, G-3, G-4, NATO 1~6의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일시적 보호자 신분(TPS)을 받은 사람이, 체류기간을 넘기는 것 외의 다른 신분 위반이 있었으나, 이러한 위반에 대하여 이민관사나 이민국에 의한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는 222(g)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3) 신분의 연장, 변경 신청과 222(g)

신분의 연장, 변경 신청 도중에 I-94상의 체류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분의 연장, 변경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non-frivolous), 신청인이 그 신청 이전 혹은 신청이 계류된 기간동안에 불법적인 고용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222(g)상의 벌칙을 받지 아니한다.

※ 신분의 연장, 변경을 신청해 놓고, 이민국에서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출국하는 사람은,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 아니며, 따라서 222(g)상의 벌칙을 받지 아니한다.

### (4) 신청 기간 후에 신청한 신분 연장, 변경의 효과

만일 신분의 연장, 변경 신청이 I-94상의 체류기간이 만료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민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민국은, 별도의 면제신청 없이도, 신청이 늦어진 이유가 신청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고, 늦어진 기간이 그러한 상황에 상당한 것이며, 신청인이 다른 신분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고, 비이민자 신분으로 남아 있고자 하였으며, 이민법 240조에 따른 추방절차에 놓여지지 않은 경우(이는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 나. 212(a)(9)(B)상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미국에서의 연속적인(consecutive)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길 경우, “자발적으로” 출국한지 3년, 1년을 넘길 경우 출국한 이후 10년동안 입국이 제한된다(inadmissible).

※ 입국 후 계속되는 불법체류의 총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과거의 불법체류와 현재의 불법체류의 합이 180일, 1년을 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여, 과거의 F 신분 이후 불법체류가 4개월, 현재(혹은 과거)의 J 비자 이후 불법체류가 3개월 있었기 때문에 총 불법체류의 합이 180일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212(a)(9)(B)상의 입국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3년 입국제한의 자발적 출국은 아무런 조치를 당하지 않고 (추방재판 시작전에) 스스로 출국한 경우는 포함되지만, 추방절차에 회부되어 이민관사로부터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출국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Consolidation of Guidance Concerning Unlawful Presence for Purposes of Section 212(a)(9)(B) and 212(a)(9)(C)(i)(I) of the Act, USCIS, May 9, 2009) 이것은 추방소송의 경계를 고려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자발적 출국 명령이 발부된 날까지의 불법체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지정된 날짜까지 자발적 출국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기간은 앞의 불법체류에 이어 계속되게 된다. 만일 180일 이전에 추방명령에 따라 추방되는 경우, 212(a)(9)(A)에 따라 10년의 입국제한이 따른다.

#### (1) 불법체류의 의미

여기서의 불법체류는 222(g)와는 달리, 밀입국(EWI, inspection, parole 없이 입국)을 포함한다. 또한 222(g)와 같이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긴 체류기간을 불법체류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1) I-94에 체류 허가기간이 찍힌 경우, 신분의 연장이나 변경 신청 없이, 그 날짜를 넘기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단, 그 이전이라도 이민관 또는 이민 판사가 신분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다음날부터 불법체류의 기간이 시작된다.

(2) I-94에 비자 만료기간이 표시되지 않고 “D/S” (Duration of Status)로 표시된 경우, 이민법 판사가 신분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하는 경우(이민 판사가 추방 절차에서 신분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하고, 이로써 해당 외국인의 비이민 비자 신분이 종료된 경우, 위반이 발견된 날부터가 아니라 그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3) I-94에 비자 만료기간이 표시되지 않고 “D/S”로만 표시된 경우, 이민관에 이민법 관련 신청이 접수된 상태에서, 이민관의 판단으로 신분위반이 있었다고 하고, 그 신분위반을 이유로 비이민자 신분을 종료시킨 경우(신분위반이 발각된 날부터가 아니라 그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4)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가 아니라, 이민관사 혹은 이민항소 법원에

의하여 추방명령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조건부 영주권자인 경우, 법원의 추방명령에 의하여 추방되는 경우 그 추방명령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며,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을 기준으로 그 90일 이전의 기간내에 조건의 제거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건부 영주권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는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만일 조건부 영주권의 취소를 이민법원에서 다룬다면, 불법체류는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 신분위반이라는 것은, 해당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F-1(학생)신분에 있는 사람이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에 종사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 F, G, J, A 혹은 I 비자의 경우와 같이, I-94에 허가 체류기간이 찍힌 것이 아니라 “D/S”(duration of status)로 찍힌 경우, 특정된 만료기간이 없으므로, 위의 (1)은 해당사항이 없고, (2),(3)의 경우에만,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긴 것이다. 또한, I-20 혹은 DS 2019상에 주어진 기간을 넘어 체류하는 것 자체가 212(a)(9)(B)상의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F나 J비자 소지자는 그 체류기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민판사나 이민국 직원에 적발되지 않고, 아무일 없이 출국하였다면, 3/10년의 출국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학생 신분기간을 넘겨 이를 회복(reinstatement)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이 거절되고(거절되는 시점에서 212(a)(9)(B)상의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불법체류에 의한 입국제한을 받게 되는 반면, 이러한 회복 신청 없이 6개월 혹은 1년이상의 불법체류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는 212(a)(9)(B)에 따른 입국제한이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하면, “D/S”의 경우, 신분위반이 있었으나(예를 들면 허가 없는 고용), 이민 판사 혹은 이민국의 신분위반 결정이 없었던 경우는, 비록 불법체류 하였다 하더라도, 212(a)(9)(B)상의 벌칙은 받지 않는다.

※ 비이민비자 신분기간동안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민판사 및 이민국 직원만이 불법체류가 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는 그 결정을 내릴 수도, 결정을 내려달라고 사건을 이민판사나 이민국 직원에게 의뢰할 수도 없다. (<http://www.cis.org/EvaluatingIIRAIRA> 참고) 따라서 영사가 설령 비자를 심사하면서, 신청인의 진술, 서류 등으로 보아 불법체류 사실을 적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3/10년 입국제한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

※ 한번의 연속된 체류에서 두번이상의 불법체류

만일 계속된 한번의 미국체류에서 두번 이상의 “불법체류”가 있게 되면, 이민법 212(a)(9)(B)의

목적상 두번 이상의 불법체류 기간은 합쳐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첫 불법체류 기간중에 신분조정을 신청하여 불법체류의 기간 계산이 신분조정 신청이 계류중인 기간동안 일시 중단되었으나 신분조정 신청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어 다시 불법체류의 기간 계산이 시작되는 경우, 이 두개의 불법체류 기간은 212(a)(9)(B)의 목적상 합산되어 계산된다.

※ 1997년 4월 1일 이전의 불법체류

3년/10년의 입국제한 규정은 1997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따라서 그 이전의 불법체류는 212(a)(9)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1997년 4월 1일 이전에 입국하여 그 이후까지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었다면 1997년 4월 1일 이후의 불법체류만이 문제될 뿐이고, 만일 1997년 4월 1일 이전에 입국하여 그 이전에 출국하였다면, 이민법 212(a)(9)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212(a)(9)(B)의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는 기간

(가) 법률의 규정상 212(a)(9)(B)의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

모든 불법체류가 3/10년 입국제한의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경우, 불법체류라 하더라도 212(a)(9)(B)에 따른 입국제한의 목적상 불법체류의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의 불법체류는 212(a)(9)(C)의 목적상으로는 불법체류로 계산된다. 따라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출국한 후 만일 10년 이내에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거나 밀입국 후 적발되는 경우, 평생 입국이 제한된다. 평생 입국제한은 다만 출국한지 10년 후에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다. 10년을 미국외에서 체류하여야 한다는 이 조건은 면제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면제를 받을 수 없다.

① 만 18세가 되기 이전의 불법체류 (212(a)(9)(B)(iii)(I))

② 난민(asylum)을 신청한 경우, “정당한”(bona fide) 신청이 계류중인 기간.

단, 허가 없는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212(a)(9)(B)(iii)(II)) “정당한 신청”이라 함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하여 난민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신청한 것을 말한다.

③ 난민 가족 청원(I-730)이 계류중인 경우(212(a)(9)(B)(iii)(II)).



난민 가족 청원이 접수될 당시 이미 불법체류 중이었다면, 212(a)(9)(B) 목적상의 불법체류는 난민 가족 청원이 접수됨과 동시에 중단되고, 만일 추후 그 청원이 거절된다면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는 다시 시작된다.

④ 가족결합 보호(FUP) 혜택의 승인을 받은 경우. (212(a)(9)(B)(iii)(III))

가족 결합 보호(Family Unity Protection) 신청(I-817)의 접수만으로는 불법체류가 중단되지 않으며, 그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신청일에 소급하여 불법체류가 중단된다. 단, 신청일 이전의 불법체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가족결합 보호 혜택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는 청원이 없었던 것처럼 계속하여 진행된다.

⑤ VAWA 청원이 승인된 사람 중 일부 (212(a)(9)(B)(i))

VAWA 청원이 승인된 사람으로 불법체류 중 학대로 인하여 미국을 출국하게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입증되면, 212(a)(9)(B)에 따른 입국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⑥ 인신매매의 피해자 (212(a)(9)(B)(i))

인신매매(Severe Forms of Trafficking)의 피해자로서 인신매매가 최소한 불법체류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입국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신매매가 불법체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T비자를 신청(I-914)하거나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때,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된다. 만일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I-192를 작성하여 입국불허 사유의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다. T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다.

⑦ 신분의 변경 혹은 연장이 계류중인 때 (212(a)(9)(B)(iv))

비이민비자의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및 연장(extension of status)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계류중인 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가 생기지 않는다. 즉, 불법체류의 기간이 중단된다. 단, 이때에도 애초의 입국은 합법적이었어야 하며, 신분변경 혹은 연장 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졌어야 하며, 불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단, 이 규정은 212(a)(9)(B)(i)(I)의 경우(3년 입국제한)에만 적용되며, 212(a)(9)(B)(i)(II)(10년 입국제한)의 경우 및 212(a)(9)(C) (1년 이상의 불법체류 후 밀입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정책적인 고려에서 212(a)(9)(B)의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



① 신분조정(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일단 신분조정을 신청하면, 최종적으로 그 신분조정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신청이 계류중인 기간동안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중단된다.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최종적인 결정이 있는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는 다시 시작된다. 물론 신분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이전의 불법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② 비이민비자의 신분변경 혹은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의 연장 혹은 신분변경은 적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전에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하지 않았어야 하며 신청 계류중에도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이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frivolous) 것이 아니라면 신청이 계류중인 전 기간동안 불법체류의 진행은 중단된다.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생기지 않으며, 만일 신청이 근거가 없거나(frivolous),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 I-94상의 체류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의 기간이 계산된다. 단 D/S로 입국체류를 받은 사람은 신청이 거절되는 날부터 불법체류의 기간이 계산된다. 또한, 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도 I-94상의 체류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불법체류의 기간이 시작되며, D/S로 체류기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거절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의 기간이 계산된다.

신분변경 신청의 기각에 대하여 재개(motion to reopen), 재심(motion to reconsider)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불법체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재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신분의 변경/연장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기왕에 발생한 불법체류가 모두 없어지게 된다. 또한, 재심/재개 신청을 받아들이기만 하여도 애초의 신분변경/연장 신청이 계속하여 계류중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재개/재심의 결정이 있을때까지는 불법체류 기간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재개/재심 후 신분변경/연장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신분변경/연장의 거절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재심/재개 후 신분변경/연장을 최종적으로 기각한 날짜로부터 불법체류의 기간이 계산된다.

원칙적으로 신분변경/연장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가 인정되지 않으나, 신분변경/연장의 근거가 되는 청원(petition, 예, I-129)은 일반적으로 이민항소국(Administrative Appeal Office, AAO)에의 항소가 가능하다. 다만, 항소가 접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체류가 중단되지 않으며, 이민항소국이 신분변경/연장 신청의 거절을 뒤집고 신분변경/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최초의

신분변경/연장 신청시부터의 불법체류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③ 신분변경 혹은 연장신청 후 계류중인 기간중에 출국하는 경우

비이민비자의 신분변경 혹은 연장을 신청한 후, 그 신청이 계류중인 기간동안에 출국하는 경우, 3년/10년/평생의 입국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신청이 근거없는 것(frivolous)이 아니어야 하며, 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신청 전, 후에 불법으로 노동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 여러 개의 신분변경/연장 신청

신분변경/연장을 신청해 놓고 다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생각에 다른 사유로 신분변경/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신분변경/연장을 신청하기 전 애초의 신분 기간이 종료한 후 추가로 신청하는 신분변경/연장 신청은 불법체류 기간의 개시를 막지 못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애초의 신분기간 내에 신청한 최초의 신분변경/연장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

④ 구제법에 따른 구제 신청이 계류중인 경우

1986년 구제법, LIFE Act에 따른 구제 신청이 계류중인 경우, 신청이 계류중인 기간동안에는 불법체류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불법체류의 기간은 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날 중단되며, 구제신청이 거절되는 날부터 재개된다. 구제신청의 거절은 행정기관에서의 재심(administrative appeal)도 포함한다. 단, 이민관사 및 연방 법원에서의 심판 기간은 허가되는 체류기간(period of authorized stay)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체류 기간의 계산이 진행된다.

⑤ LIFE Act 1504에 따라 가족 결합 혜택(FUP)을 받은 사람

LIFE Act 1504조의 규정에 따른 혜택의 신청(I-817)만으로 불법체류의 진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단, I-817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의 불법체류는 없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도 신청이전의 불법체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I-817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애초 I-817의 신청이 없었던 것처럼 불법체류의 진행은 계속된다.

⑥ 이민법 240B에 따라 “자발적 출국”을 받은 사람

#### ㉔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의 의의

“자발적 출국”이라 함은, 추방재판을 시작하기 전후하여 국토안보부(DHS) 혹은 이민판사(Immigration Judge) 및 이민항소법원(Board of Immigration Appeal, BIA)이 일정한 기간을 주어 추방명령에 대신하여 그 기간내에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추방명령을 내리게 되는 경우의 입국제한을 완화시키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을 개시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하고 신속히 출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자발적 출국이 부여된 기간동안에는 불법체류가 진행되지 않는다.

#### ㉕ 자발적 출국의 기간

자발적 출국은 이민국(DHS)에서 부여하는 경우, 최장 120일을 넘길 수 없다. 애초에 주어진 자발적 출국 기간에서 지역사무소장(Field Office Director)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의 합이 120일을 넘기지 못한다. 이민법원으로 넘겨지는 경우, 법원에서 자발적 출국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으나 자발적 출국명령을 다시 내릴 수는 있다.

#### ㉖ 자발적 출국의 혜택

이민판사가 자발적 출국을 부여하는 경우, 이민법 212(a)(9)(B)(i)(I)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입국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추방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출발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방재판이 시작된 이후 자발적 출국을 부여받아 출국한 경우, 3년의 입국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추방재판을 빨리 끝내고 출국하도록 중용하는 의미가 크다. 또한,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기지 않은 짧은 기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단, 추방재판을 시작하였다고 하여 불법체류 기간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그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㉗ 자발적 출국의 거절에 대한 항소

이민법원이 자발적 출국의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이민항소법원(BIA)에 항소할 수 있다. 만일 이민항소 법원이 이민판사의 자발적 출국 거부를 뒤집는 경우, 애초 이민판사가 자발적 출국을 거부한날로부터 이민항소법원의 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다. 단, 이민국의 자발적 출국 거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㉞ 자발적 출국의 재부여(re-instatement)

자발적 출국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추방재판이 재개(re-open)되고, 재개 결정이 애초의 자발적 출국 기간 종료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민관사 및 이민항소법원은 자발적 출국을 재부여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발적 출국의 기간의 총 합이 이민법 240B에 나타난 60일(추방재판 종료시) 혹은 120일(추방재판 중)을 넘길 수 없다. 또한, 애초의 자발적 출국이 종료한 날로부터 자발적 출국이 재부여된 날까지의 기간은 불법체류가 된다. 그러나 재부여된 자발적 출국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된다.

#### ㉟ 자발적 출국에 대한 항소

이민법원(IJ, BIA)의 자발적 출국 명령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자발적 출국 명령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대신 “추방 명령”이 부활한다. 이때, 추방명령의 대상이 된 사람은 3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또한, 자발적 출국명령의 부여로 인한 불법체류 기간으로부터의 보호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자발적 출국 명령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를 신청한 다음날부터 즉시 불법체류 기간이 재개된다. 단,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주어진 30일 기간내에 출국하면 실제로 출국한 날까지의 기간까지는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 ㊱ 자발적 출국과 심판의 재개 요청

심판의 재개 요청(motion to reopen)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상황의 변화가 있어 이민법원에서 내린 심판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심판의 재개 요청은 심판이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발적 출국을 받은 추방대상자의 경우, 60일 이내에 출국하거나 90일 이내에 재개 요청을 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이 남겨지게 된다. 이것이 추방대상자의 항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2008년 대법원은 추방대상자는 일방적으로 자발적 출국의 혜택을 포기하면서 자발적 출국을 취소하고 미국에 체류하며, 90일 이내에 심판의 재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㊲ 추방의 중단(Stay of Removal)를 받은 사람

추방의 중단은 추방명령을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일시적인 보호장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추방의 결정에 대하여 이민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예이다. 그러나, 추방 결정에 대한 재개 혹은 재심 요청을 한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추방의 중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별도로 추방의 중단 신청을 하여, 국토안보부, 이민관사, 이민항소 법원, 연방법원으로부터

터 추방의 중단을 받아야 한다.

⑧ 추방의 연기(Deferred Action)를 받은 사람

이민국 지역 사무소(DHS Field Office)에서는 재량으로 추방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추방의 연기는 비록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체류의 기간이 중단되는 효과는 있다. 불법체류는 추방의 연기가 부여된 날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며, 추방의 연기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재개된다. 추방의 연기를 받았다고 하여 이전의 불법체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⑨ 이민법 241(b)(3)에 따라, 추방의 중지(withholding of removal)를 받은자.

241(b)(3)의 추방의 중지는 생명 혹은 자유가 위협받는 국가로 추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이 경우, 추방의 중지가 내려진 날부터 추방의 중지가 계속되는 기간동안 불법체류는 진행하지 않는다.

⑩ 기타

고문금지 협약에 따라, 추방의 중지 혹은 추방절차의 중지를 받은 사람, 강제 출국의 연기(Deferred Enforced Departure(DED))를 받은 사람, 만족할만한 출국(Satisfactory Departure)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동안 불법체류의 진행이 중단된다.

(다) 추방재판의 개시와 불법체류 기간

추방절차의 개시는 원칙적으로 불법체류 기간의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불법체류 기간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불법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진행하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추방재판이 시작되어도 불법체류 기간이 개시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추방재판에서 이민판사가 체류신분 위반 결정을 내리거나 I-94상의 체류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된다.

또한, 이것은 이민항소법원이나 연방 법원에 항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법체류 기간의 계산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방법원에서 하급 법원의 추방명령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민판사의 최초의 추방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계산된다. 다만, 이민항소법원 혹은 연방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번복한다면, 애초의 추방명령에 의하여 불법체류 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 (3) 자발적 출국

#### (가) 3년의 입국제한 (강조)

이민법 212(a)(9)(B)(i)(I)상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자발적 출국이라 함은 이민국(DHS)과의 접촉이 없이 그냥 출국한 경우 그리고 이민국(DHS)의 “자발적 출국” 승인을 받고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즉, 이민법원에 의한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자발적” 출국이 되는 것이다.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은 출석통지서(NTA)가 이민법원에 접수되는 날이다.

만일 이민법원에 의하여 추방재판이 시작된 후에 자발적으로 출국하게 되면, 212(a)(9)(B)(i)(I)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3년의 입국제한을 받지 않고 출국한 후, 다시 이민비자/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이것은 단기간의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다. 따라서 추방재판이 진행되고 난 후, 자발적 출국 승인을 얻어 출국하면 3년의 입국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다. 만일 소송을 계속하여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당하는 경우, 입국제한은 10년이 되는 것에 비하면 그 차이가 적지 않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도록 자발적 출국을 받고 즉시 출국하여야 하며, 소송이 계속중에 무단으로 출국하거나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해서는 그 혜택을 볼 수 없다. 또한, 212(a)(9)(B)(i)(II)(10년의 입국제한)의 경우, 이러한 유인책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진 출국하였다는 것은 법원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차후에 재입국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212(a)(9)(B)(i)(I)상의 3년 입국제한은 피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입국제한 사유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유죄판결이 있다면 이로 인한 입국제한은 별도로 생각하여야 한다.

#### (나) 10년의 입국제한

불법체류 기간의 1년을 넘을 경우, 180일 이상의 경우에서와 같은 자발적 출국에 대한 혜택이 없다. 즉, 이민법원에 출석통지서(NTA)가 접수된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출국하던,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하던 10년의 입국제한이 따른다. 물론 추방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불법체류 기간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 (다) “출국”의 의미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따르기 위해서는 미국을 출국하여야 한다. 212(a)(9)(C)의 경우에도,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에서 입국심사 없이 “재입국”을 하였거나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출국”한 것이 전제되고 있다.

출국은 물리적 출국을 의미하며, 출국시에 “가입국허가”(advance parole) 혹은 “여행허가”(refuge travel document)를 받았다고 하여, 입국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입국허가나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여전히 적용된다. 단,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적용되지만, 재입국시 가입국허가(parole)를 받고 미국에 들어올 수는 있다. 이론상 가입국허가(parole)는 미국에 입국(admitted)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국허가를 받고 미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여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가입국 허가를 얻어 재입국하는 사람은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적용되나 212(a)(9)(C)상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가입국허가를 얻는 것이 밀입국(entry without inspection)이나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입국허가(parole)는 엄연히 입국 검사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212(a)(9)(C)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 (4) 벌칙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한 뒤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3년간 입국이 제한된다. 1년 이상 불법체류한 이후 (자발적, 타율적(예, 추방)으로) 출국한 경우, 10년간 입국이 제한된다. **출국한 뒤에 따르는 처벌이므로,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다만, 출국을 하지 않거나 다시 밀입국한 경우에는 212(a)(6)(A)(밀입국), 212(a)(9)(C)(이전의 이민법 위반) 등 다른 규정에 따른 이민비자 신청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 212(a)(6)(A) (밀입국)

입국 심사(inspection) 혹은 가입국(parole)을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 오는 것을 밀입국이라 하며, 밀입국자는 입국제한(inadmissible) 사유를 갖게 된다.

##### ※ 212(a)(9)(C) (과거의 불법체류와 밀입국)

과거의 합산 1년 이상 불법체류가 있는 사람이 출국하여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거나 밀입국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생 입국이 불허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국한지 10년이 넘은 경우, 입국불허에 대한 면제를 받아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다.



※ 신분의 연장, 변경이 정해진 기간내에 접수되지 못하고, 기한을 넘겨 신청된 경우, 기한을 넘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불법체류 기간은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고, 받아들여진 경우, 기간내에 신청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즉, 승인을 받게 되면 불법체류 기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거절되면 I-94상의 만료 기간 이후 혹은 그 거절일자(D/S)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게 된다.

※ 기한 후의 신분의 연장, 변경 신청의 접수 여부: 만일 신분의 연장, 변경 신청이 I-94상의 체류기간이 만료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민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민국은, 별도의 면제신청 없이도, 신청이 늦어진 이유가 신청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고, 늦어진 기간이 그러한 상황에 상당한 것이며, 신청인이 다른 신분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고, 비이민자 신분으로 남아 있고자 하였으며, 이민법 240에 따른 추방절차에 놓여지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신분의 변경, 연장 신청을 한 이후, I-94상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고, 거절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를 전후하여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불법으로 고용에 종사하지 않았고, 변경, 연장 신청이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라면, 212(a)(9)(B)상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 다. 이민법 212(a)(9)(C)상의 불법체류

##### (1) 의의

212(a)(9)(C)의 제한은 추방 혹은 과거 불법체류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밀입국한 경우, 영원히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다.

##### (나) 불법체류 기간의 계산

이민법 212(a)(9)(C)의 제한을 위한 불법체류의 기간은 1997년 4월 1일 이후의 불법체류의 기간이 전부 합산된다. 따라서 여러 번 밀입국하여 비록 한번의 체류에서의 불법체류의 기간이 365일을 넘긴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입국하여 불법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다시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밀입국하게 되면 212(a)(9)(C)의 제한을 받아 평생 입국이 제한된다. 다만, 이 제한은 10년동안 출국하여 미국밖에서 체류 한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4.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으로부터의 구제

##### 가. 3/10년 입국제한의 면제 (waiver)



### (1) 이민자, 비이민자

3/10년의 입국제한을 받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약혼자, 약혼녀), 자녀라면 면제가 주어질 수 있다. 이민비자 신청자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부모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면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일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약혼자, 약혼녀), 자녀가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가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약혼자, 약혼녀에 대한 면제 부여는, 약혼자/약혼녀가 미국에 입국한 이후 3개월 이내에 결혼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 약혼자, 약혼녀는 212(a)(9)(B)(v)에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체류로 인한 3년/10년의 입국제한에 대한 면제를 인정하되, 일부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면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불법체류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면제는 미국을 출국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경우, 212(d)(3)(A)에 따라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의 면제 신청은 관세 및 국경보호국(CBP)에서 심사하고 있다.

### (2)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난민

난민 승인을 받고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민법 209(c)에 따라 I-602를 접수하여 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분조정을 심사하는 심사관은 또한 I-602 없이도 그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 (3) 일시적 보호 신분 신청자

일시적 보호자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을 신청하는 사람은 I-601을 작성하여 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간의 결합 기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일시적 보호신분 이후에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시 I-601을 작성하여 그 면제를 받아야 한다.

## 나. 평생 입국제한의 면제

### (1) 방법

이민법 212(a)(9)(C)에 따른 평생 입국제한은 출국 후 10년이 지난 후 입국신청에 대한 허가(I-212)를 작성하여 승인(consent)을 얻어야 해소된다.

## (2) 대상자

### (가) 일시적 보호신분(TPS) 신청자

I-212를 작성하여 승인(consent)을 얻어야 한다.

### (나) VAWA 청원으로 승인을 받은자

VAWA 혜택을 주장하는 사람은, 학대, 불법체류 및 출국 혹은 추방과 차후의 밀입국 및 밀입국 시도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I-601을 작성하여 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다) 난민 신분조정 신청자

I-602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I-602의 접수 없이도 그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 (라) 비이민자

이민법 212(d)(3)에 근거하여 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대해 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심사관의 재량에 따른다. 다만, 212(d)(3)의 면제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I-212를 작성하여 승인(consent)을 얻어야 한다.

#### 1. 서류미비자의 출신국별 분포 (출처: Harvard Latino Law Review, The Taxa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s: Separate, Unequal, and Without Representation)

가. 멕시코 (57% ~ 70%)

나. 라틴 아메리카 (23~24%)

다. 아시아 (9~10%)

라. 유럽, 캐나다 (5~6%)

## 제 2 장 : 합법적인 신분 회복의 길



## 1. 의의

불법체류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조건부)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소 어렵고, 이민국에서 보다 엄한 잣대로 위장 결혼 인지 여부를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많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 불과 몇개월 안에 신분조정을 마칠 수 있어, 안정적인 체류신분을 확보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범죄 경력 등 다른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 2. 절차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신청시 밀입국으로 인한 불법체류인지, 체류기간 초과로 인한 불법체류인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체류기간 초과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밀입국으로 인한 불법체류인 경우, 결혼을 통한 신분 조정이 체류기간 초과자보다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을 출국하여 면제(waiver)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245(i)에 해당되는 사람은 밀입국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고 결혼을 통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체류기간 초과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비자 기간을 넘긴 사람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신분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신분조정을 위해서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결혼 후) I-130(가족청원)청원을 해 주어야 한다. 이 청원의 승인을 받고, I-485(영주권신청)를 신청할 수 있지만 두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비자기간을 넘긴 사람은 불법체류로 인하여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불법체류사실이 용서된다. 이것은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의 결합으로, 가족간의 결합을 우선시하는 이민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친가족의 신분 조정의 경우, 과거의 불법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민비자와는 달리, 신분 조정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민법 245(c)) 이것 또한 이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면제가 필요 없으며, 가족간의 결합을 우선시하는 이민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입국시 혹은 입국이후에 이민법상의 혜택의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말 혹은 기만을 한 경우에도 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가족간의 결합을 돕고 있다. 거짓말(misrepresentation) 혹은 기만(fraud)이라 함은,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비자, 기타 이민법상의 서류 혹은 입국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기만한 것을 말한다.(이민법 212(a)(6)(C)(i)) 거짓말에 대한 면제(waiver)를 받기 위해서는 I-601을 작성하여, 만일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거절된다면 배우자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민법 245(i))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범죄로 인하여 신분조정이 장애를 받는 경우에도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법 212(h))

## ☞ 범죄로 인한 신분조정 장애의 면제

### 1. 면제(waiver)의 대상

이민법 212(h)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혐의를 인정한 일부 범죄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인정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나, 면제를 받으면 신분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죄는, 1) 도덕률 위반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2) 복수의 범죄(multiple criminal conviction), 3)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단순 소지 1회, 4) 매춘 및 성도덕 범죄, 5) 범죄행위가 있었으나 면책(immunity)을 주장한 경우의 범죄이다.

도덕률 위반범죄라 함은 다양한 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정직, 좋은 품성(good moral)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 ※ 도덕률 위반 범죄

도덕률 위반 범죄라 함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건전한 도덕을 갖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범죄를 말한다. 도덕률 위반범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 1. 도덕률 위반 범죄의 예

#### 가. 인신에 관한 범죄

##### 폭력(Assault)

- 2급 폭력, (과실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가한 경우)
- 중 폭행(Aggravated assault) (흉기 소지, 심각한 부상 야기 등)

##### 구조조치 불이행

교통사고 야기 후 차를 정지시키고 피해자 구조를 하지 않은 행위

##### 상해 (Battery)

무기 은의 소지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흉기를 몸에 숨기고 있는 행위)

아동/배우자 학대

아동 포르노 소지

중 스토킹(aggravated stalking)

질서 문란 행위 (disorderly act)

음란 목적의 배회(loitering)

매춘 호객행위(soliciting)

중 음주/약물 운전

무면허 인줄 알면서 음주 운전하는 행위

총기의 사용

신체 불구(Mayhem)

살인(1급, 2급), 감금, 강도, 협박, 테러 협박

※ 도덕률 위반이 되지 않는 폭력 등

단순 폭행(Assault and battery)

아동 유기(미수, misdemeanor)

집안 폭력 (가정 폭력, 즉, 배우자에 대한 폭력과는 다름)

단순 음주운전 (DUI), 단순 음주가 여러건이라고 하여 도덕률 위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무면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음주 운전하는 경우, 도덕률 위반 범죄가 된다.

뺑소니라고 하여 전부 도덕률 위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한 경우, 도덕률 위반 범죄가 된다.

#### 나. 성 범죄

간통

중혼(bigamy)

미성년자 간음

근친 상간(incest)

- 추행(indecent assault)
- 음란행위(lewdness)
- 매춘
- 강간
- 성범죄자 미등록
- 의제강간

※ 도덕률 위반이 되지 않는 성범죄 등

- 사생아(bastardy) 출산
- 사통(fornication)
- 공연음란 (indecent exposure)
- 음란물 우송
- 배회(vagrancy, 매춘 대신)

다. 재산 범죄

- 방화
- 공갈(blackmail)
- 강도
- 신용카드 사기/사용
- 상품의 위조
- 횡령
- 갈취
- 위조
- Food Stamp 사기(fraud)
- 절도
- 경절도(Larceny(petit))
- 장물 소지, 장물의 취득
- 소매치기(shop-lifting)
- 전화기 사용시간 사기
- 유가증권 사기
- (악의적) 무단 침입
- 자동차 사기

※ 도덕률 위반이 되지 않는 재산범죄

- 무단 침입 (단순)
- 3급 강도, 강도 예비 (도구 소지)
- 악의적 손괴
- 장물의 소지(고의가 아닌)
- 남의 차 사용 (자동차 무단 사용)
- 시위
- 서비스 절도
- 무효 체크(check) 남들에게 넘기기

라. 정부에 대한 범죄

- 뇌물죄
- 위조
- 위조 운전면허 사용
- 여권신청에서 허위 진술
- 경찰관으로부터의 도주
- 범인 은닉
- 신분증 위조
- 이민법상 사기(fraud)
- 연방 공무원 사칭
- 사기를 통한 공공 서비스 절도
- 우편물 사기
- 자금 세탁
- 불법 시민권 획득
-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 Pell Grant 사기
- 위증
- Social Security 위반
- 도난 버스표 사용
- 탈세
- 요금 지불 없이 지하철 타기(turnpike jumping)
- Welfare 사기



※ 도덕률 위반이 되지 않는 대정부 범죄

- 밀입국(업)
- 대미국 범죄 공모
- 의회모독
- 경찰관에의 신분 확인시 거짓정보 제공
- 위증에 이르지 않는 거짓정보 제공
- 추방 후 재입국

마. 사기

거의 모든 형태의 사기는 도덕률 위반의 범죄가 된다. 기망을 통한 이득의 취득이 도덕의 결함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만, 위증에 이르지 않는 거짓 진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복지 지원금(welfare check) 받은 것을 위조한 경우와 같이, 그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도덕률 위반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바. 은닉

예를 들어, 자동차를 렌트 한 뒤, 분실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나라로 빼돌려 팔아먹는 행위는 도덕률 위반 범죄가 된다.

사. 중범

제9고등법원(9<sup>Th</sup> Circuit)에서는 중범(accessory after the fact)이 도덕률 위반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아. 행정범(violation of regulatory laws)

일반적으로 도덕률 위반범죄가 아니다. 밀입국, 추방 후 밀입국, 도박, 단순 음주운전은 도덕률 위반범죄가 아니나, 중 음주운전(aggravated DUI)은 도덕률 위반범죄가 된다.

자. 마약 범죄

일반적으로 단순 마약 소지는 도덕률 위반 범죄가 아니다. 반면, 판매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는 행위는 도덕률 위반 범죄가 된다.

#### 차. 흥기 관련 범죄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 흥기를 사용한 것은 도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

#### ※ 복수의 범죄(multiple criminal conviction)

복수의 범죄라 함은, 두개 이상의 범죄로서 받은 형의 합계가 5년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두개 이상의 범죄는 하나의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행동에서 있을 수 있다.

#### ※ 마약 범죄(drug related offenses)

마약(controlled substance)을 규제하는 미국 연방법, 주법 혹은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그 행위를 인정하거나 혹은 법률 위반을 공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 매춘(prostitute) 및 성도덕 범죄

매춘이라 함은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매춘에 “종사”한 것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돈”은 경제적 이익 혹은 기타 물질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우연한 성관계 혹은 일시적인 행위는 매춘에 해당되지 않는다. 매춘이 불법이 아닌 나라에서의 매춘이라 하더라도 이민법상 매춘에 해당되어 신분조정 자격이 제한된다. 단, 신분조정 신청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행위가 그 대상이 된다.

#### ※ 면책(immunity) 주장

범죄의 수사에 대한 협조의 대가로 “면책”(immunity)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공범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자신의 일부 범죄에 대하여 소추로부터 면제를 받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 2. 면제(waiver) 주장의 방법

범죄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는 경로는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매춘 및 성도덕 혹은 신분조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분조정(입국허가)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적 복지, 안전 및 보안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신분조정 신청인이 갱생(rehabilitation)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두번째가 서류미비자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신분조정 신청인이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만일 신분조정이 부여되지 않으면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 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murder) 혹은 고문(torture)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거나(그 혐의를 인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살인 혹은 고문이 미수에 그친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의 사회적 심각성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 가벼운 범죄에 대한 예외(212(a)(2)(A)(ii)(II))

도덕률 위반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범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가 발생한 것이 18세 이전에 발생하였고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범죄가 발생한지 5년이 경과한 경우, 혹은; 그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1년 혹은 그 미만이고 실제로 선고 받은 형이 징역 6월을 넘기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인한 신분조정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필요조차 없게 된다. 단, 도덕률 위반 범죄를 둘 이상 저지르면 이러한 예외가 해당이 없으며,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에 규정된 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건강을 이유로 한 신분조정 장애의 면제 (212(g))

전염병, 예방 접종, 신체적/정신적 질병, 마약 남용 등으로 인하여 신분조정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및 미혼자녀)인 경우, 이민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면 신분조정이 가능하다.

### 3. 결혼의 진정성 입증

서류미비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단지 영주권을 얻어내기 위하여 허위로 결혼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가 그렇게 곤란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결혼의 진정성 입증

##### ○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시)

미국 시민권자는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많은 증거서류를 영주권 신청(I-485)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아래는 진정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자료)의 목록이다.

- 출생 증명서(자녀가 있는 경우)
-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
- 결혼 초대장, 교회의 기록
- 공동 명의의 세금 환급 보고서
- 공동 명의의 신용카드 계좌
- 결혼 전, 결혼식에 같이 찍은 사진, 특히 결혼식 사진에는 부모 및 친척이 있는 사진이어야 설득력 있음.
- 서로간에 주고받은 편지, email, 전화통화 내역
-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 서류
- 공동 명의로 된, 주택임차, 모기지
- 같이 머무르게 된 호텔, 항공기에서의 영수증
-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 상대방을 수혜자로 한 생명보험 증서

#### ※ 인터뷰

통상의 경우, 인터뷰를 통하여 진정한 결혼임을 확인 받는 정도에 그치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영주권 인터뷰와는 별도로 특별팀(fraud unit)에 의한 면접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 경우, 시민권자와 외국인은 분리되어 똑같은 세트의 질문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둘의 답변을 비교하여 결혼의 진정성을 심판받게 된다. 이 인터뷰가 있을거라는 통보를 받게되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인터뷰시에 동반할 수 있고, 질문자체를 조절할 수는 없으나 답변을 중지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인터뷰하는 직원에 대한 이의제기(complaint)를 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다. 간혹 정상적인 부부도 이러한 면접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결혼 양 당사자간에 나이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인종이 다르다든

지, 교제기간이 짧다든지 진정성이 의심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통역을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국 직원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면 스스로 통역을 구하게 된다. 즉,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으면,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이 통역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이민국 직원이 스스로 구하도록 하고 있다.

☞ 인터뷰에서 결혼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묻는 질문(예시)

### 1. 두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

- 두사람이 처음 만난 시기와 장소는?
- 처음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나요?
- 데이트 장소로 주로 이용한 곳은?
-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였나요?
- 결혼을 결심한 것은 언제였나요?
- 결혼전에 두사람이 같이 살았나요?
- 상대방의 몸에 흉터나 문신이 있는가요? 있다면 어느 부분에 있는가요?
- 당신 배우자가 일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 두사람 중 누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시나요?
- 작년 크리스마스때 두사람이 무엇을 하였나요?
- 두 사람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간적이 있나요? 있다면 무슨 영화를 보았나요?
- 두사람이 같이 휴가를 보낸것이 언제였나요?

### 2. 결혼식에 관한 질문

- 결혼식은 언제 어디서 하였나요?
- 양가 부모님은 결혼식에 참석하셨나요?
- 두사람이 결혼반지를 교환하였나요? 결혼반지는 누가 샀는가요?
- 결혼식 피로연은 어디서 하였나요?
-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얼마나 머물렀나요?

### 3. 거주지(집)에 관한 질문

- 집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침실의 숫자, 크기, 넓이, 정원의 유무, 난방방식,

TV 숫자 등등)

- 쓰레기 내놓는 날이 무슨 요일인가요?
- 아침에 집에서 기상할때 자명종을 맞추어 놓는가요?
- 아침은 주로 뭘 먹나요?
- 집안의 카펫은 무슨 색깔인가요?
- 집에 개를 키우시는가요? 다른 애완동물이 있는가요?
- 가구는 어디서 구입하였나요?

#### 4. 자동차 등 소유 품목에 대한 확인

- 차는 무슨차를 소유하고 있나요?
- 차고는 누가 주로 사용하나요?
- 집에 케이블이나 위성수신기가 있는가요?
- 무슨 TV 프로그램을 주로 같이 보시나요?
- 집에 TV가 어느방 어느방에 있는가요?

#### 5. 침실 문화

- 배우자가 주로 침실 어느쪽에서 자는가요?
- 둘이 싸워서 따로 잔적이 있는가요?
- 아내의 마지막 월경은 언제 였는가요?
- 배우자의 잠옷 색깔은?
-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체위는?
- 잠들기 전에 미등을 켜놓고 자는가요?

#### 나. 밀입국한 서류미비자

밀입국한 불체자는 밀입국으로 인하여 입국불허사유가 생겼으며, 체류기간 초과자와 마찬가지로 3년/10년의 입국 제한을 받으므로, 밀입국 불체자는 **미국을 출국하여** 본국 영사관에서 이민국 서류와 함께 면제(waiver, I-601)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면제(I-601)는 I-485 청원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밀입국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또는 외국)에서 영사관을 통하여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K-1 비자(약혼자 비자, 통상 6개월의 기간이 부여된다)나 K-3 비자(이미 결혼한 경우)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또한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이민국에 청원(I-129F)하고, 청원이 승

인되면, 국무부 비자센터를 거쳐, 약혼자가 있는 곳의 가까운 영사관(한국)으로 서류가 보내진다. (한국소재) 영사관에서는 신체검사 및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인터뷰에서는 물론 두사람 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두사람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비자를 얻기 위한 위장 결혼으로 판정하게 되면, 비자는 발부되지 않는다. 또한 처리기간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된다. 이 기간은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하는 기간보다 짧을 수 있다.

약혼자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90일 이내에 결혼하여야 하며, 결혼 후에는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K-1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K-2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K-1과 동시 혹은 K-1비자 발부 후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밀입국으로 인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은 경우, 미국을 출국하여 B 비자나 무비자(VWP-힘들겠지만)로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 B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혼을 하고 신분조정을 할 의사를 보이게 되면, 입국 심사관은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무비자 입국도 마찬가지로 일정기간(90일 이내)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시기에 결혼을 사유로 신분조정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신분조정 인터뷰에서, 당신이 입국시 원래 의도를 숨기고 거짓말(misrepresentation)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면, 이것은 입국불허사유(inadmissibility)의 하나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면제(waiver)를 따로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로 인하여 무비자 입국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 ☞ 입국제한의 면제(waiver) 신청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3년, 1년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10년간 비자 신청이 제한 된다. 이러한 입국불허 사유(inadmissibility, 212(a)(9))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국불허사유의 면제신청에 사용되는 I-601(<http://www.uscis.gov/files/form/i-601.pdf>)을 신분조정(I-485) 신청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약 면제를 받지 못하고, 서류미비자인 내가 (귀국하여) 고국(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불러 살아야만 하거나, 내가 고국에서 혼자 계속하여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겪게 될 미국 시민권자(내가 아니라)의 극심한 곤란"을 적은 시민권자의 편지(hardship letter - 이민국 직원에 따라서는 외국인의 편지도 요구하는 곳도 있음)와 함께 편지상에 나타난 내용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 상황에 따르는 모든 보충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한

그리움, 별거로 인한 고통 등은 극심한 곤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의 예

□ 건강상의 이유

○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대하여, 한국에 출국하는 경우 전문적인 의사가 없는 경우와 같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 특히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 그러하다.

□ 재정적 이유

○ 출국하게 되면 직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

○ 집이나 가게를 파는 경우 입게 될 손실,

○ 자녀의 교육, 혹은 치료 등으로 입게 될 비용 증가(예를 들어, 자녀가 특별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비용이 한국에서 받는 경우, 그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가족 부양비 증가(예를 들어 노인을 모시고 있는데, 노인을 직접 모시지 못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등

□ 교육상 이유

○ 대학에서의 교육을 못받게 되는 것, 현재 수학하고 있는 과정을 못마치게 되는 것, 특별히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

□ 개인적 이유

○ 미국에 있는 자녀 혹은 배우자와의 분리로 인한 고통, 미국에서의 장기간 거주 및 미국사회에의 동화의 동화

※ “극심한 고통”의 입증 예)

예(<http://discuss.ilw.com/eve/forums/a/tpc/f/902603441/m/78010900141?r=10110240141>)에 나타난 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심한 곤란”을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다. 경제적, 의료적, 재정적, 종교적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도 제출하여야 한다. 단순한 이별, 그리움 등이 이러한 사유가 되지 못함은 이미 언급하였다.

시민권자에게 생길 수 있는 극심한 곤란을 설명해 놓은 것이 “곤란을 설명한 편지” (Hardship Letter)이다. 먼저 주목이 되는 것은 그 분량이다. 무려 10페이지에 걸쳐 그 사유를 설명해 놓았다. 각 사유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물론이다. 필요한 곳에는 정의(definition), 도표, 통계를 별도로 첨부하여 놓았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권자인 부인이 만약 남편을 따라 멕시코로 이주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면, 겪을 수 있는 곤란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첫번째로 내세운 사유는 임신 중독 및 멕시코내에서의 의료시설의 부족이다. 첫번째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임신 중독을 앓았고 그에 따른 양수부족 현상이 있어 제왕절개를 통하여 애를 낳을 수 밖에 없었으며, 차후 임신을 다시하게 된다면 좋은 산전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멕시코에서 힘들다는 사실, 스페인어를 거의 못하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 멕시코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통계 첨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두번째는 아이의 건강이다. 미국에서 아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이를 적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소아과 의사로부터 확인까지 받아 편지를 첨부하였다.

세번째가 아이의 탈장이다. 아이가 생후 불과 2개월만에 탈장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나중에 낳을 아이가 탈장을 경험하게 될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 탈장자체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이 멕시코에서 더욱 커지게 되는 것도 포함하였다.

네번째는 교육 문제이다. 15세의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확률이 미국에는 91%임에 반하여 멕시코에서는 불과 5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멕시코로 이주하게 된다면, 아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농사일을 거들어야 할지 모르는 현실, 남편의 고향에는 사립학교마저도 전혀 없다는 사실, 시민권자인 아들은 시민권자로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대학에 진학하여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다는 부모의 심정까지도 편지에 적고 있다. 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첨부하였음은 물론이다.

다섯번째 재정적인 어려움이다. 남편의 고향인 멕시코로 이주하게 되면 농사일외에는 일거리가 없는데, 그곳의 임금으로는 일주일에 40달러 혹은 그 이하를 벌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멕시코 사람들의 37.7%가 하루 2달러 이하로 연명하고 있다는 통계를 첨부하기도 하였다. 남편의 멕시코에서의 소득으로는 병원비는 고사하고 연명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인 상황에 부가하여, 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상환 상황까지 설명을 해 주고 있다.

여섯번째가 가족과의 유대이다. 부모가 현재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미국에서도 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멕시코로 이주하게 되면, 소득대비 항공료 등을 계산하면 부모를 다시 볼수 있을 확률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편지를 첨부하였다. 또한, 조부

모가 건강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 할아버지가 전립선 암을 진단받았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할아버지로부터의 편지도 첨부하였다)

일곱번째가 정신적 고통이다. 멕시코로 남편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이주해야 한다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이다. 먼저 스페인어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가 힘들며, 친구가 없어 고통받고, 혼자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 음식과 같은 매운 음식은 싫어한다고 한다. 또한 멕시코 물은 그대로 먹다간 설사가 나 가게에서 물을 사먹어야 한다고 실토했다. 과거의 멕시코 여행 경험, 그리고 설사가 나는 이유(Traveler's Diarrhea)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덟번째가 종교적 이유이다. 남편의 고향에는 복음 교회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교회의 목사로부터의 편지를 첨부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이별의 고통에 대하여 적고 있다. 즉, 남편 없이 살기는 힘들다는 것, 아이도 아빠 없이 살기가 힘들다는 것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 불체자 입에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가능한 경우

## 1. 근친가족

시민권자의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가장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영주권자 신분을 받을 수 있다. 서류미비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비이민자 신분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고용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분조정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만, 밀입국한 서류미비자는 그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미국을 출국하여 불법체류로 인한 신분조정 제한에 대한 면제(waiver)를 받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근친가족의 범위를 살펴 보기로 한다.

### 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현재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결혼 기간이 최소 2년을 넘고 배우자가 사망한 지 2년 이내에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근친가족으로 분류된다.

### 나.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계부모 자녀간에도 근친가족 관계가 성립한다. 다만, 계부모/자녀 관계를 성립시키는 혼인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 이상인 경우 그 부모

자녀가 18세가 되기전에 시민권자의 부모와 결혼한 배우자(계부모)도 근친가족이 된다. 생부, 생모도 근친가족이 되므로 근친가족의 혜택을 보는 부모가 둘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라. 시민권자의 입양된 자녀

16세 이전에 입양이 되었어야 하며, 입양 부모의 법적인 보호(custody)아래 최소한 2년 이상 있었어야 한다. 단, 이 경우 생부모는 자녀의 시민권 획득 등으로 인한 신분상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즉,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고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근친가족으로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입양된 자녀의 형제, 자매로 입양부모가 그 형제, 자매를 입양하는 경우, 16세가 아니라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근친가족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에도 입양되는 형제, 자매는 입양부모의 법적인 보호아래 최소 2년 이상 있었어야 한다.

## 2. 근친가족 외

이민법에서는 서류미비자 신분으로는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법 245(c)) 근친가족 외 예외적으로 서류미비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물론 이 사람들은 현재는 서류미비자 신분이지만 밀입국한 사람들은 아니다. 밀입국한 사람은 245(a)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 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외에도 일부 특정 대상자들에 대하여 신분조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가. 1978년 당시 의사

1978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미국의 한 주에서 의사면허를 받고 1978년 1월 9일 이전부터 의사 활동을 해 온 사람. 의사면허는 애초에 외국(한국)에서 받았어도 상관없다. 1978년 1월 9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료활동에 종사하고 있었어야 한다. 또한, H나 J 비이민비자를 받고 1978년 1월 9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었어야 한다.

나. 국제 기구 직원 및 그 가족

국제 기구의 배우자 혹은 자녀는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현재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신분조정을 신청할 기회가 부여된다. 국제기구라 함은 이민법 101(15)(G)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말하며 NATO가 포함된다.

자녀의 경우, 미혼이어야 하며 과거 국제기구 직원이었던 부모의 자녀로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총 3년 반 이상을 체류하였어야 한다. 또한 5세에서 21세 사이의 미국 체류기간이 7년을 넘어야 하며, 25세 이전에 신분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제기구 직원의 배우자로서 그 직원이 사망한 경우, 직원의 배우자 신분을 유지하며 미국에 최소 3년 반 이상을 체류하였어야 하며, 현재까지의 미국 체류기간의 총 합이 15년을 넘어야 한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 이후 6개월 이내에 신분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은퇴한 국제기구 직원에게도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제기구 직원의 경우, G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최소 3년 반 이상을 체류하였어야 하며, 국제기구 직원으로 은퇴하기 전 최소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 경우, 은퇴한 후 6개월 이내에 신분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도 같이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특별 청소년(별도 설명)

#### 라. 명예 제대한 군인

1978년 이후에 외국에서 (조약 혹은 협정에 따라) 미군에 입대한 사람으로, 미군에서의 복무의 총 합이 12년을 넘는 사람, 단 제대한 경우, 명예 제대를 하였어야 함

현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과거 6년 이상을 복무하고 전역하였다가 총 12년을 채우기로 하고 재입대 하여 현재 복무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동반 혹은 따라 입국하는 배우자 및 자녀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복무기관에서 이민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추천해 주어야 한다.

### 4. 재정 보증의 문제

#### 가. 재정보증의 의미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정보증을 하게 된다. 재정보증 서약서(Form I-864)를 작성함으로써 이 재정보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 약속은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40 quarters” (10년)의 일을 할 때까지 계속된다.

#### 나. 재정보증인의 자격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내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지(domicile)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가능하다.

시민권자가 재정보증할 경제적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의 소득이 미 연방 빈곤기준(poverty guideline)의 125%를 넘어야 한다. 연방 빈곤 기준은 매년 발표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2인 가족일 경우 \$14,710인데 이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년소득을 올려야 한다. 단, 시민권자가 미국의 군인이고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그 배우자인 경우, 빈곤수준의 100%의 소득으로 가능하다.

또한, 만일 소득이 12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부분은 현금 자산으로의 출원도 가능하다. 즉, 125%의 금액에서 실제 소득 금액을 뺀 부분, 즉,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금액의 3배의 현금으로 보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125%의 소득이 20,000불이고 현재 소득이 15,000불인 경우, 모자라는 5,000불에 대하여 세배를 곱한 금액 즉, 15,000불을 현금으로 출원함으로써 재정보증 요구금액을 맞출 수 있다. 현금 자산이라 함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즉시 현금으로 운용이 가능한 자산 및 현금을 말한다.

또한, 가구원중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자산 및 소득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자녀, 입양 자녀 등을 말한다. 또한, 신분조정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의 자산을 가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공동 보증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공동보증인은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사람과 친족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단, 공동보증인은 혼자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즉, 시민권자의 소득과 공동보증인의 소득을 합쳐야 간신히 요구되는 소득을 넘길 경우에는 공동 보증인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 다. 재정보증인의 책임

시민권자인 재정보증인은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미국에서 10년이상 일을 하게 될때까지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을 재정적으로 보조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만일 신분조정을 받은 배우자가 “자산 조사” 공적 부조(means-tested public benefit)를 받게 되면, 재정보증을 한 시민권자는 부조를 받은 금액만큼 그 부조를 제공한 기관에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자산 조사” 공적부조라 함은 일정한 자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의 공적부조를 말한다.

자산조사 공적부조에는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CHIP(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등이 있다. 자산조사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는 응급 메디케이드, 비현금 긴급 구조, 학교 급식법(National School and Child Nutrition Acts)에 다른 서비스 등이 있다.



### III. 가족 초청



## 1.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에 의한 서류미비 부모의 초청

### 가. 대상자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는 “근친 가족”(immediate relative,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의 경우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불법체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자녀의 초청) 근친 가족의 경우, 우선 일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초청하는 경우, 이민국에 가족 청원(I-130)을 하고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비자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에 한하며, 입국심사(lawful admission or parole)를 받지 않고 들어온 밀입국 불체자는 제외된다.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밀입국한 사람은, 3년/10년의 입국제한에 걸리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waiver)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다.

친부모 및 계부모 모두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부모를 각각 두명씩 초청할 수도 있다.

“근친가족”의 이점은 또 있다. 근친가족의 경우, 비자기간을 초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입국 불허 사유(영주권 신청 장애 사유)가 있더라도 신분을 조정할 수 있다. 물론 아래 사유 외에는 다른 입국불허 사유가 없어야 한다. 즉, 아래 사유는 근친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잘못이라는 의미이다.

- ① 노동허가 없이 일한 경우
- ② 신분 조건을 위반한 경우, 즉, 합법적인 비이민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③ 이민법 212조 혹은 217조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단 무비자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다.

### 나. 신분초과 및 밀입국 여부의 차이

체류기간 초과 불체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밀입국 불체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으며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있다.

### 다. 절차

가족 청원(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을 먼저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I-130이 승인되는 경우, 영주권(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을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미국내에 있는 경우, 이 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 먼저 I-130을 작성하여 청원하여야 한다. I-130은 각 부모에 대하여 별도로 청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I-130은 시민권자 자녀와 그 부모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원하여야 한다.

시민권자 및 부모의 이름이 나타나는 출생 증명서, 본인의 여권, (본인의) 귀화증서, 부모 결혼의 무효, 이혼, 이전 결혼의 종료에 관한 서류, 부모의 결혼 증서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 불체자 부모가 그 시민권자 자녀를 인지(legitimate)하지 않은 경우, 즉, 사생아인 경우, I-130 청원시에, 시민권자 자녀 및 부모의 이름이 나타나는 출생 증명서, 시민권자의 여권(혹은 귀화증서)에 더하여, 부모가 자녀와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부모가 송금한 기록, 편지, 사진, 학교 기록, 보험 기록 등 부모 자녀사이에 통상 있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 시민권자 자녀가 혼인외자로 출생한 후, 부모에 의한 인지를 받은 경우에 아버지를 위하여 청원하는 경우, I-130, 출생 증명서, 여권(귀화증서) 외에 시민권자가 만 18세가 되는 날 이전에 인지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민권자 자녀가 계부모를 위하여 청원하는 경우, I-130, 출생 증명서, 여권(귀화증서), 부모의 이전 결혼, 무효, 이혼 증서외에 시민권자 자녀의 출생 부모와 계부모의 혼인이 시민권자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불체자 부모의 배우자 및 자녀 (종속적인 신분); 불체자 부모가 영주권자 신분이 승인되면, 그 배우자 및 자녀도, 비자 번호가 있는 경우 즉시, 아니면 비자번호가 열릴때를 기다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혹은 자녀가 미국외에 있는 경우, I-485의 신청과 함께 I-824(승인에 대한 행동 요청)를 신청하여,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② I-485의 접수

I-485는 여기 ([Download Form I-485](#))에서 다운받아, 그 지시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식에 대한 설명은 여기([Download Instructions for Form I-485](#))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늘집 한글 번역본을 참고하여 양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 아래의 그늘집 양식 주소를 참고하기바란다.

[http://shadedcommunity.com/redirect.php?w=v&code=form&si\\_id=132&page=2&row\\_no=21](http://shadedcommunity.com/redirect.php?w=v&code=form&si_id=132&page=2&row_no=21))

신청 수수료는 985불이며 생체정보(bio) 수수료가 85불로써 수수료의 합이 1070불이다. 단,



79세 이상은 바이오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또한, 14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접수하는 경우, 수수료는 635불로 낮아진다. 다만, 부모와 같이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하면 수수료는 985불로 동일하다.

2007년 7월 30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별도로 노동허가서 신청(I-765), 여행 허가 신청(I-131)에 대하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일 I-765와 I-131을 별도로 신청한다면, 접수증(I-797C)을 동봉하여야 한다.

#### 라. 자격 요건

초청하는 시민권자는 재정보증(I-864)을 하여야 하며, 빈곤 기준 125%의 소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순히 21세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011년 1월 2일 발표된,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 (Poverty Guide Line)에 따르면,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제외하고는 초청된 가족을 합친 전체 가족수의 빈곤기준 소득의 125%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부모의 초청이 가능해 진다.

**2011 Federal Poverty Level Guidelines**  
(All states and DC except Alaska and Hawaii)

| Annual Guidelines |              |              |              |              |              |              |               |               |
|-------------------|--------------|--------------|--------------|--------------|--------------|--------------|---------------|---------------|
| Family Size       | 100%*        | 133%         | 150%         | 185%         | 200%         | 250%         | 300%          | 400%          |
| 1                 | \$ 10,890.00 | \$ 14,483.70 | \$ 16,335.00 | \$ 20,146.50 | \$ 21,780.00 | \$ 27,225.00 | \$ 32,670.00  | \$ 43,560.00  |
| 2                 | \$ 14,710.00 | \$ 19,564.30 | \$ 22,065.00 | \$ 27,213.50 | \$ 29,420.00 | \$ 36,775.00 | \$ 44,130.00  | \$ 58,840.00  |
| 3                 | \$ 18,530.00 | \$ 24,644.90 | \$ 27,795.00 | \$ 34,280.50 | \$ 37,060.00 | \$ 46,325.00 | \$ 55,590.00  | \$ 74,120.00  |
| 4                 | \$ 22,350.00 | \$ 29,725.50 | \$ 33,525.00 | \$ 41,347.50 | \$ 44,700.00 | \$ 55,875.00 | \$ 67,050.00  | \$ 89,400.00  |
| 5                 | \$ 26,170.00 | \$ 34,806.10 | \$ 39,255.00 | \$ 48,414.50 | \$ 52,340.00 | \$ 65,425.00 | \$ 78,510.00  | \$ 104,680.00 |
| 6                 | \$ 29,990.00 | \$ 39,886.70 | \$ 44,985.00 | \$ 55,481.50 | \$ 59,980.00 | \$ 74,975.00 | \$ 89,970.00  | \$ 119,960.00 |
| 7                 | \$ 33,810.00 | \$ 44,967.30 | \$ 50,715.00 | \$ 62,548.50 | \$ 67,620.00 | \$ 84,525.00 | \$ 101,430.00 | \$ 135,240.00 |
| 8                 | \$ 37,630.00 | \$ 50,047.90 | \$ 56,445.00 | \$ 69,615.50 | \$ 75,260.00 | \$ 94,075.00 | \$ 112,890.00 | \$ 150,520.00 |

\* Note: For family units of more than 8 members, add \$3,820 for each additional person.

즉, 위의 표의 경우, 만일 시민권자 현재의 가족이 3명이고, 부모를 각각 초청한다면 가족의 수는 5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5명에 대한 빈곤 기준의 125%는 32,712달러 이므로, 초청하는 시민권자는 연 32,712달러의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2. 시민권자 부모에 의한 서류미비 자녀의 초청

드문 경우이겠지만, 시민권자 부모를 둔 불체자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가 21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면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에 속하게 되어, 비자 할당 제한 없이 즉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21세 이상이거나 기혼이라면, 근친가족으로 분류되지 않아, 불법체류로 인한 신분 조정 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시민권자 부모에 의한 불체자 자녀의 초청은 자녀가 21세 미만이고 미혼인 경우, 불체자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 가. 21세 미만의 자녀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불체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 부모는 자녀를 초청할 수 있다.

### 나. 21세 이상 혹은 기혼 자녀의 경우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근친가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법 245조의 제한에 따른다. 따라서 부모가 초청하여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할 당시 불체자 자녀는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불체자인 자녀가 시민권자 부모를 통하여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부모가 불체자 자녀를 위해 이민국에 청원(I-130)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I-130과 함께 이민국에 보내면 된다. 이 청원을 승인받고, 신분조정 신청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하여야 한다. 물론 중간에 추방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현재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혹은 기혼 자녀는 가족초청 1순위로서 우선일자가 2005년 1월(21세 이상 미혼자녀), 2001년 1월(기혼자녀)로서 신분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6년 내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민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추방절차에 회부된다면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입증함으로써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받을 수는 있다. 추방의 취소로 영주권을 받게 된다.

## 3. 영주권자 가족에 의한 초청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는 “근친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분조정 당시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한다는 이민법상의 제한이 따른다. 이 제한에 따라, 영주권자의 서류미비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신분조정을 위해서는 미국을 출국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waiver)를 받고 재입국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청원(I-130) 후에 어떠한 사유로든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하고, 신분조정을 위한 우선일자가 열리게 되면,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일 영주권자의 불체자 배우자가 추방절차에 회부된다면,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받을 수도 있다. 단, 추방의 취소를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며, 미국을 출국하는 경우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 극심한 곤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추방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의 불체자 자녀도 포함된다.

## IV. 불법체류의 면제 (waiver)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을 넘겼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waiver)를 받으면 마치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어진 것과 같이 이민비자,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불법체류의 면제(waiver)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민법 212(a)(9)(B)(v) (이민비자 신청시), 212(d)(3) (비이민비자 신청시)에 각각 나타나 있다. 단, 면제(waiver, I-601)를 신청하는 것은, 밀입국으로 인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은 경우와 같이, 본국에 돌아가서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이다. 초과 기간 체류로 인한 불법체류의 경우,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별도의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없다. 미국을 출국하고 재입국을 원할 때 3년/10년의 입국제한을 받는 경우에,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면제(waiver)를 받아야 한다.

### 1. 이민비자 신청시 면제 (212(a)(9)(B)(v))

이민법 212(a)(9)(B)(v)에서는,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중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아들, 딸)인 사람은,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배우자 혹은 부모로서 두고 있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면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라고 하더라도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이민비자가 승인되지 않으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증은 위의 예시에서 나타나 바와 같이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거를 들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이민국의 “면제”(waiver)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이민법의 규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로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아들 혹은 딸인 사람이,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거절하면 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에게 극심한 곤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i)항의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한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원도 재심할 수 없다” 고 하고 있다.

면제(waiver)를 받아내기 위한 신청(I-601)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되는 규칙은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설득력 있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면제(waiver)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면제(waiver)를 전문으로 하는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밀입국(불법체류) 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면제(waiver)를 받아

야 하는 것은 아니다.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여성(212(a)(6)(A)(II)), 난민을 신청한 사람(INA 208),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INA 240A), 245(i)에 해당 되는 이민자의 경우, 밀입국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로 면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 2. 비이민비자 신청시 면제(212(d)(3))

### 가. 의의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비이민비자를 신청(비자의 변경)해 볼 수 있으나, 222(g)상의 제한이 있어,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 본국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본국에 귀국하여 212(d)(3)상의 면제를 받고, “비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야 한다. 비이민비자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 주는 F, H, L, B 등의 비자를 말한다.

212(d)(3)의 면제는 불법체류 뿐만 아니라, 이민법상의 사실상 모든 위반 사유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규정이다. 213(d)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입국 불허 사유는 나찌 박해 참가, 외교적 문제로 인한 입국 불허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뿐이다. 또한, 단순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불허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경우에도, 입국불허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8 CFR 212.2에서 212(d)(3)의 면제를 받고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5년(추방) 혹은 20년(중죄) 미국의 체류의 요구 기간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체류로 인한 3년 혹은 10년의 입국제한 기간을 모두 미국에서 (비이민자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즉, 212(d)(3)의 면제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 비자(F), 혹은 취업비자(H)로 3년/10년을 보내게 되면 이민법 212(a)(9)(B)상의 입국제한 기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 나. 판단의 기준

특별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면제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이를 심사하는 영사의 재량에 속한다.

BIA(Board of Immigration Appeal)이 밝힌 세가지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In Matter of Hranka, 16 I&N Dec. 491(BIA 1978))

- ① 해당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② 신청인의 과거 이민법, 형사법, 시행령 위반의 심각성의 정도
- ③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유

한편 FAM(9 FAM 40.301 N3)에서는 고려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해당 외국인의 입국 불허 사유의 시기 및 심각성
- ②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유
- ③ 해당 외국인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미국의 공공 이익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

다만, 이 기준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입국하여 다시 불법체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비이민비자의 신청시 “일시적” 비자의 성격 때문에 체류 후 ‘귀국’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한국에 가족이 있다든지, 생활의 근거지가 장차 한국일 될 것이라든지, 직장을 한국에서 구해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것이라든지, 일시적 체류 후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한편, 비이민 비자 신청시의 면제(waiver)는, 신청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인도적 가입국허가(humanitarian parole)에서와 같이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는 절박한(compelling)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면제 허가 기준에 관하여 FAM(Foreign Affair Manual) 40.301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법에서 이 면제가 예외적인 경우, 즉, 인도적인 문제가 있거나 국가적 이익과 관련되는 등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량의 행사 및 올바른 판단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사는 가족방문, 병원치료, 기업 회의, 여행, 기타 등을 위하여 면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면제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특별한 가족관계가 있어야 한다거나, 불법체류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거나 기타 다른 성문법상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놓고 있다. 즉, 면제를 허가 하여야 하는 상황이 “인도적인” 이유 혹은 기타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면제가 가능하며, 다른 비이민비자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귀국할 의사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다. 면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

- ① 214(b)에 근거하여 입국불허 되지 않을 것. 즉, 비이민자로 일시적인 체류가 끝나면 귀국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것은 종종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주지”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체류 후 귀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 ② 이민법 212(a)(3)(A)(i)(I), 212(a)(3)(A)(ii), 212(a)(3)(A)(iii), 212(a)(3)(C), 212(a)(3)(E)에 의한 입국 불허 사유가 없을 것

- 212(a)(3)(A)(i)(I) - 첩보, 파업을 이유로 한 입국 불허
- 212(a)(3)(A)(ii) - 국가 안보 관련 불법 행위
- 212(a)(3)(A)(iii) - 무력에 의한 미국정부의 반대, 전복 행위
- 212(a)(3)(C) - 외교정책에 악영향
- 212(a)(3)(E) - 나치 박해 참가, 인종 말살(genocide), 고문, 사법절차 우회 살인
- ③ 이민법 212(a)(7)(B) (입국 서류 미소지)를 면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닐 것 (이것은 212(d)(4)에 의해서만 면제 가능)
- ④ 신청하는 해당 비이민비자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라. 신청 절차

비자 신청시 불법체류의 면제를 동시에 신청하며, 영사가 전적인 재량으로 면제를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추천함으로써 이를 허가 한다. 단, 국토안보부 장관은 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조건은 입국 스탬프 아래에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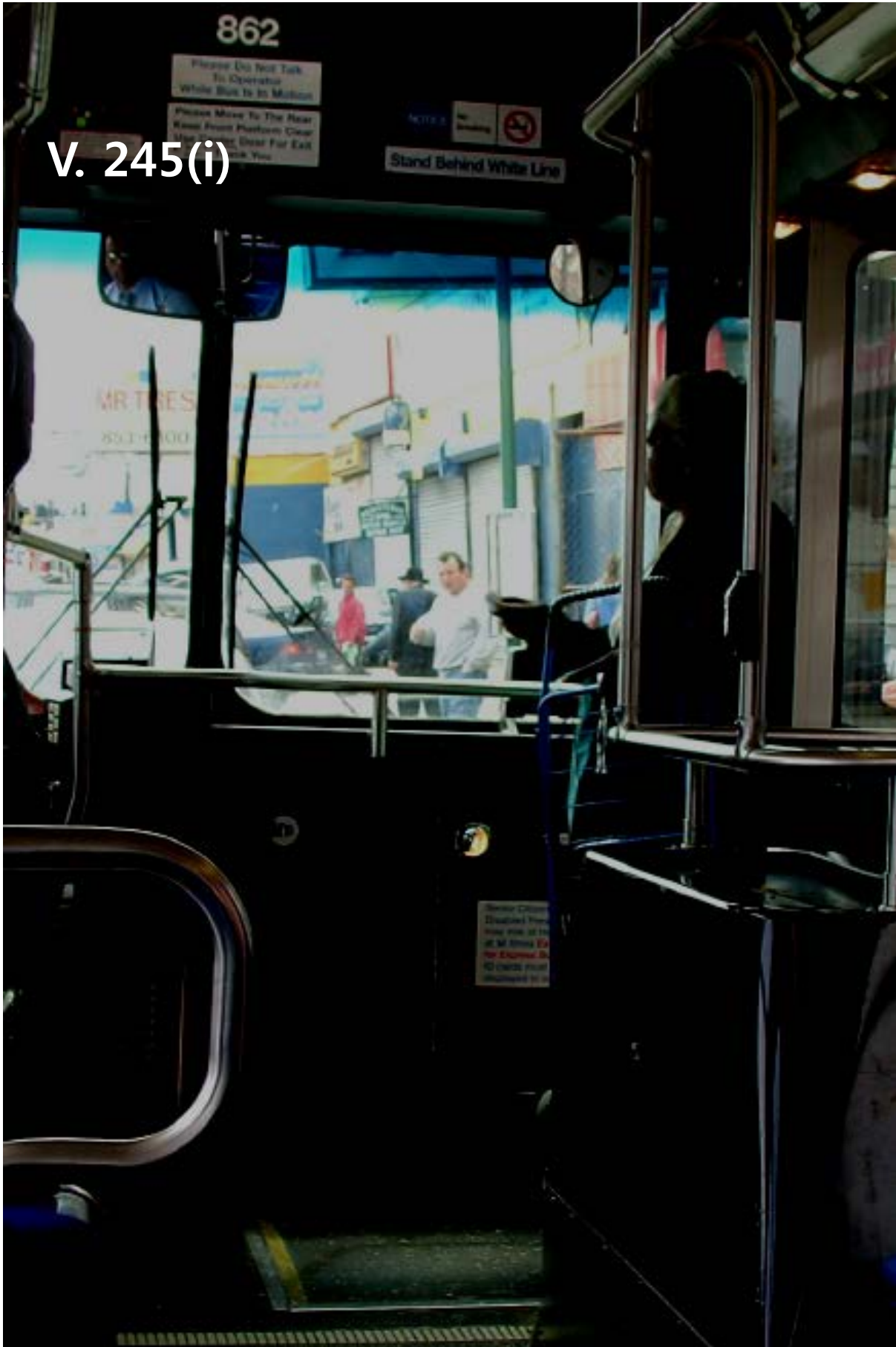
#### 마. 유효 기간

특별히 다른 표시가 없는 한, 면제(waiver)의 승인은 신청하는 해당 비이민비자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나, 1년 이상의 기간 혹은 복수의 신청에 대해 유효한 면제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표시된다. 영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복수의 비자 신청에 대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바.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영사의 결정에 대하여 국토안보부에 의한 재심(review)을 원하는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영사는 이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 영사는 자신이 면제의 승인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기하여 국토안보부에 송부할 수 있다.





V. 245(i)



## 1. 의의

245(i) 규정에 의한 혜택은 사면이 아니다. 다만, 서류 미비자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영주권)이 부여되므로 마치 불체자에 대한 사면처럼 보일 뿐이다. 245(i)의 규정이 있어, 현재 불체자 신분으로 인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사람도, 그 정한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즉, 불체자라도, 신분 조정을 위한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된다면, 보통은 불체자라는 신분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되나, 245(i) 덕분에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체자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245(i)는 다른 규정과 달리 밀입국한 불체자도 그 대상이 된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밀입국 불체자 뿐만 아니라, C(환승), D(선원), 심지어 무비자로 입국한 불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전의 이민비자 청원, 노동허가 신청 등의 전제 조건이 있어,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며, 불체자 중 극히 제한된 일부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현재의 서류미비자들을 구체해 주는 조치는 아니다.

## 2. 245(i) 혜택을 보기 위한 요건

### 가. 신분 위반

불체자 혹은 신분상의 제한으로 영주권 신청에 제한을 받고 있어야 한다. 즉, 1) 밀입국한 사람, 2) 불법으로 미국에서 노동에 종사한 사람, 3)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하지 못한 사람, 4)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 5) 항공사나 선박 등의 crewman으로 입국한 사람 6)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외국인이 Transit을 위해 잠시 미국에 머물다 그대로 비자 없이 미국에 남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 나. 이민비자 혹은 노동허가 신청(과거)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I-130, I-140, (I-360, I-526포함),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중 하나를 접수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입국하였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민비자 청원 혹은 노동허가 신청을 하였어야 한다. 게다가 1998년 1월 15일 사이에서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이민비자 청원 혹은 노동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어야 한다. (LIFE Act로 인한 개정)

이민비자 신청 및 노동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말은 최소한 이민비자 신청 및 노동허가 신청이 이민국 및 노동부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이민국이나 노동부가 “위조문서”,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청원, 신청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

경우는 물론 승인이 가능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 서류를 위조한 것은 물론 245(i) 혜택을 보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된다. 즉,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것이 밝혀지더라도 그 자격을 잃게 된다.

불체자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불체자가 되었던, 이민비자 청원 혹은 노동허가 신청 이후에 불체자가 되었던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정해진 기간내에 이민비자 청원, 노동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그 이전의 불법체류, 그 이후의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애초 기준일       | 체류 기준일                  | 신청 마감 기준일    |
|--------------|-------------------------|--------------|
| 1998년 1월 15일 | 2000년 12월 21일(LIFE Act) | 2001년 4월 30일 |

※ 2000년 12월 21일 현재 미국 체류의 증명

1998년 이후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이민비자(I-130, I-140 등) 신청 혹은 노동허가 신청에 근거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2000년 12월 21일(LIFE Act 입법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의 부담은 본인에게 있으며, 입증은 정부기관에서 발부한 문서로서 하되, 발부일이 표시되고 공증(certified)이 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기관에서 발부한 문서가 없거나 구할 수 없을 경우, 사실 기관에서 발부한 문서도 가능하나 이 경우 발급 기관의 인증(Seal)이나 서명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관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letterhead)에서 작성되는 등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개인에 의한 진술로서 체류사실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인터뷰 혹은 추가증명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 영주권 신청 사유의 존재(현재)

이민비자 청원, 노동허가 신청 서류 접수 이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한 것이든,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반드시 이미 신청하였던 그 이민비자, 노동허가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다른 영주권 신청사유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1년 3월 31일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근거로 I-130을 접수시킨 후 불체자가 되었다면, 현재 취업이민을 근거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그 결혼이 아직 유효하다면, 그 결혼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으로 인하여 현재의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기

간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취업이민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로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신분 조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열려 있어야 한다. 즉,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인한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의 우선일자는 신분조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 라. 벌금 1,000달러의 지불

1000불의 벌금은 위법한 행위, 즉,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다.

#### 마. 자격의 제한

모든 불체자가 다 245(i)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일부는 자격이 제한된다. 아래는 245(i)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 밀항자 (밀입국자와 어떻게 구분될지는 의문이지만)
- K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
- J-1의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는 사람
- 추방재판, 망명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 추방명령, 자진 출국 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사람
- 추방절차가 진행중에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의 결혼으로 신분조정을 신청한 자, 단 이 경우에도, 이민자 신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결혼인 경우 가능하다.
- 미국 입국시에 추방절차에 회부된 사람
- 비이민비자를 갖고 있는 미성년자 혹은 고아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미성년자
- S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조정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
- 미국내에서의 테러행위로 추방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

※ 주의할 것은 불법체류로 인한 3년/10년의 제한이 245(i)로 인하여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한국)에 있으면서 245(i)의 혜택을 보기 위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불법체류 후 한국에 온지 3년/10년이 넘지 않았다면, 그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245(i) 혜택을 주장하더라도 3년/10년의 입국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년/10년의 입국제한은 미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245(i)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신청하여 이를 받은 이후에는 3년/10년의 입국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주권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 3. 기득권 (“Grandfathered”) 유지의 의미

245(i)의 혜택은 이민비자, 노동허가 신청 당시 그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면, 시간이 아무리 지난 후라도 여전히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것을 두고 “기득권”(grandfathered)이라고 한다.

기득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신청 당시에는 유효하고 승인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차후의 사유로 인하여 영주권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득권”을 갖게 되어 현재의 신분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245(i)혜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단 기득권을 갖게 되었다면, 이전의 영주권 신청 사유가 아닌 다른 영주권 신청 사유로도 얼마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번 영주권 신청이 실패하더라도 \$1000의 벌금만 내면 몇 번이고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I-130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I-140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신청 당시에는 이민비자, 노동허가가 유효하고 승인이 가능한 상태

○ 가족 청원이 승인된 경우

○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면, “유효하고 승인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것은 2001년 4월 30일 이후, 노동허가가 취소, 거절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기득권)

○ 주 청원자 및 접수 당시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배우자, 자녀도 기득권을 얻게 된다.

※ 배우자, 자녀의 경우 체류 조건 없음: 주 신청자가 1998년 1월 15일 이후 2001년 4월 30일 이전의 비자신청, 노동허가 신청에 근거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은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주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등 동반 신청자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입증은 해야 할 의무가 없다.

(나) 배우자 및 자녀의 기득권 (보호되는 경우, 보호되지 않는 경우)

가족청원 혹은 노동허가가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받아들여질 당시 배우자 혹은 자녀로서 245(i)의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차후 이혼 혹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그 사유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기득권은 여전히 남아, 설령 21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별도의 영주권 신청에 근거하여 245(i) 혜택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접수 당시 배우자 및 자녀가 아니었다가 2001년 4월 30일 이후 배우자 및 자녀가 된 사람은 기득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혼, 성년 등으로 자격을 잃게 되면, 차후 245(i)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다. 결혼, 미성년 동안에만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주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 관계를 얻은 사람은, 주 신분자가 신분 조정 이전에 그 관계를 잃게 되면, 별도의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다.

#### 4. 245(i) 의 종료

일단 주 수혜자가 신분조정을 “한번” 받게 되면 본인은 물론 그 이후 관계가 생성되는 배우자, 자녀에게는 245(i) 혜택이 없다.

## 2. 서류미비자의 밀입국자 및 비자기간 초과 체류자 비교 (출처: Harvard Latino Law Review, The Taxa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s: Separate, Unequal, and Without Representation)

가. 약 40%의 서류미비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도착하여 기간 초과

나.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 중 70~85%는 밀입국

다. 멕시코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 출신 서류미비자는 대부분 멕시코를 통한 밀입국으로 불법체류하고, 유럽, 아시아, 캐나다 등 출신 서류미비자는 비자기간 체류자가 많음



## VI. 245(k)



## 1. 의의

이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신분조정(이민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이민법 245(c)에서는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장애(bar)의 하나로 불법체류 상태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불법체류 및 신분위반 상태하에서도 신분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예외적인 규정이 245(i)외에도 245(k)가 있다.

245(k)는 245(i)와 같이 이민 비자 신청 여부 등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법체류의 기간을 따져 6개월(18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를 문제삼지 않고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날짜의 계산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 2. 규정

“EB-1, EB-2, EB-3, EB-4(단, EB4의 경우 이민법 101(a)(27)(C)의 경우만)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불법체류(245(c)(2)), 불법고용((c)(7)), 신분위반 사실((c)(8))이 있더라도, 그 기간의 합이 180일을 넘기지 않았다면,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3. 해설

### 가. 해당 되는 이민비자

245(i)에서와 같이 모든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종류의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취업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인, EB-1, EB-2, EB-3가 그 주 대상이고, 4순위인 EB-4의 경우 이민법 101(a)(27)(C)(종교이민자)의 경우만으로 한정된다.

### 나. 허용되는 신분 위반 행위 및 기간의 계산

허용되는 180일의 기간은 각 (불법체류) 사유별로 18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가지 (불법체류)의 합이 18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불법체류 기간 중에 불법 고용에 종사하였다면, 불법체류 기간에도 해당되고, 불법고용 기간에도 해당되므로 이기간은 2중으로 계산된다. 즉, 불법체류 기간이 50일이 있었고, 그 중 불법 고용 행위가 40일 동안 있었다면 245(k)의 기간 계산 목적상으로 총 90일의 위반이 있었던 셈이 된다.

또한, 180일의 (불법체류) 기간을 계산하는 기점은 최종적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날짜이며, 이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180일을 계산한다. 즉, 과거에 불법체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 삼지 않으며, 245(k)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후의 (불법체류)기간만을

문제 삼는다. 그리하여, 과거 F 비자 신분으로 150일의 불법노동이 있었고 이후 출국한 후, 다시 합법적으로 H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다시 150일의 불법체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45(k)의 혜택을 주장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가입국(advance parole)을 받고 입국한 경우, “최종적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입국은 정식 “입국”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 (1)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 (out of status) 및 신분 조건 위반

비이민 비자 신분 기간의 만료(expiration), 취소(revocation), 위반(violation of status)이 있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시작된다. 비이민비자의 신분기간은 이민비자(영주권)의 신청으로 종료한다. 따라서 비이민비자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한 경우, 245(k)와 관련한 “불법체류”는 없게 된다. 과거, 영주권 신청이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경우, 불법체류는 다시 살아나기도 하였다. 즉, 이민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이민비자 기간이 종료하였으며, 이민비자가 최종적으로 거절된 경우, 비이민비자 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는 245(k)와 관련하여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되기도 하였다. (이민변호사들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민비자 신청 후, 거절되는 경우에도 모든 기간을 합법적인 체류 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것이 변경되도록 하였다. 즉, 이제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비록 신분연장(Extension of Status) 혹은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신청이 적시에 접수되지 못하여 불법체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신분연장이나 신분 변경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245(k) 목적상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물론 최종적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애초의 불법체류 시작일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계산된다. 따라서, 신분변경, 신분 연장, 혹은 신분조정 신청을 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는 245(k)와 관련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F나 J의 신분 복구(re-instatement)의 경우, 비록 불법체류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분이 복구된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245(k)의 목적상 (불법체류)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즉, 신분의 복구는 불법체류를 치유한다.

### (2) 불법적인 노동에 종사 (unauthorized employment)

불법적인 노동이라 함은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노동허가 기간을 넘겨 노동에 종사하는 것도 포함한다.

주의할 점은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노동허가가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불법적인 노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는 신분조정 신청이후에도 별도로 신청(I-765)하여 받아야 하며, 노동허가를 받지 않는 한 신분조정을 신청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불법 고용은 계속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조정 신청 이후의 불법고용



기간으로 인하여 245(k)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신청 후 심사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이다.

불법고용은 고용관계가 종료하거나, 노동허가가 나오거나, 신분 조정에 대한 결정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날까지 계속된다.

불법고용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유의할 것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은 그 일수가 계속하여 계산이 되며, 실제로 일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휴가를 받거나 주말에 쉬다고 하여 불법고용 일수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며, 파트타임으로 일하였다고 하여 불법고용 일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 ※ 다른 입국 불허 사유와 245(k)

245(k)는 전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위반, 불법고용에만 관련되는 규정으로, 다른 입국 불허 사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다른 입국 불허 사유, 예를 들어, 범죄경력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면제(waiver)를 얻어야 한다.

#### 4. 신청 및 심사 절차

245(k)의 혜택은 별도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245(k)의 혜택을 위하여 별도의 수수료나 벌금을 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신분조정을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245(k)에 대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민국 직원은 245(k)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로 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245(k) 혜택을 거부한다는 통지(notice)를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추가로 245(k)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VII. 추방의 취소



## 1. 의의

추방의 취소는 추방절차에 회부된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추방을 취소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민법 240(b))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비이민비자 소지자 심지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중 미국에 연고를 두고 추방당하는 경우, 극심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사정을 참작하여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추방의 취소는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도 그 혜택을 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서류미비자의 경우 및 가정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서류미비자 포함)으로 인한 추방의 취소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단, VAWA상의 추방의 취소의 경우, 가해자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그것은 신분관계를 이용하여 폭력을 일삼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2. 자격 요건

### 가.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 취소

(1)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 NTA)를 받기 전에, 미국에 계속하여 10년 혹은 그 이상 체류하고 있었다.

→ 출석통지서(NTA)라 함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발부되는 출석 통지서를 말한다.

→ 10년 전기간을 통하여 불법체류를 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방절차에 회부되기 직전 서류미비자 신분이 되었더라도 자격이 된다. 물론 비이민자 신분으로 추방절차에 회부된 사람도 추방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영주권자의 경우, 계속 체류 요구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

(2) 이 기간 동안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유지하여 오고 있었다;

→ “이 기간” 이라함은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한 10년을 말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역으로 계산한 10년이다.

→ 도덕적 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은 도덕적 품성을 해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도덕적 품성을 해하는 행위가 없었음을 말한다. 도덕적 품성을 해하는 범죄 및 행위는 이민법 101(f)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http://shadedcommunity.com/redirect.php?w=v&code=s\\_column&si\\_id=1802&page=1&row\\_no=39](http://shadedcommunity.com/redirect.php?w=v&code=s_column&si_id=1802&page=1&row_no=39)) 참조

(3) 이민법 212(a)(2), 237(a)(2), 237(a)(3)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 이민법 212(a)(2); 범죄로 인한 자격 제한 (입국 제한 사유)
- 237(a)(2); 범죄로 인한 추방 사유 (추방 사유) 범죄로 인한 추방사유는 광범위하여,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직접 이민법의 규정과 대조하여 보아야 한다.
- 237(a)(3); 미등록 및 서류 위조 (추방 사유) 미등록은 1972년 이전 입국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며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그 등록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4) 당신이 추방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당신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예외적이고,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가져올 것이다.

-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추방의 취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 영주권자인 배우자를 두고 있더라도, 서류미비자 입장에서는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추방의 취소는 신청해 볼 수 있게 된다.
- 부모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그 곤란을 입증하면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추방의 취소를 받아내기 위하여 극심한 곤란을 입증하는 편지의 작성요령에 관해서는 ([http://shadedcommunity.com/redirect.php?w=v&code=s\\_column&si\\_id=1612&page=2&row\\_no=36](http://shadedcommunity.com/redirect.php?w=v&code=s_column&si_id=1612&page=2&row_no=36)) 참조

- (5) 당신은 이 신청에서 우호적으로 재량이 행사될 자격이 있다.
-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우호적으로 재량이 행사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VAWA의 규정에 의한 추방 취소 (서류 미비자 포함)

(1)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당신 배우자 혹은 부모에 의하여 미국에서 폭행 혹은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하여 왔거나,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로서 그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부모의 폭행 혹은 극심한 가혹행위를 받아온 경우;

→ “극심한” 가혹행위라 함은 실제 이루어진 폭행 혹은 폭행에 대한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할 수 있는 감금(detention), 강간, 강제추행, 근친상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강요된 매춘 등을 포함한다.

가혹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의 조사 보고서, 판결문, 병원, 학교, 교회, 사회복지사(social worker)의 기록 등을 포함하여 “신빙성 있는” 증거는 모두 가능하다. 단, 폭행 및 협박은 과거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미래의 폭행 및 협박 위험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 결혼 관계는 신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결혼이

어서는 안된다. 즉, 선의(good faith)로 결혼 관계를 성립시켰어야 한다. 만일 중혼주의자(bigamist)와 결혼하였다면, 결혼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결혼식을 치루었고 상대방 배우자가 결혼 해도 된다고 믿고 있었다면, 중혼 사실에도 불구하고 VAWA 혜택을 신청하여 추방의 취소를 받을 수 있다.

→ 가해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인 경우,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 이혼한 경우에도 이혼의 최종판결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VAWA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 혹은 영주권자인 가해 배우자가 추방을 당한 경우에도, 추방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VAWA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 추방의 취소를 받은 이후에, 가해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다.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였다고 하여 VAWA에 근거한 추방의 취소가 종료하지 않는다.

→ 또한, 자녀에 대한 폭행/협박 피해에 대하여 부모가 추방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것은 자녀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한다면 한쪽 부모라도 아이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출석 통지서(NTA)를 받기 전에, 미국에 계속하여 3년 혹은 그 이상 체류하고 있었으며, 이민법 101(f)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기간동안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유지하여 오고 있었으며;

→ 가해자와 일정기간(장단은 문제되지 않는다) 함께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한다.

→ 가해자와 같이 거주한 장소가 반드시 미국일 필요는 없다. 즉, 외국(한국)에서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VAWA 혜택의 근거로 할 수 있다.

→ 다만,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나, 이민국의 허락을 받는 경우, 미국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도덕적 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은 도덕적 품성을 해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도덕적 품성을 해하는 행위가 없었음을 말한다. 도덕적 품성을 해하는 범죄 및 행위는 이민법 101(f)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http://shadedcommunity.com/redirect.php?w=v&code=s\\_column&si\\_id=1802&page=1&row\\_no=39](http://shadedcommunity.com/redirect.php?w=v&code=s_column&si_id=1802&page=1&row_no=39)) 참조

(3) 이민법 212(a)(2), 212(a)(3)에 규정된 입국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민법 237(a)(1)(G) 혹은 237(a)(2)-(4)에 따른 추방사유가 없으며, 이민법에 규정된 중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 237(a)(2); 범죄로 인한 추방 사유 (추방 사유) 범죄로 인한 추방사유는 광범위하여,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직접 이민법의 규정과 대조하여 보아야 한다.

→ 237(a)(3); 미등록 및 서류 위조 (추방 사유) 미등록은 1972년 이전 입국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며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그 등록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237(a)(1)(G): 결혼 사기(marriage fraud) - 영주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위장 결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237(a)(2): 범죄로 인한 추방 사유

→ 237(a)(3): 미등록 및 서류 위조. 미등록은 1972년 이전 입국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며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그 등록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서류 위조는 이민 혜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을 말한다.

→ 237(a)(4): 국가 안보 관련 추방 사유 - 간첩, 파업 등

(4) a. 당신이 추방되면, 당신에게, 혹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자녀인 당신의 자녀에게 극심한 곤란이 초래될 것이다;

b. 당신이 자녀로서 추방되면 당신에게 혹은 당신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이 초래될 것이다.

→ VAWA 혜택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 또한, VAWA는 가족해체를 막고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자녀”에게 극심한 곤란이 초래되는 것을 입증하여 본인을 보호하고 있으나, 부모는 그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자녀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는 본인의 어려움에 대한 보충 규정으로, 본인이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도 시민권/영주권자인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본인이 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 VAWA에서는 또한 폭력의 피해자가 된 배우자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폭력의 피해자가 된 자녀도 “본인”의 어려움 혹은 부모의 어려움을 입증하면 본인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폭력의 가해자가 시민권자/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피해자가 영주권자/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으므로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자녀는 본인을 위하여, 혹은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부모를 위하여 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5) 당신은 이 신청에서 우호적으로 재량이 행사될 자격이 있다.



→ 위의 사실을 입증하면 재량이 우호적으로 행사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군복무와 계속 체류 조건

만약 미국 군대에서 24개월 이상 복무하였다면, 위의 지속적인 미국체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군대에 입대하였을 당시 미국에 있었어야 하며 만일 제대를 하였다면, 명예로운 제대를 하였어야 한다.

※ 비자 면제 입국자와 추방의 취소;

2003년도 제3 연방 고등법원(3<sup>rd</sup> Circuit)의 판결에 의하면, 비자면제(visa waiver) 대상국 국민이 비자를 면제받고 입국한 경우, 추방의 취소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비자면제로 입국할 때, 추방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고 이미 약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비자 면제로 입국하여 10년동안 지낸 후, 추방의 취소를 받아 볼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 관례나 이민법이 앞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안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겠다.

3. 추방의 취소를 받을 자격이 안되는 사람

가. 1964년 6월 30일 이후 미국에 선원(crewman)으로 입국한 사람;

나. 이민법 101(a)(15)(J)에 규정된 교환 외국인으로, 의료 교육 혹은 훈련을 받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입국 이후 이러한 비이민(non-immigrant) 외국인이 된 경우,

→ 이민법 212(e)상의 2년 귀국 의무를 충족시켰거나 면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이 없음

다. 의료교육 혹은 훈련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 이민법 101(a)(15)(J)에 규정된 교환 외국인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입국 이후 이러한 비이민 외국인이 된 경우

→ 단, 이민법 212(e)상의 2년 귀국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였거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라. 이민법 212(a)(3)에 따라 입국 불허 사유가 있거나 이민법 237(a)(4)에 따라 추방사유가 있는 경우

→ 212(a)(3): 국가안보, 테러,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입국 불허

→ 237(a)(4): 국가안보, 테러, 외교적인 문제, 종교 활동의 침해, 아동을 군인으로 징집한 이유 등으로 인한 추방 사유

마. 개인의 인종, 종교, 국적, 사회단체에의 가입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지시, 선동, 원조, 혹은 기타 형태로 참여한 사람,

바. 이전에 이민법 212(c) 혹은 244(a)에 의하여 구조를 받은 사람,

→ 212(c): 1996년 이민개혁법 시행 이전에는, 이민법 212(c)에 의한 구제는 비록 범죄로 인하여 추방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최소 7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였고, 이중 5



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있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5년이상 복무하는 것이 아닌 경우, 추방으로부터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은 1996년 이민개혁법(IIRIRA)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 244(a): 일시적 보호자 신분(TPS): 특정 국가 국민 혹은 그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진, 내전 등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 4. 추방의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

##### 가. 이민법원에의 신청

EOIR-42B를 작성하여 추방절차가 계류된 이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수수료, 바리오 인적사항 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EOIR-42B에 나타난 질문에 답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 ICE 법무담당관에게의 송부

또한 신청서 한부를(사본) ICE 법무담당관(Assistance Chief Council of DHS,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제출하여야 한다. ICE 법무 담당관의 주소는 EOIR-42B 신청서에 나타나 있다.

#### 입증 서류

##### 1. 미국 계속 체류 기록

은행 기록, 임대차 계약, 부동산 계약, 자격증(허가서), 영수증, 편지, 출생기록, 교회기록, 학교 기록, 고용 기록, 세금납부 기록.

##### 2. 추방의 취소를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미국에서의 계속적인 체류 기간동안 좋은 품성을 유지하고, 해오고 있다는 것 입증 서류

체류 기간동안 당신이 살고 있던 모든 지역의 경찰 기록, 당신의 좋은 품성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미국 시민권자가 좋다, 당신이 고용되어 있는 경우, 고용주로부터)으로부터 진술서(affidavits of witness, 고용주로부터의 진술서에는 당신 고용과 관련하여 그 성격, 기간 그리고 소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3. 인적관계 입증 서류

당신이 추방되면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당신이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줄 공식적인 서류를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그 시민권 혹은 영주권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출생기록, 결혼 증명서, 이혼 증명서 혹은 사망증명서 등이 있다.

그리고 신청서와 함께 국토안보부(이민국)가 당신에게 발부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민판사는 당신의 추방의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의 예로는, 세금 납부 관련 서류, 법원 판결문, 체류 기간동안의 자녀의 양육비 지불 기록 등이 있다. 모든 보충서류의 원본이 검토를 위하여 법정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본을 돌려받기 원한다면,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서류미비자의 주별 거주 비율 (출처: Harvard Latino Law Review, The Taxa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s: Separate, Unequal, and Without Representation)

- 가. 캘리포니아 (24%)
- 나. 텍사스 (14%)
- 다. 플로리다 (9%)
- 라. 뉴욕 (7%)
- 마. 아리조나 (5%)
- 바. 일리노이 (4%)

## VIII. 추방의 연기



## 1. 의의

추방의 연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중이거나 추방절차에 회부된 자 혹은 추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추방을 연기시켜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합법적인 신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추방이 연기된 기간 동안에는 고용에 종사할 수 있고,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추방의 연기는 행정적인 조치로 이민국 지역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추천으로 지역 이민국장(Regional Director)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추방의 연기는 이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민자들을 일시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추방의 연기(deferred action)이다. 불체자도 받을 수 있는 U 비자의 경우, 승인되는 경우 일단은 “추방의 연기”가 부여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시민권자가 결혼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이민국 내부 절차(memo)를 통하여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추방의 연기가 부여된다.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특히 추방의 연기가 많이 부여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환자에게, 즉, 의료적인 이유로 많이 발부되고 있었다.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은, 동정적인 학생에 대하여 추방을 하게 된다면 이민국에 대하여 나쁜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DHS)은 공식적인 지침에서도 여론의 관심을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추방을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추방의 연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최근 논란이 된 이민국 메모에서는 추방의 연기를 드림법안의 수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실시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혀, 그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다만, 대규모적인 추방의 연기는 현실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추방의 연기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관련 규정 및 판례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추방의 연기는 지역 이민국 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의 추천으로 지방 이민국장(Regional Director)이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이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추방의 연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신청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신청의 형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언제라도 추방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민 판사가 추방의 유예를 내릴 수 없으며, (Johnson v. INS, 962 F.2nd 574, 579 (7th Cir. 1992)), 추방의 연기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119 S.Ct.936(1999)) 즉, 그 권한이 행정기관인 이민국 공무원의 전적인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심사를 배제함으로써 이민국의 전속적인 재량 사항으로 만들어 놓았다.

추방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불체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노동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노동에

중사할 수 있다. 다만,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제적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8CFR274(a)(12)(c)(14), An alien who has been granted deferred action, an act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to the government which gives some cases lower priority, if the alien establishes an economic necessity for employment)

### 3. 판단의 기준

이민국(USCIS)에서는 어떤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추방의 연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신청을 허가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내용이 없다. 또한, 신청을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Track)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는 그 통계마저 잡고 있지 않고, 지역 이민국(Regional Office)간에 자료도 공유하고 있지 않아, 허가 기준 등에서 지역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다만, 다른 신청과 관련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추방되는 경우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가족(특히 시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아래에 나타난 사유는 추방의 연기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 내용은 발표되었다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가. 추방의 가능성 정도 (추방의 가능성이 높으면 추방의 연기는 가능성이 낮아짐)

나. 동정적인 요소(예, 질병, 가족의 보호, 학업적 성취 등)의 존재

다. 동정적인 요소로 인하여, 대중매체에 의한, 추방을 반대하는 다수의 보도가 생겨날 가능성

(따라서 여론의 동정을 얻어내거나 얻어낼 가능성이 높으면 추방의 연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 사건의 조사 혹은 수사로 인하여 경찰이 해당인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마. 그 사람이 추방의 우선 대상자 그룹(예, 테러리스트 단체 회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4. 신청의 시기 및 형식

신청의 시기 및 형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규정은 없다. 불체자의 경우, 추방 절차에 놓여지게 되면 언제든지 신청해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른 구체 절차가 실패하여 추방의 위기에 놓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서면의 형식으로, 추방의 연기를 요구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형식이면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추방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민 집행국(ICE)

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신청이 없더라도 이민집행국(ICE)에서 일방적으로 추방의 연기를 부여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 5. 기간 및 기간의 연장, 합법적 신분의 회복

추방의 연기를 부여하는 기간 역시 이민집행국(ICE)의 재량에 속한다. 대학생의 경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졸업시기까지 혹은 1년,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이 부여되기도 한다. 추방의 연기를 받은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추방이 연기된 기간 및 그 연장 기간 동안에는 신분 조정 등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추방이 연기된 기간 동안의 신분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 다만 추방이 연기되고 있을 뿐이다. 즉, 이 기간 동안 서류미비자는 여전히 불체자인 것이다. 따라서,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언제라도 별도의 추방사유가 생긴다면 추방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연기 기간이 끝나면 다시 추방의 절차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추방이 연기된 기간 동안은 이민법상의 3년/10년 입국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 계산을 위한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 IX. 망명 및 추방의 중지





## 1. 의의

망명/난민(asylum/refugee)의 신청과 추방의 중지(withholding of removal)는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비슷한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망명(asylum)은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난민(refugee)은 미국외에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망명은 과거에 자국에서의 박해를 겪었거나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가될 수 있다.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혹은 특정 사회단체에의 가입을 이유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국”이라 함은 국적국 혹은 거주국을 말한다.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신분의 구제를 받게 되어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망명은 신분의 합법 여부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으며, 망명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원래의 신분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추방의 중지는 추방절차(추방, 입국거절)에 회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절차로,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단체에의 가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상당한 가능성(more likely than not)이 있는 경우, 그 나라로의 추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적인 보호에 그치며 영구적으로 신분을 구제해 주는 조치가 아니다.

## 2. 망명 및 추방의 중지의 혜택

### 가. 망명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물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합법적인 체류에 따른 노동허가 및 해외로의 여행이 가능해진다. 단, 해외 여행의 경우, 자신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한 나라로의 여행은 난민 신분을 잃게 만들 수 있다. 보호받기를 포기한 나라로의 여행은 그 나라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허가의 신청(I-765)은 망명 신청(I-589) 후 150일이 지난 후 할 수 있다.

또한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망명 신청의 경우는 물론 영주권 신청시에도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신청자와 함께 망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망명자(asylee) 신분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박해의 위험”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 나. 추방의 중지

추방의 중지는 글자 그대로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며, 별도의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추방을 시키기에 안전한 나라가 있다면, 박해의 위험이 있는 나라 대신에 그 안전한 나라로 추방을 시킬 수 있다. 또한, 망명의 승인과는 달리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아무런 보호가 동반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으로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노동허가

를 받을 수 있다.

### 3. 자격 요건 (Eligibility)

#### 가. 망명

(1) 거증 책임 - 이민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거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신청인의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있는 경우, 다른 보강 증거 없이 입증책임을 충족할 수 있다. 이민법 235(b)(1)(B) (입국 심사 당시의 난민 인터뷰)의 규정에 따라 박해의 위험을 입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차 난민 신청을 위한 박해의 위험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박해” - 박해에 대한 입증은 과거에 경험한 박해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박해에 대한 위험을 입증함으로써 가능하다.

#### (가) 과거의 박해

자신의 국적국 혹은 거주국에서 과거에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에의 가입을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박해로 인하여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의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의 박해를 입증한 경우, 미래의 박해에 대한 우려는 추정된다. 단, 우월한 증거 (preponderance of evidence)로서 해당 국가의 상황이 달라져 해당 국가로 돌아가더라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거의 박해를 입증하였으나 미래의 박해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망명 신청은 거절된다.

#### (나) 미래의 박해

미래에 대한 박해의 우려는 두가지 단계를 통하여 입증될 수 있다. 첫번째는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에의 가입을 이유로 받는 일정한 형태의 관행이 있으며, 두번째는 신청인이 그 그룹에 속하므로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 (3) 거절 사유 (강제적 거절 사유)

(가) 안전한 제 3 국 -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신청인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제 3국이 있는 경우, 단 제3국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하여 신청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3국에

서 망명 혹은 그와 유사한 일시적 보호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자 없는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나) 시간적 제한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망명 신청은 신청인이 미국에 도착한지 1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자 없는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다) 망명의 재신청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망명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사람은 다시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

☞ 특별한 사정 - 망명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혹은 1년안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없게 만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라) 박해에의 참가 - 망명 신청인 자신이 박해를 명령, 유도, 지원 기타 형태로 참가한 경우에는 망명이 허가되지 않는다. 박해라 함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에의 가입,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타인을 박해한 것을 의미한다.

(마) 중범죄 경력 - 미국에 도착하기 전 법원의 최종판결로 특별히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단, 정치적 범죄로 인한 최종판결은 제외된다.

(바) 미국 안보에 위협, 테러활동 -

(사) 제3국에서의 정착 - 미국에 도착하기전 이미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사람

단, 위의 사유로 망명이 거절되는 사람이라도 이민법 241(b)(3)의 규정에 따라 추방의 중지(withholding of removal)를 받을 수는 있다.

☞ 재량적 거절 사유

망명의 경우, 다른 요건이 전부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민국의 재량으로 그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즉, 미국에 입국하면서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였다거나 미국에 입국하기전 다른 국가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 등은 망명을 임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다만, 추방의 중지의 경우,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추방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즉, 재량적 기각을 할 수 없다.

## 나. 추방의 중지(241(b)(3))

### (1) 생명 혹은 자유의 위협

신청인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단체에의 가입,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해당 국가로 추방되는 경우, 자신의 생명 혹은 자유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2) 입증

입증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입증의 정도는 상당한 것(more likely than not)이어야 한다. 과거의 박해를 입증한 경우, 미래의 박해에 대한 우려는 추정된다. 단,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로서 해당 국가의 상황이 달라져 해당 국가로 돌아가더라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민국 직원이나 이민판사는 신청인이 첫번째,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단체에의 가입을 이유로 받는 일정한 형태의 관행이 있으며, 두번째, 신청인이 그 그룹에 속하므로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신청인 개인이 박해를 받을 것을 별도로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4. 신청절차

### 가. 절차

망명 및 추방의 중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I-589(망명 혹은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망명의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미국에 있다면, 그 이름을 올려 망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추방의 중지는 가족에게 그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망명의 경우, 미국에 입국한지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미국입국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은 신분의 합법, 불법을 불문하고 추방절차에 회부되기 전 언제라도 가능하며, 추방절차에 회부된 이후에도 난민을 신청할 수 있다. 추방절차에 회부되기 이전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USCIS Service Center)에 접수할 수 있으며, 추방절차에 회부된 이후에는 그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할 수 있다.

### 나. 신청의 효과

I-589를 접수하면 망명 신청과 추방의 중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셈이다. 만일 망명 신청이 기각되면 그 신청서는 추방의 중지의 신청서로 간주된다.

망명 신청 후, 150일이 지나면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으로의 여행은 가능하지만 주의하여야 한다. 자신을 박해한다고 주장한 나라로 여행하는 경우, 난민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Barak Obama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부터 이민개혁을 주장하였고, 취임 1년안에 이민개혁을 이룩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계속하여 이민개혁을 하겠다는 언질을 주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로만 그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민개혁을 대통령 선거의 이슈로 이용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도 보수층을 크게 자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개혁의 부재에 대해서는 항상 공화당을 탓하고 있다. 한편, 드림법안의 실패를 2010년의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며 여운을 남겼다.

# X. U 바자



## 1. 의의

사실 불체자로 살다보면 범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도 경찰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혹시라도 이민국에 통보되어 추방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실제로 아직도 많은 불체자들이 범죄를 당하고도,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아는 의원들이 입법을 통하여, 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사에 협조한다는 조건하에,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해 주고 있다. 체류신분으로 인하여 신고를 꺼려하는 서류미비자들의 범죄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체자도 범죄의 피해를 신고하고, 범죄의 피해자로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U 비자이다. 2000년 이제도가 만들어졌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이후부터 이제도는 시행되고 있다. 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1년에 10,000명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 2. 자격 요건

가. 아래에 나열된 범죄 중 하나의 피해자 이어야 한다.

1. 강간
2. 고문
3. 인신매매
4. 근친 상간
5. 가정폭력
6. 성적 폭행
7. 강제 추행
8. 매춘
9. 성적 학대
10. 여성 성기 훼손
11. 인질범죄
12. 노예
13. 비자발적 노동
14. 노예 매매
15. 유아 납치
16. 납치
17. 불법 구금(restraint)
18. 불법 감금(imprisonment)



19. 공갈
29. 갈취
21. 2급 살인
22. 1급 살인
23. 중 폭행
24. 증인방해
25. 사법방해
26. 위증
27. 위 범죄의 미수, 공모, 사주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증거는 공판정 기록, 법원 서류, 경찰 조서 (police report), 뉴스 기사, 진술서, 보호명령 (order of protection)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substantial) 정신적 혹은 신체적 곤란(학대, abuse)을 겪었어야 한다. 이것은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진술서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상을 찍은 사진, 범죄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증인, 지인, 가족에 의한 진술서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

다. 당신이 피해자가 된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신이 그 범죄행위의 수사 및 소추를 도울 수 있는, 해당 범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범죄를 수사, 소추하는 연방, 주, 지방 정부로부터 당신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그 범죄의 수사 및 소추에 협력하였거나, 현재 협력하고 있거나 앞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인증(확인서, I-918B)을 받아야 한다.

마. 당신이 피해자가 된 그 범죄가 미국법을 위반하였거나, 미국에서 발생하였거나(인디안 지역 및 군부대 포함) 혹은 미국령에서 발생하였어야 한다. I-918 보충서 B를 사용하여 이 자격요건을 입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청원에 이민국이 고려하길 원하는 다른 증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예로는, 범죄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 규정의 사본 혹은 해당 범죄 리스트에 포함된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범죄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다. 만일 범죄가 미국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미국밖에서의 관할을 인정하는 규정의 사본 그리고 그 범죄행위가 미국 연방법을 위반하였고, 연방법원에서 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진술서

이민국에 I-918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로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당신이 피해자가 된 그 범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범죄의 성격, 그 범죄가 발생한 시기,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 범죄와 관련된 사건, 범죄가 수사 혹은 소추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의 피해자가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적시하여야 한다.

3. 신청 요령

I-918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여, 요구되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단,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불허 사유가 면제될 수 있도록 이의 면제(waiver) 신청서(I-192)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즉, 이민법 212(d)(3)에 따르는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U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비이민비자 신청시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는 서류(I-192)를 제출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입국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면제도 동시에 신청하게 된다.

이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재의 외국에서의 고용에 관한 정보, 과거의 미국에서의 고용,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 과거 및 현재의 미국/한국에서의 투자, 현재 한국 주소의 포기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구제의 범위

U비자는 피해자인 당신이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구제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아래에 나타나 있다.

가. 당신이 21세 이상인 경우,

- 당신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서 신청가능

나. 당신이 21세 미만인 경우,

-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자매 (가족초청보다 범위가 넓음)

5.U 비자의 성격

비이민 비자로서 최고 4년까지 미국에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U 비자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 XI. S 비자



## 1. 의의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S 비자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이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 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S 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예초 1993년 World Trade Center에 대한 테러로 만들어진 특별법이 2001년 9/11 사태로 인하여 영구적인 법이 되었다. 다만 일반 범죄 조직에 대한 제보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연간 한도가 20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연간 한도는 50명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S 비자의 신청은 주 혹은 연방 경찰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 2. 자격 요건

### 가. 범죄 조직 정보제공 (S-5비자)

범죄조직(criminal organization or enterprise)에 관한 중요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주 혹은 연방 경찰기관 혹은 법원에 제공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또한, 제보자의 미국에서의 체류가 범죄조직원에 대한 수사 혹은 소추에 꼭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여야 한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S-5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년에 200명으로 한정된다.

### 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 (S-6 비자)

테러리스트 조직의 구성, 활동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연방 경찰기관 혹은 연방 법원에 제공한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제보자가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변상의 위험을 느끼거나 앞으로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고보상법(Basic Authorities Act of 1956)에 따라 현금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한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S-6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연 50명으로 제한된다.

### 다. 제보자 가족 (S-7)

제보자의 배우자, 기혼 혹은 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제보자와 함께 S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신분 조정

#### 가. 자격 요건

S-5 비자를 받은 제보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제보자가 약속한 대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정보가 범죄수사가 성공하는데 “상당하게” 기여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해당 제보자의 신분을 조정할 수 있다.

S-6 비자를 받은 제보자 및 그 가족의 경우, 제보자의 정보 제공이 미국에 대한 테러를 미리 막거나 테러가 실패하도록 하는데 “상당하게” 기여하였거나, 테러활동에 연루된 사람에 대하여 조사 혹은 소추를 성공함에 있어 “상당하게” 기여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하여 신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테러리스트 제보자의 경우, 신고보상법(Basic Authorities Act of 1956)에 따라 보상을 받았어야 한다.

#### ☞ 신고 보상법의 내용

국무부 장관은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 (1) 국가를 막론하고 미국인 혹은 미국의 재산에 대하여 테러를 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 혹은 처벌(conviction) 하는데 필요한 정보
- (2) 국가를 막론하고 미국인 혹은 미국의 재산에 대하여 테러를 가하는 행위를 공모 혹은 시도하는 사람을 체포 혹은 처벌(conviction) 하는데 필요한 정보
- (3) 국가를 막론하고 위 (1), (2)의 행위를 원조(aiding), 사주(abetting)한 사람을 체포 혹은 처벌하는데 필요한 정보
- (4) 테러 조직을 전체적 혹은 상당부분 와해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위 (1), (2)의 행위를 예방, 좌절,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
- (5) 테러 조직의 지도자를 확인하거나 찾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

#### ☞ 보상 금액

보상금액은 5백만불을 넘을 수 없으며, 10만불이 넘는 보상의 경우 국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절차 등

국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상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비밀에 부칠 수 있다.

## ☞ 보상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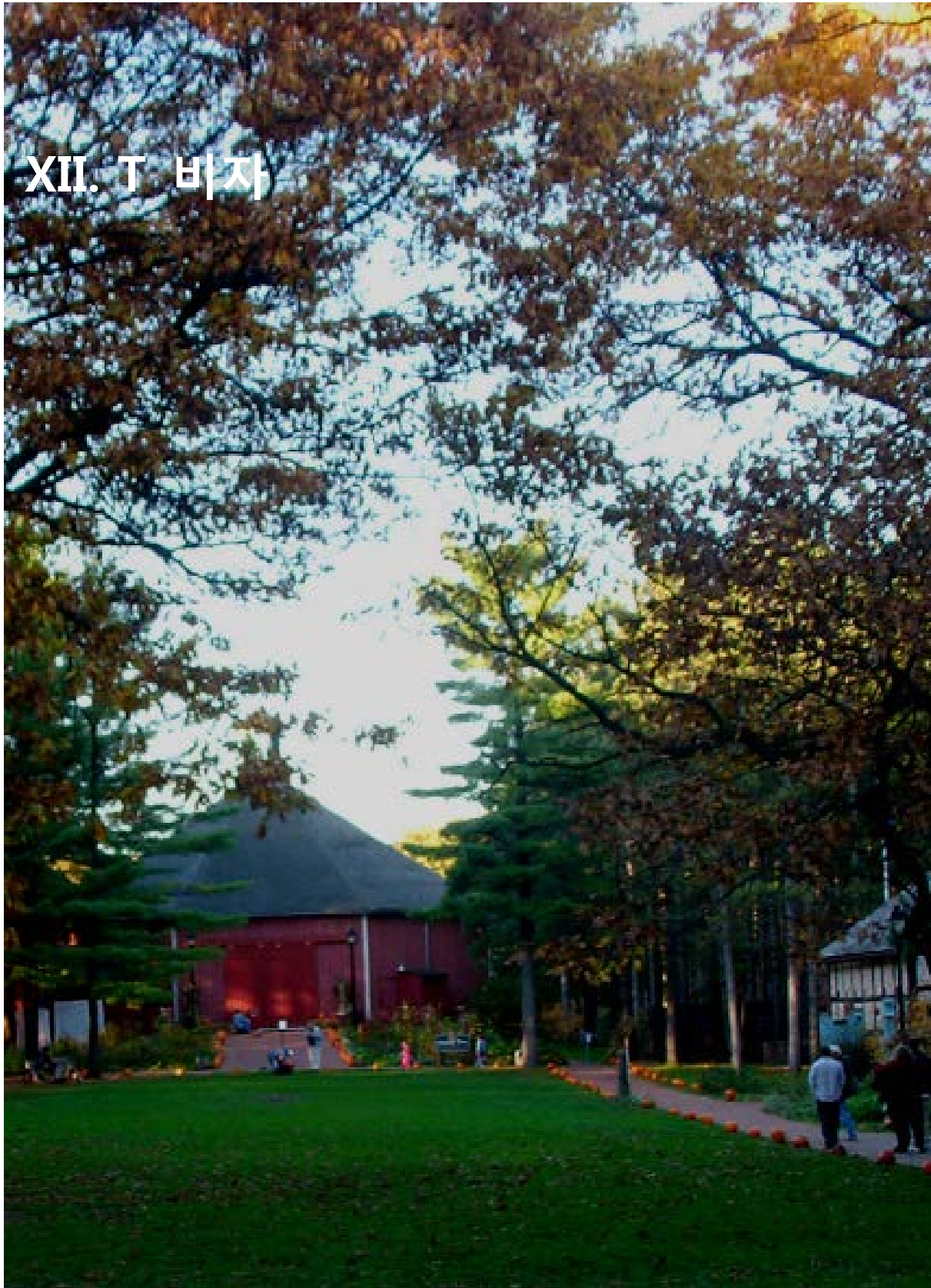
미국 정부, 혹은 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수행 중 제공하는 정보는 본 법에 따르는 보상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 나. 신분조정의 신청 절차

S 비이민자를 대신하여 애초에 S 비자를 요청한, 주 혹은 연방 경찰기관에서 I-854 (<http://www.uscis.gov/files/form/i-854.pdf>)를 접수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법무부의 범죄국장(Assistant Attorney General, Criminal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및 국토안보부 이민집행부국장(Assistant Secretary of IC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신분조정을 하는 S 비이민자는 국가별 인원 한도에서 1명을 축소시킨다.

### 4.S 비이민자 신분의 유지

S-5 및 S-6 비자 소지자는 분기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소재를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추방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중죄(felony)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그 신분을 잃을 수 있다. 또한, S 비이민자는 추방의 중지(withholding of removal)를 제외하고, 추방에 대하여 다룰 수 있는 권리를 포기(waive)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비이민비자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XII. T 바자



## 1. 의의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 T-비자를 만들었다. 다만,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다. T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애초의 T 비자를 받을 때, 면제신청(I-192)을 통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T 비자를 받을 수 있다. T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연간 한도는 5,000명으로 정해져 있다. (가족 숫자를 뺀 인원) 5,000명을 넘게 되면 대기자로 올라가게 되고, 다음 회계연도에 비자가 사용가능해지게 되면 그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2. 자격 요건

### 가.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T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인신매매는 제한적이다. 특별히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만이 T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는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첫번째가 상업적인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18세 미만의 사람들이다. 여자가 일반적인 경우이겠지만, 남자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즉,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인신매매하여, 폭력, 기만, 강요로써 상업적인 성행위에 종사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두번째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폭력, 기만, 강요를 통하여 강제노역, 노예, 채무탕감을 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강제노역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다. 강제노역을 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 원조, 수송, 제공, 획득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신매매(trafficking)와 밀입국(smuggling)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와 밀입국이라는 용어가 때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T 비자와 관련해서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밀입국은 입국심사 없이 국경을 넘는 행위를 말하는 반면, 인신매매는 강제로 노동,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애초 밀입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다. 밀입국한 이후에 폭행, 기만, 강요로써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반대로 밀입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후 폭행, 기만, 강요된 행위가 없는 경우 인신매매는 없는 것이다. 또한, 애초 밀입국이 아니라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이라도, 인신매매 주선자가 비자를 준비해 준 경우 혹은 피해자 스스로 비자를 만들어 입국한 사람의 경우에도,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물론 밀입국한 사람이 강제로 노동 혹은 성적인 착취

를 당하는 경우,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다.

또한, 폭행(physical force), 기만(fraud), 강요(coercion)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폭행은 실제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만은 상대방을 속여 피해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강요라 함은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 등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폭행, 기만의 경우 그 증거를 획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폭행(force)의 경우, 그 피해가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기만은 행위와 결과가 인과적으로 나타나므로 정확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하다.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강요”에 의한 인신매매의 경우인데, 강요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겠다는거나 인신을 구속하여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
- ②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신체적인 해를 당하거나 인신을 구속당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상황
- ③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협박 및 실제로 법적인 조치를 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 나. 미국에의 물리적 체류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현재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는 경우, 최근까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었던 경우, 오래 전 과거에 인신매매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인신매매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인신매매의 충격(trauma),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여행 허가서가 없어 출국할 수 없었던 것이 인신매매와 관련된다면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한, 만일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 없이 인신매매로부터 탈출하였고 탈출 후 경찰에 접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 그 기간동안 출국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다. 수사, 소추에의 협조(18세 이상의 경우)

인신매매를 수사, 소추함에 있어 “상당한”(reasonable)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이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였다는 확인서(endorsement)를 발부해 줄 수 있다. 단, 이 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확인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진술서(affidavit) 및 다른 증인의 진술로서 경찰의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면 T 비자는 여전히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의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과의 연락을 취한 모든 내용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당한”의 의미는 경찰의 요청 중, 자신의 신변을 위협받는 등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다. 상당한지 여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즉, 상당하지 않은 요구에 대하여 협조를 하지 않고도 T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록 하여, 본인의 이익과 법집행 기관의 이익을 절충하고 있다.

2005년 VAWA(Violence Against Woman Act)에서는 또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경찰에 협력하기 어려운 경우,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도록 하였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trauma)에 대한 입증은 부상을 입은 신체 부위의 사진, 의료기록, 경찰의 조사 보고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피해자의 경우 경찰의 상당한 협조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T 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나이는, 학교 기록, 여권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라. 추방 당하는 경우, 극심한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것 입증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극심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순한 경제적 불이익, 기회비용의 상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한 요인이 극심한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될 수 없으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곤란을 겪게 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 ①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그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
- ② 인신 매매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 ③ 미국 법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문제, 즉, 인신매매 가해자의 처벌,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의 회복 등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
- ④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자국 법, 관습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우려
- ⑤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가해자 및 그 하수인 등이 본인을 해칠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 3.T 비자 신청의 접수

가. 신청서의 접수

T 비자는 I-914를 작성하여 현 거주지에 상관 없이 Vermont Service Center로 보내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없으나, 지문 채취 수수료는 내어야 하며(면제 가능),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I-192)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을 위하여 T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가족에 대하여 별도의 I-914 A 보충서(Supplement A)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의 협조 확인서는 B 보충서(Supplement B)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Vermont Service Center의 주소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Vermont Service Center  
75 Lower Welden St.  
Saint Albans, Vermont 05749-0001 이다.

신청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보내어야 하며, 신청서는 전체를 한부씩 복사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노동허가서(I-765)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T 비자가 승인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노동허가가 발부되기 때문이다.

#### 나. 가족을 위한 신청

T 비자를 신청할 때 가족은 동시에 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T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피해자가 21세 미만인 경우)는 I-914 보충서 A(Supplement A)를 작성하여 T 비자 신청서와 함께 보내면 된다. 보충서 A는 각 가족 구성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이 미국에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가족은 또한 노동허가서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I-765를 별도로 각 가족별로 작성하여 사진, 수수료 등과 함께 보내야 한다. 단, 가족이라 하더라도 인신매매의 가해자인 경우, 그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 4.T 비자의 혜택

#### 가. 비자의 유효기간 및 영주권 신청

T 비자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T 비자를 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나 소추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T 비자 소유자는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T 비자 기간동안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었어야 하며, (혹은 수사, 소추 기간동안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 이 기간동안 훌륭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훌륭한 도덕적 품성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한 것을 의미한다.

#### 나. T 비자의 혜택

인신매매의 피해자로서 T 비자를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주어진다. 즉, 망명을 승인

받은 난민(refugee)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T 비자 신청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ORR(Office of Refugee and Resettlement)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확인서(certification letter)를 발부하며, 이 확인서가 있으면 연방, 주 정부의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다. T 비자를 받은 사람은, 현금 지원은 물론 푸드 스탬프 등을 6개월에서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정부로부터 의료보험(Medicaid)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 및 어학교육(ESL)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4. 서류미비자의 인구 구성 비율 및 인구 (출처: Harvard Latino Law Review, The Taxa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s: Separate, Unequal, and Without Representation)

가. 성인 남자 (48%)

나. 성인 여자 (38%)

다. 자녀 (14%)

라. 서류미비자 가족의 시민권 자녀 (약 310만)

바. 가구별 분류

(1) 남자 1인 가구 (36%)

(2) 여자 1인 가구 (12%)

(3) 부부 및 무자녀 (9%)

(4) 자녀가 있는 가족 중 55%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만 있음

(5) 자녀가 있는 가족 중 25%는 미국 시민권자 및 서류미비자가 섞여 있음

(6) 자녀가 있는 가족 중 20%는 서류미비자 자녀만 있음

### XIII. 특별 이민 소년





## 1. 의의

성인인 불체자의 신분도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소년들이다. 더우기 부모로부터 가혹행위, 버림을 받았거나, 부모가 방치한 아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년들에게는 이민법이 특별보호장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특별 이민 소년(special immigrant juvenile, SIJ) 청원이다. 이들은 불체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신분으로 즉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중에서 법원이 요부양자(dependent)로 선언하였거나, 정부기관의 양육 시설(foster care)에 수용된 사람으로, 자신/부모의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이 청소년의 이익에 좋지 않다는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별 이민소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2. 자격 요건

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이때 불체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밀입국으로 인한 불체자라도 가입국허가(parole)를 받고 입국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또한 체류기간 초과로 인한 불체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면제(waiver)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다. (8 C.F.R. §245.1(a)) 뿐만 아니라 이민법 245 (h)(2)(A)에 따라, 이민법 212 (a)의 (4)(공공의 부담), (5)(A)(노동인증), (6)(A)(밀입국), (6)(C)(허위진술), (6)(D)(밀항자), (7)(A)(서류미비 입국자) 및 (9)(B)(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한 입국불허는 면제(waiver)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면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타의 입국불허 사유도 면제신청에 의하여 대부분 면제될 수 있다. 면제되지 않는 입국불허사유로는 범죄, 마약거래, 테러행위, 미국 외교에 악영향을 미친 행위, 제노사이드가 있다.

나. 21세 미만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신분조정 신청시 뿐만 아니라, 이민자 청원 결정시에도 21세 미만이어야 한다);

다. 미국 소년법원에서 법원의 요부양자(dependent)로 선언된 자 혹은 주의 법률에 따라 주의 부서 혹은 부양기관의 신병관리(custody)하에 있는 자 (법원의 요부양자라 함은, 가족중에 부양자가 있고 피부양자가 있는 것처럼, 법원의 판단으로 보아 부양을 요하는 요부양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혹은;

(단, 국토안보부(이민국)의 신병관리하에 있는 경우, 신병관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국토안보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국토안보부가 갖는다) 혹은;

학대, 방치 혹은 유기로 인하여, 소년법원에 의하여 장기간의 부양 보호(long term foster care)



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자 (이것은 가족과의 재결합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다. 물리적 불가능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불가능도 포함한다. 또한, 소년법원의 요부양자로 결정이 된 이후에 입양이나 보호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소년 청원의 목적상으로는 여전히 장기간의 부양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년법원의 요부양자(dependent) 선언을 받기 위해서는 소년 법원에 별도의 청원(petition)이 필요하다. 요부양자 선언이라 함은, 소년을 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학대, 방치, 유기 등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법원이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 법원은 경우에 따라, 친권을 박탈하고 소년을 입양시킬 수 있다.

라. 소년법원의 판단으로, 가혹행위(abuse), 유기(abandonment), 방치(neglect) 혹은 주 법에 따른 유사한 이유로, 부모의 한쪽 혹은 양쪽 부모와 결합하는 것이 소년에게 좋지 않다는 결정이 난 자;

마. 행정 혹은 사법절차에서 소년을 소년/소년의 부모 국적국가 혹은 과거의 거주지로 되돌려 보내지 않는 것이 소년에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 자 (이 결정은 원칙적으로 소년법원에서 내려야 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행정, 사법기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 국토안보부에 의한 법원의 관할인정

소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동의하여야 한다. 소년이 국토안보부(이민국)의 신병관리(custody)하에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토안보부로부터 관할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년이 국토안보부의 신병관리하에 있지 않는 경우는 특별이민 소년(SIJ)청원에 대한 심판이 그 동의에 갈음한다. 즉, 특별이민 소년 청원을 승인하는 경우, 국토안보부는 소년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 3. 제출 서류

I-360 (특별이민소년-Special Immigrant Juvenile) 청원. I-360과 함께 I-485(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I-601(입국불허사유 면제 신청, 자동으로 면제되는 사유 외에 입국불허사유가 있는 경우), I-765(노동허가 신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I-485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신분증), 봉인된 신체검사서, 사진 2장, 입국허가 서류, G-325(인적사항), 체포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처분결과의 인증된 사본, 면제 신청(I-601)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XIV. 밀입국 가입국 허가



## 1. 의의

가입국허가(Parole-“가입국”으로 명명)는 인도적인 이유 혹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미국 입국을 허가해 주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밀입국 가입국 허가”(Parole In Place, PIP)은 밀입국 한 사람들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신분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 이민법 212(a)(6)(A)(i)에 따라 밀입국한 사람들은 245(i), 가정폭력(VAWA) 피해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체자와는 달리 밀입국한 불체자는 원칙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신분조정할 자격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가 밀입국 가입국 허가(PIP)이다.

다시 말하면, “가입국 허가”(Parole)가 입국허가를 주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락하는 것이라면, “밀입국 가입국 허가”는 이미 입국해 있는 사람들 중 신분조정을 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가입국 허가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이다. 가입국 허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게 되므로 신분조정이 가능해 진다.

특히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있어 미국을 떠나서 다시 입국허가를 신청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 2. 근거

이민법 212(d)(5)(A)에서는 사안별로 “긴급한 인도적인 이유” 혹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입국희망자(applicant for admission)라도 가입국(parole)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민법 235(a)(1)에서는, 밀입국한 불체자라도 입국희망자(applicant for admission)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밀입국한 불체자에게도 인도적인 이유,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가입국(parole)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미국내에서 가입국을 허락하는 경우 이것을 밀입국 가입국(Parole In Place)이라고 한다.

## 3. PIP의 사용

이민국 “memo” 에 따르면, PIP는 최근까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최근 이민국 사무소(service processing center, SPC)에서 군인가족들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PIP의 사용을 허가해 주었다고 한다. 그 예를 보면,

가. 군인들의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인들의 안전 및 임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의 가족이 해외로 나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다. 군인의 가족들이 군인이 복무하고 있는 곳에서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 4. PIP의 활용 가능 분야

PIP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가능한 하나는 어린나이에 밀입국하여, 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출국하여 영사관에서 신분조정을 하기는 더욱 어려운 경우, 특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근친가족, 즉,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특별한 고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PIP를 부여하여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여 생활터전이 미국인 사람들의 경우, 본국 영사관에서의 수속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쉽지 않으므로, PIP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로는 별도의 신청절차나 신청양식도 없지만, 앞으로 대규모로 사용된다면 별도로 양식이 만들어지고 수수료도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현재로서는 I-131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받고 PIP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입국(Parole)을 신청하는 경우, I-131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수수료는 305달러이다.

#### 5. PIP 혜택 (Parole 의 혜택)

가. 합법적인 신분

일시적인 신분이긴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탈피하여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된다. PIP 자체에 의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초청, 취업 등을 사유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나. 노동 허가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할 수 있는 노동허가가 부여된다.

다. 여행

신분조정을 한 후, 즉, 영주권을 받으면 해외로의 여행이 가능하다.

라. 가족 초청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그 영주권에 기하여 가족초청이 가능하다.

#### 마. 시민권 신청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 6. 논란 및 예상

PIP는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신분을 조정할 기회를 부여하므로, 반이민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극단적인 “사면”에 해당한다. 비록 이것이 대규모로 사용될 수는 없을지라도 개별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비록 밀입국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밀입국자라 하더라도, 드림법안의 자격이 되는 대학생, 미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였고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등 다른 구제 대상 자격이 되지 않으나, 인도적인 이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면 미국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유로 인하여 자신의 신분을 의지대로 처리하기 곤란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PIP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 XV. 개인 구제법안(Private Bill)



## 1. 의의

개인 구제법안(private bill)이라 함은, 특정 개인(혹은 단체)에게만 적용되는 일종의 구제법률을 말한다. 일반 법률이 관할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과 달리, 개인 구제법안은 특정 개인(혹은 단체)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민자의 경우, 이러한 개인 구제법안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즉, 이민자의 경우, 이민국, 이민법원, 연방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혹은 항소, 항고를 하지 않아 더이상 구제책이 없는 경우, 이 개인 구제법안에 의지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개인 구제법안이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해 볼 수 있는 상당한 방편이기는 하나, 법안이니만큼, 어떻게 의원의 발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경우, 관할 의원이 나서서 법안을 발의해 주게 된다.

## 2. 절차

통상 법률과 마찬가지로 입법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발의자인 연방 의회 의원이 필요하다. 다만, 발의자는 규정상 (House Rule XXII) 한명이어야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경우, 공동 발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법률의 이름은 그 법률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 “For the relief of ~” 혹은 “For the benefit of ~”로 시작하게 된다. 상원, 하원에서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같은 개인 구제법안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 함께 발의되는 경우는 드물다.

법안이 발의되면,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는 법안을 이민 및 구제 소위원회(sub-committee)로 넘기게 된다. 이 소위원회가 주로 개인 구제법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는 처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소위원회에 넘어가게 되면, 발의한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고, 심판(Hearing)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심판에서는, 의회가 이전에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 선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슷한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법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킨다.

이 심판을 통과한 법안은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에 본회의의 심의에 부쳐지게 된다. (이 과정이 전원일치로 생략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토론 및 개정작업은 거치지 않으며, (단 5분규칙(5-minute rule)에 따라 토론 및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개인 구제법안에 대한 표결은 구두표결로 이루어진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어느 법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서명 과정을 거치게 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3의 표결로써 거부권을 극복할 수 있



다.

### 3. 의원의 발의를 끌어내는 방법(현실적 문제)

의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사안에 대하여 개인 구제법안을 발의해 줄 가능성이 높다. 자신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득표에 효과가 있거나, 지역 여론이 구제에 보다 무게를 두게 될 때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미비자로서 별다른 활동 없이 일방적으로 연방 의원을 설득하여 입법을 부탁하는 경우, 개인 구제법안의 발의를 받아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사회적 활동 혹은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 혹은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권자 중에서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 그 가족에 동정적인 사람들이 많을 수록 유리하다. 의원은 이러한 사람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활동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여론의 동정을 받아, 이에 동조하는 의원이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발의를 받아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 4. 발의 후의 신분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발의 후에는 사실상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즉, 상원이나 하원의 이민소위의 위원장이 국토안보부에 개인법안의 수혜자(beneficiary)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안보부의 이민집행국(ICE)은 추방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된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안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추방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법안의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된다.

개인법안의 예)

HR 3194 IH

111th CONGRESS

1st Session

H. R. 3194

For the relief of Sainey H. Fat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uly 13, 2009

Mr. WILSON of South Carolina introduced the following bill; which was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

---

A BILL

For the relief of Sainey H. Fatty.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1조. SAINey H. FATTY를 위한 영주권 신분

(a) 개관 이민법 201조의 (a), (b)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Sainey Fatty는 이민법 204조에 따라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자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b) 신분 조정- 만일 Sainey H. Fatty가 (c)에 나타난 신청 만기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면, 그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체류조건이 충족되면, 본법이 입법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민법 245조에 따라 신분조정을 받을 자격이 된다.

(c) 신청 마감일 및 수수료의 지불 - 위 (a), (b)의 규정은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의 신청이 본법이 입법된 후, 수수료와 함께, 2년이내에 접수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d) 비자 번호의 축소- Sainey Fatty에게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이 부여되는 대로, 국무부 장관은 관계 공무원에 지시하여, 금년 회계연도 혹은 다음회계 연도의, 이민법 203조에 따른 출신 국가별 총발급 가능 이민비자 혹은 202의 (e)에 따른, 출생 국가별 총 비자 발급 가능 이민비자의 수를 하나 줄이도록 한다.

(e) 가족에 대한 우선 처우의 제한 - Sainey Fatty의 출생부모, 형제 및 자매는, 그러한 관계가 있더라도, 이민법에 다른 어떠한 권리나 특권 혹은 신분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 XVI. 입양



### 1. 입양의 의의

입양은 서류미비자 자녀의 신분을 구제하는 수단은 아니다. 더욱이 자녀가 입양을 통하여 시민권을 얻는다고 하여 서류미비자인 그 출생부모가 신분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입양은 아이에게 충분한 교육 및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이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를 찾아주는 과정이며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다. 다행히 서류미비자 자녀라고 하여 입양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입양 조건이 충족된다면 입양이 가능하다. 또한 입양이 되는 경우,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신분이 구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 2. 입양의 조건

서류 미비자인 자녀를 시민권자인 입양 부모에게 입양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단, 입양 그리고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번째, 자녀가 16세 미만일 것(형제 자매가 이미 입양된 경우, 형제 자매를 따라 입양하는 형제 자매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에도 가능하다);

두번째, 법원에 의하여 입양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 입양 부모와 함께 최소 2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세번째,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한쪽 부모가 있는 경우, 양육권을 서면으로 포기했을 것. 즉, 아이가 고아(orphan)가 되어야 입양의 자격이 부여된다. 부모가 모두 살아 있는 경우, 두 부모가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였어야 한다.

단, 입양으로 인하여 생부모는 아무런 이민법상의 혜택을 얻지 못한다. 즉, 자녀가 입양으로 인하여 시민권을 얻고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생부모는 자녀 초청에 근거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서류미비자를 미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입양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입양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입양은 주 법에 따라 법원의 최종적인 입양 판결을 얻어야 하며, 시민권 문제는 이민국을 통하여 입양(I-600) 허가를 통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이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입양은 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통상 입양을 하게 되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 법의에 규정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입양부모가 있는 주의 입양에 관한 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입양 명령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고 입양을 승인받게 되면 이에 근거하여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 3. 입양의 절차

입양은 주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며 연방법률이 입양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주 법률은 또한 주별로 달라 입양의 절차는 입양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입양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입양은 출생부모의 권리를 입양부모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양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키며 새로운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만들어 낸다. 이 출생 증명서에는 입양부모의 이름이 나타난다. 원래의 출생증명서는 봉인(sealed)되어 보관되며 법원의 명령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

#### 가. 입양의 종류

캘리포니아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며 입양은 네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성인의 입양도 가능하다.

- 기관 입양(agency adoption)
- 개인 입양(independent adoption)
- 국가간 입양(inter-country adoption)
- 계부모 입양(steparent adoption)이 그것이다.

입양은 또한 출생부모와 입양부모가 서로 알고 지내는지 혹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 입양(open adoption)과 폐쇄형 입양(closed adoption)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 나. 입양할 수 있는 사람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입양을 할 수 있다. 다만, 입양 대상자는 입양을 하는 사람보다 최소한 10년 이상 어린 사람이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입양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독신, 이혼한 사람이라고 하여 입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입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일정한 소득 수준, 나이, 사회적 배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맞벌이 부부 같이 자녀를 돌볼 상황이 어려운 경우 입양아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 것은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회복지국(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DSS)에서 입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입양 담당 부서;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doptions Branch, 744 P Street, Mail Station 19-31, Sacramento, CA 95814, (916) 322-3778, (800) KIDS-4-US (543-7487)

## 다. 입양의 절차

### (1) 양육권의 포기

입양을 위해서는 먼저 출생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혹은 법원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그 자녀가 입양대상이 될 수 있다. 기관 입양(agency adoption)의 경우, 출생 부모는 자녀를 위탁하며 모든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때 출생부모는 입양 부모를 지정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입양은 이러한 기관 입양 즉, 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입양 기관은 정부 기관(county adoption agency)일수도 있고 사설 입양 기관(private adoption agency)일수도 있다. 다만, 입양 기관에 따라 입양아의 연령대, 수수료, 서비스 제공지역, 주로 다루는 고객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양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이것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출생부모로부터 입양부모로 입양을 시키는 것을 개인 입양(independent adoption)이라고 한다. 이 경우 변호사 등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입양을 하겠지만, 기관 입양에서와 같은 가정 조사 등의 절차를 대부분 거쳐야 한다.

### (2) 대가의 지불 금지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출생 부모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다. 사실상의 자녀의 매매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입양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면, 입양 부모가 출생 산모의 병원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 (3) 입양 부모의 자격 검증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나타나게 되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른바 “가정조사”(home study)라고 불리는 이 조사는 입양부모가 입양되는 아이에게 적절한 부모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입양부모는 범죄경력 조회, 부부관계 조사, 건강 검진, 직장 배경 등의 조사를 거치게 된다. 입양기관은 직접 입양부모의 가정을 방문하여, 집은 안전하고 깨끗한지, 아이를 위한 방이 따로 있는지, 아이를 돌볼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낮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 (4) 입양의 최종 결정

일단 입양 신청인이 입양기관의 판단으로 적절한 부모로 판단이 되고 입양부모가 입양을 원하는 경우, 아이는 입양부모의 집에 잠정적으로 보내어진다. 이 잠정적 입양 기간 동안 입양 부모는 법원에 입양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달라는 입양 청원을 신청하게 된다. 이때 입양기관에서 입양

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보아, 잠정적 입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법원은 입양의 최종 명령을 내리게 되고 새로운 출생 증명서가 발부된다. 입양명령은 최종적이며 법원에서 다룰 수 없다.

#### 라. 이민국의 절차 (시민권 취득)

주 입양법에 따라 입양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이민국에 I-600을 접수하여 승인을 받고,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을 수 있다.

#### 4. 해외 입양 (Inter-county adoption)

입양을 원하는 아이가 현재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먼저 해당 국가의 입양 절차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지고, 그 국가의 해외 입양이, 입양 부모가 있는 주정부에 의하여 확인 혹은 재입양(re-adoption)되는 절차를 거쳐 입양이 이루어지게 된다.

#### 5. 한국의 국적 문제

국적법의 개정으로 20세 이전에 입양으로 이중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2세 이전에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면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국적을 잃은 해외 입양아들이 모두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 XVII. 구제법



## 1. 포괄적 이민개혁법

서류미비자들이 가장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불체자 구제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민개혁법(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제법을 포함하여 이민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혁 내용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된다. “포괄적”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는, 학생, 노동자 불체자 등 서류미비자의 일부 대상자들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류미비자를 구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에는 구제법 뿐만 아니라,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국경 강화 방안, 불법 고용 단속강화, 비자제도 개혁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불체자 구제법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제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 가. 과거의 불체자 구제

포괄적 이민개혁은 이민법 역사상 단 한번 시행되었을 뿐이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 집권당시 불체자들을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약 300만명이 이 구제법을 통하여 신분을 회복한 바 있다.

1986년 이민개혁법(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 Pub.L 99-603, 100 Stat. 3359)으로 불리는 이 법은 두가지의 구제법을 포함하고 있었다.

#### (1) 일반 불체자 구제

일반적인 불체자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1982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1986년 11월 6일 레이건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에 서명한 날을 기준으로 불체자인 사람들이 구제대상에 포함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입국 당시부터 불체자 신분이었거나 1982년 1월 1일 이전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라도 1982년 1월 1일에는 이미 불체자 신분이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불체자로서 5년(정확하게 말하면 4년 11개월 6일)을 미국에서 체류하였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최근의 이민개혁법에서 입국시점을 따지지만 입국 당시 혹은 기준일 당시 불체자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입법일을 기준으로 불체자인지 여부만 따지는 것과 차이가 난다.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잠깐 동안의 출국은 예외적으로 계속적인 체류가 있었다고 간주하기도 하였다. 잠깐 동안의 출국이라 함은 계속하여 45일이 넘지 않는 출국, 출국 기간의 합이 180일이 넘지 않는 출국을 말한다.

또한 다른 입국 불허사유가 없어야 하며, 범죄 경력과 관련해서는 중죄(felony), 3회 이상의 경

죄(misdemeanor)가 있는 사람들의 구제 자격을 제한하였다.

또한,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단체 가입,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사람이나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박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박해를 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였다.

또한, 해당 외국인이 군복무 등록법(Military Service Act)에 따라 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이면, 그 법에 따라 등록 하였거나 등록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선택적 복무규정(Selective Service)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temporary) 영주권을 부여하고, 1년동안 계속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SAW(Special Agricultural Workers) 프로그램

최근 이민개혁법에서 볼 수 있는 농업 노동자 구제법(AgJobs Bill)과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이상 미국에서 농업노동에 종사한 사람들을 구제해 준 법안이다.

농업 노동에 종사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프로그램은 두가지로 나누어 졌는데, 하나는 1984, 1985, 1986년 각 5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매년 6월이상 거주하며 해마다 90일 이상 농업 노동에 종사한 사람들이 그 대상인데 35만명이라는 구제 한도가 정해져 있었다. 단, 하루 1시간 이상의 농업 노동이라도 하루로 계산하였으며, 90일이라는 기간은 계속될 필요는 없었으며 누적 일수로 90일 이상 농업 노동에 종사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두번째 농업 노동자 구제 프로그램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자격을 주었는데, 198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 동안에 누적으로 90일 이상 농업 노동에 종사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으며, 이 대상자들에게는 숫적 한도의 제한이 없었다.

첫번째 그룹의 농업 노동자 구제대상자들은 1989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영주권자가 되었으며, 두번째 그룹의 농업노동자들은 1990년 12월 2일을 기준으로 영주권자가 되었다.

※ 현재의 드림법안과 같은 구제법안은 1986년 이민개혁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나. 지금까지의 포괄적 이민개혁법 (안)

이민개혁 법안은 2000년 이후에도 여러 번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번번히 좌절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상원과 하원에 발의되었던 구제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 ☞ 2010년의 상원 구제법안

2010년 Menendez 의원이 발의한 구제안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 일종의 조건부 신분이라 할

수 있는 합법적 장래 이민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 LPI)라는 신분을 부여한다. 이것은 영주권자로 가기전의 과도기적인 신분으로 준이민자(quasi-immigrant) 신분이라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 중 중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이민자(LPI) 신분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광범위하게 불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LPI 대상자

### 가. 2010년 9월 30일 현재 불법체류자

구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010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전 어느 시기에 불법체류자가 되었는지는 문제되지 않으며, 계속적인 체류기간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제대상자를 정한 방법을 쓰고 있다.

다만, 2010년 9월 30일 이후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람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2010년 9월 30일 이후부터 실제로 구제가 되는 날, 즉, LPI 신분을 받는 날까지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즉, 9월 30일 이후에 미국을 출국해 버리면 자격을 잃게 된다.

단, 허가를 얻어 출국하는 예외가 있다. 허가를 얻어 출국하는 절차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절차는 법률이 통과되면 나오게 될 시행령(regulations)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제법안에서는 불법체류자 전체가 구제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의 사유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밀입국을 사유로 불법체류자가 되었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었던 묻지 않는다. 밀입국자의 경우, 9월 29일 혹은 그 이전에 밀입국하였어야 하며, 9월 30일 밀입국자부터는 자격이 제한된다.

상원의 구제법안은, 하원의 불법체류자 구제안과는 달리, 체류 신분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은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한 경우, 이것이 적발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나 이것을 사유로 하여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그것은 애초 신분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구제를 생각하고 만든 것이 아니며, 신분 위반자에게 망외의 소득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구제법에서는 불법체류자 전체가 구제 대상이 되고, 그중에서 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구제대상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구제법에서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구제 대상자가 된다.

### 나. 추방절차 진행 중인 자,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

추방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실제로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구제 대상자가 된다. 다른 결격 사유라 함은 구제 대상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즉, 중범죄 전과 등을 말하는 것이다.

## 2. 비 대상자(자격 제한)

### 가. 중범죄 전과자 등

연방 법에 의하던, 주법에 의하던 중범죄(felony)로 유죄(conviction)를 받은 사람은 자격이 제한된다. 중범죄라 함은 법정 최고형이 1년을 넘는 범죄를 말한다.

또한, 가중 중범죄(강력범죄), 밀입국 업자(방조자 포함), 보호 명령 위반자도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종교, 인종, 국적, 사회단체에의 가입,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에 참여한 사람도 자격이 제한된다.

물론, 영주권자, 난민 승인을 받은 자, 유효한 비이민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 가입국허가(parole)를 받고 임시로 입국한 사람은 모두 자격이 제한된다. 즉,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는 구제대상자가 없다.

### 나. 이민법상의 입국 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이민법상 입국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구제 대상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제한에는 명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두어 적용을 하지 않는 규정이 많고, 면제해 줄 수 없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입국제한 사유라 하더라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여 구제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 (1) 입국 불허 사유 중 적용이 되지 않는 사유

212(a)(5)(노동 허가 미소지자), 212(a)(6)(A)(밀입국), (6)(B)(추방재판 불출석), (6)(C)(입국을 얻어내기 위한 거짓말), (6)(D)(밀항), (6)(F)(민사처벌 대상자), (6)(G)(학생비자 남용), (7)(이민서류 미비자), (9)(추방된 경력이 있는 사람), (10)(B)(입국불허대상자 보호자)등의 입국불허 대상자는 그 사유가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문제 되지 않는다.

#### (2) 면제가 불허 되는 입국 불허 사유

위 (1)에서 언급한 사유를 제외하면 모두 구제 대상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나 그 사유라 하더라도



도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면제를 받으면 구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유에 대해서는 면제가 허용되지 않아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국가안보 등 중대사안 위반자에 대해서 면제를 제한하고 있다.

- ① 212(a)(2) (B), (C), (D)(ii), (E), (H), (I), (J) - 범죄 관련
- ② 212(a)(3) - 국가 안보 관련
- ③ 212(a)(10) (A), (C), (D) - 일부다처제 및 아동납치 범죄
- ④ 212(a)(6)(A)(i) - 2010년 9월 30일 및 그 이후의 밀입국

즉, 위에 나타난 사유가 아니라면, 비록 이민법상에 입국불허 사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그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면제를 받아 구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구제대상 자격 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대부분의 불체자들이 구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2009년 하원 구제법안

### 1. 발의

일리노이 연방 하원의원인 Luis Gutierrez가 하원에 2009년 12월 15일자로 상정한 이민개혁법안의 일부로서 포함된 구제안이다. 이 법안의 앞글자(Acronym)를 보면, “Sir, ASAP”(As Soon As Possible) (선생님, 제발 빨리요!)로 들리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이 법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 2. 특징

#### 가. 선구제 후 신분조정

법률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일단은 불법체류자를 합법적인 체류자로 만들어 주고, 신분조정은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이것은 구제되는 불법체류자에게 이민자(영주권) 신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이민자 그것도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부여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받은 이후, 6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고용, 학업, 납세 등 미국에 기여한 것이 있어야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벌어들인”(Earned) 신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노동허가를 부여하므로,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

하여, 불법체류자에게는 이민자 신분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 나. 완화된 자격 요건

1986년의 불체자 구제안과 같은 무조건적 사면에 이은 신분조정은 아니나, 이전의 구제법안과 비교하여 상당히 완화된 구제 조건을 만들어, 일단은 구제를 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 즉, 이전의 구제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노동조건(3년 이상의 고용 및 세금납부)이 구제 자체를 위한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불법체류를 몇년 이상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일(2009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불법체류자 이기만 하면 된다는 규정을 만듦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상당수 증가시켰다. (이 법안으로 일단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학업, 군복무 기타 사유로 공동체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나, 고용의 경우,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고 있는 것만 보여도 자격이 되고, 자원봉사 활동, 공동체 활동도 가능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상당히 넓혀 놓았다.

※ 체류신분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까지 구제대상에 포함시켰는데(Sec.401(c)(1)(C)), 이는 지나친 범위의 확대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분에 따르는 조건을 위반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혜택이 불체자 구제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법에 대한 망외의 대가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순한 신분 위반이 구제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조그만 실수까지 혜택을 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 지나친 보호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학생신분으로 불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구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는 불법으로 고용에 종사한 학생의 의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신분위반으로 추방절차에 회부되어, 추방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제혜줄 의의가 있으며 구제대상자에 포함되고 있다.

체류기간의 장기, 단기 제한이 없으며, 단지 입법이후 구제 신청일 이전에 미국을 벗어나 180일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지 말라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물론 이경우에도, 사전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는 해외체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은 2009년 12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2009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이미 불법체류자가 되었으며, 그 이후에 미국을 출국하지 않았으면 자격이 된다. 물론 이민법상의 다른 요건, 예를 들어, 이민법 212(a)상의 입국불허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자격조건은 지켜야 한다.

또한 범죄로서 입국불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중죄, 3회이상의 경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실제로 12개월 이상 복역한 경우에만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신청자격도 상당히 완화시켜 놓았다.

또한, 입국불허사유가 있더라도 광범위하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중범, 국가안보,



아동납치등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민법 212(a)상의 입국불허 사유에 대하여 이민국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순 불법체류 뿐만 아니라,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자, 밀입국 한자,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된 이후에 재차 밀입국한자, 자발적 출국 명령을 받고 출국하지 아니한 자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놓았다. 또한, 입법 이후 추방명령, 자발적 출국 명령을 받게 되는 자도, 자격이 됨을 이민판사에게 보이면, 비이민자로 구제되도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고용, 학업, 군복무, 자원봉사 등으로 공동체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나, 이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 즉, 고용의 경우, 파트타임, 계절적 고용, 자영업 뿐만 아니라, 현재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고용을 구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시켰으며, 학교에 등록된 학생의 경우, 파트타임 학생까지도 해당되며, 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 조건은,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인 경우는 물론 심지어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집에서 아이들 교육에만 몰두하고 있는 부모라도 이 요건에 위반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다.

※ 어린나이에(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하여 장기간(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자도, 35세가 넘지 않았다면, 위의 고용 등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드림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은 고용에 종사하지 않아도 구제대상이 된다.

#### 다. 앞으로 논의될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예상)

2011년 3월 현재 연방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상당기간, 즉 다음 선거때까지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공화당은 하원의 법사위(Judiciary Committee) 및 이민소위(sub-committee on immigration)까지 장악하고 있어 논의의 의제를 좌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제가 위원회를 통과하느냐 여부도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의 의중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대신 부분개혁이라 할 수 있는 “드림법안”(DREAM Act) 혹은 농업 노동자 구제법안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뿐으로 보인다.

만일 이민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논의된다면, 이민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쪽의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원에는 심지어 서류미비자 출생 자녀들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법률까지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하원에서 공화당이 진정으로 이민집행법의 통과를 바라한다면 최소한 부분적 이민개혁 법안이라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집행법은 상원, 나아가 대통령 서명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상원에서는 아직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논의될 수는

있으나, 표결을 위한 토론중결(cloture)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실제로 이민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물론 정치인들의 의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상원의 통과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원들의 숫자나 당파간의 이해관계보다 더욱 이민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보수화다. Tea Party로 대변되는 극우 물결은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미국 전반으로 번져 나갔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연방 의회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바뀌지 않는 한 포괄적 이민개혁은 힘들어 보인다.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가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은 드림법안과 같은 부분개혁이다. 드림법안의 경우, 그 대상자들이 서류미비자들 중에서도 가장 동정적인 그룹으로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타협점을 찾아 그에 어울리는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다만, 현재 높은 실업률, 살아 나지 않는 경제 등으로 인하여 서류미비자들의 구제가 마치 미국인들의 실업률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것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

## 1.3 드림법안

### 1. 의의

드림 법안(DREAM Act,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이라 함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신분을 구제하는 법안을 말한다. 드림법안은 2001년 8월 1일 최초 상원에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상원과 하원에 발의되어 표결에 부쳐졌으나 2006년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 첨부되어 상원을 통과한 적이 한번 있고, 2010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을 당시 하원을 통과한 적은 있으나, 상, 하원을 동시에 통과하여 법률로서 발효된 적은 없다.

현재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약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인 학생들도 약 2만명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드림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서류 미비 학생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하며, 일정 기간을 거쳐 영주권,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부에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서류 미비 학생이 신분을 회복하고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게 되면, 그 배우자, 자녀, 부모는 현재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가족 초청으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시민권을 받은 학생의 배우자, 자녀는 불법체류로 인한 자격제한의 미적용 혹은 불법체류의 면제로, 시민권을 받은 학생의 배우자, 자녀, 부모는 가족초청으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추방 절

차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영주권, 시민권을 받은 학생으로 인하여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할 수도 있어, 가족의 신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정치적 타협의 부재로 인하여 드림법안은 계속하여 표류하여 오고 있으며,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은 드림법안의 통과가 다소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공화당이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가장 먼저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드림법안이기도 하다.

만일 공화당에서 드림법안을 추진한다면, 그동안 발의되어온 드림법안에 비하여 다소 제한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즉, 그동안 드림법안에서 부여한 “영주권”, “시민권”이 다소 제한을 받거나, “비이민자” 신분을 부여하되 그 기간이 상당기간 길어질 수도 있다.

## 2. 가장 최근의 드림법안 (HR 6497)

### 가. 자격 요건 및 신분의 구체

최근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통과에 실패한 드림법안의 내용을 살펴 보면, 서류미비자로서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체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혹은 GED)하면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주고 있다. 상한 연령은 30세로 원래의 35세에서 낮추었다. “아이”들을 구체하는 법안이 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5년을 낮추었다. 건전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중죄(felony) 혹은 3회 이상의 경죄(misdemeanor)가 없어야 한다.

또 주목하여야 하는 부분은,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이전 드림법안에서와 같이 드림법안 통과 후부터 구체 신청시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입국한 이후부터 전 기간 동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에 입국한 이후부터는 구체신청시까지 도덕적 품성을 해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

“도덕적 품성”은 단순한 인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상의 혜택을 제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민법상 용어이다. 법률에 규정된 행위가 있는 경우, 도덕적 품성을 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법률에 규정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민국에서는 도덕적 품성을 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과거의 행위 중, 도덕적 품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덕적 품성과 관련되는 것은 주로 “범죄” 행위이다. 단, 다른 조건과는 달리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사실의 인정(admission)도 그 결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자격이 되는 대상자들은 5년간의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얻으며, 이 기간 동안에 2년간의 대학수학 혹은 군복무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조건부 비이민자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최초의 5년과 연장되는 5년을 합쳐, 10년째가 되기 1년전 기간 동안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

으며, 영주권 기간은 3년이다. 3년간의 영주권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하여 드림법안이 통과된 이후 13년만에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비이민자 신분으로 결혼, 취업 등을 통하여 10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최초의 신청 수수료는 시행령을 통하여 정해질 예정이며, 벌금(surcharge)이 최초 신청시에는 \$ 525이며, 5년 연장을 위한 벌금은 \$2,000로 정해졌다.

과거 드림법안에서는 “영주권”을 받았으므로, 대학 2년 수학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면,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고, 조건부 영주권 기간도 시민권에 필요한 영주권 기간으로 계산되어,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끝나는대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즉, 드림법안 통과 후 6년만에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드림법안에 따르면 “비이민자” 신분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다. 비이민자 신분 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제는 10년의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거쳐 3년의 영주권 기간이 지난 후에 시민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드림법안이 통과 된 후 최소 13년이 지나야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7년이 늘어난 것이다. 시민권자가 됨으로써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가족 초청을 보다 쉽고 빨리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영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이전에 비하여 10년이 더 걸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주내 거주자 등록금 혜택 미부여

드림법안은 또한, 주내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비이민자에게 주내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영주권자”에게 주내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보다, 다소 설득력이 있기는 하다.

즉, 새로운 드림법안에서는 과거의 드림법안과 달리, 주내 거주자 등록금을 주(state)가 선택할 수 있도록, 1996년 이민개혁법상의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6년 이민개혁법에 따라 각 주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류미비자에게 주내 “거주”를 조건으로 주내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만,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10개 주에서 현재 연방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을 요건으로 하여, 연방법의 규정을 우회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비이민자도 “합법적”인 신분자이기 때문에 1996년 이민개혁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내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주내 거주자 등록금 문제는 사실 드림법안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문제되는 규정이며, 드림법안이 시행되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드림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서류미비 학생들 중 드림법안의 혜택을 볼 수 없는 학생들이 많아, 등록금 혜택을 드림법안에서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 다. 노동허가 부여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비이민자 신분이지만 노동에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노동허가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어떠한 합법적인 노동에도 종사할 수 있다. 해외로의 여행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 라. 결혼, 취업 등을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드림법상의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으로 모두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 기간 중, 시민권자, 영주권자와의 결혼,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 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 ☞ 농업 노동자 구제법안

농업 노동자 구제법(AgJobs Bill)은 드림법안과 함께 “부분개혁”안으로 자주 논의되는 법안이다. 일정기간 농업 노동에 종사한 사람들은, 서류미비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에 이르는 길을 제공한다.

#### 1. 의의

농업 노동에 일정기간 종사한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신분(블루카드, “Blue Card”)을 부여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상 농업노동에 종사하면,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법안이다. 가장 최근에 상원에 2010년 9월 30일(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 포함), 하원에는 2009년 5월 14일(HR2414) 발의되었으나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하원 법안의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현재 드림법안과 더불어 포괄적 이민개혁 대신에 독립하여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개혁” 법안이다.

농업 노동자라 함은, 전분야의 농업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농업, 원예 작물의 경작, 낙농, 생산, 재배, 수확을 포함하고, 또한, 축산, 벌, 털을 위한 동물 사육, 양계는 물론 농부에 의한 비농업 활동이라 하더라도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차적인 활동인 경우, 농업 노동에 들어가게 된다. 즉, 마케팅, 배달 등을 포함한다. 아래에서는 지난 2009년 상원에 발의되었던 농업 노동자 구제법을 살펴 보기로 한다.

#### 2. 구제 대상 자격 요건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 2년 기간, 즉,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150일(work days) 이상 혹은 총 863시간 이상 종사하였거나, 농업 소득을 최소 7,500불 이상 올린 사람

이 자격이 된다.

※ 자격제한 - 중죄, 3회 이상의 경죄로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법 212조의 입국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신체의 훼손 및 중상해 협박, 혹은 500달러 이상 피해를 주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발급 한도 - 5년 동안 135만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배우자 및 자녀의 숫자 제외)

※ 블루카드 신청시의 벌금 - 100달러

### 3. 영주권의 부여

농업 노동자 구제법이 입법된 이후, 1년에 100일 이상 5년 이상, 1년에 150일 이상 3년이상(4년 중 3년은 150일 이상, 1년은 100일 이상인 경우, 4년 이상으로 가능) 농업 노동에 종사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조건은 입법 이후 7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하며, 7년 이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방대상자가 된다.

※ 미국에 있는 배우자 및 자녀도 블루카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된다.

### 4. 자격의 입증

정부의 기록,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농업 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류로써, 블루카드 및 영주권 자격을 보여주는 농업 노동 종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 XVIII. 유타주 구제법





## 1. 의의

유타주가 사상 처음으로 주정부 차원의 서류미비자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아직 시행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연방 의회가 포괄적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정부 차원에서 구제법을 만들어 낸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다만, 유타주의 구제법은 서류미비자의 신분자체를 “합법화” 시켜 주지는 않는다. 서류미비자의 신분을 합법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연방 정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류미비자 신분을 유지한채 최소한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주내에서만이라도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연방법률하에서도 합법적인 신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와 접촉하여 필요한 면제(waiver)를 받아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연방이민법에서 고용주가 서류미비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민법 274A)이 구제법의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 이 규정 적용의 면제를 받아 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연방 이민법에는 이 규정의 면제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제를 받는 절차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구제법에서는 이 면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은 시행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구제법은 시행된다.

구제법 프로그램은 유타 주 “인력 관리부”(Department of Workforce Services, DWS)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또한 인력관리부(DWS)에서는 일시적 노동자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면제(waiver, exemption), 허가(authorization)를 연방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책임을 지게 된다.

## 2. 노동허가증(Permit)

구제법에서는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노동허가증(permit)을 발부한다. 이 노동허가는 주정부에서 구제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하고, 자격의 검증을 거쳐, 자격이 되기 때문에 노동허가를 받았다는 증표가 된다. 또한,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이 노동허가를 소지하고 있으면 (주내에서는)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서류미비자는 고용계약(contract for hire) 후 고용에 종사하기 이전 혹은 노동허가를 신청해 놓은 경우, 고용에 종사하기 시작한 이후 30일 이내에 그 노동허가(permit)를 얻어야 한다. Luz Robles 의원안과는 달리 노동허가를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주의 자격 혹은 등록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고용주라 하더라도 노동허가(permit)를 가진 서류미비자를 채용할 수 있다.

노동허가를 얻은 사람의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은 가족 허가증(family permit)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가족 허가증을 가지고 노동에 종사할 수는 없다. 즉, 별도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증은 (주내에서) 신분증 혹은 나이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혜택을 받아내기 위한 자격이 되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 3.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가. 18세 이상, 단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가능;

나. 유타주내에 거주하되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을 것;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밀입국 한 것이거나 비자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2011년 5월 10일 이전에 유타주에서 일하였거나 체류하고 있을 것; 즉, 2011년 5월 10일 이전에 유타주에 들어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구제법의 영구화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서류 미비자들이 전국에서 유타주로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노동허가(permit)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1년 5월 10일 이전에 유타에서 거주 혹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 날짜는 추후의 입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 날짜 이후에 유타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의원들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45(i)의 수혜기간이 변경된 것처럼 그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라. 주정부에서 만든 규정에 따라, 연락처(contact)를 제공하고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보고할 것;

마. 최소 노동허가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는 고용을 제공하기로 한 근로 계약(documentation of a contract)을 제공할 것; 이것은 노동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노동허가를 받은지 최소한 30일 이내에는 근로계약(계약서)을 제출하여야 노동허가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근로계약을 제출하지 못하면 노동허가는 취소된다.

바. 범죄경력 조회(criminal background check)를 받는데 동의할 것;

사. 심각한 중죄(serious felony)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인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유죄의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

아. 보건상의 이유로 연방 이민법상의 입국불허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자. 기본적인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것;

차. 의료비 중 갚지 못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노동허가 기간중 의료비를 빚지지 않겠다고 약정할 것;

카. 운전면허 카드(driving privilege card)를 보유하고 있을 것, 만일 운전면허 카드가 없는 경우 유타 주내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증명할 것.

※ 심각한 중죄(serious felony)

- Title 76 Chapter 5(유타 주법)의 대인범죄
- Title 76 Chapter 5a의 아동 성범죄
- Title 76 Chapter 6의 재산범죄
- Title 76 Chapter 7의 가족에 대한 범죄
- Title 76 Chapter 8의 대정부 범죄
- Title 76 Chapter 9의 공공질서 위반 범죄
- Title 76 Chapter 10의 공공복지, 안전, 도덕에 관한 범죄

※ 연락처

- 서류미비자 본인의 이름
- 본인의 거주지의 주소
- 거주지의 전화번호
- Email 주소
- 고용주의 이름
- 고용주가 지정한 사람의 이름
- 고용주의 주소
- 고용주의 전화번호
- 본인의 근친가족의 이름
-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이름
- 기타 DWS가 요청하는 정보

**4. 가족의 자격 요건 및 근친가족 허가서(immediate family permit)**

일시적 노동자의 근친가족에게는 근친가족 허가서(permit)이 발부된다. 근친가족은 일시적 노동자와 같은 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일시적 노동자가 자격이 되고 그 가족이 자격이 되지 않아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가. 유타에 거주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중이어야 한다.

나. 일시적 노동자의 근친가족 이어야 한다. (근친가족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말한다)

다. 연락처(contact)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되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신청 및 갱신 절차**

#### 가. 신청서 제출할 서류

- (1) 신청서
- (2) 일시적 노동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갱신하는 경우, 영어능력(English Proficiency)이 된다는 증거도 포함하여야 함)
- (3) 신청서류가 진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
- (4) 신청 수수료 (수수료의 금액은 DWS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5) 기본적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 \$750의 벌금
- (6) 범죄경력 조회에 필요한 서류 (연방법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 (가) 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전제 조건이 되는 서류)
- (나) 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것
  - ① 지문 카드 (DWS에서 받아들이는 양식에 따른 것)
  - ② 유타 BCI(Bureau of Criminal Identification) 및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확인을 받는데 동의할 것

#### 나. 심사 및 거절

DWS에서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서에 대해서는 노동허가 혹은 가족 허가(permit)를 발부하며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발급이 거절된 사람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6. 노동 자격 유지의 조건

가. 자격 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나. 아래의 경우, 노동자격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즉, DWS의 취소 결정이 없어도 노동허가가 취소된다.

- (1) 심각한 중죄(serious felony)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인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유죄의 판단을 받은 경우
- (2) 1년 이상 고용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3) 가족 허가(permit)의 경우,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의 노동허가가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

## 7. 영어 능력 기준

가. 주 교육부 주관 중등학교 영어능력 검증 중급 이상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 영어능력 검증 결과는 처음 노동허가를 발부할 때에는 요구하지 않으나, 노동허가를 갱신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영어 능력 향상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8. 노동허가의 확인

가. 일시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DWS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그 노동허가가 유효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노동허가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절차는 연방 근로자의 노동자격을 확인하는 절차(E-verify)와 유사하게 만들어진다. 고용주는 노동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한다.

나. DWS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주는 노동허가를 신청해 놓았지만 아직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고용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는 그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근로자는 노동허가 없이 30일 이상 고용주를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30일 이내에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노동허가를 신청해 놓지 않고 노동에 종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법률에서는 자영업(self-employment)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자영업자는 자신이 고용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 9. 일시적 노동자 프로그램의 시행

### 가. 금지된 행위

- (1) 일시적 노동자는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 (2) 가족 허가를 가진 사람은 주내에서 근로에 종사할 수 없다. 즉, 별도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일시적 노동자의 경우, 고용주의 동의 없이 연속 10일 이상을 결근할 수 없다.
- (4)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노동허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5) 노동허가가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발부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 (6) 만료된 노동허가를 유효한 것처럼 제시할 수 없다.
- (7) 고의 또는 과실로 유효하지 않은 노동허가(permit)를 획득, 사용, 제시 혹은 이전할 수 없다.

#### 나. 민사 처벌

- (1) DWS는 노동허가를 정지, 제한 혹은 취소할 수 있다.
- (2) DWS는 \$7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 DWS는 이 처벌을 병과할 수 있다.

#### 다. 형사 처벌

- (1)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위조된 정보 혹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C급 경죄(misdemeanor)가 된다.
- (2) 노동허가증을 변조하는 행위

### 10. 시행일

주지사가 본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면제를 연방정부로부터 획득한지 120일 이후부터, 혹은 2013년 7월 1일 (두가지 중 먼저 오는 날)

### 11. 연방정부로부터의 면제(waiver)

DWS에서는 주지사의 지도하에 일시적 노동자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면제, 허가를 받아내도록 노력한다. 즉, 원칙적으로 면제(waiver)를 받아내는 책임은 DWS에 있지만, 주지사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면제를 받아 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12. 세금의 유보

소셜 번호(SSN)이 있는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유보하게 되는 소득세(Income Tax), 고용세(employment tax) 부분만큼 고용주를 통하여 주정부가 유보하도록 한다. 유보하는 금액은 주 세금 위원회(State Tax Commission)가 정하도록 한다. 만일, 면제, 허가 등을 통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SSN을 받게 되면, SSN을 받은 사람들의 세금은 고용주를 통하여 주정부가 유보하게 된다.

이 부분은 연방 정부의 권한과 관련하여 다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현재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ITIN을 받고 IRS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에 납부되어야 할 세금을 주정부가 유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권한의 침해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운용과정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XIX. 추방 재판 없는 추방





통상적으로 추방을 당하는 경우에도 이민판사의 심판을 받고 추방을 당하게 되지만, 특별한 경우 이민판사의 재판없이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은 1996년 이민개혁법에 의하여 가능해진 것으로, 이민판사의 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입국시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신속 추방은 입국 불허 사유에 근거하여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이미 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이민판사의 심판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짓말(misrepresentation)하는 경우와 서류위조(forged document)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거짓말이라 함은 입국불허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려다가 적발되는 경우와 같이 입국장에서 관세 및 국경수비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만일 범죄 전과가 있어 입국이 불허됨에도 불구하고 범죄 전과가 없다고 하였다가 이것이 발각된다면 CBP 직원의 결정에 의하여 입국이 불허된다. 서류 위조는 비자의 유효기간을 위조한다든지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와 같이 입국을 위한 서류를 위조, 불법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하여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 입국 거절로부터 5년간 입국이 제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망명 담당 직원의 판단으로 보아 망명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 정식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또한, 시민권자, 영주권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 2. 입국한 이후의 신속 추방

신속추방은 이미 미국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국토안보부 이민집행국(ICE)은 애초에 정식으로 입국절차를 통하지 않고 입국한 사람, 즉 밀입국한 사람이 이민국 직원에게 미국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설득하지 못하면, 추방재판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실제 자주 적용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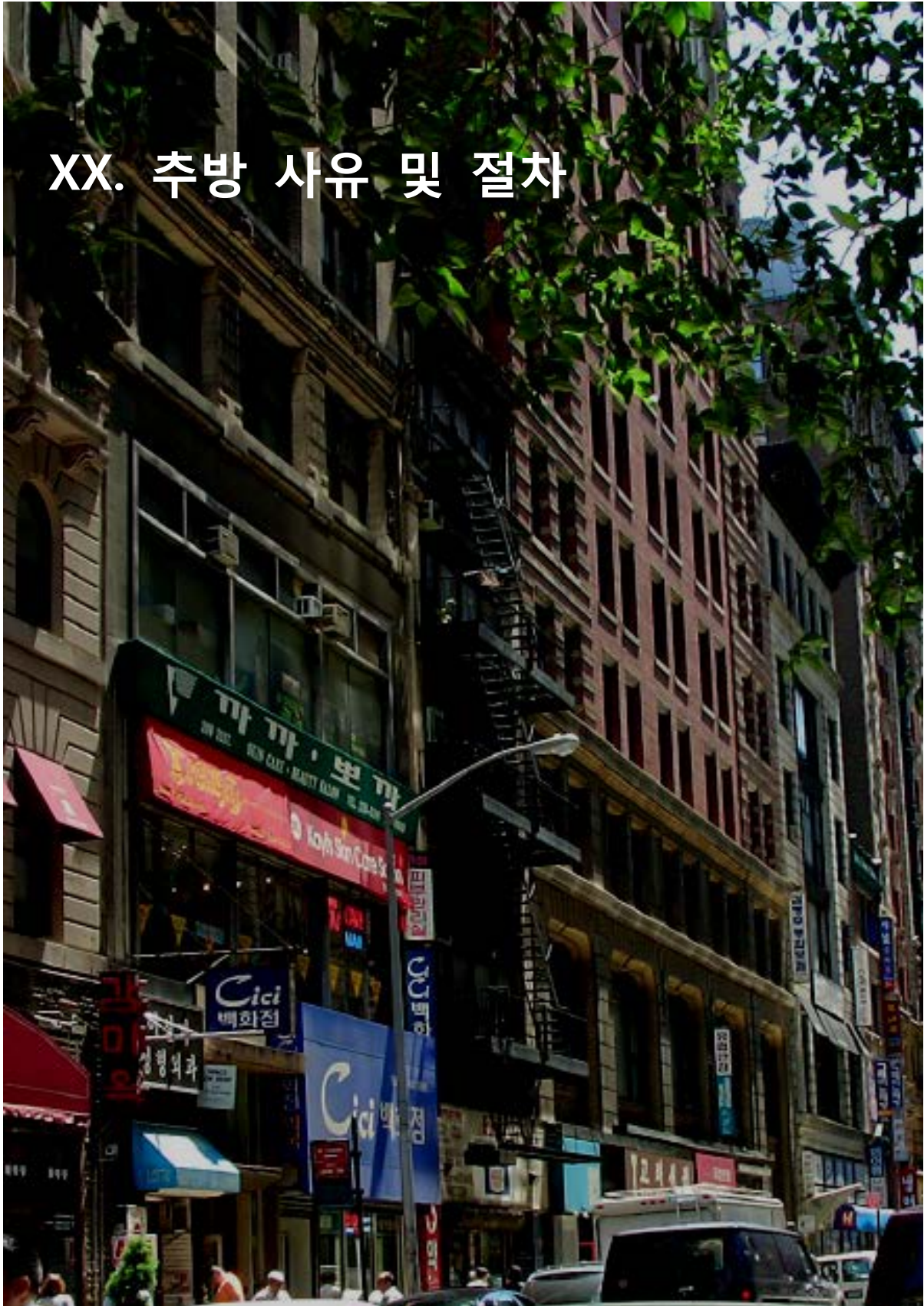
또한,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사람은 재판없이 즉시 추방될 수 있다.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마약관련 범죄, 살인, 강간 등 강력범(aggravated felony), 총기관련 범죄이다. 이들은 형의 집행이 끝나는대로 즉시 추방된다.

※ 강력범(Aggravated Felony, INA 101 (a)(43))

- (A) 살인, 강간 혹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 (B) 마약(controlled substance)의 불법적 거래
- (C) 총기 및 화약류의 불법적 거래

- (D) “돈세탁”(money laundering) 관련 범죄
- (E) 폭발물, 총기 관련 범죄
- (F) “폭력범죄”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G) 절도(및 장물취득)의 범죄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H) 몸값요구(ransom)와 관련된 범죄
- (I)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범죄
- (J) 부패 조직(corrupt organization) 혹은 도박과 관련된 범죄
- (K) (i) 매춘의 소유, 통제, 관리와 관련된 범죄 (ii) 매춘을 위한 수송, (iii) 노예 및/혹은 비자발적 노역
- (L) (i) 국가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부, 비밀, 노동쟁의, 반역과 관련된 범죄 (ii) 비밀정보요원의 신분의 보호와 관련된 범죄 (iii) 비밀 요원의 신분의 보호와 관련된 범죄
- (M) 범죄로서 (i) 사기나 기망의 경우에 있어 그 피해액이 \$10,000을 넘는 경우, (ii) 세금포탈의 경우에 있어, 그 금액이 \$10,000을 넘는 경우
- (N) 이민법 274(a)에 규정된 외국인의 밀입국과 관련된 범죄, 단 직계가족만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 (O) 이전에 범죄로 인하여 추방된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의한 (어떠한) 범죄
- (P) 여권 혹은 서류를 허위로 만들거나, 위조하거나,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것 혹은 서류 위조와 관련된 범죄로서 구금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인 경우. 단, 근친 가족을 돕기 위하여 저지른 범죄로 첫 범죄인 경우는 제외
- (Q) 법정형이 5년을 넘는 범죄의 피고인으로서 그 형의 집행에 나타나지 않은 범죄
- (R) 뇌물 범죄, 차량의 식별 번호를 변경 한 후, 위조, 변조 혹은 거래하여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S) 사법 방해, 위증, 위증 강요, 증인 뇌물 증여 등으로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T) 법원 명령에 따라 답변을 하거나 증인의 소추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에 출두하여야 함에도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2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U) 위의 범죄에 대한 공모 혹은 미수

## XX. 추방 사유 및 절차



## 1. 추방, 축출, 배제(deportation, removal, exclusion)의 구분

### 가. 추방

추방(deportation)이라 함은, 미국에 이미 입국한 외국인이 추방 당할 수 있는 행위(범죄, 테러, 입국불허사유가 존재함에도 입국, 추방명령을 받은 후 체류 등)를 저지르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의 모국 혹은 최종 체류국으로 추방하거나, 구금(모국에서 외국인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불법체류 자체만으로도 “이민법에 위반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되므로 추방사유가 된다. 그러나, 단순 불법체류자는 특별히 이민국(ICE)이나 경찰기관과 접촉할 일이 없으므로 실제로 추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민국(ICE)이나 경찰기관과 접촉하는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추방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추방 사유는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추방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견되면, 이민국 직원은 해당 외국인에게 사유설명서(Order to show cause, I-221)를 전달하며,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며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여부가 결정된다. 이민국은 해당 외국인이 추방대상자라는 것을 명백히(by clear, unequivocal, and convincing evidence) 입증 하여야 한다.

추방절차 진행중에는 신분조정,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등 여러가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 추방 재판 중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추방절차중 이민국에 의하여 구금을 당하게 된다면, 그 구금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민판사로부터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이민판사의 결정에 다시 불복한다면 BIA(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다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차 미 연방법원(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에 재심(habeas corpus)을 요구할 수도 있다. (REAL ID법의 통과로 이는 미 연방 고등법원의 관할이 되었다) 최종적인 추방 결정(BIA)에 대해서는 미 연방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연방 지방법원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음), 재차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나. 배제 (exclusion, 입국불허)

배제라 함은 미국에 입국하기전 해당 외국인을 입국 불허 사유(inadmissibility)로 입국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배제는 미국의 관문이 되는 공항이나 항구에서 일어나게 된다. 미국 입국시 이민국(CBP) 직원이 질문을 행하고, 서류를 검사하는 과정(inspection)에서 형사 전과, 테러 경력, 전염병, 장기간의 부재 등 입국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국 직원은 배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추방절차와는 달리, 배제를 위한 이민판사 앞에서의 입증책임은 해당 외국인 본인에게 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은 자신이 입국불허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



다. 또한, 추방절차와는 달리, 배제 절차를 위한 구금시, 헌법상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금의 합법성 등을 다룰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을 가입국(parole)시킬 수 있다. 배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는 허가하되, 정식으로 입국을 한 것은 아닌 것이다. 배제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구금 적부심(habeas corpus)에 그치며, 연방법원에서의 심사를 받을 수 없다. 배제 절차진행중 외국인은 신분 조정, 입국 불허사유의 면제 등을 신청할 수 없다. 단, 가입국(parole)을 받았다면 이것이 가능하다.

#### 다. 축출(removal, 추방)

1996년 이민 개혁법의 통과로 추방과 배제 절차가 “축출”(removal, “추방”)이라는 하나의 절차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축출 절차에서는 추방사유의 존재 및 입국불허 사유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추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국 직원은 I-862(법원 출석 통지서, Notice To Appear, NTA)를 발부하고, 추방 사유의 종류에 따라, 구금을 할수도 아니할 수도 있다. 추방과 마찬가지로, 입국불허 역시 축출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단, 배제 절차에서와는 달리, 추방절차에서처럼, 입국 불허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민국이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구금에 대해서도 이민판사가 심사할 수 있다. BIA에 항고하며, 연방 고등법원에 구속적부심(habeas corpus)을 신청할 수도 있다.

### 2. 추방의 사유

추방절차는 추방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적발한 관리가 추방절차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추방의 사유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살펴 본다.

#### 가. 추방될 수 있는 행위(8 USC 1227)

(1) 입국 당시 혹은 신분 조정시에 입국불허 사유가 있었던 사람 혹은 입국 후 비자 신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

(A) 입국이 불허되는 사람(inadmissible alien): 입국 당시 혹은 신분조정 신청시에 이민법 212(a)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는 사람은 추방될 수 있다.

(B) 법률에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이민법 혹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혹은 비이민 비자가 무효로 된 자. 법률에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C) 비이민 신분 위반 혹은 입국 조건 위반

(D)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의 종료: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혹은 기업가로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그 신분을 잃게 된 때

(E) 밀입국: 입국전, 입국 시, 입국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의 밀입국 혹은 밀입국 시도를 권유, 유도, 원조, 격려한 경우 (가족에 대한 예외(waiver) 있음)

(F) 결혼 사기 (marriage fraud): 입국 전 2년 이내에 성립된 결혼이 입국 후 2년 이내에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 혹은 파기되는 경우, 단 이때에도 해당 외국인은 결혼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G) 허위 진술에 대한 면제

(i)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로서, 허위 진술 외에는 이민자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경우

(ii) VAWA(Violence Against Woman Act) 신청자: 스스로 VAWA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과거에 허위진술이 있었던 경우, 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2) 범죄 행위로 인한 추방

(A) 일반 범죄

(i) 도덕 위반(moral turpitude) 범죄

(I) 비이민자의 경우 입국 후 5년 이내,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후 10년 이내에 도덕 위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될 수 있다. (사기, 횡령, 절도 등)

(II) 중죄(felony): 법정형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추방될 수 있다.

(ii) 다수의 범죄: 둘 이상의 도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하나의 행위로서 둘 이상의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iii) 강력범(aggravated felony) (미성년자에 대한 살인, 강간 혹은 강도 등)

(iv) 고속 도주 (high speed flight) 이민국 검색을 피하여 고속 도주한 자

(v) 성범죄자로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

(vi) 위 (i)(ii)(iii)(v)의 경우에 대통령 혹은 주지사의 사면을 받은 경우는 면제를 받는다.

(B) 약물 범죄

- (i) 마리화나 30그램 이하의 단순소지 이상의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ii) 입국 후 마약 남용자 혹은 마약 중독자가 된 사람

(C) 총기 관련 범죄

총기나 폭발물인 무기의 구매, 판매, 판매 제의, 교환, 사용, 소유, 소지, 운반 혹은 이러한 행위의 미수 혹은 공모와 관련하여 유죄를 받은 사람

(D) 기타 범죄

첩보관련, 사업방해(sabotage), 반역(treason), 선동 (sedition) 등의 범죄

(E) 가정폭력, 스토킹, 보호 명령(protection order) 위반, 미성년자 상대 범죄 (아동 학대)

(F) 인신매매

(3) 미등록 및 서류의 위조

(A) 주소 변경을 등록 하지 않은 사람, 단, 상당한 사유가 있어 그러한 경우 혹은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미 등록 및 서류위조: 외국인 등록법 및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행하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비자 및 허가서류 입국서류 등을 남용, 위조한 사람

(C) 서류 위조

서류 위조로 판결을 받은 사람, 단, 배우자나 자녀를 입국시키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사람으로서 과거 처벌경력이 없는 사람은 이를 면제해 줄 수 있다.

(D) 허위 시민권 주장

이민법 및 다른 법률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시민권을 주장한 사람, 단 양쪽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출생 혹은 귀화로), 16세 이전까지 미국에 영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이 미국시민권자라고 믿고 주장한 경우는 추방되지 않는다.



(4) 안보 관련 사유

(A) 개관: 첩보, 업무방해 등에 관련된 미국법률 위반 행위, 공공의 안전 혹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 미국에 반대하고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

(B) 테러 행위

(C) 외교 정책: 해당 외국인의 체류가 미국의 외교적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D) 나치의 박해, 제노사이드, 고문, 사법절차외에서의 살인

(E)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F) 아동 사병의 모집 혹은 사용

(5) 공공의 부담(public charge)

미국 입국 5년 이내에, 미국 입국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입증하지 못한 이유로 공공의 부담이 된 경우, 추방의 대상이 된다.

(6) 불법 투표자

(7)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외

(2)(E)(i)(가정폭력, 스토킹, 보호명령 위반, 아동학대)의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폭력을 당하였거나 극심한 가혹행위를 받은 자로서, 그 폭력행위에 있어 주된 폭력행위자가 아닌 경우, 해당 외국인이 정당방위로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명령을 위반하였거나, 해당 범죄행위가 상대방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동안 당한 폭력 혹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E)(i)를 적용하지 않고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추방의 개시

## 가. 적발

불법체류자 내지는 신분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중 가장 많은 것이 범죄를 통해서이다. 범죄로 감방(jail)에 보내지는 경우, 경찰관이 이민집행국(ICE)의 도움을 받거나, 일부 교도소는 최근 국토안보부와 협조하여 자료를 공유하며, 지문을 찍게 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국토안보부의 자료와 비교를 통하여 이민법 위반자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민법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경찰관이, 이민법을 위반한자, 이민법 관련 범죄를 저지른자, 추방 절차에 놓인 자 등을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

불체자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한 후, 이민법위반자를 적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의 경찰청이라 할 수 있는 ICE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민법 위반자 신고: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무료전화 1-866-347-2423 (통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etc, 위반일시, 장소, 위반의 내용 등 구체적으로 신고하여야 함, 익명으로 신고 가능)

## 나. 구속 불구속

추방을 위한 재판이 진행동안 구속되느냐의 여부는 이민 판사에 달려 있다. (Title 8 Chapter 12, § 1536, Custody and release pending removal hearing)

다만, 현실적으로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추방절차에 놓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석방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석방된 외국인이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 쥘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민 판사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금, 석방하는 것 외에는 최초로 이민집행국(ICE)이 구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 결과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 이민국이 항소하지 않으면 무조건 석방하여야 하고, 이민국이 항소하면 조건을 붙여 석방할 수도 있고, 조건의 부과로서 적절히 출석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석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 (1) 최초의 구속

이민법 위반을 사유로 하여 구속(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지역 이민국장, 지역 이민 부국장, 국장 보, 부국장 보, 순찰 직원, 국경 수비대 감독관,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부소장 등 이민국의 관리직에 있는 사람으로 이민국의 직원이 사실상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해 놓았다. 특이한 것은 체포영장의 발부에 있어 법원의 심사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영장이 발부되며, 구금된 이후에야 이민 판사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즉, 체포 및 구금 그리고 최초의 보석금 책정의 권한을 이민국에 주고 추방절차 시작, 진행중에도 구금 혹은 석방할

수 있게 하였고, 차후에 이민판사가 이를 심사, 석방 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최초 이민국이 책정한 보석금에 대하여 이민판사의 재심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을 맡게 되는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 이를 구두, 서면 혹은 (판사의 허가하에) 전화상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민판사는 보석금 결정 혹은 구금여부 결정을 내리는 경우, 구두 혹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만일 이민판사의 결정마저도 불복한다면 이민항소법원(Board of Immigration Appeal, BIA)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민국은 1500불이상의 금액으로 보석(bond)금을 책정할 수 있고, 보석시 조건을 붙여 석방할 수 있다. 또한 보석금 없이도 조건을 붙여 석방할 수 있게 하였다(conditional parole). 다만, 보석금 등에 의한 석방의 경우, 언제든지 이를 취소하고 재차 체포, 구금 할 수 있다.

## (2) 체포 후 구금하는 경우

범죄로 인한 입국불허 사유(212(a)(2))에 나타나는 사유로 추방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즉, 중죄, 도덕 위반 범죄, 복수의 범죄, 매춘, 인신매매, 머니 룬더링(자금세탁) 등의 범죄로 추방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구금을 당하게 된다. 또한, 테러, 총기관련 범죄나 첩보, 사보타지, 반역등의 범죄도 마찬가지이다.

## (3) 석방의 조건

이민국(DHS)은 조사에 협조적인 사람, 증인의 보호, 체포된 외국인의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석방되더라도 공동체 혹은 타인에 위협이 되지 아니하며, 재판 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비록 구금대상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 한 후 석방할 수 있다.

## 4. 추방의 절차

### 가. 출석고지서의 전달

일단 추방절차에 회부되게 되면, “출석고지서(notice to appear, NTA)”가 발부된다. 출석고지서에는, 출석 일시 장소를 포함하여 추방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방절차에 회부된 이유(법적 근거),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적시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무료로 변호를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목록(혹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 반드시 서면으로 주소 및 전화번호를 이민국에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주소의 변경시에도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 추방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 처벌내용도 포함된다) 이 출석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본인에게 배달되어야 하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배달될 수 있다.

## 나. 변호사의 선임

변호사를 선임할 충분한 시간적 기회를 주기 위하여 출석고지서를 전달한 뒤 10일 이내에는 첫 재판을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열흘 이내에 재판을 시작하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론 10일 이내에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방재판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유죄판결을 사유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빠른 날짜를 잡도록 요구하고 있다.

## 다. 재판

### (1) 본인의 출석

재판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출석없이 영상을 통한 재판, 전화를 통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증인신문의 경우에도, 본인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고, 전화를 통한 증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재판에 회부된 외국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증인을 제시, 심문하고, 이민국에서 부른 증인을 반대신문할 권리가 있다. 모든 재판 내용은 기록이 유지된다.

만일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에서 1) 서면의 출석고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였고, 2) 추방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는 경우, 이민판사는 본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본인이 만일 위에서 요구하는 주소마저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궤석재판의 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본인의 출석없이 내려진 추방명령에 의하여 추방당하지 않으려면,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180일 이내에 재판의 재개시 요청(motion to reopen)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특별한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에 의한 것이거나, 출석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 (2) 증명의 정도 및 거증의무

해당 외국인이 추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로(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의 의무는 이민국에 있다.

## 5. 재판의 진행

## 가.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 NTA)

국토안보부가 출석 통지서를 피고(respondent)에게 제시하고 이민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추방재판이 시작된다. 출석통지서에는 추방 재판의 성격에 관한 설명이 있고, 관련 이민법 규정이 적시된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특권이 있다는 것과 추방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가 표시된다. 다만, 추방재판에서는 국가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주지 않으며, 대신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의 변호사의 목록을 요청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나. 추방 재판의 진행

추방재판에는 직접 참석할 수도 있고, 화상(video conference)을 통하여 참석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 통화(telephone conference)를 통해서도 참석할 수 있다. 추방대상자가 반드시 재판에 참석하여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석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추방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참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판은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판 진행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통역을 요청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역을 구하는 비용은 정부(법원)에서 부담한다.

재판에서 입증의 책임은 국토안보부가 진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추방대상자가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1) 예비 재판 (Master Calendar Hearing)

출석 통지서상에 보통 예비 재판일이 표시되어 나타난다. 출석 통지서를 받은지 최소 10일 이후의 날짜가 예비 재판일로 잡히게 된다. 최소 10일간의 충분한 시간을 주어 변호사를 구하고 또한 재판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예비 재판에서는 추방 사유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심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즉, 이민 판사는 추방 대상자에게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에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또한,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유를 심판하기 위한 날짜를 지정한다.

이민판사가 추방대상자에게 설명해 주는 권리를 보면,

(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이때, 법원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무료 혹은 저렴한 이민 변호사의 목록을 구할 수 있다.

(나)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 증인에 대하여 이를 확인, 반대,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

(다) 이민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이민항소법원(BIA)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이민법원은 몇가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설명해 주어야 하는 내용은,

(가)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일상 용어으로써, 출석 통지서에 나타난 추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및 법적인 효과

(나) 구제신청, 의견서, 증거, 증인 목록 제출 등 각종 신청에 따른 마감 일자

(다) 재판 일정

(라)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또한 추방대상자는 예비 심판에서 이민법원에 대하여 여러가지를 주장, 요구할 수 있다.

(가) 출석 통지서에 나타난 주장을 “정식으로” 읽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추방대상자가 가진 권리 및 의무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출석 통지서에 나타난 주장에 대하여 “인정” 할 수도 있다.

(나) 출석 통지서에 나타난 주장을 부인할 수 있으며,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한정시킬 수 있다.

(다) 추방되는 경우, 추방될 국가를 지정 혹은 지정거부할 수 있다.

(라) 추방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주장할 내용을 밝힐 수 있으며,

(마) 본재판까지 재판 준비에 걸릴 수 있는 시간의 개산(estimate)을 밝히고

(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사) 본인 및 증인을 위하여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통역은 법원에서 제공하며, 아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통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재판에는 20분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으며, 재판은 본재판이 아닌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예정시간보다 재판이 늦게 시작할 수 있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재판은 15분안에 끝날 수도 있으며 길어야 한시간이다. 재판에서는 가능하면 영어로 말하는 것이 좋다. 또한, 통역을 통하여 말을 할때, 통역인을 쳐다보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애초 질문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재판의 대부분을 진행하게 되며, 판사가 인적사항 등을 물어오면 답하면 된다. 신분증, 출석통지서 등은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비 재판이 끝나고 나면, 본재판이 있기 전까지 구제 수단을 위한 모든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신청을 듣기 위한 예비재판(Master Hearing)을 다시 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판사에 따라서는 모든 신청을 일단 받아 놓고, 본재판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심

판하기도 한다.

## (2) 본재판 (Individual Calendar Hearing)

본재판의 날짜는 예비재판에서 정해질 수 있다. 본재판은 논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국토안보부와 추방대상자가 서로 증거, 증인을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절차이다. 추방대상자는 구제(relief)를 신청한 경우, 구제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증인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며, 정부측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행할 수 있다.

먼저 추방대상자가 추방되어야 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사람은 정부(DHS)의 변호사이다. 정부측 변호사는 분명한(“clear, convincing, and unequivocal evidence”)증거로 추방대상자가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입증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다.

추방대상자가 추방에 대하여 구제(relief) 수단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거꾸로 추방대상자에게 옮겨지게 된다. 추방대상자가 된 사람이, 예를 들어,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주장한다면, 증거, 증인으로서 본인이 추방의 취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있다면 물론 변호사가 하겠지만, 추방에 대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 증인을 제시하고, 증거서류(exhibit)을 준비하며, 진술(pre-trial statement)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것은 재판의 형식을 띄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안에 이민판사가 없고 화상전화(tele-video)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증거 제시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의 태도 등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인 혹은 변호사가 재판에 직접 출정하기 어려워 화상전화, 일반 전화를 통하여 재판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행 비용,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본재판에 대한 심판은 이민판사가 증거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구두로 행하거나 차후 서면으로 통보한다.

## (3) 추방재판에 걸리는 시간

예비 재판에서 본재판을 잡는 날짜까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 또한 본재판 자체가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릴 수 있으며, 판결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항소하는 경우 다시 재판은 수개월에서 1년 넘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6. 추방으로부터의 구제



추방절차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추방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구제될 수 있으며,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증거로써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추방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 가. 추방 사유의 면제 (waiver)

미국으로부터 추방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자신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민법 규정 적용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면제에는 212(c), 212(h), 212(i), 212(k) 등이 있다.

#### 나.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 (1) 영주권자

영주권자가 된지 최소 5년이 경과하였으며, 미국에 최초 입국한 이후, 계속하여 7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중죄의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국가 안보의 이유로 추방당하는 것이 아닌 경우 추방의 취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가족이 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사실, 자신이 추방당하면 가족들이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 미군에 근무한 사실, 공동체에 봉사한 사실, (형사전과 기록보유자의 경우) 재활 프로그램을 받은 사실, 주위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 등은 추방의 취소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

##### (2) 비영주권자

미국에 계속하여(10년 동안 1회 90일 이상의 부재 혹은 부재의 총합이 180일을 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0년 이상 체류하였으며,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범죄, 사기 결혼, 서류 위조, 국가 안보 관련 사유로 추방절차에 회부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추방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다. 추방의 중지(구법)

1997년 4월 1일 이전에 추방절차에 회부된 자는 여전히 추방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7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여 온 사실, 좋은 품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 추방당하는 경우,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라. 신분조정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즉, 배우자, 자녀(21세 미만, 미혼), 부모(자녀가 21세 이상인 경우)의 경우, 불법체류 중인 상황에서도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취업, 투자, 위에 적시된 가족 초청 이외의 기타 가족 초청으로 인한 신분조정의 경우에 있어,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오픈되었다 하더라도 이민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마. 난민 신청

정치적 의견, 종교적 신념, 국적, 인종, 사회단체에의 가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난민 지위가 승인된 뒤 1년 이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난민과 비슷한 추방의 유예(withholding of removal)을 받을 수 있는데, 난민과는 달리 추방의 유예(중지)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고, 특정 1 국가에만 추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차이가 있다.

#### 바. 등록

드문 경우가 되겠지만, 1972년 1월 1일 이후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덕적 성품을 유지하고, 중죄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 사. 자발적 출국 (voluntary departure)

강제로 추방을 당하게 되면, 재입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낙인 없이 미국을 출국할 수 있는 것이 자발적 출국이다. 출국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중대한 추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난 5년 동안 도덕적 성품을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 하며, 이민 판사에 의하여 자발적 출국 허가를 받게 되면, 주어진 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 아. 재심 요청 (motion to reconsider)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이민판사가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잘못된 사실을 인정한 경우이다. 이러한 주장은 증거로서 뒷받침 되어야 하며, 재심 요청은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자. 재개 요청 (motion to reopen)

재판의 재개 요청은 재판이 끝난 후, 한번에 한하여(폭력, 가혹행위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예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을 통하여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의 재개 요청은 최종 추방판결을 받은지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추방의 취소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다) 단, 특별한 사정(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자녀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이 있는 경우, 최종 추방명령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개 요청을 할 수 있다.

## 이민법 용어

-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 비이민비자,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 혹은 가입국을 허가 받은 사람 및 서류미비자들이 “미국내에서”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이민비자(Immigrant visa) -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부여하는 비자. 최종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발부된다.
-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 F, H, J 등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부여하는 비자. 비자 기간이 종료하면 국적국으로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발부된다.
- 난민(asylum) - 인종, 종교, 국적, 사회단체에의 가입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충분한 사유가 있어 자신의 국적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가지 않으려 하는 사람
- 비자(visa) - 미국 “밖”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서류로서 여권에 붙여지게 된다. 비자는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로 나누어지며, 비자 갱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발부되지 않는다.
- 귀화(naturalization) - 출생 이후에 특정 국가의 국적을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밀입국(Entrance Without Inspection, EWI) - 입국허가(admission) 혹은 가입국허가(parole)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 여권(passport) - 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행서류로서, 소지자의 이름, 국적, 유효기간 등이 나타난다.

## XXI. 정지, 체포, 구금 시 행동 준칙



## 1. 신체적 속박

신분을 막론하고 정지, 체포, 구금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때 특히 서류미비자의 경우 그 행동 요령의 숙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최초의 정지, 체포, 구금시 잘못된 대응으로 추방을 당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류미비자의 경우를 가정하여 경찰(FBI 포함), 이민국 직원에 의하여 정지, 체포, 구금되는 경우 그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여기서 이민국 직원이라 함은, ICE, 국경 수비대 직원 등을 말한다.

## 2. 정지 및 질문 시

### 가. 침착하게 대응할 것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이 정지 시키거나 질문을 해오는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을 보고 도망하거나 저항하거나 다투려고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도 안된다.

### 나.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이 질문을 해오는 경우, 묵비권(right to remain silent)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민자 신분을 물어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연방 이민법에서는 당신이 18세 이상인 경우, 이민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가 이민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이민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줄 수 없다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다("I want to remain silent")고 말하면 된다. 이민자 신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서류를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협박, 강요, 회유 등으로 이를 밝히려는 경우,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도록 해야 한다. 묵비권 행사 이후, 협박, 강요 등으로 획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주법에 따라서는 묵비권을 행사 하더라도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다.

### 다. 수색에 대하여 동의할 필요는 없다.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이 당신에 대하여 몸수색 혹은 근처(집)의 수색(search)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은 당신이 무기(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몸의 외부를 더듬어(pat down) 볼 수 있다. 다만, 무기를 확인하기 위한 외포 검사에 그쳐야 하며, 흉기를 숨길 수 없는 곳까지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머니를 더듬어 보는데 그쳐야 하는 것이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



는 모든 것을 내어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를 넘어 수색을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국경수비대 직원이나 입국 심사 직원은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 추가적인 수색을 행할 수 있다.

#### 라. 차량의 정지시 안전하게 행동할 것

만일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중에 정지를 당하였다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정지하도록 한다. 야간인 경우, 실내등을 켜고 경찰관이 다가오면 유리창문을 내린다. 손은 경찰관이 잘 볼 수 있는 위치, 예를 들면 핸들 위에 두고 있어야 한다.

경찰관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증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이 차량 내부를 수색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관 판단으로 당신 차량 내부에 범죄에 관련된 물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내부를 수색할 수 있다.

이때에도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이 질문을 하는 경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승자의 경우, 떠나도 되느냐고 묻고 현장을 떠날 수 있다고 하면 조용히 현장을 떠날 수도 있다.

### 3.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이 집을 찾아온 경우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 온 경우, 영장(warrant)이 없는 경우 반드시 집안으로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경찰관도 동의를 구한 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영장을 문아래 틈새로 밀어 넣어 달라고 하거나 창문에 붙여 읽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된다.

단,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체포영장의 대상이 된 사람이 집안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관은 가정집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수색 영장(search warrant)이 발부된 경우에도 수색의 대상이 된 집, 사무실 등은 경찰관이 동의 없이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색 영장에 나타난 부분, 항목에 대한 수색만 허용되며 무제한의 수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색 영장에 “거실”에 대한 수색만 표시되어 있다면 거실만 수색할 수 있을 뿐 다른 곳을 수색하여서는 안되며,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수색영장을 받았다면, 오토바이가 있을 수 없는 책상 서랍 안 같은 곳은 수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민국이 발부한 추방 영장(Warrant of removal/deportation)만으로는 가정집에 허락 없이 입장할 수 없다.

또한 체포, 수색 영장이 있더라도 당신이 경찰관/이민국 직원에 협조하여야 하거나 묵비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일 묵비

권을 포기하고 경찰관/이민국 직원과 이야기 하고 싶다면 할 수는 있다.

#### 4. 경찰관이나 이민국 직원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

##### 가.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경우

체포되는 경우, 경찰관은 이미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항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신변에 위험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비록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다투거나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체포되는지 여부를 경찰관에게 확인하는 것("Am I under arrest?")은 행동을 결정할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좋은 생각이다.

체포되는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 변명이라든지 상황 설명등으로 체포위기를 면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관이 서류에 대하여 서명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서류라도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에 따라서는 체포되는 경우 무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곳이 많으므로, 스스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공익 변호사(public defenders)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체포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 직장 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연락처는 외우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좋다. (핸드폰은 압수당할 수 있다) 나중에 구치소에 구금되는 경우에도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치소에서라도 시내 전화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변호사를 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은 소추(charge)된 범죄가 "추방"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답변협상(plea bargaining)을 통하여 유죄를 인정할 범죄가 추방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벼운 범죄로도 단지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추방절차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답변협상을 통하여 인정할 범죄가 추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이민자 신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변호사와 이야기하여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는 아무런 답변도, 아무런 서명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혹시 잘 알지 못하는 서류를 주며 서명하라고 요청하는 경우, 통역(interpreter)을 요청하여 그 내용을 파악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 나. 이민국 직원에 의하여 체포, 구금되는 경우

이민국(ICE)에 의하여 체포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경우와 같이 정부에서 공공변호사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변호



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 무료 혹은 저렴한 변호사의 명부(list)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민변호사 중에는 무료로 봉사하는 변호사가 상당수 있어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체포, 구금된 상황에서도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부당하게 체포되었거나 체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족에게는 연락하여 체포, 구금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족입장에서 구금된 장소를 알고 있어야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기 전에는,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등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 5. (무료) 변호사의 도움

아래 사이트에 가보면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는 8 CFR 1003.61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추방절차에 회부된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도움이 될 수 있다.

<http://www.justice.gov/eoir/probono/states.htm>

## XXII. 안전 공동체 프로그램



## 1. 의의

이민국(ICE)과 지역 경찰기관이 약정으로 협력하여 체포, 체포, 구금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을 채취한 후, 이를 FBI 및 국토안보부(DHS) 데이터 베이스의 자료와 비교하여, 이민자의 신분을 확인하며, 이미 추방대상자가 되었거나 불법체류자이거나 체포, 구금의 사유가 추방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민국(ICE)에 자료 및 신병을 인계하여 추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의 범죄 기록, 이민관련 기록이 모두 검색되는 것이다. 검색 결과 추방사유가 발견되면 ICE에서는 신병 확보(detainer)를 요청 하게 된다.

지문이 국토안보부(DHS)의 자료와 비교하여 추방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ICE에의 통보가 이루어지며 이민국(ICE)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경찰기관에서 이민법을 집행할 수는 없다) 이민국에서도 모든 피의자 및 범죄인에 대하여 추방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는 예산, 인력상의 제한이 있으므로, 가장 심각한 범죄, 가장 폭력적인 범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테러리스트) 등에 주력하여 추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2. 범죄의 구분

국토안보부에서는 범죄를 그 심각성에 따라 세등급으로 구분하여, 가장 위험한 범죄인 “Level 1”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의심을 받아 체포된 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Level 1에 해당하는 범죄는, 심각한 마약 범죄, 국가 안보 관련 범죄,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등이다. 하지만 이민국에의 인계, 추방은 이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우선순위에서 앞선다는 것이다. 따라서 “Level 2”, “Level 3”에 해당하는, 절도, 사기, 기타 범죄도 안전공동체 프로그램(Secure Community Program)에 따라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 ※ 범죄의 등급 구분

#### 1. Level 1

이민법 101(a)(43)상의 강력범죄(aggravated felony), 중죄(felony)가 둘 이상인 경우

#### 2. Level 2

하나의 중죄(felony) 혹은 셋 이상의 경죄(misdemeanor). 경죄는 법정형이 1년 미만인 범죄를 말한다.

#### 3. Level 3

경죄(misdemeanor)가 하나 혹은 둘인 경우

### 3. 현황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물론 위험한 범죄자 외국인을 신속하게 포착하여 추방절차에 회부하여 추방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보다 안전하게(secure)하자는 것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전국을 기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관할구역의 비율은 20%를 약간 넘긴 상태이나, DHS에서는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2013년까지 전국에 100%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찰기관은 전국적으로 600여 기관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 가. 경죄의 경우에도 다수 추방

비록 애초에 안전공동체 프로그램을 도입한 의도는 강력범을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운영되는 결과를 보면, 경죄의 경우 특히 범죄 전과가 전혀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도 다수가 추방을 당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범을 많이 적발하여 추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기록을 매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나. 참여 거부 불가

안전 공동체 프로그램은 국토안보부와 주정부간 혹은 경찰기관과의 약정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반발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San Francisco가 대표적인 예이다. 국토안보부에서는 처음에 자치단체가 선택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꾸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범죄 기록을 전혀 국토안보부로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하였다. 2013년까지 법무부의 범죄기록과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기록이 통합될 예정인데, 이때는 범죄기록이 이민자 기록과 함께 검색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록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다. 피의자들을 상대로 실시

이 프로그램은 유죄가 확정되어 형무소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의 혐의를 받고 체포된 사람으로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유죄가 “추정”된 상태에서 지문자료가 국토안보부로 보내지는 것이다. 이들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추방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것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선량한 서류미비자라도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추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중범자”들을 집중적으로 추방하

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및 국토안보부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이 구실을 달아 체포하게 되면 누구든 추방절차에 회부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그 재량을 남용하게 되면, 인종차별적으로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부랑자 등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으로 체포를 남용하게 되면 특정 인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람들은 국토안보부의 신병 유보(detainer) 결정, 혹은 오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없는 상태이다.

#### 라. 참여 현황

287(g) 프로그램이 적용범위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데 반하여 안전 공동체 프로그램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013년까지 전국의 50개 주 3,100여개의 감옥에 모두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XXIII. 287(g)



## 1. 의의

287(g) 프로그램은 1996년 이민개혁법(IIRAIRA)에 기인한 것으로 주 경찰, 지역 경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여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주 경찰, 지역경찰은 먼저 이민집행국(ICE)과 협정(MOA)을 체결하고 경찰관들이 이민집행국에서 수주간 이민법의 집행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 교육을 받은 경찰관은 이민법 위반자를 체포, 구금, 이민국에 인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상 주 경찰, 지역 경찰이 이민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이민법 위반사범이 있어도 석방하고 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연방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주정부, 지방정부가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 2월 현재 전국적으로 26개 주 71개 경찰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287(g) 교육을 받은 경찰관은 1,120명을 넘어서고 있다. 단, 오바마 행정부이래 287(g) 프로그램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안전 공동체(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안전 공동체 프로그램이 범죄자들에게 집중하는데 반해, 287(g) 프로그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정책적으로 범죄자인 이민자들에게 예산이 집중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 2. 운영 절차

### 가. ICE 교육

ICE와 경찰기관과의 협정이 체결되면 이민단속 업무를 맡을 경찰관들이 이민법 집행에 관한 4주간의 교육을 먼저 받게 된다. 교육은 FLETC(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에서 이루어지며, 이곳은 ICE의 신입 직원들이 교육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교육 내용은 이민법에 관한 지식, 경찰관의 권한 및 책임, 인권 관련 법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 등이 포함된다.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한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 나. 287(g) 경찰관의 권한

ICE의 교육을 받은 경찰관은 사실상 이민국 직원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법적으로 그 권한의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 ICE 직원을 통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 (1) 국토안보부(DHS) 데이터 베이스 확인; 과거의 추방, 체포, 이민법 위반, 기타 이민국과의 접촉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2) 인터뷰; 경찰관은 외국인의 이민자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받는다. 따라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미국에 어떻게 입국하였는지,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하였는지 아닌지를 물어볼 수 있다.



- (3) 데이터 입력; 이민국(ICE)의 자료 데이터 베이스라 할 수 있는 “ENFORCE”에 자료를 입력한다. 이 자료에는 이민국과 접촉한 사람에 관련된 정보, 구금, 추방된 사람들의 기록이 모두 보관되어 있다. 경찰관은 이 데이터 베이스에 체포된 사람의 인적사항, 체포된 경로 및 사유, 죄목, 과거의 이민법 위반, 출신 국가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 (4) 신병 유보 명령(detainer) 발부; 287(g) 경찰관은 ENFORCE를 통하여 ICE에서 발부하는 신병유보 명령(detainer)을 발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실제 신병유보 명령은 경찰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ICE 관리자가 내리게 된다. 신병 유보명령을 받은 사람은 경찰에서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ICE에서 신병을 인수하게 된다.
- (5) 추방절차의 개시; 287(g) 경찰관은 심지어 ENFORCE를 통하여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 NTA)를 발부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287(g) 경찰관은 이민법 위반, 예를 들면, 밀입국, 비자기간 초과, 비자 조건 위반등이 발견되는 경우 추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 (6) 자발적 출국 권유; 강력범(agggravated felony)이나 테러 관련범(terrorist)이 아닌 추방대상자의 경우, 287(g) 경찰관은 해당 외국인으로 하여금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권유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출국하게 되면, 추방재판을 거쳐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경우에 비하여 입국제한에 있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직접 자발적 출국 명령을 내릴 수는 없으며, ICE 직원 및 이민판사를 통하여 자발적 출국 명령을 받는 것이다.
- (7) 신병 처리에 관한 의견 제시; 287(g) 경찰관은 심지어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이민집행국(ICE)이 해당 외국인을 구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석금(bond)을 내고 석방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ICE 관리 및 이민판사가 최종적으로 신병처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 (8) 신병의 인도; 범죄로 체포된 외국인의 경우 먼저 형의 집행을 받게 된다. 그 이후에 이민국(ICE)으로 신병이 인도되는 것이다. 형을 마치게 되면 287(g) 관리들은 48시간까지 구금하고 있다가 ICE에 그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 다. 권한 행사 시기 및 방법

287(g)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감옥(jail) 외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Task Force)와 감옥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Jail Enforcement)이다. 감옥 외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범죄 혐의로 외국인이 의심을 받는 경우 현장에 287(g) 경찰관이 투입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경찰관이 287(g)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만일 범죄 현장에서 서류미비자로 의심받는 사람이 있다면 287(g) 교육을 받은 경찰관을 현장에 보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감옥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입건(booked)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입건과 동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추방대상자로 판명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ICE와 공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기도 하며, ICE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단속활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경찰기관에 따라 ICE와 맺은 협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활동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3.287(g) 경찰기관 (2010년 10월 29일 현재)

ICE 사이트(<http://www.ice.gov/news/library/factsheets/287g.htm#signed-moa>)에 나타난 287(g) 협정을 맺은 경찰기관은 아래와 같다. 맨 뒤의 날짜는 협정이 체결된 날짜를 의미한다. “JAIL”은 Jail Enforcement 형태라는 의미이고, “TASK FORCE”는 Task Force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 두가지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

ALABAMA Alabam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TASK FORCE 2003-09-10  
ALABAMA Etowah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8-07-08  
ARIZONA Arizona Department of Corrections JAIL ENFORCEMENT 2005-09-16  
ARIZONA Arizon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TASK FORCE 2007-04-15  
ARIZONA City of Mesa Police Department JAIL & TASK FORCE 2009-11-19  
ARIZONA City of Phoenix Police Department TASK FORCE 2008-03-10  
ARIZONA Florence Police Department TASK FORCE 2009-10-21  
ARIZONA Maricopa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7-02-07  
ARIZONA Pima County Sheriff's Office JAIL & TASK FORCE 2008-03-10  
ARIZONA Pinal County Sheriff's Office JAIL & TASK FORCE 2008-03-10  
ARIZONA Yavapai County Sheriff's Office JAIL & TASK FORCE 2008-03-10  
ARKANSAS Benton County Sheriff's Office JAIL & TASK FORCE 2007-09-26  
ARKANSAS City of Springdale Police Department TASK FORCE 2007-09-26  
ARKANSAS Rogers Police Department TASK FORCE 2007-09-25  
ARKANSAS Washington County Sheriff's Office JAIL & TASK FORCE 2007-09-26  
CALIFORNIA Los Angeles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5-02-01  
CALIFORNIA Orange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6-11-02  
CALIFORNIA Riverside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6-04-28  
CALIFORNIA San Bernardino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5-11-19  
COLORADO Colorado Department of Public Safety TASK FORCE 2007-03-29  
COLORADO El Paso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7-05-17  
CONNECTICUT City of Danbury Police Department TASK FORCE 2009-10-15  
DELAWARE Delaware Department of Corrections JAIL ENFORCEMENT 2009-10-15  
FLORIDA Bay County Sheriff's Office TASK FORCE 2008-06-15

FLORIDA Collier County Sheriff's Office JAIL & TASK FORCE 2007-08-06  
FLORIDA Florida Department of Law Enforcement TASK FORCE 2002-07-02  
FLORIDA Jacksonville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8-07-08  
GEORGIA Cobb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7-02-13  
GEORGIA Georgi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TASK FORCE 2007-07-27  
GEORGIA Gwinnett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9-10-15  
GEORGIA Hall County Sheriff's Office JAIL & TASK FORCE 2008-02-29  
GEORGIA Whitfield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8-02-04  
MARYLAND Frederick County Sheriff's Office JAIL & TASK FORCE 2008-02-06  
MINNESOTA Minnesot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TASK FORCE 2008-09-22  
MISSOURI Missouri State Highway Patrol TASK FORCE 2008-06-25  
NEVADA Las Vegas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JAIL ENFORCEMENT 2008-09-08  
NEW JERSEY Hudson County Department of Corrections JAIL ENFORCEMENT 2008-08-11  
NEW JERSEY Monmouth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9-10-15  
NEW MEXICO New Mexico Department of Corrections JAIL ENFORCEMENT 2007-09-17  
NORTH CAROLINA Alamance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7-01-10  
NORTH CAROLINA Cabarrus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7-08-02  
NORTH CAROLINA Durham Police Department TASK FORCE 2008-02-01  
NORTH CAROLINA Gaston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7-02-22  
NORTH CAROLINA Guilford County Sheriff's Office TASK FORCE 2009-10-15  
NORTH CAROLINA Henderson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8-06-25  
NORTH CAROLINA Mecklenburg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6-02-27  
NORTH CAROLINA Wake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8-06-25  
OHIO Butler County Sheriff's Office JAIL & TASK FORCE 2008-02-05  
OKLAHOMA Tulsa County Sheriff's Office JAIL & TASK FORCE 2007-08-06  
RHODE ISLAND Rhode Island State Police TASK FORCE 2009-10-15  
SOUTH CAROLINA Beaufort County Sheriff's Office TASK FORCE 2008-06-25  
SOUTH CAROLINA Charleston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9-11-09  
SOUTH CAROLINA Lexington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10-08-19  
SOUTH CAROLINA York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7-10-16  
TENNESSEE Davidson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7-02-21  
TENNESSEE Tennessee Highway Patrol / Department of Safety TASK FORCE 2008-06-25  
TEXAS Carrollton Police Department JAIL ENFORCEMENT 2008-08-12  
TEXAS Farmers Branch Police Department TASK FORCE 2008-07-08

TEXAS Harris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8-07-20  
UTAH Washington County Sheriff Office JAIL ENFORCEMENT 2008-09-22  
UTAH Weber County Sheriff's Office JAIL ENFORCEMENT 2008-09-22  
VIRGINIA Herndon Police Department TASK FORCE 2007-03-21  
VIRGINIA Loudoun County Sheriff's Office TASK FORCE 2008-06-25  
VIRGINIA Manassas Park Police Department TASK FORCE 2008-03-10  
VIRGINIA Manassas Police Department TASK FORCE 2008-03-05  
VIRGINIA Prince William County Police Department TASK FORCE 2008-02-26  
VIRGINIA Prince William County Sheriff's Office TASK FORCE 2008-02-26  
VIRGINIA Prince William-Manassas Regional Jail JAIL ENFORCEMENT 2007-07-09  
VIRGINIA Rockingham County Sheriff's Office JAIL & TASK FORCE 2007-04-25  
VIRGINIA Shenandoah County Sheriff's Office JAIL & TASK FORCE 2007-05-10

## XXIV. 형사절차의 간략한 설명



서류미비자도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자체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이민법상 발생할 수 있는 결과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혼자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미국의 형사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요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단, 아래에서 설명하는 절차는 주에 따라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 1. 최초의 출두(First Appearance)

최초 체포된 후 24시간 혹은 48시간 이내에 판사 앞에 출두하게 된다. 판사는 피의자가 가진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 주며, 소추(charge)된 범죄를 그 법정형과 함께 알려준다. 또한, 보석금을 책정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한다. 최초의 출두에서 공공변호사(public defender)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 보석(bond)

보석금은 석방된 이후 재판에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보석금은 직접 법원에 지불하거나 보석금 납입 기관(bondsman)을 통하여 대신 내도록 할 수 있다. 보석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석금을 낮추기 위한 재판(hearing)을 요청할 수 있다. 납입기관을 통하여 대신 보석금을 내게 하는 경우, 보석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할 뿐 아니라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저당(collateral)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석금을 모두 몰수 당하는 경우, 저당잡힌 재산을 통하여 구상(求償)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 이민국(ICE)에 의하여 추방대기(immigration hold)를 받은 경우, 형사상 보석금은 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추방대기로 인하여 석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석으로 석방되더라도, 거주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되기도 한다. 단, 이민국 구치소(immigration detention)로 옮겨지는 경우, 보석금 책정을 위한 재판(hearing)을 요청할 수 있다.

## 2. 유죄인부 절차(Arraignment)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묻는 절차이다. 유죄인부 절차가 있기 전 답변협상(plea bargaining) 절차를 거친다. 어떤 죄목 혹은 형기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 검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다.

### ※ 답변협상(plea bargaining)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고, 피고인은 대신 가벼운 범죄,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게 해주는 절차이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답변협상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인정했다가 추방 절차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인정하는 범죄가 이민법상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도 있다. 체포되는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을 찍고 이를 국토안보부의 자료와 대조하는 프로그램, 일명 “안전 사회”(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기관도 상당수에 이른다. 또한, 이민법에 관한 교육(287(g))을 받은 지역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고 서류미비자를 이민집행국(ICE)에 인계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찰기관도 많아, 단순한 불법체류 및 경죄(misdemeanor)로 인하여 추방절차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 변호사의 설명 의무

연방 대법원은 2010년 3월 31일 판결(Padilla v. Kentucky)에서 변호사는 범죄로 소추된 이민자에 대해서 유죄인정과 추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항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중죄를 인정하는 경우, ICE에서 신분을 확인하면 “추방 대기”(immigration hold) 조치를 내리게 된다. 중죄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 영주권자 까지도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추방대기” 조치를 받게 되면, 형기를 마치는대로 추방절차에 회부된다. 범죄의 인정은 유죄 인정(guilty plea) 및 다투지 않음(no contest) 두가지가 있으며, 다투지 않음으로 답변을 하여 비록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민국에서는 유죄의 인정으로 간주하므로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답변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기소유예 조치라 할 수 있는 유예 프로그램(“Diversion Program”)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답변협상으로 가능하다. 유예 프로그램은 실형 대신 교육이라든지, 봉사활동 등을 받고,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보호관찰(probation)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 ※ 추방대기(immigration hold, immigration detainer)

추방대기라 함은 이민국 직원이 추방을 위해 외국인을 석방하지 못하도록 대기(hold)시켜 놓는 조치를 말한다. 이민국(ICE) 직원은 수시로 지역 경찰의 감옥(jail)을 돌며 추방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방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추방대기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들이 추방대기를 내리는 대상자는 중죄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 모든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체포된 서류미비자들이다. 또한, 이미 추방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추방대기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추방명령을 이미 받은 사람의 경우, 이민국(ICE)에서는 이민판사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시 추방시킬 수 있



다.

### 3. 재판

답변협상 과정 및 유죄 인부 절차에서 무죄(not guilty)를 주장하면 재판에 회부된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혐의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beyond reasonable doubt)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증거, 증인을 통하여 판사 혹은 배심원에게 최소한 “무죄일 수 있다”는 정도의 의심을 갖게 하여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

재판은 복잡한 증거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실제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합법적” 증거로써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죄, 무죄가 결정되므로 증거, 증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4. 항소

재판 결과 유죄의 판결을 받는다면 항소할 기회가 주어진다.

## XXV. SSN(소셜번호)과 신분도용



## 1. SSN(social security number)의 의미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이 없는 미국에서는 SSN이 사실상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애초 SSN은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의 수혜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신분확인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SSN은 이제 은행, 보험, 의료기록, 근로자 파일, 각종 공과금 부과 등에 있어 상당수 기관들이 요구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이 SSN 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수 서류미비자들이 이 SSN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SSN이 없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 보기로 한다. 또한, 적지 않은 서류미비자들이 SSN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자신의 SSN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SSN은 SS-5 양식(Form SS-5)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 SSN 의 종류 및 형태

세가지 종류의 SSN이 있다. 첫번째는 보통의 SSN으로서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발부되는 것으로 SSN 카드에는 본인의 이름 및 SSN이 나타난다. 이것은 노동허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다.

두번째는 “고용허가 없는 카드”(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표시되는 것이다. 이것은 I-9 과 함께 제출되는 “List C”의 서류로 사용될 수 없다. 이것은 특정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연방법, 주법에 따라 일정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 번호를 가질 수 있다.

세번째는 “국토안보부가 정한 노동에 유효”(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한 SSN이다. 이것은 I-9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노동허가서(EAD)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H1B 비자 소지자의 경우와 같이,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서(EAD)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노동허가에 근거하여 SSN을 신청할 수 있다.

SSN의 맨 앞 세자리 숫자는 지역을 표시하였다. 1973년 이전에 SSN은 전국의 사회보장국 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에서 발부하였는데, 그 사무소의 고유번호가 앞의 세자리 번호가 되었다. 1973년 이후 중앙 사무소에서 SSN을 발부하면서 우편 번호에 따라 지역번호를 부여하였으나 현재는 무작위로 부여하고 있다. 단, 지역번호로서 000, 666 그리고 900에서 999사이의 번호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734에서 749사이 그리고 772번 이상의 번호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두번째 두자리 번호는 그룹 번호(group number)이고 세번째 네자리 번호는 일련번호(serial number)이다.

지역번호, 그룹번호 및 일련번호가 각각 모두 0인 숫자는 사용되지 않으며, 987-65-4320에서

987-65-4329사이의 번호는 광고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SSN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리하여 SSN이 유효한 번호인지 확인시켜 주는 사이트도 등장하였다. <http://www.SSNvalidator.com/>가 그 한 예이다.

SSN은 본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가장 신뢰성 있는 수단이지만, 한편 신분도용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SSN을 받은 사람은 가능한 한 SSN의 사용을 자제하여 타인에게 노출,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용이 잦으면 잦을수록 타인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3. SSN의 의무적 사용

SSN 고유의 목적상 SSN의 사용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세법(Internal Revenue Code) 6109(d)에서는 “사회보장법(SSA)에 따라 발부된 SSN은 세법의 목적상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로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의 환급, 세금 내역서 발부 혹은 기타 세금 관련서류에는 SSN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세금의 공제 신청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같이, 세금 환급 신청이 타인을 위하여 접수되는 경우 등에는, 본인의 SSN이 타인의 서류에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용주와의 관계에 있어, 연방 소득세 혹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유보(withholding)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SSN을 의무적으로 고용주에 제공하여야 한다.

### 4. SSN의 문제점 및 사용 축소

#### 가. 문제점

SSN의 가장 큰 취약점은 단순히 그 번호와 소지자의 이름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SSN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번호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도용의 위험에 상존하고 있다. 특히 주정부 기록, 법원기록 등에 SSN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은행, 보험 등의 업체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 도용”을 노리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즉, 이미 많은 SSN이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부 기관에서는 “신분도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SSN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

SSN을 도용한 사람은 그 소셜번호 및 번호 소유자 이름을 이용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각종 공공금 납부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 행위가 모두 범죄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일부 서류미비자의 경우 고용주에 제공하여야 하는 I-9에 소셜번호를 기입하기 위하여 타인의 SSN을 도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중죄(felony)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매년 약 8백만 내지 9백만건의 신분 도용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신분도용은 신분도용 금지법(“Identity Theft and Assumption Deterrence Act, Theft Penalty Enhancement Act”) 등의 연방 법률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주에서도 대부분 중죄(felony)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중죄는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이다.

#### 나. 사용축소

과거 일부 주에서 SSN을 운전면허증에 표시되는 식별번호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연방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SSN 보호법(The Social Security Protection Act of 2010)에 따르면, 연방, 주, 지방정부 기관에서는 체크(check)을 발부하며 그 체크(check)상에 SSN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SSN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기도 하다.

SSN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행위도 장려할 것이 못된다. 지갑의 도난, 분실로 인하여 타인의 손에 그 카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쩔 수 없이 지갑에 넣고 다녀야 한다면, 사본을 만들어 끝자리 네자리를 지운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끝자리 네자리는 어렵지 않게 암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SSN은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금 납부시,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은행, 부동산 거래, 교통국(DMV)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 법적으로 SSN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SSN의 제시 요구

SSN이 법으로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SSN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묻고 SSN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도록 하여야 한다. 직장에 원서를 제출할 때에도, 인터뷰를 할때나 범죄경력 조회를 할 때 등 채용이 가능해 보이는 시점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체크(check)을 지불하며 체크(check)상에 SSN을 적는 습관은 좋지 않으며, 운전면허증에 SSN이 표기된 것이 있다면,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SSN의 제출이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of 1974)에서 모든 정부 기관, 즉, 연방, 주, 지방정부가 SSN을 요구하는 경우 “안내서”(disclosure)를 보여주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SSN을 요구하는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며, SSN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제공된 SSN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안내서를 통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때 법적으로 SSN의 제공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기관에서는 SSN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혜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업체에서 SSN을 제공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일부

주에서 SSN의 미제공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등 사기업에 대해서는 SSN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 기업에 대하여 SSN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IRS에 통보가 요구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거래시 IRS의 규정에 따라 SSN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다. SSN은 IRS에서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부 단체 보험(Group Health Plan) 회사에서 메디케어(Medicare) 지급과의 조정을 위하여 SSN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회사의 경우 SSN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SSN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SSN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메디칼”(MediCal)이나 “메디케어”(Medicare)에서는 SSN을 요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신청시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SSN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용조사 회사, 즉, Experian, Equifax, TransUnion 등에서도 SSN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SSN을 통하여 신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SSN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특별히 조심하여야 하는데, 먼저 거래 상대회사가 이미 잘 알려진 명성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보안 인증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보의 제공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회사의 보안정책(privacy policy)을 확인하여 정보의 보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서도 SSN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대학에서 연방법(FERPA)에 따라 연방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교내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SSN의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다.

## 5. SSN이 도용 당한 경우의 조치

만일 나의 SSN을 누군가 도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되면, 즉시 신용조사기관(credit bureau, TransUnion (800) 680-7289; Equifax (888) 766-0008; Experian (888) 397-3742)에 신고하여 사기(fraud)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한, 신용의 동결(freeze)을 요청하여 신용카드 개설, 대출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추가로 대출 등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인에게 통보가 이루어져 본인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또한, 신용보고서의 추이를 상당기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SSN 도용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경찰 및 연방거래위(Federal Trade Commission, FTC's Identity Theft Hotline: (877) IDTHEFT (877-438-4338))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세한 대책은 <http://www.privacyrights.org/fs/fs17a.htm> 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SSN 도용의 경우, 사회보장국(SSA fraud hotline: (800) 269-0271)에도 통보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SSN의 도용으로 인하여 더 이상 SSN의 사용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SSA에 SSN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SSA에서는 피해자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SSN의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 6. SSN의 보호 (요약)

- 가. 반드시 법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만 SSN을 제공하도록 한다.
- 나. SSN을 신용카드, 체크(check), 운전면허증 등에 기록, 표시하지 않는다. 또한, SSN을 인쇄하여 지갑에 넣고 다니지 않는다.
- 다. SSA의 보고서(Social Security Personal Earnings and Benefit Estimate Statement (PEBES))를 잘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거래가 없는지 보도록 한다.



## XXVI. 전자 노동허가 확인(E-Verify)



## 1. E-Verify의 운용

E-Verify는 고용주로 하여금 인터넷 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자격(Employment eligibility)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을 말한다. 국토안보부에서는 사회안전국(SSA)과 협력하여 SSN(Social Security Number) 및 이민자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해 놓고, 고용주는 I-9을 통하여 받은 근로자의 정보를 여기에 비추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SSA의 정보가 4억 5천만건에 이르고, 국토안보부의 정보가 8천만 건에 이른다고 한다. I-9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입력하여 데이터 베이스상의 기록과 일치하게 되면 노동자격을 확인받게 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8일간의 시간을 주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E-verify의 사용은 고용주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겨져 있으나, 2009년 9월 8일 이후에는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는 업체 및 그 하청업체는 모두 E-verify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연장하고자 하는 고용주도 반드시 E-Verify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 도시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E-verify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곳도 있다.

## 2. 사용현황

현재 약 24만의 고용주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매주 1,400의 고용주들이 추가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어 점점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Maryland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기관인 “Westat”에 따르면, E-verify를 사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해서도 사술로써 노동허가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고용에 종사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허가가 없으면서도 신분도용, 서류위조 등의 방법으로 절반 이상의 경우에 있어 무사히 E-verify를 통과하였다는 것이다.

즉, E-verify의 정확성을 테스트 해본 결과,

- 1) 노동허가가 있는 사람이, 노동허가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전체의 93.1%로 가장 큰 비율이었으며,
- 2) 노동허가가 있는 있는 사람이 노동허가가 없는 것으로 애초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전체의 0.7%였으며,
- 3)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이 노동허가가 있는 것으로 나온 경우가, 전체의 3.3 %,
- 4)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이 노동허가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경우가 전체의 2.9% 였다.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 노동허가가 실제 없으면서 노동허가가 있는 것으로 잘못 나타난 비율이 노동허가가 없으면서 노동허가가 없는 것으로 제대로 나타난 비율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즉,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들의 전체 비율 6.2% 중에, 노동허가가 있는 것으로 잘못 판정을 받은 비율(3.3%)이 정확하게 판정을 받은 비율(2.9%)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비록 노동허가가 있는 사람이 E-verify를 통과하는 비율이 99%이상이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는 비율이 96%에 이르지만,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이 E-verify를 통과하는 이 부정확성에 대하여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허가가 없으면서 노동허가가 있는 것으로 E-verify를 통과한 경우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위조된 “출생 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정당하게 신분증을 받아낸 경우, 예를 들면 출생 증명서를 위조하여 시민권자가 아니면서도 시민권자 인 것처럼 여권등을 받아내는 방법이다. 이것은 범죄로서 중죄(felony)에 해당한다.

2) 노동허가증 서류등을 직접 위조, 변조하는 경우, 즉, 노동허가증에 나타난 이름 등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범죄로서 중죄에 해당한다.

3) 진정한 서류를 돈으로 사거나, 빌리거나, 훔쳐서 사용하는 경우, 남의 신분증, 노동허가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것도 범죄로서 중죄에 해당한다.

4) 고용주가 노동허가 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용주가 노동허가가 있는 사람들의 서류를 대신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경우이다. 다른 사람의 서류를 대신하는 것도 범죄로서 중죄에 해당한다.

한편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신분 도용 및 서류 위조, 변조등을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민국에서는 고용주들로 하여금 노동허가증의 사진과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상의 사진(이미지)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hoto Tool, 2007년 9월 25일 시작) 이민국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앞으로 여권 사진 및 주(state) 운전면허증의 사진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이미 도용당한 SSN(Social Security Number)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이 고용을 신청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노동허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의 SSN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잠금(lock) 상태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도 최근 도입하여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물론 잠금 상태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 3. 주별 운용 현황

E-Verify가 고용주의 자발적인 참여에 맡겨져 있는 가운데, 일부 주, 도시에서 이를 의무적으

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일부 고용주에게 한정되는 경우와 모든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 ☞ Arizona

아리조나의 경우, “Legal Arizona Workers Act”로 인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모든 고용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E-verify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고용주의 5.6%만이 E-verify에 등록하고 있다.

#### ☞ California

현재는 E-verify를 사용하도록 하는 주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의원들이 추진하고 있기는 하다. 또한 일부 시의회에서 조례(ordinance)를 통하여 고용주들로 하여금 E-verify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Mission Viejo, Temecula, Murrieta, Riverside, Santa Maria(시 근로자 채용시), Lake Elsinore, Wildomar, Lancaster 등이 그 예이다.

#### ☞ Colorado

HB 1343(2006) 및 S.B. 193(2008)에 따르면,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은 근로자의 노동자격을 E-verify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Georgia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주정부와 계약을 하는 모든 고용주는 새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노동자격을 E-verify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 Illinois

일리노이 주에서는 입법(Illinois Right to Privacy in the Workforce Act)을 통하여 일리노이의 고용주로 하여금 E-verify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E-verify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에서는 이 법률에 대하여 연방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IIRIRA))에 위반된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9년 3월 12일,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이 법률이 연방법률의 우위(Supremacy Clause)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 ☞ Mississippi

“Mississippi Employment Protection Act”에서는 모든 미시시피 고용주로 하여금 E-verify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 수에 따라 사용 시기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즉, 250명 이상 고용하는 고용주는 2008년 7월 1일, 100명에서 249명까지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1일, 30명에서 99명까지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1일, 30명 이하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2011년 7월 1일부터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Rhode Island

로드 아일랜드에서는 2008년 Carcieri 주지사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하여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E-verify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2011년 Chafee 주지사는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하여 이것을 뒤집어 행정기관에서 E-verify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 South Carolina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는 업체로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E-verify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2009년 7월 1일 이후, 100인 이하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모두 E-verify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기업체라도 연방법에 따라 노동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는 업체는 2009년 7월 1일 이후에는, E-verify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운전면허증, 신분증(ID Card)을 가지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만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 ☞ Utah

201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기업체라도 15인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서는 노동자격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Virginia

주 정부기관은 2012년 12월 1일까지 E-verify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 XXVII. Tax ID (ITIN) 만드는 방법





## 1. ITIN의 의의

서류 미비자라 하더라도 SSN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SSN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SSN이 없고 SSN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연방) 세금을 보고(return)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이 필요한데,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발부받으면 SSN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ITIN을 처음으로 신청할 때는 세금환급(federal income tax return)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ITIN만을 별도로 신청할 수는 없다. ITIN으로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뿐,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혜택이나 세금보조(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SSN과 ITIN을 동시에 받을 수도 없다. ITIN은 세금보고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신분확인 등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ITIN을 요구하는 은행도 간혹 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 SSN 대신에 사용되기도 한다.

ITIN은 SSN와 같이 9자리의 숫자로서 9로 시작하며, 네번째 숫자가 7혹은 8이 된다.

서류미비자가 ITIN을 통하여 세금환급을 신청하더라도 IRS에서는 정부의 다른 기관 특히 DHS(국토안보부)와 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 이것은 서류미비자들이 두려움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법으로 정보의 공유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2. ITIN의 신청

W-7을 작성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복사하여 공증을 받고, 세금환급 신청서와 함께 아래에 나타난 주소로 보내면 된다. 신분증으로는 유효한 여권(passport) 하나로 충분하며, 여권이 없는 경우, 아래에 표시된 서류 중 2가지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세금환급 신청서(Form 1040)에 나타난 주소로 보내면 안된다는 것이다. W-7 양식은 IRS 사이트(<http://www.irs.ustreas.gov/pub/irs-pdf/fw7.pdf>)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Service Center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가까운 IRS 인증 지원기관(Acceptance Agent)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IRS 지원센터(Assistance Center)에 직접 찾아가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기관은 IRS가 지정한 곳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http://www.irs.ustreas.gov/individuals/article/0,,id=96304,00.html> 에서 가까운



지원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IRS 지원센터는 W-7 작성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예약을 하거나 예약 없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http://www.irs.gov/app/officeLocator/index.jsp> 에서 가까운 지원센터를 찾을 수 있다.

※ 본인확인 및 외국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서류

☞ 여권

☞ 이민국 사진이 나타난 ID

☞ 미 국무부가 발부한 비자

☞ 미국 운전면허증

☞ 외국(한국) 운전면허증

☞ 외국 군인 신분증

☞ 외국 국가 신분증(유효하여야 하며, 이름, 주소, 생일, 만료기간이 나타나고 사진이 있어야 한다)

☞ 미국 주(state) 신분증(ID card)

☞ 외국 유권자 등록증

☞ 출생 증명서 (한국것일 경우 외국인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의료 기록(14세 미만)

☞ 학교 기록(14세 미만)

### 3. 발급

ITIN의 발부에는 통상 4~6주가 소요되며, 카드는 발부하지 않고 번호를 발급하였다는 편지가 발송된다. 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보장번호 카드(social security card)와 혼돈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미 발급된 카드 역시 재발급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일 6주 이상이 지나도 발급 편지를 받지 못하면 IRS에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다.

### 4. 세금환급 신청서(Federal Income Tax Return)

매년 IRS가 발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금환급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Form 1040에 나타난다. 다만, 세금환급 외에도 세금 보조 혜택(Earned Income Credit, EIC), 자녀로 인한 세금 혜택(Child Tax Credit, CTC)등 다른 혜택을 볼 수가 있어 환급 신청을 하기도 한다. 물론 SSN이 없는 서류미비자는 “EIC”는 받을 수 없다.

연방 소득세는 봉급 생활자의 경우, 고용주가 봉급에서 삭감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계산(estimate)으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소득세는 또한, 이자소득, 배당금 기타 투자이익에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경비(expenses) 및 면제(exemption)되는 부분, 소득공제(deduction) 및 세금지원(credit)등에 따라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을 통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확정짓는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환급 신청을 하며 세금을 오히려 더 내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세금환급 신청은 Form 1040(Form 1040EZ, 1040A, 1040)을 작성하여 IRS로 보내면 된다. 세금보고 양식은 공공 도서관, 우체국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Form 1040 (<http://www.irs.gov/pub/irs-pdf/f1040.pdf>)등은 IRS 홈페이지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5. ITIN 발급 및 세금 납부의 이점

서류미비자가 ITIN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점이 생긴다. 물론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은 모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특히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신분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 납부는 세법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나. 납세기록을 미국 계속거주의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 구제법안을 보면, 일정기간 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구제의 조건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 기록이 미국에서의 계속거주의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서류미비자 구제법안, 드림법안 등에서 도덕적 품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구제의 조건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납세 기록은 도덕적 품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

라.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에서 납세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납세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납세 기록은 또한 신용(credit history)을 쌓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SSN 대신 ITIN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마. 일부 대학에서 드림법안의 자격요건으로 “부모의” 납세 경력을 따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녀가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아 주내 거주자 등록금(in-state tuition)을 내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정기간 이상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

## XXVIII. 은행 계좌 열기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은행 계좌를 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물론 은행에 따라 소셜 넘버(SSN)를 요구하기도 하여, 소셜 넘버가 없는 경우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1. Bank of America

온라인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SSN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열 경우, SSN이 없더라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p.o. box 주소는 받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2개의 아이디가 필요하다. 하나가 주 아이디(primary identification)가 되고 하나가 보조 아이디(secondary identification)가 된다. 아이디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있다.

- ☞ 사진이 들어 있는, 유효한 미국 운전 면허증 (어느 주 것이라도 상관 없다)
- ☞ 운전 허가증(driver's permit), 단 사진이 들어 있어야 한다.
- ☞ 주 정부가 발부한, 사진이 들어 있는 유효한 신분증 (State ID)
- ☞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미군에서 발부한, 사진이 들어 있는 신분증
- ☞ Bank of America가 발부한 사진이 들어 있는 신용카드
- ☞ Bank of America가 발부한 사진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현금카드)
- ☞ 사진이 들어 있는 외국 여권
- ☞ 사진이 들어 있는 영사관 아이디

따라서 한국 여권과 한국 신분증(주민등록증) 하나가 있으면 된다.

거주지 증명

전기세, 전화세 등 주소와 신청인의 이름이 나타나는 고지서(bill)가 있으면 된다.

디파짓(deposit)

\$20 정도의 디파짓(입금)이 장려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달러 미만으로 입금을 할 수도 있다.

만약 계좌에 함께 이름을 올리는 사람(co-signer, 동반자)이 있다면, 동반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의 아이디가 있어야 한다.

## 2. Citibank

Bank of America와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개의 아이디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권 및 주민등록증으로 충분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보조 아이디로써 학생증(College ID),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등도 가능하다.

거주지 증명으로, 각종 청구서 및 임대 계약서(lease agreement), 신용카드 내역서(statement), 은행 거래 내역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100불 정도의 디파짓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 직원과 이야기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3. Chase

Chase 은행 역시 온라인상으로는 외국인에 대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고 있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4. 소규모 은행, 지역 은행

은행에 따라서는 SSN 대신에 ITIN을 받아주는 곳도 있다. 각 은행,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 XXIX. 서류미비자와 납세



## 1. 세금 납부의 의의

서류미비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첫번째는 “계속적인 거주”(continued presence)를 증명하는 방법이 된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훌륭한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계속적인 거주는 통상 불체자 구제법에서 구제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많이 사용된다. 즉,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한 것이 입증되어야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계속적인 체류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세금을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훌륭한 도덕적 품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덕적 품성 역시 서류미비자가 신분상의 구제를 받을 때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서류미비자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IRS에서 다른 정부기관과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신분의 노출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는 없다. 특히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은 합법적인 체류자라 하더라도 만드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불체자로 낙인찍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자가 아닌 사람이 I-9을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IRS에서의 감사(audit)를 받게 되는 경우, 신분이 노출당할 수 있다.

## 2. 납세자의 자격

세법에서는 이민자 신분으로 납세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사실상 체류정도에 따라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세법(Revenue Act of 1913)에 따라 Resident Alien이 되는 사람은 1) 영주권을 가진 사람, 2)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 사람(“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 사람은 올해 최소한 31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직전 2년동안 계속하여 1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한 사람을 말한다) 3) First Year Choice(절반이상 채우지 못한 1년이라도 첫째로서, 본인이 선택한 경우, Resident Alien이 될 수 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2)에 따라 Resident Alien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 단, 최초로 미국에 입국한 날부터 Resident Alien이 되며, 미국을 떠나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Resident Alien이 되지 못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Resident Alien으로 남게 된다.

납세자로서 Resident Alien이라 함은, 미국 시민들과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납세후 받는 혜택에 있어 다소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Resident Alien은 미국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원천이 어느나라에 있든지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을 보고하여야 한다. Non-Resident Alien의 경우, 미국에 소득의 원천(source)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의 고용, 미국에서의 렌트 소득, 미국기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 등을 포함한 미국과 관련되는 소득을 말한다.



### 3. 세금 납부의 방법

#### 가.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면, 미국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income tax), 고용에 관련된 세금(employment tax)를 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보고하고(filing), 세금에 대하여 홀딩(withholding)을 받게 된다.

세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납세자 번호(TIN)를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납세자 고유번호로 이용되는 SSN(Social Security Number)이 없는 경우, ITIN을 만들어야 한다. SSN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노동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SSN은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노동자격을 가진 비이민자에게만 발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6년 이민개혁법은 고용주로서 하역근로자(employee)의 인적사항(identity)을 확인하고 노동자격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서류미비자로서 SSN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납세자 고유번호로서 ITIN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TIN은 SSN과 마찬가지로 9자리 숫자로서 9로 시작하며 네번째 숫자가 7 혹은 8이 된다. ITIN은 W-7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여권, 이민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ITIN은 납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고용주는 ITIN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봉급에 대하여 근로세(employment tax)에 대하여 IRS에 보고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서류미비자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고용주가 나타나게 된다. 근로세(employment tax)라 함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고용주가 유보(withholding)하는 소득세와 “Social Security Tax” 및 “Medicare Tax”를 의미한다.

서류미비자는 한편으로는 고용주를 통하여 근로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SSN이 없어 원칙적으로 납부할 수 없다. 그러나 세금 납부 의무 때문에 고용주는 허위, 혹은 도용된 SSN을 이용하여 근로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여 납부된 Social Security Tax는 ITIN과 SSN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세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ITIN과 SSN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아 보인다. 서류미비자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달리지만, 현재 서류미비자는 ITIN 만으로는, 차후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하지 않는 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메디케어(Medicare)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서류미비자는 소득세 환급(income tax return)을 신청해 보지만 ITIN과 SSN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IRS의 정책이다.

## 나. 세금의 계산

원래 고용주를 통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가계산된(estimated) 것이며 최종적으로 세금환급 신청을 통하여 세금은 정확하게 계산된다. 정확한 과세액의 계산을 위해서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밝혀야 하는데, 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소득공제(deduction) 부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총소득은 모든 형태의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정형화된 공제(standard deduction)와 개별 공제(personal exemption) 및 기타공제가 있다. 정형화된 공제는 매년 물가에 따라 변동되며, 미혼, 기혼에 따라 다르고,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도 매년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다. 소득이 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 정형화된 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과세소득보다 공제액이 많을 경우 연방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다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경우, 정해진 세율(7.65%)에 따라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고용주가 공제하여 내므로 모두 낼 수 밖에 없다.

### 다.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환급 혜택(EITC)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입법화되어 나타난 것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이다. 즉, 연방 소득세 뿐만 아니라 Social Security Tax마저도 환급을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매년 정해진 금액 (1년에 약 5,000불 정도) 한도내에서 EITC를 받게 된다. 단, 근로가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복지(welfare) 혜택만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다.

이것은 매년 변경되는 일정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버는 소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주는 것이다. 자녀가 1명인 3인 가족의 경우, EITC를 받을 수 있는 소득한도는 41,132불이며, EITC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094불이다. EITC로 받는 금액은 소득이 커질수록 적어지게 된다. 소득이 41,132불을 넘게 되면 EITC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이 된다. 다만, EITC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Resident Alien이어야 하며, (노동허가를 위한) SSN을 제공해야 하므로 SSN이 없는 서류미비자는 그 혜택을 볼 수 없다.

### 라. 중산층을 위한 CTC

CTC(Child Tax Credit)는 납세자 신분 혹은 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 서류미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CTC는 납세기일을 기준으로 17세 미만인 자녀 1인당 \$1,000까지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납세자 번호(TIN), 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자녀의 경우 1년 중 절반 이상을 신청자와 같은 곳에서 거주하며 그 부모가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녀가 SSN 혹은 ITI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CTC 혜택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소득은 자녀 1

명인 3인가족 기준으로 연 총소득이 2011년을 기준으로 11만불 이다.

#### 4. 현금 소득에 대한 세금

W-2 없이 지급되는 현금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환급을 신청할 때 모두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Form 1040 양식의 Line 21("other income")에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Line 21에는 그 소득의 출처 및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일을 해 준 것이 있으나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금 소득의 기록은 그때 그때 기록을 유지해 놓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만일 IRS에서 감사(audit)를 하게 되면, 은행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의 내역은 주(state) 소득 신고시에도 마찬가지로 하여야 한다.

#### 5. 자영업자 및 법인의 세금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자영업자는 세법에 관한 한 미국시민과 똑같이 내어야 한다. SSN이 없더라도 ITIN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세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Self-Employment Tax"(SE Tax)로 불리는 일명 자영업자 세금이고 하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이다. 단, 자영업자의 세금은 순소득(net-profit)이 400불을 넘는 경우에 한한다. 순소득이라 함은 총소득에서 운영경비를 뺀 몫을 말한다. 또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순소득"이다.

##### 가. 자영업자 세금(SE Tax)

2011년도 소득에 대한 Self-Employment Tax 세율은 13.3%이다. (이중 10.4%는 Social Security Tax이고 2.9%는 Medicare Tax이다) 2010년의 세율은 이보다 2%가 높은 15.3%였으나 2010년 감세 특별법(2010 Tax Relief Act)로 2%의 할인혜택을 보게 되었다. Social Security Tax는 \$ 106,800까지의 소득(profit)에만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 반면, Medicare Tax는 소득 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어 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더라도 그 비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의 절반 즉, 7.65%는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소득의 92.35%가 과세대상이 되고 92.3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5.3%의 비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자영업 세금은 14.13%가 된다.

##### 나. 법인세 (Corporate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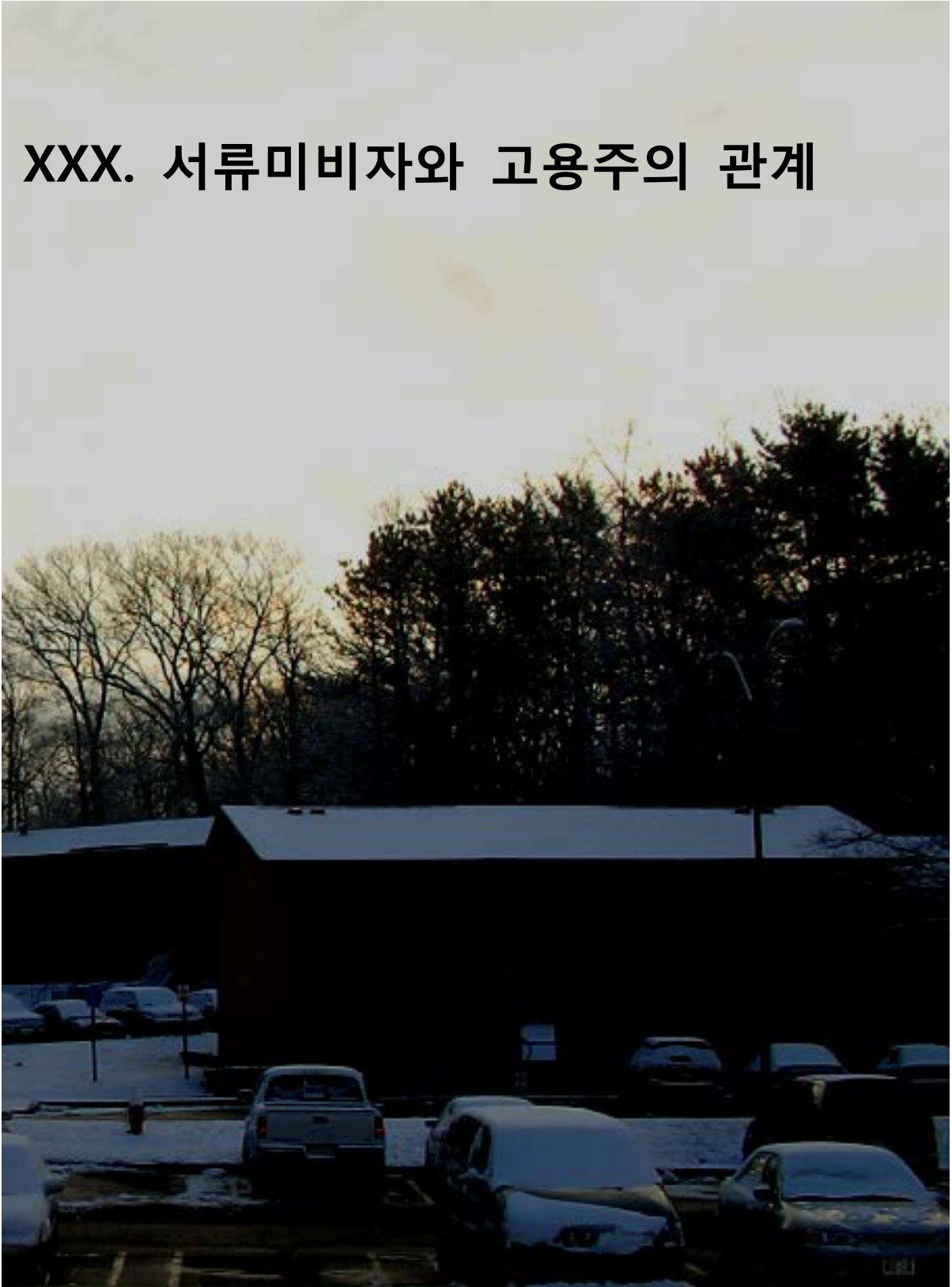
자영업자와 구분되는 것이 법인이다. 법인은 자영업과는 달리 일상 기업 운영활동이 개인이 맡아서 하는 형태가 아니다. 즉, 자영업자는 단독 소유(sole proprietorship), 파트너, 독립개인(independent contractor)이 해당되지만 법인은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간접적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법인세는 소득의 수준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진다. 순소득(profit)이 10만불 이상 33만 5천불 이하라면 39%의 금액이 법인세로 나가게 된다.

피용자(employee)가 있어 봉급을 주는 경우에는, 연방 소득세 및 Employment Tax를 피용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유보(withholding)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Employment Tax는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Tax를 말하는데, 봉급의 7.65%를 피용자(근로자)가 내고 같은 금액만큼을 고용주가 내어야 한다. 법인의 소유주에게 나가는 봉급에 대해서도 세금은 부과된다. 따라서 소유주에 대한 봉급에 대해서도 유보가 필요하게 된다.

단, 피용자 중에서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프리랜서(independent contractor)를 사용하는 경우, Employment Tax를 별도로 낼 필요는 없으나 \$600이상을 지불한 경우, IRS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순소득(이상)    | (이하)       | 세율  |
|------------|------------|-----|
| \$0        | \$50,000   | 15% |
| 50,000     | 75,000     | 25% |
| 75,000     | 100,000    | 34% |
| 100,000    | 335,000    | 39% |
| 335,000    | 10,000,000 | 34% |
| 10,000,000 | 15,000,000 | 35% |
| 15,000,000 | 18,333,333 | 38% |
| 18,333,333 | 무한대        | 35% |

## XXX. 서류미비자와 고용주의 관계



## 1. 고용주와의 관계 정리 필요성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서류미비자를 “알면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고용되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연방 이민법(INA 274A)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인줄 알면서 고용하는 행위, 돈을 받고 모집하거나 주선하는 행위는 서류미비자 1명에 대하여 \$250 ~ \$2,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범에 대해서는 \$ 2,000 ~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두번이상 전과를 가진 사람은 \$ 3,000 ~ \$10,000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음으로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민사처벌이나 2번째 부터는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서류미비자를 고용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일회성 고용(casual hire)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같이 고용주-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고용이다. 두번째는 재고용인데, 고용관계가 종료한 뒤 기존의 I-9이 아직 유효하므로 재고용하는 경우, I-9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3년 동안에는, 추후 불체자 고용사실을 알게 되지 않는 한, 불법고용에 대한 항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애초의 고용이 합법적인 고용이었다는 전제에서 그러하다. 또한, 애초의 채용시 서류를 검토해 보았을 때, 합법적인 노동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였던 경우에는 항변(defense)이 될 수 있다.

서류미비자 채용은 또한, 채용 이후에 근로자(employee)가 서류미비자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채용후 서류미비자임을 알게된 경우에 고용주는 즉시 그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채용 당시 근로자가 합법적인 노동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격을 확인하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노동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종, 피부, 언어, 국적 등에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만 노동자격을 확인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 경우,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인 처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있다. 즉, 경쟁업체보다 비용을 낮추어 생산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주의 이러한 욕심은 근로자의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신분을 이유로 법적인 보호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아, 비양심적인 고용주에 의하여 노동력을 착취당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비양심적인 고용주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고용주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 2.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부당한 고용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노동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합법적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보호장치는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보호를 요청함에 있어 서류미비자임을 특별히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고용주는 서류미비자임을 이유로 신고하여 “추방”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해 올 수 있으나 실상 고용주가 단순한 고용을 이유로 추방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불법고용 사실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고용주로서 신고하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다.

## 가. 임금의 보호

### (1) 최저 임금

연방법인 근로 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및 시간외 임금의 보호를 받는다. FLSA는 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2011년 현재 연방법에 따른 최저 임금은 시간당 \$ 7.25이며, 각 주에서는 이보다 높은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저임금을 시간당 \$ 8.00 로 정해놓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조례(ordinance)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 9.92로 정해놓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 7.25에서 \$ 8.00 사이에서 정해놓고 있다.

연방 최저 임금에 의한 보호를 받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억 3천만명에 달하며, 보호를 받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근거”라 함은 연방 정부가 최저 임금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한다.

첫번째의 보호대상은 기업활동의 규모가 연간 50만불 이상인 기업 혹은 병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이들 기업은 최소한 두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두번째의 보호대상은 기업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주간 상거래 행위”(interstate commerce)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주간 상거래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함은 통상 상업 행위에 종사하거나 상거래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하고 있는 사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사람, 타주로 나가는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사람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가사 노동자(가정부, 보모, 요리사 등)도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 (2) 시간외 임금

시간외 임금(overtime wage)은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최소 1.5배이상 받도록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FLSA에서는 시간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주당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혹은 정기 휴일이라고 하여 반드시 시간외 근무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주당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외 근무가 되는 경우에만 초과 근무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주당 근무시간의 계산은 계속되는 7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이 반드시 일요일에서 토요일 사이가 될 필요는



없다.

2주일치의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나누어 초과근무 시간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 주의 초과근무에 대한 봉급은 그 주의 봉급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짜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상 주 노동청(Department of Labor)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임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근로자는 초과 근무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커미션을 받고 일하는 세일즈맨, (단, 시간당 평균 임금이 최저 임금의 1.5배를 넘어야 한다), 시간당 27.63달러 이상을 받는 컴퓨터 전문가, 운송회사에서 고용한 운전자, 운전 보조원, 하역인 및 수리공, 소규모 농장에서 일하는 농장 노동자, 자동차 딜러회사에 고용된 세일즈맨, 수리공, 계절적 업무에 고용된 근로자, 시간당 급료가 아니라 봉급(salary)을 받는 관리자, 사무실 외부에서 활동하는 세일즈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나. 고용주와의 임금 분쟁의 처리

고용주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주정부의 노동부(통상 Department of Labor,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에 신고하면 된다. 아래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예를 들어 그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LSE)에서 임금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신고서([Korean](#))를 작성하여 DLSE 사무소에 접수하게 되면, DLSE 관리가 양당사자를 불러 1차로 회의를 갖게 된다. 여기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심판(administrative hearing)을 거치게 되며, 행정심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임금 분쟁(wage claim)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임금의 미지급, 불법적인 봉급의 삭감(deduction), 비용의 미지급 등이 있다.

구두 약정에 기한 임금 신청은 분쟁의 대상이 된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약정에 기한 임금 신청은 분쟁의 대상이 된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초과 시간 임금, 기타 법률에 따른 임금 신청은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이 이루어지면 노동 위원(Deputy Labor Commissioner)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될 것인가에 대하여 양 당사자(employee, employer)에게 통보하게 된다. 행정심판에의 회부, 신청의 기각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재 회의(conference)에 회부되게 된다. 물론 중재회의를 하기전에도 비공식적으로 합의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신청서에는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적도록 하여야 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서류 등을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중재 회의에서는 양 당사자가 제시하는 증거를 확인하고 주장을 듣게 된다. 만일 고용주가 회의에 나타나지 않으면, 행정심판 날짜가 잡히게 된다. 임금 분쟁을 신고한 신청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된다. 만일 고용주가 미지급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신청인은 이 사실을 노동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전부를 지급한 경우 임금 분쟁은 종료된다. 중재 회의를 통하여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행정심판에 회부하게 된다. 물론 신청이 기각되거나 신청인이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위증 선서를 하고 증언하여야 하며, 진행 상황이 서면에 기록된다. 신청인은 변호사를 통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반대편의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통역을 요청하여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Commissioner)은 제시된 증거, 증인의 심문 등을 토대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일 신청인이 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되며, 고용주가 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장은 제시된 증거만으로 심판하게 된다. 위원장은 형사법정에서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증거를 검토할 수 있으며, 처벌이 적절한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

심판 후 15일 이내에 결정문이 나오게 되며 결정은 양당사자에게 통보된다.

행정심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DLSE 537”을 작성하여 항소할 수 있다. DLSE 537은 노동위원장 및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법원에서 “판사”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원고(신청인)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DLSE 법률담당관이 법원에서 신청인을 무료로 변호할 수 있다.

#### 다.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Worker's Compensation and illegal immigrant)

신분에 상관없이 직장에서 당하는 부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편 이민법에서는 서류미비자들이 노동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충되는 두가지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긴다.

1986년 이민개혁법(IRCA)에서는 불체자를 모집, 고용, 주선하는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용 후 서류미비자인 것을 알게 된 고용주가 계속하여 서류미비자를 계속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I-9을 통하여 근로자가 합법적인 노동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법률의 규정은 이처럼 명백히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한다. 서류미비자가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과연 산재혜택(worker's compensation)을 부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의회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연방 대법원은 HOFFMAN PLASTIC COMPOUNDS, INC. V. NLRB (00-1595) 535 U.S. 137 (2002) 판결에서, 노동위원회(NLRB)가 명한 밀린 봉급 지불 결정을 번복하며, 서류미비자의 경

우 노동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NLRB 사건은 서류미비자였던 Jose Castro가 친구의 출생증명서를 빌려 취업하였다가 노동조합 결성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하게 해고 하였다며 노동법(National Labor Relation Act) 위반을 이유로 봉급 지급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민법(IRCA)의 취지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서류미비자는 노동법상의 혜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에도 불구하고, 산재 혜택에 대한 각 주의 태도는 주에 따라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서류미비자를 신분상 상관 없이 산재혜택을 받는다고 법률로써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명시적으로 서류미비자를 그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 법원에서 산재 혜택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이를 부정하는 법원이 있다. 따라서,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주의 법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확인해 보아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의 경우, 명문의 규정을 두어 거주자(resident)가 아닌 경우, 곧 거주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산재 혜택의 금액을 거주자와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의 법원에서는 이 규정을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산재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아이다호 주의 경우, 산재 혜택은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근로 당시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경향은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산재 혜택을 부여하는 쪽이다. 산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산재혜택을 만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나 고용주 모두 비싼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데 있다. 서류미비자도 미국내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부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산재 혜택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고용주에게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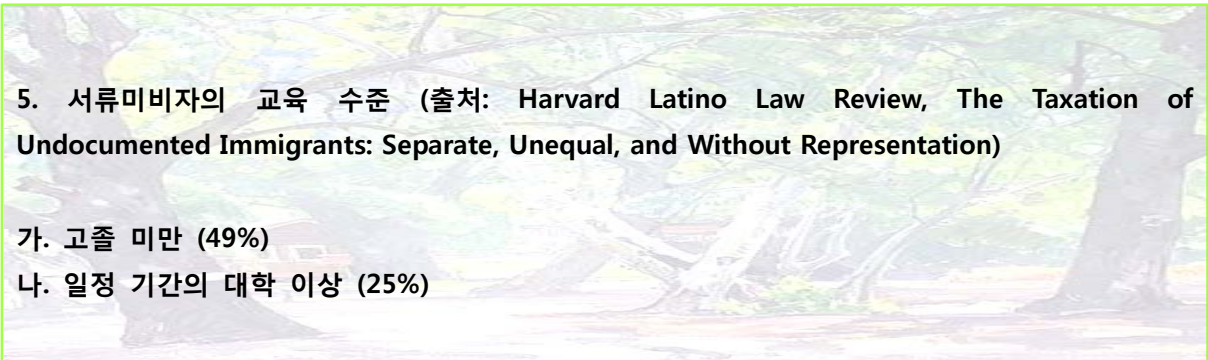
또한, 만일 서류미비자라고 해서 산재혜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고용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고용주들이 서류미비자들을 채용하려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민법이 서류미비자의 고용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현상인 것이다.

#### ※ 산재(worker's compensation)의 혜택의 내용

산재 혜택은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는데 대한 봉급보상, 장애로 인한 보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보상은 고용주가 산재 보험에 들어 보험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necessary and reasonable) 치료, 봉급 손실 보전, 장애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게 된다. 만일 고용주가 산재 보험을 들고 있지 않다면 주정부의 무보험 기금(Uninsured Employers Fund)에 혜택을 청구해 볼 수 있다.

#### 라.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Unemployment Benefit)

서류미비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어느 주에서도 서류미비자에게 실업수당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는 없다. 뿐만 아니라, 연방 실업 세금법(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 3304(a)(14)에서는 서류미비자의 실업수당 신청이 있는 경우, 면밀한 확인을 통하여 서류미비자들에게 실업 수당이 지불되지 않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류 위조 등으로 불법으로 실업수당을 받아내고 있는 서류미비자는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주에서, 실업 수당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서류미비자에게 실업 수당이 지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5. 서류미비자의 교육 수준 (출처: Harvard Latino Law Review, The Taxa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s: Separate, Unequal, and Without Representation)**

가. 고졸 미만 (49%)

나. 일정 기간의 대학 이상 (25%)

## XXXI. 사업체의 운영





## 1. 서류미비자의 고용 및 자영업

서류미비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에 종사할 수 없다.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1986년 이민개혁법에 따라 노동허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행위, 모집하는 행위, 수수료를 받고 추천하는 행위 그리고 노동허가가 없는 사실을 모르고 채용하였다가 나중에 알게 된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이민법 274A) 고용주는 특히 새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I-9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I-9을 통하여 노동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노동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주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면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신분조정 자격제한 등) 또한, 고용을 구하기 위하여 SSN을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것과 같이 범죄행위가 수반된다면 그 사람은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노동에만 종사한 경우, 근로자(employee)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또 하나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고용주를 처벌하는 규정만 두고 있지, 자영(self-employed)업을 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자영업을 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있으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자영업을 하며 세금까지 정직하게 내고 있다면,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특히 E2 비자 등을 받고 이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그 비자가 만료되어 서류미비자가 된 경우와 같이, 이미 SSN 및 EIN 등 필요한 서류 및 조건을 다 갖추고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류미비자임을 적발해 내는 것마저도 쉽지 않다.

물론 자영업도 “고용”에 포함되고, 이민법상 허가 없는 고용에 종사한 것이므로 이민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자신을 “고용”하는 고용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합법적인 비이민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허가가 없으므로 고용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F) 신분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도 불법고용으로서 이민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민법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이민국에서는 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를 받아들이고 있다. 애초 서류미비자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ITIN을 만들어 서류미비자에게도 납세자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서류미비자 중에는 SSN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론 존재한다.

이처럼 서류미비자의 고용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법적인 고용을 억제하면서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서류미비자의 고용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결

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하여 문제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서류미비자의 자영업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자가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위험이 있다. 허가 없는 고용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발되는 경우, 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체류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추방될 수 있는 것이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불법체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서류미비자는 언제 추방될지 혹은 추방 절차에 회부될지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남들에게 고용되어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서류미비자 임이 비교적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고용주를 처벌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신분을 따지다가 보면 종업원의 신분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고용주 즉,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주의 이민자 신분을 따지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자영업을 하는 서류미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서류미비자로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가 여부는 오히려 영업을 위한 허가(License) 등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더욱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영업허가 등을 발부함에 있어, 소셜번호(SSN)를 요구한다든지 체류자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 그 기회가 봉쇄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영업을 필요한 서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세금을 모두 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영업은 서류미비자에게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서류미비자가 자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또다른 방법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이다. 명의를 빌리는 타인과 계약을 맺어 자영업의 업주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고, 서류미비자가 영업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는 등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영업허가, 세금납부 등에 있어 문제가 있어 불법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계약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2. 서류미비자의 기업 설립(incorporating)

서류미비자가 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자영업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의 형태는 LLC, Incorporation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SSN이 있다면 기업의 설립에 별다른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도 자영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방의 위험하에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기업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 XXXII. 운전면허



## 1. 운전면허의 필요성

운전면허는 서류미비자에게 단순한 운전면허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기동이 불편한 것은 두번째로 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물건을 살때도, 건물에 들어갈때도, 동일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도, 언제나 불편하다. 운전면허증은 경우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사실 운전면허만 있어도 서류미비자로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일상생활은 영위할 수 있어 서류미비자에게는 운전면허가 필수품이 되고 있다.

현재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부하고 있는 주는 워싱턴 주를 포함하여, 뉴멕시코 주, 유타주 등 세개에 한정되고 있다. 그나마 유타주는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운전면허가 아니고, 운전할 수 있는 자격만을 표시하는 운전면허 허가증(permit)이다. 그리고 워싱턴주와 뉴멕시코 주에서도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부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법률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아래에서는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워싱턴 주의 운전면허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다만, 직접 워싱턴 주에 거주한다는 가정하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를 표시한 것이다. 브로커를 통하여 운전면허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당한다. 워싱턴 주의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워싱턴 주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

### ☞ 워싱턴 주의 운전면허

워싱턴 주 면허국에서 공지하는 상세한 안내서는 아래 주소에서 한글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dol.wa.gov/ko/docs/KORDriverGuide.pdf>

#### 1. 운전면허 요건

워싱턴주에서 운전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 신원증명서류

나. 워싱턴주 거주증명

다. 소셜시큐리티넘버(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언 양식에 서명으로 대신함)

라. 사진 (현장에서 찍음)

등 위의 4가지가 필요하다

(1) 신원증명서류: 아래 (가), (나), (다), (라) 중 한가지를 만족하여야 함

(가) 기본서류 하나 또는

(나) 보증서류 둘 또는

(다) 보증서류 하나와 대체서류 둘 또는

(라) 대체서류 넷 (넷 중 하나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표시된 서류여야하고 하나는 이름과 서명이 있는 서류여야 함)

(가) 기본서류

1) 워싱턴 운전면허증(유효하거나 만료된지 1년 이내)

2) 군인 신분증

3) 유효한 미국여권

4) 유효한 이민서류 (영주권등)

5) 타주 운전면허증 (유효하거나 만료된지 60일 이내)과 보증서류하나와 대체서류하나 또는 대체 서류 둘

6) 유효한 공무원증과 보증서류하나와 대체서류하나 또는 대체서류 둘

(나) 보증서류

1) 유효한 외국여권(I-94 form 이 부착)

2)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 편지

(다) 대체서류

1) 이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서류

☞ 가족 관계 등록부 (번역되어야 함)

☞ 총기 허가서

☞ 출생증명서(한국 출생 증명서는 번역되어야 함)

☞ 입양증명서류

☞ 타주발행 운전면허증(만료된지 60일 후의 것)

☞ 미국 또는 외국여권(만료 되었거나 I-94 form 이 없는것)

☞ 재향군인 증명

☞ 워싱턴주 운전면허증(만료된것)

2) 이름과 서명이 포함된 서류

- ☞ 이혼판결문
- ☞ 결혼증명서(카운티발행)
- ☞ 모기지 서류
- ☞ 서명된 소셜카드
- ☞ 택시운전사증명(사진 부착)
- ☞ 공인회계사가 접수한 세금환급 서류
- ☞ 재산 양도서류
- ☞ 유권자 등록카드
- ☞ 자동차 보험증권
- ☞ 비즈니스나 전문직 허가증(간호사, 엔지니어등)
- ☞ 타주 운전 기록
- ☞ 보안업체 직원증
- ☞ 메디케이드(Medicaid) 카드
- ☞ 병원비 청구서
- ☞ 사진부착된 버스요금 할인증
- ☞ 고용주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나와 있는 봉급명세서(Pay Stub)
- ☞ 과거 1년전 재산세 부과서 또는 명세서
- ☞ 학교 성적표(공인)
- ☞ 사진이 있는 학교 앨범
- ☞ 미국 선원증
- ☞ 유권자등록증 혹은 외국인 투표카드
- ☞ 워싱턴주 자동차 타이틀(핑크슬립)
- ☞ 거주 증명서류

ㄷ 무효인 서류(인정 안해주는 서류)

- ☞ 소환장
- ☞ 은행 계좌 명세서
- ☞ 은행카드나 신용 카드
- ☞ 침례 증명서
- ☞ 사진이 없는 버스 승차권
- ☞ 핸드폰 고지서
- ☞ 대학교 학생증

- ☞ 사냥, 낚시 허가증
- ☞ 인터넷 출력 서류
- ☞ 도서관 카드
- ☞ 헬스클럽카드나 백화점 카드
- ☞ 개인 수표
- ☞ 렌트 혹은 리스 계약서
- ☞ 임차인 보험증서
- ☞ 자동차 보험카드
- ☞ 자동차 등록증

## 2. 워싱턴주 거주 증명

### 1) 다음서류 중 하나

- ☞ 고지서 (전기, 가스, 수도 쓰레기, 집전화, 케이블): 본인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모기지 서류
- ☞ 지난 12개월 이내의 재산세 고지서나 청구서
- ☞ 전화번호부(이름과 주소 등재)
- ☞ 모기지 고지서나 계약서

또는

### 2) 다음서류 중 둘

- ☞ 자동차 보험증서
- ☞ 워싱턴주 비즈니스허가증
- ☞ 정부기관에서 보낸 60일전 우편물(이름이 나타나야)
- ☞ 현재의 워싱턴주 투표카드
- ☞ 집 고지서(전기, 가스, 수도, 쓰레기, 집전화, 케이블)
- ☞ 병원 치료비 청구서
- ☞ 고용주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봉급명세서
- ☞ 전문직업허가증(간호사 의사, 엔지니어등)
- ☞ 공인회계사가 접수한 세금 환급서류
- ☞ 워싱턴주에 있는 학교의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 생활부 카드

## ☞ 전년도 W-2 form

### 3. 소셜 시큐리티 넘버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소셜번호(SSN)가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선언서(declaration form)에 서명함으로써 가능. 단, 상업용 운전면허증 신청시에는 반드시 소셜번호가 필요함

### 4. 사진

교통국 사무실 현장에서 탈모, 선글라스(sun glasses) 등을 벗고 사진 찍음. 만일 모자, 선글라스 등을 벗지 않고 사진을 찍을 경우, “Not valid for identification”(신분 증명용으로 사용불가)이라는 표지가 붙는다.

## ☞ 운전면허 시험 절차

### 1. 시력 및 병력 검사

시력 검사 결과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contact lens)를 사용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운전면허에 안경이나 콘택트 착용이라는 제한사항이 표시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안과 기타 전문의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2. 필기시험

도로표지판, 교통법규, 안전운전 요령 기타 운전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에 관한 시험이 실시된다. 시험은 컴퓨터로 실시되며 객관식으로 25문제중 20문제를 맞추어야 한다.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그 점수는 2년간 유효하다. 필기시험은 예약이 불필요하나 사무소가 업무를 마치는 시간 30분전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도로 주행 시험

도로 주행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주거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예약할 수 있다. 도로 시험시에는 예약시간 최소 15분전에 도착하여야 하며, 시험장소에 도착한 사실을 면허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주행시험에 불합격하면 1주일 이후에 다시 볼 수 있다.

도로 주행 시험은 운전자가 차량을 잘 작동하는지, 도로규칙을 잘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면허국 시험관이 운전자 옆에 동승하게 된다. 주행시험 시작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미리 물어보도록 하고 주행 시험 중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도로 주행 시험에 이용되는 차량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정비 불량 등으로 결함이 있는 차량이어서는 안된다. 주행시험에 들어가기전 브레이크, 방향지시등, 타이어, 안전벨트 및 앞유리 와이퍼 등은 점검을 받는다. 또한, 유효한 책임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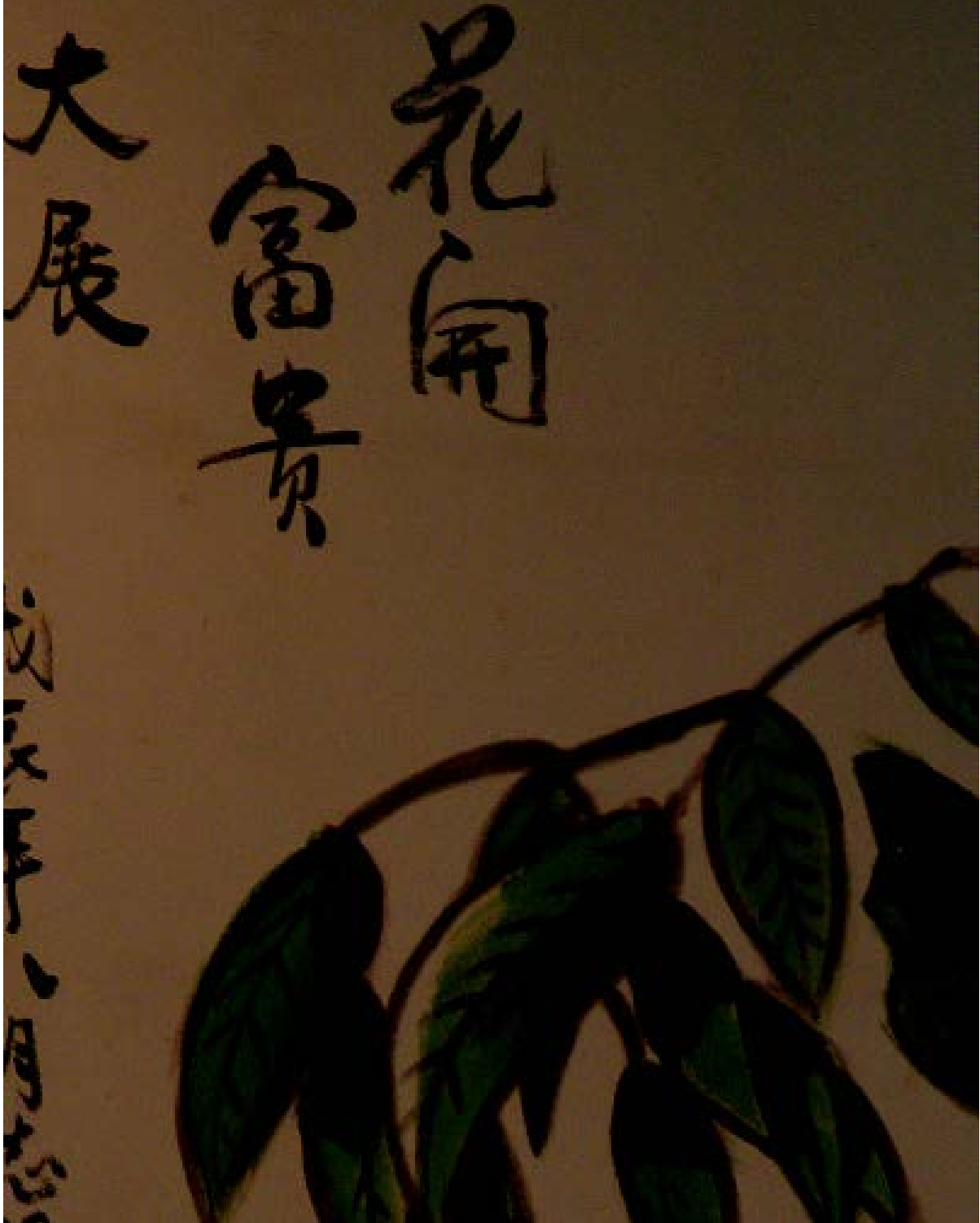
도로 시험 중에는 수신호를 보내도록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운전자가 신호를 볼 수 없을 때에는 수신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후진할때는 고개를 완전히 돌려 뒤쪽을 보고 다른 차량 혹은 보행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정지 표시판 및 정지신호에서는 완전히 정지하여야 한다. 횡단보호 중간이나 정지선을 지나서 정차하여서는 안된다.

#### 4. 운전면허증의 갱신

운전면허증은 발급후 5년간 유효하며 운전자의 생일날짜가 만료기일이 된다. 만료되기 최대 1년전부터 직접 면허국에 가서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갱신하는 경우 만료 60일 이전부터 만료 후 30일 사이에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갱신할 수 있다. 면허국에서는 만료 6주전에 갱신통지서를 보낸다. 이때, 직접 면허국을 방문하여 갱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 XXXIII. 교통 수단 의 이용



## 1. 항공기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에 두단계의 보안검색을 거치게 된다. 먼저 탑승권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두번째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및 신체를 검색하는 단계이다.

서류미비자들이 통과하는데 다소 두려움을 느끼는 단계가 첫번째 신분증 확인 단계이다. 하지만 유효한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항공기를 탑승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유효한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탑승이 가능하며, 반드시 여권을 함께 소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교통안전국 (TSA, Travel Safety Agency)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분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http://www.tsa.gov/travelers/airtravel/acceptable\\_documents.shtml](http://www.tsa.gov/travelers/airtravel/acceptable_documents.shtml))

- ☞ 외국 정부가 발부한 여권 (한국 여권)
- ☞ 주 교통국 혹은 주정부가 발부한 운전면허증, 주 신분증
- ☞ 국토 안보부가 지정한 항공기 탑승용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
- ☞ 영주권 카드
- ☞ 국경 통과증(Border Crossing Card)
- ☞ 캐나다 주 정부 발부 운전면허증
- ☞ 미국 여권, 군인 신분증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Middle Name” 이다. “미들 네임”을 신분증에 나타난 그대로 일치하도록 항공기 탑승권 구입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령 이름이 Mark Kim이고, 미들네임이 “Jong Won”이라고 했을 때, 운전면허증에 “Mark J. Kim”으로 나타났다면 항공권 구입시에도 “Mark J. Kim”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권이든 운전면허증이든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만료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혹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삼는 경우 2차적인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적인 신분 확인 과정에서 서류미비자인 신분이 드러난다면 이민당국(ICE)에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탑승권만 있으면 된다. 여권을 있는 경우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제선 항공기의 탑승에는 성인, 아동의 구분 없이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한다.

## 2. 버스 및 열차

버스(greyhound) 및 열차(amtrak)에서는 국경수비대(Border Patrol) 대원들이 검문을 행한다. 이들은 무작위로 버스 혹은 열차에 올라 신분증을 요구하며 이민자 신분을 확인한다. 이들이 주

로 많이 확인하게 되는 버스 및 열차는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지역의 노선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LA나 뉴욕 등으로 향하는 노선은 국경수비대 대원들이 검문을 많이 하게 된다.

불체자를 적발해 내는 방법은 물론 여권이나 비자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 등 신분증의 부재가 가장 확실한 물증이 되지만, 국경수비대 직원들은 경험을 통하여 배운 방법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수상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말을 더듬거린다든지, 땀을 흘리고 있다든지,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불체자가 있다는 것이다. 버스나 열차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신분증을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경험 있는 국경수비대 직원들의 눈에 띄이게 된다.

국경수비대원은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지역 센터(regional dispatch center)에 신분확인을 요청하게 된다. 지역센터에서는 국경수비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국토안보부 자료에 비추어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한다. 신분이 확인된 사람은 그냥 보내주지만 체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한 불체자는 체포된다.

체포된 불체자는 국경수비대로 보내져 지문을 찍게 되며, 이 지문으로 자동지문 대조 시스템(Integrated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을 통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된다.

이렇게 체포된 불체자는 이민관사의 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방된다. 추방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bond)을 내고 석방될 수 있다. 보석금은 통상 \$5,000에서 \$10,000에 이른다.

이때 신병은 이민집행국(ICE)의 관할로 넘겨지게 된다. 이때 국경수비대의 임무는 종료한다. 국경 수비대와 이민집행국은 국토안보부 관할하에 있으며 서로 협조하긴 하지만 엄격히 구분되는 기관이다. 이전 이민국(INS) 소속이던 국경수비대(Border Patrol)은 이제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 및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일부이다.

### 3. 자동차

#### 가. 국경 수비대 검문소

국경 수비대(United States Border Patrol)는 국경 검문소외에 전국적으로 71개소에서 검문소(check point)를 운영하고 있다. 검문소는 주로 국경에서 25마일에서 75마일정도 떨어진 고속도로(highway)상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쪽 일대에 32개소의 영구 검문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경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경을 무사히 통과한 밀입국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캐나다와의 국경 일대에서도 검문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검문소 직원들은 국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버스(grey hound)나 기차(Amtrak)에서 단속활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검문소에서는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없이도 차량을 세워 간단히 질문을 행할 수 있으며, 의심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량을 검문지역(inspection area)으로 유도한 뒤 2차적인

검문을 행할 수 있다. 반면 순찰 중인 국경 순찰 대원은 불체자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을 정지시켜 검문을 행할 수 있다. 차량을 정지시킨 후 차량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동의하거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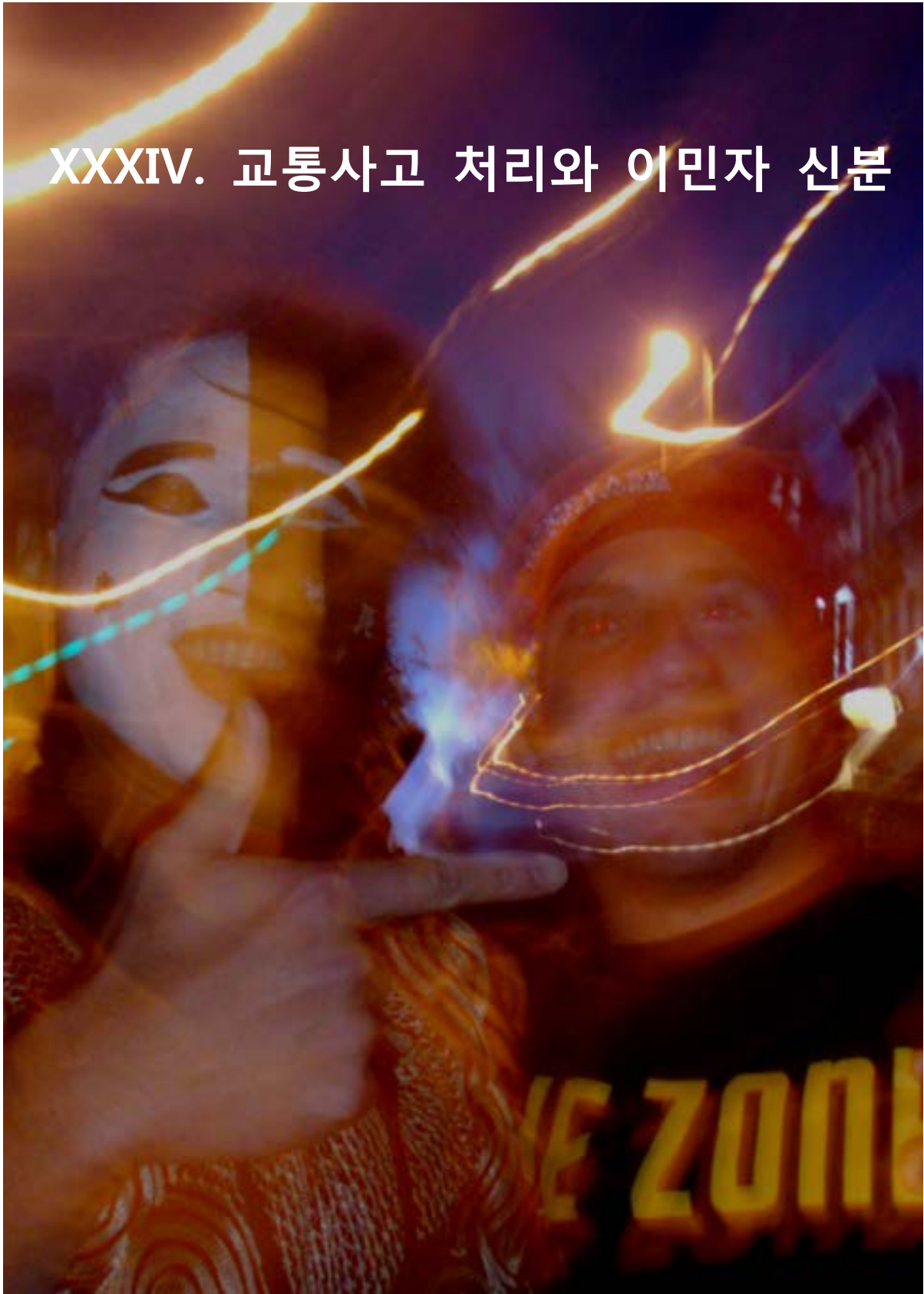
32개소의 영구 검문소외에 임시 검문소(tactical check point)가 전국적으로 40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다. 임시 검문소는 영구 검문소를 피하여 움직이고자 하는 불법이민자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영구 검문소를 중심으로 주변에 배치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며 설치되므로 영구검문소와 같은 건물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며, 간단한 검문소 장비만으로 1주일 단위로 장소를 변경하고 있다.

임시 검문소를 위해서는 충분한 노건(shoulder)이 필요하고, 곡선 도로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임시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사실상 한정되어 있다. 영구 검문소가 사실상 24시간 운영됨에 반하여, 임시 검문소는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밖에 운영되지 않으며 그나마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 나. 검문

검문소에서는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민자 신분을 보여주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으며, 의심이 있는 경우 마약의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훈련된 개(canines)를 이용하여 차량을 검색할 수도 있다.

## XXXIV. 교통사고 처리와 이민자 신분



## 1. 전제되는 조건

교통사고 처리절차는 주에 따라, 보험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크게 다르지는 않고, 주에 따른 교통 법규, 보험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 것이나, 절차를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류미비자로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를 보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한다. 일반적인 내용을 적은 것이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직원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2. 사고 직후의 처리

### 가. 경찰에의 신고

인명피해가 나거나, 사고피해가 크거나, 사고의 잘못에 다툼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상대방 운전자가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과실이 없는데, 상대방이 우기거나 다른 말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보고서(police report)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다만, 경찰에서도 반드시 사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판단으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한다. 인적사항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뿐만 아니라, 상대방 보험회사의 이름, 보험 가입자 번호(policy number), 보험회사 전화번호도 받아두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보험카드를 보여줄때 이를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효기간이 지난 보험증을 보여줄 경우, 유효기간내에 있는 보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유효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물론 심한 부상을 당하여, 현장에서 경찰을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족, 친족, 친구 등에 연락하여 신고를 하게 하거나, 입원이후에라도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일 의식을 잃었다면 경찰 혹은 간호사가 지갑 등을 뒤져 지인을 불러줄 것이다.

서류미비자라고 하여 경찰을 부르는데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내가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등 추방절차에 회부될 범죄가 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뺑소니는 또다른 범죄를 낳기 때문이다. 또한, 통상의 교통사고에서는 보험회사 선에서 모든 것이 정리된다. 운전면허증, 보험증이 있다면 경찰관이 특별히 이민자 신분을 묻지도 않는다. 특히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 나의 특별한 잘못이 없으므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 나. 사적 처리(Settlement)

교통사고는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적으로 해결



할 수도 있다. 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고책임자가 사고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사고처리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은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적합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유효한 사고처리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만 사적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사람도, 드물긴 하나, 가끔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뜻하지 않은 피해가 나중에야 발견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우연히 아프게 된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비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뜻하지 않은 피해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 등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 다. 보험회사에의 신고

보험회사에의 신고는 보험카드에 적힌 에이전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대신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직접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이때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에이전트에 신고를 하여도 보험회사로 부터 다시 연락을 받게 된다. 사고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시에 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더라도, 다시 사고내용을 물어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과 사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담당자가 틀릴뿐만 아니라, 사고내용을 듣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녹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책임 조사 담당자(Liability Adjustor)라고 하며 사고 조사를 위해 보험사 직원이 전화를 해 왔을 때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 사고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빨간색이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든지, “stop sign”이 있었는데,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든지, 주차장에서 뒤를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고 나왔다든지, (상대방의 과실이라면)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어야 한다.

상대방 보험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혹은 과실이 양쪽 모두에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양쪽의 과실을 모두 따지는 경향이 있고, 사고 주 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고의 과실이 10%, 20%, 40%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의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주 책임자가 100%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즉, 사고라는 것이 한쪽만 잘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조금이라도 잘못이 큰 사람이 100%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의 보험회사에서 100%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주에 따라서는 책임의 정도를 %로 따지기도 한다.



보험회사에의 신고 후에도, 사건이 사적으로 합의하여 처리되거나 보험으로 더이상 처리하고 싶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케이스(claim)를 종료(close)시키겠다고 말하고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다.

#### 라. 사진 촬영 등

현장에서 가능하다면, 특히 사고책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다툼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차량의 부딪친 부위, 부딪힌 각도, 주위의 신호등, Stop Sign, 충격당시의 차량의 위치, 도로상태 등에 주의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나 폰카메라로 찍어 파일로, 혹은 이를 인화하여 사고 조사 책임자(Liability Adjustor)에게 전달하면 된다.

또한,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그 이름 및 전화번호를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경우, 증인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3. 보험회사에서의 처리

#### 가. 사건 번호(claim number)의 부여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사건번호(claim number)를 부여한다. 이 번호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거나(사건 확인), 차량 수리를 의뢰하거나(수리점에서 보험회사로의 비용 청구), 수리비, 렌트비를 받을 수가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고를 하고 사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이 번호가 부여된다. 이 때 사고 내용의 접수를 받는 사람을 “claim adjuster”(담당 직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개괄적인 사고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책임 담당 직원(Liability Adjustor)이 사고의 과실을 결정한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설명할 때, 정확하고 올바르게 신고하여야 책임을 거꾸로 당하지 않는다. 사고의 접수에서 사고조사에 이르기까지 신분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으며, 이를 물어오지도 않는다. 다만, 운전면허증 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면허증 번호를 불러주면 대체로 신분이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차량 검사(Inspection) 및 견적서(estimate)의 발부

차가 부서진 경우, 견적을 뽑기 위하여 차량검사(inspection)를 하게 된다. 보험사 직원이 집이나 직장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며, 차를 몰고(몰 수 있는 상태인 경우)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보험회사 사무소나, 보험회사와 연계된 수리점에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가장 주의할 것은, 보험회사 직원(혹은 연계된 수리공)의 차량검사(Inspection)를 받지 않고, 수리를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약관에 보면, 반드시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량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차량검사를 하게 되면, 견적이 나온다. 차량검사를 한 수리점에서 수리를 하기로 한 경우, 수리점에서 보험회사로 수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수리점에서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돈(check)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수리할 수도 있다. 수리 과정에서 차량검사 중에 확인되지 않은 파손등이 발견되는 경우, 수리점에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추가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

#### 다. 수리비, 렌트비 등의 지불

##### (1) 사고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는 경우,

수리비는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하여 수리하는 경우, 전체를 받을 수 있지만, 내 보험회사를 통하여 수리하는 경우, (과실은 상대방 운전자에 있음) 본인 부담금(Deductible)을 제하고 받게 된다. 본인 부담금(Deductible) 만큼은 차를 인수할 때, 수리점에 지불하여야 한다. 수리비가 본인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리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실이 있고, 내 보험회사를 통하여 수리하고자 할때, 그 수리비가 본인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나중에 구상(求償)을 받아야 하므로, 본인부담금의 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인부담금을 회수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니만큼 반드시 확인하여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 (2) 사고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경우

내가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경우, 내 보험회사를 통하여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리비에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이는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이다. 또한, 책임보험(Liability)만을 든 경우, 차 수리는 순전히 본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책임보험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기 때문이다. 종합보험(Comprehensive)을 들고 있어야 내 과실로 난 내차에 대한 손해에도,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인적피해(부상 등)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그 보상의 한도가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책임보험만 드는 경우, 인적피해 한도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심하게 부상을 당하였다면, 건강보험(Health Insurance)를 통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사고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경우, 책임보험의 한도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20만불, 30만불 정도 되면, 상당한 사고가 나도 걱정이 없겠지만, 간혹 싸게 보험을 사려다가 한도를 낮추게 되어, 한도가 3만불, 5만불 되는 보험을 샀는데, 상대방의 피해가 그보다 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다. 이때에는, 소송을 대비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합의를 통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사고가 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장 사진, 차의 파손 정도 등을 준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에도 변호사가 있어,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일단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부담금액이 커지므로) 이 경우, 필요하다면 나도 변호사를 구하여 보상액을 줄이는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라. 렌트카의 사용

렌트카는 사고로 인하여 차가 수리가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종합보험 등으로 렌트카 옵션을 사 두어야 렌트카가 가능하며, 렌트카 비용을 보험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30불 범위내에서 최장 30일 등 일정한 한도가 있다. 따라서 큰 차를 빌리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 렌트카를 빌릴때 요구하는 보증금(Deposit)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보증금은 차가 파손되는 등의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돌려받는 금액이다.

렌트카는 보험회사에서 간단히 예약을 해주기도 하고, 수리점에 까지 차를 직접 대기시켜 주기도 한다. 차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렌트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즉, 최초로 1주일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하게 사고지점에서 집 가까운데 차를 반납하여야 하는 이유로, “drop charge”(반환지 비용)를 물게 되는 경우는 그 반환지 비용을 요구하여 별도로 받아낼 수도 있다.

차가 폐차(수리비가 차의 시가를 초과)되어 수리가 없는 경우, 렌트카의 사용 기간은 보통 담당 직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새 차량의 구입등을 이유로 하여, 렌트 가능 기간의 범위내에서 협상해 볼 수 있다.

#### 4. 음주 운전 및 음주 사고

간혹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불체자의 경우, 입건이 되면 적발되어 추방당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으나,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중죄(felony)가 아닌 경죄(misdemeanor)이기 때문에, 불체자라는 사실은 제외하고, 추방의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사유로 추방을 위하여 이민국에 회부될 가능성은 낮다. 경찰에서 특별히 신분을 물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찰과 이민국간의 협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일부 주 그리고 일부 경찰기관에서 일정한 한도(구속 피의자 등)내에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 그것이 중죄에 해당되어 구속된다면, 추방의 가능성도 있다. 이때 안전공동체 프로그램(Secure Community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기관에서는 지문조회를 통하여 이민국 자료와 대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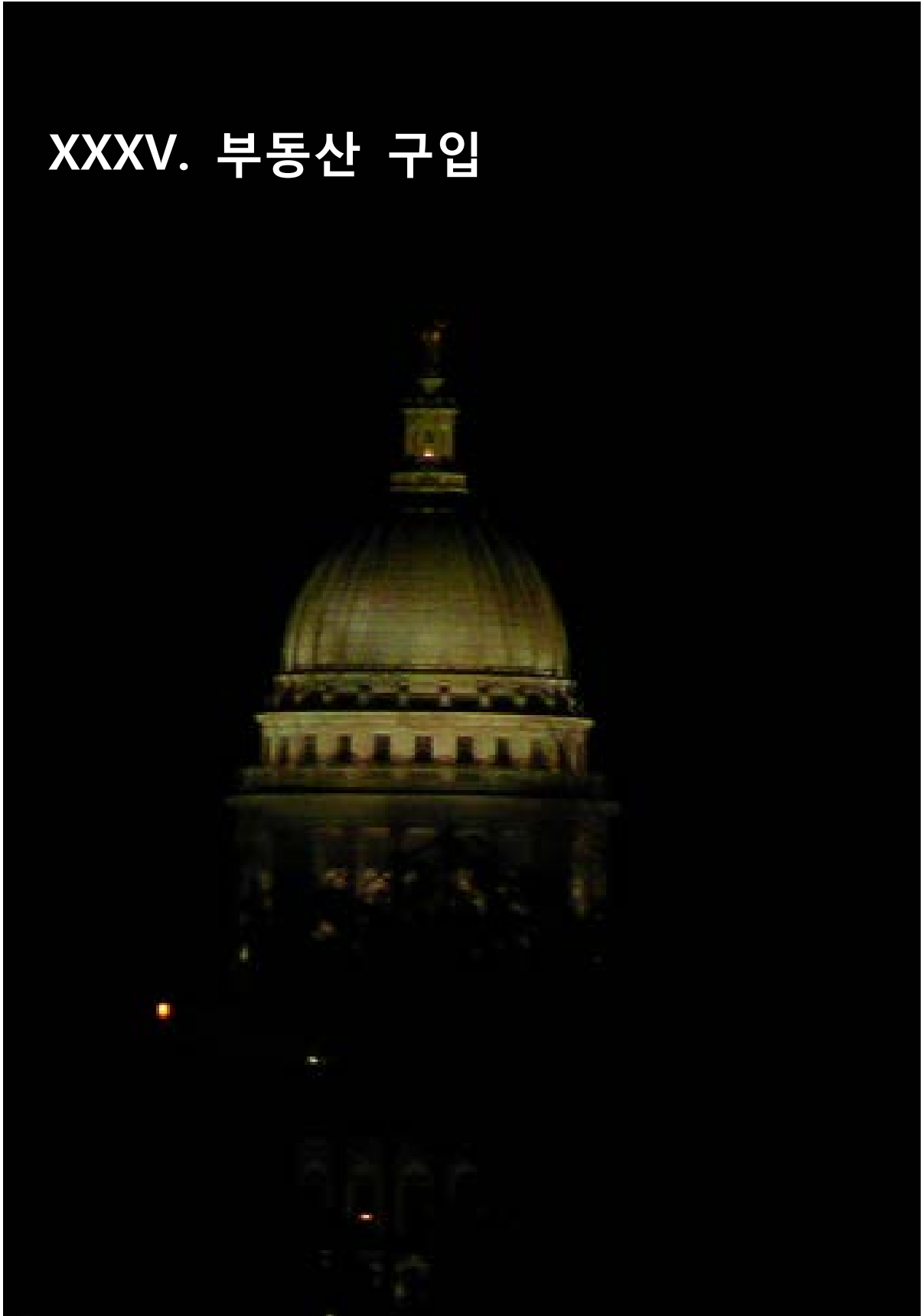
음주운전의 경우, 각 주별로 적발 횟수, 음주 수치에 따른 기준 형량이 정해져 있다. 경죄인지 중죄인지 여부도 주별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Luis Gutierrez



이민개혁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연방 하원의원(D-IL)이다. 2009년 12월 연방 하원에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IR2009)을 직접 발의하기도 하였다. 2010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부재에 불만을 품고, 백악관 앞에서 시위에 동참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설적인 비난을 가하는 소신을 보여주고 있다.

## XXXV. 부동산 구입



## 1. 가능여부

서류미비자라고 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부동산을 살 재력이 있다면 부동산 구매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모두 지불할 수 없을 때이다. 이때에는 모기지(mortgage)를 일반적으로 신청하는데,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모기지를 제공하는 은행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Citi, Bank of America, Wells Fargo 등은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모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도 모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수익” 때문이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류미비자들에게 모기지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위험은 높아진다. 또한 이러한 위험은 높은 “이자율”로 상쇄된다.

## 2. SSN 과 모기지

서류미비자들이 SSN(Social Security Number)이 없는 경우, 모기지를 구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SSN이 없는 경우, 모기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은행들도 있고 SSN이 없으면 소위 신용기록(“credit history”)이 없어 모기지를 구하기 더욱 어렵게 된다. 혹시 운 좋게 구하더라도 신용기록이 없어, 이자율이 높은 모기지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또한, 20%~30%의 보증금(down payment)을 요구받기도 한다. 물론 SSN이 있고 신용기록이 있다면 모기지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다.

SSN이 없는 경우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야 한다. ITIN은 납세를 위한 개인납세자 번호이다. 일부 은행에서 SSN 대신에 이 ITIN을 받으므로 모기지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모기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ITIN 외에 “직장”이 있어야 한다. 즉,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모기지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현금으로만 월급을 받고 정식으로 월급을 받은 기록이 없는 사람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3. 서류미비 신분으로 인한 어려움

모기지를 납부하다가 중간에 재융자(refinancing)의 필요성이 생기기도 한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모기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심리이다. 하지만 서류미비자의 경우 재융자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모기지를 얻을 수 있었다면 재융자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중간에 사정의 변경이 있거나 봉급 기록(pay stub)등을 잘 정리하고 있지 않다면 재융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신용기록(credit history)이 쌓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서류미비자 입장에서는 재융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신용 조사기관에서는 원래 SSN을 기반으로 신원을 확인하여 신용기록

을 접수하여 관리한다. SSN이 없이 ITIN으로 보고가 들어오는 경우, TransUnion등 신용조사 기관에서는 ITIN 뿐만 아니라,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용기록으로 정리하기도 한다. 또한, 관리의 잘못으로 신용기록이 제대로 쌓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하는 경우 등에는 “Middle Name”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스펠링이 틀리지 않도록 하고, 주소도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신용기록은 신용의 건강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차후 대출을 한다든지 차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좋은 신용기록을 가진 사람은 대출도 쉬우며 그 이자율도 낮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조사 기관의 “신용기록”을 참고로 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준 후 채무자가 이를 갚아나가는 기록을 신용조사 기관에 보내게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및 대출(모기지)의 변제 등 모든 채무는 일정에 따라 정확하게 결제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4. 부동산의 처리

부동산을 구입한 후, 차후의 처리가 문제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신분으로 인하여 나중에 부동산을 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추방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실제로 하루아침에 추방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부동산을 처리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고 만일 부동산을 맡아 팔아줄 사람마저 없다면 다소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는 본인이 현장에 없어도 가능하다. 중개인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중개인과 연락하여, 부동산의 광고, 계약, 등기 등을 모두 마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계약서 서명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주고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도 서명은 가능하다.

부동산의 매매는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여 믿고 맡기는 것보다 오히려 건실한 중개업체에 맡기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 5. 부동산의 처리와 세금문제

부동산의 매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 거주지로 사용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공제(exclusion)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동안에 최소 2년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하며(the ownership test), 또한 주 거주지로 최소한 2년 이상 살았어야 한다.(the use test)



이 경우, 부동산의 매도로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25만불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25만불이 넘는 부분은 과세의 대상이 되므로 Form 1040 Schedule D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된다.

**6. 서류미비자의 소득 수준 (출처: Harvard Latino Law Review, The Taxation of Undocumented immigrants: Separate, Unequal, and Without Representation)**

가. 최저 소득의 두배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 (66%)

나. 최저 임금 수준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 (약 200만명) 최저 임금 수준을 받아 일하는 경우, 3인 가족에 대한 연방 빈곤 기준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 됨

다. 개인 소득 평균 (약 \$12,000/년)

라. 가구 평균 소득 (약 \$27,400/2003년) ※ 이민자 평균 가구 소득 (약 \$47,800/년)

## XXXVI. 아파트 렌트



## 1. 현황

서류미비자에게 렌트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ordinance)가 제정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연방법상으로 서류미비자라고 하여 렌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은 없으며, 주 법률 상으로도 서류미비자에게 렌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은 나오고 있지 않다.

Hazleton (PA), Farmers Branch(TX), Fremont(NE) 등에서 서류미비자에게 렌트를 금지시키는 조례를 채택하기는 하였지만, ACLU 등 인권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 법원에서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처우 문제는 연방 의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이민법의 문제라며 렌트 금지 조례를 모두 위헌으로 판시하고 있다.

연방 주거 보호법(Federal Fair Housing Act)에서는, 집주인(landlord)은 세입자(tenant)의 출신 국에 근거하여 차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주정부에서 이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미국 연방 주택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서는 주정부에 주어지는 기금(funding)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정부 혹은 주의회가 나서서 서류미비자에게 렌트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 2. 서류미비자 축출 시도 및 판결

2008년 뉴욕의 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서류미비자에게 렌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류미비자라고 하여 렌트를 중단하고 축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Recalde v. BAE Cleaners, Inc.) 즉, 서류미비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파트를 렌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주인으로부터 이민자 신분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 위 사건에서 집주인은 연방 이민법에 따라 자신이 처벌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주인이 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민법에서 불체자를 숨기거나 비호하거나 적발되지 못하게 하는(“conceal, harbor or shield from detection”) 행위는 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민법 274) 반면 이에 대하여 세입자였던 Recalde는 집주인이 교묘하고 기만적으로 라티노 세입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3. 불체자 렌트 금지 조례의 예 (Summerville, SC)

Summerville(SC)의 조례에 따르면, Summerville에서 부동산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시로부터 면허(license)를 받아야 하고, 임대인은 서류미비자에게는 임대를 하지 못한다. 또한 부동산 임대 시에는 세입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양식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불체자 렌트 금지 조례는 이미 펜실베이니아의 Hazleton, 텍사스의 Farmers Branch에서 통과된 적이 있었으나, 모두 연방법원의 위헌판결로 실제로는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심판이 연방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Fremont(NE)에서도 2010년 불체자 렌트 금지 조례를 주민

투표를 통하여 통과시켜 ACLU 등 인권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연방 법원에서는 불체자에 대한 렌트 금지, 불체자 채용 금지와 같은 이민법 조례는 도시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헌법 및 연방법의 문제이며, 헌법의 우위 규정(Supremacy Clause) 및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무효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Charles Schumer(D-NY), Lindsey Graham(R-SC)



연방 상원 의원들로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Graham 의원은 공화당 의원으로 이민개혁 논의에 참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의원으로 2010년에는 이민개혁 법안을 준비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논의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 XXXVII. 병원의 이용



서류미비자의 경우 의료보험이 있다면 서류미비가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서류미비자라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다만, 최근 의료보험 개혁 등에서 일부 서류미비자를 차별하는 규정이 있다.

### 1. 의료보험 개혁의 내용

현재 미국에는 4,600만명의 사람들이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약 6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류미비자는 특히 무보험 비율이 높아 약 두명중 한명이 보험이 없는 셈이다. 의료보험 개혁으로 인하여 앞으로 3,200만명의 사람들이 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서류미비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료보험 개혁의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험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보험자 중 연방 빈곤 기준(Federal Poverty Level)의 133%에서 400%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정부 지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정부 지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Medicare나 Medicaid 혜택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빈곤기준 133%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Medicaid 혜택을 볼 수 있다. (법률에서는 서류미비자는 Medicaid 혜택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개인 사업자(small business)는 별도의 보험이 만들어져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보험을 총괄하는 주정부의 보험 시장(exchange)이 2015년까지 설립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이 보험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695의 벌금을 매년 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류미비자의 경우, 보험금의 전체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보험(exchange)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2. 서류미비자와 의료보험 개혁

법률상으로 서류미비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즉, 서류미비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지만 서류미비자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서류미비자들이 의료보험 개혁으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보험 개혁법이 시행되더라도 “응급실”의 이용은 변하지 않는다. 즉,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언제든지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는 보험이 없다고 하여 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 3. 응급실의 이용

#### 가. 의의



보험이 없고, 서류미비자라 하여도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방 법인 응급구호법(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 “EMTALA”)가 있어, 환자가 응급진료를 요하는 경우에 법률에 규정한 경우 외에는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EMTALA는 “참여하는 병원”에만 적용된다. 참여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 혹은 의료국(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과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진료를 해준대 대하여 진료비를 받기로 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그런데, “참여하는 병원”은 사실상 미국내의 모든 병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병원이 몇개 있는데, Shriners’ Hospital for Crippled Children 및 카운티(county)병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법률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은 메디케어(Medicare)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

따라서, 만일 서류미비자가 “참여하는 병원”의 응급실로 간다면, 즉시 진료를 해 주어야 한다. 규정이 2003년에 다소 바뀌어 상당한 등록절차 (이것은 보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을 포함한다) 후에 진료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이것도 진료를 지체시키지 않는 정도에 그쳐야 하며, 이때 진료비를 미리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환자가 정말로 응급한 상황일 경우, 병원은 즉시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규정을 자세히 보면, 보험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언제 어디로 보낼 수 있는지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환자들이 돈을 낼 수 없다거나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로 진료하는 환자라고 하여, 다른 병원으로 보내거나 “자선병원”, “카운티 병원”으로 보낼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 나. EMTALA의 규정

응급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진료나 치료를 요구하며 병원의 응급실로 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그가 진정으로 응급한 의료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의료 검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응급한 의료상태에 있는 경우, 병원에서는 그가 호전될 때까지 치료를 제공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응급실로 오는”의 의미

응급실은 한정된 의미의 “응급실”이 아니다. 42CFR413.65 규정에 따라, 병원 “캠퍼스”(구내)뿐만 아니라, “캠퍼스 외의 병원 시설”도 넓은 의미의 응급실에 해당된다. 또한, “250야드 법칙”



에 따라, 병원의 본부(main building)에서 250야드 이내의 시설이라면 본부와 붙어있는 건물이 아니더라도 “캠퍼스”에 해당되며, 기타 지역이라도 HFCA의 지역사무소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병원의 캠퍼스로 결정된 부분도 캠퍼스에 해당된다.

#### “진통중인 임산부”의 특례

진통중인 임산부는 모든 경우에 있어, 법률에 규정된 이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출산이 끝날때까지 진료를 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 (1) 병원에서는 응급의료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응급의료 상황이 존재하거나 진통중인 임산부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제한하고 있다.
- (3) 응급의료상황이 존재하고 이송하지 않는 경우, 진료를 해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험이 없는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응급의료 상황이 존재하거나 진통중인 임산부인 경우, 병원에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 다. “응급의료 상황”(Emergency medical condition)의 의미

응급의료 상황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법률로 이를 정의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는 의료적인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었기에 많은 부분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의미가, 전적으로 의료진들에게 맡겨진 것은 아니다. 만일 문제가 생겨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법정에서 의사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서 사용가능하였던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옳게 판단하였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법적으로 정의된 바는 아래와 같다.

“응급의료 상황”이라 함은, 의료적 증상으로서 상당히 심각한 증상(심각한 통증 포함)을 보임으로 인하여, 즉시 진료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건강 (혹은 임산부의 경우, 임산부 혹은 태아의 건강)을 심각한 위협에 빠트리게 할 수 있는 상황, 혹은; 심각한 신체적 기능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 혹은; 진통하고 있는 임산부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송하게 되

면 산모 혹은 태아의 건강 혹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

#### 라. 불체자와 EMTALA

정부에서도 법률(The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에 따라 매년 \$250M의 예산을 책정하여, 서류미비자 및 기타 외국인에 대하여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CIS(이민연구 센터)나 FAIR 같은 반이민 단체에서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무보험자 비율이 높아, 응급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많이 차지하게 되며,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류미비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시민권자인데 이들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서류미비자를 위한 비용으로 계산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이 비록 무보험자 중에서 가장 응급실을 사용 안하는 그룹에 해당되지만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응급실 비용은 일년에 약 \$8.6 Billion에 달한다고 한다.

#### 마. 병원비의 지불

물론 서류미비자라고 하여 병원비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류미비자가 병원비를 못낸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을 뿐이다. 병원에서는 정당하게 병원비를 부과하며, 할부 혹은 재정지원 등으로 병원비를 납부할 수 있게 도와 준다. 많은 사람들이 출산후에 매달 \$50씩 병원에 내기도 한다. 병원에서는 서류미비자라고 하여 신고하지도 않는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병원비를 받아내려고 하지 서류미비자로 환자가 추방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서류미비자의 의료진료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법률이 개정된다면, 이러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일부 주에서 서류미비자 환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또한 위의 내용은 주에 따라, 병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XXXVIII. 미국에서의 교육



## 1. 초, 중등 교육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초, 중등 교육을 받는다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법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1982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Plyer v. Doe, 457 US 201)로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게 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텍사스 주의 교육법이 서류미비자 아이들을 위한 주정부 예산을 유보(withholding)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서류미비자 학생들로 하여금 예산에 대한 보전금을 \$1,000씩 내도록 하는 교육청의 시도에 대하여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학생이라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똑같은 “인간”이며,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문맹률을 높여 차후, 실업, 복지 및 범죄로 인한 비용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판결에 따르면, 초, 중등 학생의 경우, 이민자 신분을 물을 수 없고 이민자 학생이 학교를 다님에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

하지만 추방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초, 중등학교에 등록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방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드림법안(HR 6496)에서는 12세 이상의 초, 중등학생으로 드림법안의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방절차에 회부할 수도, 추방절차에 회부되어 있는 경우 추방명령을 내릴 수도 없도록 하고 있었다.

## 2. 대학교육

대학 교육의 경우 초, 중등 교육과는 달리 서류미비자에게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은 Toll v. Moreno (441 US 458)에서 University of Maryland가 G-4 비자 소지자에게 주내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학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며 대학의 손을 들어주었고, 연방법인 1996년 이민법(IRIRA) 505조에서는, (주외의) 시민권자 학생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는 한 “거주” 사실에 근거하여 서류미비자 학생들에게 주내 거주자 등록금, 장학금 등 대학교육상의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주에서, 이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류가 아닌(거주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주내 “고등학교 졸업”을 요건으로 하여, 주내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과거의 드림법안에서는 IRIRA 505조 규정을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일 과거의 드림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서류미비자 학생들은 주내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가장 최근의 드림법안(HR6497)에서는 IRIRA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으나 결국 드림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만일 이 드림법안이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거주자 등록금 논쟁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IRIRA 규정은 현재에도 해석의 논란이 있고, 드림법안에서도 거주자 등록금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IRIRA 규정만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Texas, California, Illinois, Kansas, Nebraska, New Mexico, New York, Utah,

Washington, Wisconsin 10개 주에서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거주자 등록금(in-state tuition) 혜택을 주고 있다. Kansas 주에서는 등록금 거부 법안이 2011년 2월 현재, 하원을 통과한 상태이다. 또한, 콜로라도 등 몇몇 주에서 거주자 등록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약 30개의 등록금 관련 법안이 주 의회에 발의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거주자 혜택을 주는지 여부는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서류미비자는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정 보조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주정부의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부의 결정에 맡겨지고 있다. 현재 New Mexico 및 Texas에서만 주정부의 재정보조(financial aid)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서류미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나 일부 사설 장학금은 서류미비자에게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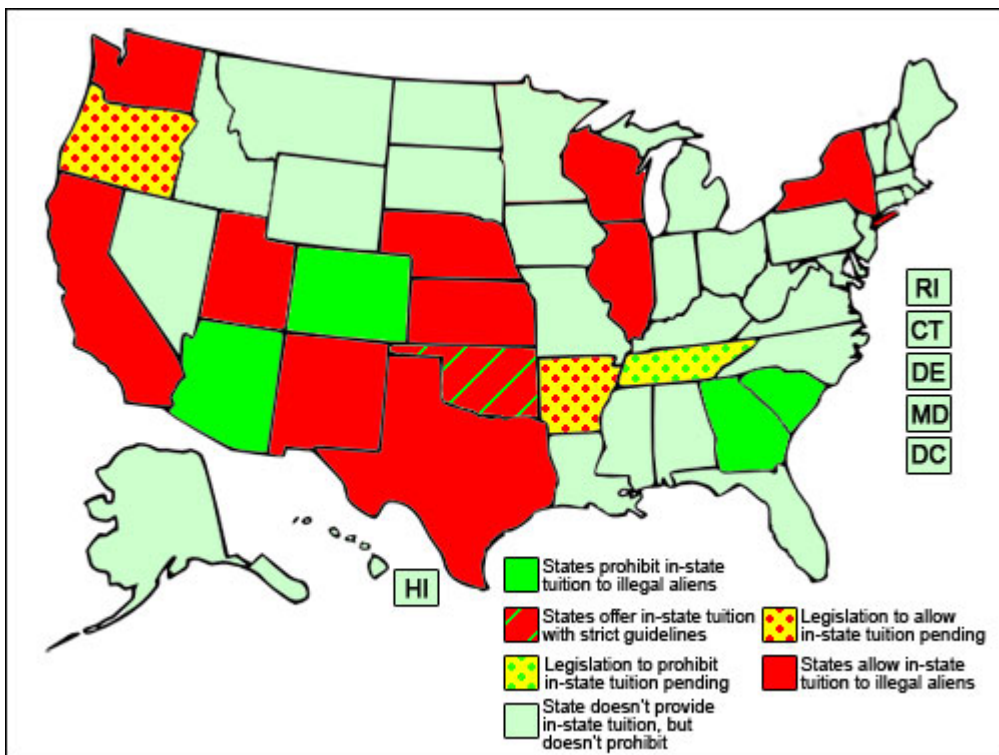


그림 1 거주자 등록금 허용현황(from NumberUSA)

### XXXIX. 밀입국과 체류신분 초과 불법체류의 차이





밀입국(EWI, Entry Without Inspection)한 사람들과 비자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사람들(Visa Over-stayers)은 모두 “불체자”라고 불리지만 이민법과 관련하여 똑같이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 1. 신분조정 자격의 차이

### 가. 신분조정 신청 자격의 제한

이민법에서는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이야기하며, 입국심사(inspection)를 받고 입국허가(admission)를 받았거나 가입국허가(parole)를 받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법 245(a)) 따라서 밀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45(i), VAWA의 규정처럼 예외적으로 밀입국한 서류미비자에 대해서도 신분조정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시민권자 배우자의 청원(I-130)으로 신분조정을 하는 사람의 경우,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서류미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밀입국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며, 미국을 출국하여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미비자의 경우,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있어 이에 대한 면제(waiver)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주권 신청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초청 청원(I-130)은 밀입국자도 할 수 있다. (따라서 245(i) 혜택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밀입국 불체자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출국하여 면제를 신청할 생각이 없다면, 가족 초청 청원을 해 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것은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단, 취업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밀입국으로 인한 서류미비자와 체류기간 초과로 인한 서류미비자 모두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고자 한다면, 미국을 출국하여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waiver)를 받고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 한다. 아니면, 불법체류에 따른 3년/10년 입국제한에 따라 그 기간만큼 미국외에서 기다려야 한다.

### 나. 245(k)

245(k)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의 합이 180일 이내인 경우, 취업 이민비자 신청시에 불법체류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 중에 밀입국한 불법체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45(k)가 허용하는 불법체류는 체류기간 초과 불법체류(245(c)(2)), 불법고용((c)(7)), 신분위반 사실((c)(8)) 세가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밀입국한 불체자는 245(k)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245(k)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입국한 날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어야 한다.



## 2.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 가. 241(i), VAWA

245(i)의 혜택을 주장하며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밀입국자와 비자초과 체류자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 245(i)는 2001년 4월 30일 이전 이민비자를 신청하였거나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 접수가 된 사람들에게, 신분조정 신청 자격제한을 해제시켜주는 특별 규정이다.

VAWA(Violence Against Woman Act)에 의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 사람도, 밀입국으로 불체자가 되었던 비자기간 초과로 불체자가 되었던 상관없이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VAWA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사람이 신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법이다.

### 나. 구제법안, DREAM Act

과거 시행되었던 구제법안 (1986년 불체자 구제법) 및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구제법안 (CIR ASAP 2009, The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10)에서는 모두 밀입국자와 체류기간 초과 불체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자가 모두 구제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2001년 이후 계속하여 추진되고 있는 드림법안의 경우도, 밀입국자와 체류기간 초과 불체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양자가 모두 드림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 다. 기타 구제 수단

추방의 연기, 추방의 취소, 난민 신청 등 기타 구제 수단에 있어서도 밀입국자와 체류기간 초과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 ※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차이

불법체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3년, 1년 이상인 경우 10년의 입국제한이 따르는데, 이때의 불법체류는 밀입국에 의한 것인지 체류기간 초과로 인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즉, 예외적으로 3년/10년의 입국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이것은 이민법 212(a)(9)(B)의 규정에 따른 제한이다. 또한 212(a)(9)(B)의 규정은 1회의 불법체류 기간에 관련된 규정이다.

한편, 이민법 212(a)(9)(C)에서는 과거 불법체류 기간의 총합이 1년을 넘고 미국을 출국하였다가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이미 밀입국한 경우, 최소 10년의 입국제한이 있음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또한 밀입국에 의한 불법체류, 체류기간 초과로 인한 불법체류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

한편, 과거 1년 이상의 불법체류가 있는 사람이 다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거나 밀입국한 후 적발된 경우 영원히 입국이 제한된다. 최소한 10년을 미국외에서 체류하며 기다린 후에, 입국제한의 면제를 신청해 볼 수 있다. 10년의 입국제한 기간은 면제되는 규정이 없다.

Robert Menendez



상원의 유일한 히스패닉 의원으로 2010년에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발의하였다

## XL. 취업이민(스폰서)의 가능성



서류미비자로 있다가 보면 가끔 들을 수 있는 말이 “내가 스폰서 해줄게, 취업 비자 받아”라는 말이다. 심지어 식당이나 빵집 등 조그마한 가게의 사장도 이런말을 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간단히 답을 말하면 “안된다”이다. 신분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조정 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이민법(245(c))에 나타나 있고, 취업이민에는 근친가족의 경우와 같은 예외규정도 없어 온전히 신분조정 신청이 제한된다. 따라서 서류미비자에게 접근하여 스폰서 해줄게 하고 달콤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민사기꾼으로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서류미비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취업 비자를 받아 보라고 하는 경우, 조심스럽게 들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아래에 적시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해당 되지 않는 것이다.

#### 1. 245(i) 혜택으로는 가능

245(i)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취업에 근거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45(i)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I-130, I-140, (I-360, I-526포함),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중 하나를 접수하였거나, 1998년 1월 15일 사이에서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이민비자 청원 혹은 노동허가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245(i)의 규정은 현재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특별 규정이다. 따라서 취업에 근거한 모든 종류의 이민비자와 관련하여 해당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현재 갖추고 있다면 현재 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EB-2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취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의 정의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불체자라 하더라도 취업에 근거하여 신분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불체가 된 이유가 밀입국으로 인한 것인지, 기간초과로 인한 것인지 묻지 않는다. 단, 우선일자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다.

#### 2. 245(k)로는 가능

245(k) 규정은 불법체류 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불법체류를 문제삼지 않고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즉, 불법체류(245(c)(2)), 불법고용((c)(7)), 신분위반 사실((c)(8))이 있더라도, 그 기간의 합이 180일을 넘기지 않았다면, 현재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취업비자는 EB-1, EB-2, EB-3, EB-4(이민법 101(a)(27)(C))이다. 따라서 불법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사람이라면 취업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경우의 불법체류는 비자 체류기간 초과로 인한 불법체류에 한하며, 밀입



국으로 인한 서류미비자는 245(k)의 혜택을 볼 수 없다.

### 3. 노동허가(PERM)는 가능 (245(i)의 연장 기대)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첫번째 거쳐야 하는 관문이 노동허가(PERM)이다. 노동허가를 신청한 것만으로도 245(i)의 혜택을 주었던 과거의 예를 생각하면, 혹시라도 245(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어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9/11 이전에 245(i)의 수혜기간이 한번 연장된 법률이 통과된 적이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반이민적인 분위기가 달라져, 이민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245(i) 연장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있으므로 노동허가를 신청해 놓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로 볼 수 있다.

PERM은 최근에 도입된 전자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시스템을 말하며, 고용주가 “ETA Form 9089” 양식을 ETA(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에 접수하여 노동인증을 받게 된다. ETA 9089양식에는 직무의 성격,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통상 임금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인증 신청을 해줄 고용주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 놓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4. 불법체류의 면제(waiver)로도 가능

비록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취업비자의 제의가 있다면 미국을 떠나 불법체류의 면제(waiver)를 받고 취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수도 있다. 불법체류의 면제는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중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아들, 딸)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배우자 혹은 부모로서 두고 있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로서 취업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5. 실질적인 가능성

위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본다면 마치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245(i)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서류미비자가 취업비자를 통하여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245(k)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불법체류의 사유도 극히 제한적이다.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비자의 신청은 단지 245(i)의 연장을 기대하고 신청해 놓는 것에 불과하여 당장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실제로 채용

할 수도 없는 사람을 위해 노동허가를 신청해 주기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불법체류의 면제의 경우, 미국을 출국하여 면제(waiver)를 받아야 하는데, 3년/10년의 입국제한이 있는 상황 아래 다시 돌아 올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류미비자의 입장에서 취업비자의 제의가 들어온다면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보다 이를 빙자로 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John McCain



2006년, 2007년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하였으며 이민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인물이다. 2010년 중간선거를 맞아 보수화된 유권자들로 인하여 보수적인 태도로 갑자기 선회하여 국경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XLI. 이민사기 예방법





이민국 웹사이트를 둘러보면, 이민사기 예방을 위한 지침이 나와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민과 관련하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 및 BIA가 인증한 단체의 직원들에게만 문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기를 예로 들며 현재 사면은 없다는 것, 미국에 단순히 오래 체류하였다고 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물론 1972년 1월 1일 이후 체류하고 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만일 신분조정 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신분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추방절차에 회부된다는 것도 밝혀 놓고 있다.

또한, 이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조 서류에 서명하지 말것, 백지에 서명하지 말것, 서명한 서류는 항상 사본을 요청할 것, 이민 서류를 신청할 때는 항상 두사람 이상의 의견을 물어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혀 이민사기를 완전히 예방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서류미비자의 경우, 이민사기를 치는 사람이 서류미비자는 경찰에 신고를 꺼려할 것이라는 것, 모든 것을 변호사 혹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더욱 이민사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민사기의 유형을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한다.

## 1. 나 “잘 알아” 형

많은 사람들이 이민법에 대하여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마저도 잘 모르는 것이 많고, 이민법은 하루아침에 내용이 달라지거나 판례가 변경되기도 한다. 따라서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한다.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변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생활을 하다보면 아는 사람들이 한, 두명씩 계속 늘어나게 된다. 교회를 통해, 학교를 통해 혹은 직장을 통해 아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이 중에는 나보다 미국에 일찍 와서 실제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민법에 관한 한,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내가 서류미비자인 입장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민사기범이 되는 유형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번째는 도와주려는 선량한 의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처음부터 사기를 치기 위하여 아는체 한 경우이다.

도와주려는 선량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이미 영주권을 받았다거나 교회 등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민법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서류하나가 빠진대든지, 넣지 않아야 하는 서류를 넣는다든지 조그만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저렴하게 혹은 비용을 받지 않고 도와주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조심하는 것이 좋다.

아주 처음부터 속이고 잘 아는척 하는 사람은 피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들은 선량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욱 치밀하게 접근하여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향이라고 하여 혹은 동창이라고 하여 안심하여서는 안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인 돈을 받고나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서류미비자들에게 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추방 재판이다.

이민변호사 중에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민변호사 중에도 서류를 위조하고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받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민서류의 진행 절차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라면 또한 처음부터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이므로, 이들의 계락을 피해가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http://fightfraudamerica.com/toolbox/attorney\\_license.html](http://fightfraudamerica.com/toolbox/attorney_license.html)에 가보면 변호사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징계 기록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징계 기록이 있다고 하여 모두 나쁜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잘 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쉬운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미 여러번 같은 유형의 다른 사람들을 도와 처리한 적이 있다고 자랑까지 한다. 이민변호사가 이런말을 하는 경우는 적겠지만, 만일 이민변호사가 그런말을 한다면 한번쯤 의심해 보아야 한다. 소위 말하는 “브로커” 혹은 “전문가”들이 이런말을 보다 많이 한다. 하지만 이민국 신청에 있어 “반드시”라는 것은 없다. 특히 서류미비자들의 신분을 조정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서류미비자가 아닌 신청자의 신분조정도 이민법에서 명백히 이민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민서류의 처리에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실상 장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정하게 도와줄 의도가 있는 변호사 혹은 전문가라면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다 이야기를 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자신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 혹은 이민변호사와 의논할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다 알아보도록 하고 지나치게 변호사/전문가에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 2. “나 이민국 직원 알아” 형

주변의 사람들 혹은 이민변호사 중에는 이민국 직원을 안다고 하며, 안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가 이민사기범이라고 보면 맞다. 이민국은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만약 하나의 신청을 이민국 직원의 힘을 빌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민국내의 여러 사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실제로 이민국내의 여러 사람을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다시 그 사람들에게 대한 감독관이 있고, 이민 사기

를 찾아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어 이민국 직원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일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을 믿고 일을 맡겼다가는 감옥에 가기 십상이다. 이민국 직원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제출할리가 만무하며, 이미 사기를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므로 서류를 위조하는 것도 우습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영주권 카드가 아니라 추방재판 통지서일 것이다.

서류를 자신들이 위조하면서 마치 이민국 직원이 실제로 만들어주는 서류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민 사기범 중에는 특히 서류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나 이민국 직원 알아”라고 이야기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3. “조금만 고치면 돼” 형

이민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한 두가지가 걸려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하는데 전과 기록이 있어 문제가 되거나 기간으로보아 불과 몇달 차이로 인하여 자격을 잃는 경우 등이다. 이때 신청인 본인이 이것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고쳐보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를 부추기는 사람은 더욱 문제이다. “아, 그거 없다고 하면 돼” 라든지, “날짜 하나만 바꾸면 돼”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이민국 직원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해, 걱정마”라는 말도 덧붙인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이민국 속을 들여다보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명백히 범죄이고 추방사유가 될뿐만 아니라 나중에 신분조정의 기회가 오더라도 영원히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기꾼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달콤한 유혹의 말을 이민변호사가 직접 하기도 한다. 물론 비양심적인 변호사로서 감방에 갈 각오를 하고 있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유혹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 이민국 직원들은 서류 위조등 기만술을 찾아내는데 있어 전문가들이다. 수상한 느낌이 들면 확인하고 대조한다. 그리고 위조 등 범법행위를 찾아내는 경우, 이민변호사라 하여도 감방으로 보낸다. 따라서 여차하면 서류위조로 감방에 갈 수 있는 것은 것이다.

양심적인 변호사라면 혹시라도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사유가 있다면, 과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려줄 것이다. 또한, 거짓말을 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며 거짓없이 신청하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이다. 물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

실상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위험부담이 그로 인한 이익보다 훨씬 크다. 위조 등 거짓말 탐지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만일 위조사실을 알게 되면, 신청이 기각될뿐만 아니라 추방되어 다시는 신청조차 해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서류 위조의 경우, 중죄로서 감옥에서 상당기간 복역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서류미비자라면 차라리 구제안이 통과하기를 기다리거나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을 통하여 신분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옳으며,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다.

#### 4. 충고

이민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많이 알고 있는 경우, 그만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인터넷을 통하거나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변호사 비용이 무섭다고 겁낼 필요는 없다. 어느 변호사든지 처음으로 자문을 구하는 경우, 무료로 알려준다. 그러므로, 무슨 신청이든 이민국과 접촉해야 할 일이 있다면 최소 2명 이상의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사기의 낚시를 빨리 알아차리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너무 좋게 들리는 말은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 사기가 개입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신분을 회복해 보겠다는 생각은 미리 버리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이민 사기가 개입할 틈을 스스로 열어 놓는 행위이다. 합법적인 수단이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보고, 그러한 수단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구제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정열과 관심을 합법적인 절차에 쏟고 부지런히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민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 XLII. 신분증



## 1. 신분증의 의의

서류미비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신분증이 문제된다. 여권이 있어 그나마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정부 혹은 미국 업체와 접촉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없는 서류미비자는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운전면허증이 사실상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류미비자는 워싱턴, 뉴멕시코 등을 제외하고는 신분증 역할을 하는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류미비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일부 도시에서는 도시 거주민에 한하여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ID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일부 도시에서는 영사관에서 발부한 신분증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도 살펴 보기로 한다.

## 2. 시 정부 발급 신분증

### 가. San Francisco



ID 카드는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더이상 쓰지 않는 노인들, 성전환자(transgender) 등에게도 발부된다.

이 ID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외국의 운전면허증 혹은 다른 사진이 있는 아 이디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San Francisco 내에서의 거주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과금 고지서 나 은행 거래 내역서(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아이디는 시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신분확인용 즉, 신분증으로 받아야 한다. 시정부기관 및 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비영리 기관에서는 이 ID를 신분증으로 받게 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고용주가 채용시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우와 같이 연방법에 따라 신분확인이 의무화되어 시 조례를 적용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카드로 술, 담배를 사기 위한 나이를 입증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신분증에 대하여 불법이민을 합법화 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소송의 제기가 있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발급 신청

카운티 사무국(시청, Clerk’s Office, room 168)에 30일 이전에서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는 311로 전화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sf.city.id@sfgov.org](mailto:sf.city.id@sfgov.org)로 이메일을 보내 예약을 할 수도 있다.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이다.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분증 및 거주지 증명을 제시하고 나이에 따라 5불에서 15불을 지불하여야 한다. 카드는 원칙적으로 2년간 유효하며,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효력을 잃게 된다.

3. 멕시코 영사관 발부 신분증(Matricula Consular)



일부 주 및 시정부 그리고 기업에서 멕시코 영사관에서 발부한 신분증을 받아 들고 있다. 미국도 가입하고 있는 비엔나 영사관계 조약에 따르면, 영사 업무 중에는 자국민에게 여권 및 신분증을 발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가. Durham (NC)

노스 캐롤라이나의 인구 23만의 도시인 Durham에서 경찰관 및 공무원들이 멕시코영사관에서 발부한 신분증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멕시코 영사관 아이디(Matricula Consular)를 다른 공식 신분증과 같이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은 서류미비자라고 하더라도 영사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 구금하거나 이민집행국(ICE)에 신고하지 않는다.

다른 시정부 기관에서도, 정부의 혜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아이디를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영사관 신분증은 멕시코 정부가 발부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멕시코 주민들에게 발부하고 있다.

A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이미 10년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의 400여개도시에서 이를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경찰기관은 1,200개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Durham 경찰서장인 Jose Lopez의 말에 따르면 Durham에서도 이미 자신이 서장이 된 4년전부터는 멕시코 영사관 아이디를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North Carolina에서는 Durham이 처음으로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에도 영사관 아이디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경찰관들이 서류미비자를 교통 위반 등으로 단속하였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복잡한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 확인을 위하여 체포, 구금하여야 하는 경우는 물론, 이민집행국(ICE)에 신고하여 신병을 인계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민국에의 신병인도는 추방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범죄가 아닌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경찰관들이 영사관 신분증을 받아들이고 서류미비자들이 단순히 벌금만 납부하게 하면,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Jeb Bush



George W. Bush 전 대통령의 동생으로 히스패닉 부인과 결혼하였다. 스페인어에 능하며 공화당원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이민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잠재적 대통령 후보중의 한명으로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낸 바 있다.

## XLIII. 안전 도시 (Sanctuary Cities)



## 1. 안전 도시 (Sanctuary Cities)의 의미

일명 “Sanctuary City”라고 불리는 “안전 도시”라 함은, 명시, 묵시적으로 불체자들을 보호해주는 “안전 정책”(Sanctuary Policy)를 채택하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안전 정책이라 함은, 주 정부 기관(경찰)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미비자를 발견하고도 연방 정부기관(이민국)에 신고하지 않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서류미비자 신분 여부를 구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입법기관의 “법률”, “결의문”, “조례”, 행정기관의 “명령”(주지사령, executive order), “시행령(훈령)”(departmental policies) 등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최초로 명시적인 안전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로스엔젤레스의 경우, 1979년에 행정 명령을 통하여, 경찰관이 이민자 신분을 먼저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Officers shall not initiate police action with the objective of discovering the alien status of a person. Officers shall not arrest nor book persons for violation of title 8, section 1325 of the United States Immigration code (Illegal Entry)) (경찰관들은 외국인의 이민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인에게 접근할 수 없다. 경찰관은 밀입국을 사유로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입건할 수 없다)

최근에 이 정책을 카운티 의회(council)가 명문으로 입법화한 Washington 주 King County의 경우,

1. 경찰관이 단순히 개인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권, 외국인 등록카드 혹은 노동허가증 등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 단순한 위반, 예를 들어, 교통신호 위반 등으로 운전자를 정지시킨 경우, 이를 이용하여 이민자 신분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3. 개인의 이민자 신분, 인종, 영어 사용미숙의 이유만으로 질문을 계속하거나 이민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4.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시민권자 신분, 이민자 신분을 근거로 차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묵시적인 안전정책이라 함은,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안전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나, 사실상 이를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들이 서류미비자를 발견하고도 이를 이민국(ICE)에 보고하지 않는 관행이 있거나, 정부에서 서류미비자를 (가리지 않고) 채용하고 있는 사실, 주 정부에서 (연방)이민국의 서류미비자 체포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주요 공무원, 예를 들어, 시장이나 의회 의장의 공식적인 진술 등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묵시적인 안전정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이나 정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는 다소 복잡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고려에서이다. 선거에서는, 서류미비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이들 시민단체와 연결되는 인종그룹(특히 히스패닉)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이 선거때에 특정 후보자를 후원하는 것도 그 후보자가 채택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시 공무원에게는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라는 압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두번째의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시나 정부 혹은 민간인 단체나 조직, 기업, 고용주 등이 이미 서류미비자들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져, 이를 되돌리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들게 만들거나 재정,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이유는 합리성에서 찾을 수 있다. 경찰관이 이민자 신분을 따지고,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추방절차에 회부한다면, 범죄가 있어도 신고하지 못하고, 전염병이 생겨도 이를 신고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안전 도시의 예

안전도시의 대표적인 예로는 Washington, D.C.; New York City; Los Angeles; Chicago; San Francisco; Santa Ana; San Diego; Salt Lake City; Phoenix; Dallas; Houston; Austin; Detroit; Jersey City; Minneapolis; Miami; Denver; Baltimore; Seattle; Portland, Oregon; New Haven, Connecticut; and Portland, Maine을 들 수 있다.

<http://www.ojipac.org/sanctuary.asp>에 가보면, 안전도시로 지정된 사유 및 그 도시의 리스트를 살펴볼 수 있다. 비록 이 리스트가 계속하여 업데이트 되고 있기는 하나, 공식적인 안전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전도시인지 여부는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도시내에서도 이민국과 287(g), 안전도시(Secure Community Program) 협정을 맺고 있는 경찰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다소 혼돈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아 안전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가지 정책이 병존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경찰기관이 이민국과 287(g) 협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체포된 자, 혹은 중죄로 구금중인 자를 대상으로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안전정책에 따라,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먼저 이민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9년에 조지아와 테네시주의 경우, 주 내에서 안전도시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콜로라도(2006) 및 미주리(2009) 주에서도 정부 기관에서 안전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없게 한 바 있다.

## 3. 반-안전 정책

사실 연방법에서는 이미 안전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6년 이민개혁법 642조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IIRIRA))에 따르

면, 주 및 지역정부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고용주로 하여금 시민들의 이민자 신분과 관련하여 국토안보부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states and localities may not adopt policies, formally or informally, that prohibit employees from communicating with DHS regarding the immigration status of individuals.)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가 2006년에 채택한 반 안전정책의 예를 살펴 보자. 경찰로 하여금 서류미비자를 이민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을 금지하고 있다.

가. 지역 정부는 주민들의 이민자 신분과 관련하여 경찰이 연방 관리와 협력하는 것을 막는 어떠한 정책도 채택할 수 없다.

나. 경찰은 범죄로 인하여 체포된 사람이 서류미비자로 의심되는 경우 이민집행국(ICE)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이것은 가벼운 교통위반 및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민국 관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시, 카운티 정부는 지역의 경찰기관에 서면으로 경찰은 이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마. 시, 카운티 정부는 몇명의 서류미비자를 이민국에 통보하였는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서류미비자를 보고하지 않는 지역정부는 주정부의 기금을 받을 수 없다.

#### 4. 구분의 어려움

사실 안전도시, 비-안전도시를 두부자르듯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도시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면서 다른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반-안전도시 정책을 채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도시를 안전도시, 비-안전도시로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 그 도시가 어떠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어 보인다. 서류미비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지, 체포, 구금되는 경우 반드시 이민자 신분을 확인하는지, 체포, 구금되는 경우 이민자 신분을 확인한 후 이민집행국(ICE)에 이를 반드시 통보하는지, 주정부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신분확인을 한 후 이를 부여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한다.



## XLIV. 출국 및 재입국의 제한





## 1. 불법체류 후 재입국 제한

서류미비자로 생활하다 미국을 떠나게 되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의 입국제한을 받게 된다. 불법체류의 기간이 6개월이상 1년 미만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의 입국제한이 따른다. 단, 체류기간의 초과로 인한 불법체류의 합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본국으로 돌아가 간 비이민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하는데 따르는 제한이 없다. 이민비자의 경우,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고국으로 돌아가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6개월 내지는 1년의 불법체류는 한번의 방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여러번의 방문으로 불법체류의 합이 6개월을 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발적 출국 기간을 부여받고 출국하지 않고 계속하여 불법체류하는 경우와 같이, 한번에 이루어진 불법체류라면 모두 합산이 된다.

또한, 3년/10년의 입국제한은 미국을 출국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또한 3년/10년의 입국제한은 출국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3년 입국제한은 추방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단 추방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출국하면 이민법 212(a)(9)(A)에 따라, 추방결정을 받는 경우, 5년의 입국제한에 따른다. 또한, 추방절차에 참석하지 않게 되므로 이민법 212(a)(6)(B)에 따라서도 3년이 아닌 5년의 입국제한이 따른다. 다만,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어 10년의 입국제한을 받는 경우, 추방절차와 관계없이 출국 후 10년의 입국제한을 받는다.

## 2. 재입국 방법

### 가.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

#### (1) 비이민비자로 재입국하는 경우

이민법 212(d)(3)에 따른 면제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 (2) 이민비자로 재입국하는 경우

이민법 212(a)(9)(B)(v)에 따르는 면제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 (3) 3년/10년 후 재입국

출국 후 3년 혹은 10년을 기다린 후 재입국 할 수 있다.

## XLV. 이민법 위반 행위



이민법상에는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도 범할 수 있는 이민법 위반 행위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이중 특히 서류미비자들이 범하기 쉬운 행위, 서류미비자들에 대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범죄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이들 행위는 이민법상 혜택을 볼 자격을 제한하기도 하고, 민사 처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 1. 이민관련 신청에 “거짓말”을 하는 행위(misrepresentation, 212(a)(6)(C)(i))

입국시에 허위의 진술로써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시 추방되며 차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1996년 이민개혁법, IIRIRA)

이민관련 신청서류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거짓말”(misrepresentation)로 입국불허 사유(inadmissible)가 되는 행위이다. (이민법 212(a)(6)(C)(i)) 또한, 거짓말은 이민국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범죄로서 “중요한”(material) 사실에 대하여, “알면서”(knowingly) 거짓말을 한 경우, 추방시키고 영원히(for life) 입국을 불허한다. “중요한” 사실이라 함은, 이민 신청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와 결혼함에 있어 결혼 상대자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와 같이, 이민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내용을 속이는 것을 말한다.

“알면서” 거짓말을 한 경우는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신이 실수로 거짓말을 한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그 부분을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거짓말을 한 경우, 평생 이민자 신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거짓말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받으려면,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로서 다른 입국 불허 사유가 없고,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로서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에 이민국의 재량에 따른 면제(waive)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이민법 237(a)(1)(H)) 또한, 노동허가를 결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VAWA(Violence Against Woman Act) 수혜자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12(i), 237(a)(1)(H))

비이민비자 신청의 경우, 212(d)(3)에 의한 면제를 받아야 한다.

### 2.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행위(212(a)(6)(C)(ii))

출생 증명서를 위조하는 행위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 시민권의 주장은 이민법 혜택을 받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연방, 주 법에 따른 혜택을 위한 경우를 전부 포함한다. 따라서 대학에 거주자 등록금을 내기 위하여 시민권자라고 한 경우에도,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행위로서 “영원히”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노동허가가 없으면서 노동허가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I-9에 체크를 하는 경우도, 체크할 당시의 의도에 따라 허위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체크 박스에는 “US Citizen or Nation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권자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체크하였다면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한 것이 된다.

이것은 면제를 받을 수도 없는 규정이다. 1996년 이민개혁법이 면제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다. 유일하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시민권 주장이 1996년 9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경우이다. (212(a)(6)(C)(ii)(II), 212(i)) 다만, 비이민자는 212(d)(3)에 의한 면제를 받고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 3. 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 및 위조, 변조된 이민서류를 사용하는 행위(이민법 274C)

허위로 영주권, 소셜 카드(Social Security Card) 등을 만드는 행위 및 이러한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류를 만들어 제공하는 행위 및 제공하려고 시도한 행위도 포함된다. 사용하는 행위는 서류를 진정한 것인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민관련 혜택을 신청함에 있어 이를 제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서류의 위조, 변조는 모든 주에서 형사법상 범죄 행위가 된다. (이민법 274C) 이러한 위조, 변조로 만들어진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가 범죄로서 이민법상 처벌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 이민법상 처벌되는 위조, 변조 등(이민법 274C)

(1) 이민법상의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이민법상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서류를 위조, 변조 하는 행위

(2) 위조, 변조된 서류를 이민법상의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이민법상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사용, 사용 시도, 소지, 획득, 수령 혹은 제공하는 행위

(3) 이민법상의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이민법상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발부된 서류를 원래 발부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하거나 제공하거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이 경우 죽은 사람의 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4) 이민법 274A(b)(노동자격 인증)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혹은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발부된 서류를 접수, 수령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5) 이민법에 따른 혜택의 신청 혹은 이민법상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 접수 혹은 보조해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신청 혹은 서류가 불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부주의로 무시하거나 그 서류가 사용하는 사람에게 발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부주의로 무시하는 경우

(6) 미국에 오기 위하여 미국 입국자격과 관련되는 서류를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제시하였다가 미국에 도착하여 이민관 직원에게 그 서류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이민법 274C에 규정된 서류 위조 등은 추방 사유가 된다.

또한 서류위조는 각 서류당 최소 250불에서 최고 2,000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미 서류위조로 벌금을 부과 받은 후 다시 서류위조로 벌금을 받는 경우, 서류 당 2,000불에서 5,0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벌금의 부과는 행정법원 판사의 재판(hearing)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류 위조 등에 대한 면제(waiver) 규정은 없다.

#### 4. 밀입국 및 밀입국을 돕거나 고무하는 행위

##### 가. 밀입국

밀입국은 “EWI”(Enter Without Inspection)로 불리며 이민법 275(a)에 따라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구금형(civil penalty)을 받을 수 있다. 재차 밀입국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까지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민법 275(b))

밀입국 후 미국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류한 후 귀국한 경우, 다시 비자를 신청하거나 신분조정 신청시에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 (212(a)(9)(B)) 밀입국후 불법체류가 6 개월이 넘는 경우, 3년의 입국제한, 불법체류가 1년을 넘는 경우, 10년의 입국제한이 따른다. 밀입국으로 인한 불법체류의 경우,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의 초청으로 인한 신분조정도 미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미국을 출국한 후 면제(waiver)를 받아야 재입국할 수 있다. 단, 1997년 4월 이전의 불법체류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함에 계산이 되지 않는다.

##### ※ 불법체류 후 밀입국(212(a)(9)(C))

1997년 4월 1일 이후, 총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간이 있었던 사람이 출국 후 혹은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당한 후,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밀입국 한 경우, 평생 동안 입국이 제한 된다. 이 경우, 평생 동안 입국제한을 받지만, 미국을 떠난 후 10년 후에는 이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0년간의 입국제한에 대한 면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10년 이후의 입국제한을 면제(waive)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212(a)(9)(B)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212(a)(9)(C)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시기에 1년 이상의 불법체류가 있고 출국하였다가 밀입국을 시도한다면, 평생의 입국제한을 받고 최소 10년을 기다렸다가 이 제한을 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VAWA 수혜자의 경우, 폭력에 대한 피해와 입국/출국이 관련되는 경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 ※ 수차례의 밀입국(Multiple EWI)

212(a)(9)(C)의 제한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밀입국의 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밀입국한 이후의 1997년 4월 이후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중요한 것이 된다. 총 1년 이상의 불법체류가 있고 난 이후, 다시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밀입국한 경우 212(a)(9)(C)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밀입국한 이후 6개월 체류한 후 출국하였다가 다시 밀입국하여 현재까지 1년 넘게 체류하고 있다면, I-601 면제를 받을 자격이 된다. 비록 두번째 밀입국이긴 하지만, 1년 이상의 불법체류가 있고 난 이후의 밀입국이 아닌 것이다.

#### ※ 국경에서 되돌려 보내진 경우(catch & release)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이 국경수비대(CBP)에서 적발하여 지문을 찍고 하루 정도를 구치되었다가 다시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즉, 국경을 넘다가 잡힌 사람들이다. 이것은 이민법 212(a)(9)(C)의 제한을 받게 할 수 있는 “추방”(deportation)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이미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이 365일을 넘긴적이 있으며 그 후 본국으로 귀국한후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되돌려 보내기(catch & release)로서 멕시코(자국)로 돌려 보내진다면 212(a)(9)(C)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비록 이 경우, 밀입국 후 미국에서의 체류는 없을지라도 평생 미국의 입국이 제한되며 최소한 10년을 미국외에서 체류하여 면제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45(i), 망명 신청,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의 경우 밀입국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주장할 수 있다.

#### 나. 밀입국을 돕거나 비호하는 행위

밀입국 원조라 함은 해당 외국인이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지정된 입국 장소(port of entry, POE)를 통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하도록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 사실을 부주의로 무시하고, 해당 외국인을 미국내에서 이송, 이동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 사실을 부주의로 무시하고, 해당 외국인을 건물 혹은 수송 수단을 포함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든 숨기거나, 비호하거나,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거주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줄 알거나 부주의로 무시하고, 미국에 입국하거나 거주하도록 격려, 유도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만일 미국 입국 후 범죄 활동, 예를 들어 서류 위조활동에 종사할 줄 알면서 밀입국을 원조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된다.

또한, 위의 행위를 공모, 원조, 사주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위의 행위는 그 행위의 종류에 따라, 5년, 10년, 20년의 징역형 및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외국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사형,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입국 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망명 신청을 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입국시키거나 입국시키려 시도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범죄에 이용된 차량, 범죄로 획득한 이익 등은 모두 몰수된다. 단, 비영리 단체의 일원으로 1년 이상 종교직에 있는 사람이 순수하게 종교적 봉사활동에 종사할 사람을 밀입국 시킨 행위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 불법체류자를 비호(harbor)하는 행위

불법체류자를 비호하는 행위는 서류미비자에게 고용 관계를 맺고,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와 같이 불법체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체류자 인줄 알면서 일시적으로 가정집에 머무르게 해주는 행위도 비호(harboring)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비호”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직 판례를 통하여 규명되지 않고 있다.

### 5. 고용주가 노동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 주선, 모집하는 행위(이민법 274A)

고용주는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 unauthorized alien)을 고용, 모집, 수수료를 받고 추천하거나 노동허가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시민권, 영주권, 노동허가증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을 모두 이른다. 따라서 비이민자로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에 종사하면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인 것이다. 처음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으로 고용한 사람 1인당 275불에서 2,000불까지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1인당 2,200불에서 5,500불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번째 위반에서는 1인당 3,300불에서 11,000불까지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허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행위는 채용시 I-9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중개인( contractor)을 통하여 채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용주가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 된다. 다만, 고용주는 선의(good faith)로 I-9의 내

용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은 경우, 서류미비자를 채용한 것에 대하여 항변(defense)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용주가 악의, 즉, 노동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 고용주의 I-9 비치 의무

채용이 결정되고 실제 업무가 시작되기 직전에 고용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I-9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I-9이 노동자격을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1986년 이민개혁법(IRCA)에서는 모든 고용주로 하여금 새로 채용되는 근로자가 노동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E-verify와는 별개의 의무이다. 따라서 E-verify를 채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I-9의 작성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I-9의 작성 및 비치의무는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부담된다. 고용주는 고용이 시작되기 전까지 I-9의 작성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이 시작 된지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가 노동자격 증명에 필요한 원본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원본 신청서 영수증을 제출하고 9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검토, 확인하는 수준은 진정한 서류로 보이는 상당한(reasonable)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진정성이 의심되는 서류라면 고용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고용자격을 있다는 것은 아래의 List A 서류를 한가지 제출하거나 List B, List C의 서류를 각 한가지씩 제출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고용주는 특정 서류를 지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 List A 서류

- ① 미국 여권(유효, 만료 상관없음)
- ② 미국 시민권 증서(N-560, N-561)
- ③ 귀화 증서(N-550, N-570)
- ④ 외국의 여권 및 “Processed for I-551. Temporary Evidence of Lawful Admission for permanent residence. Valid for Employment authorized”라고 적힌 경우, 혹은
- ⑤ 만료되지 않은 외국여권에 I-94가 부착되어 노동허가 직인(stamp)이 찍힌 경우, 단 그 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어야 한다.
- ⑥ 외국인 등록 영수증 카드(I-151 혹은 I-551, 단 사진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 ⑦ 일시적 거주자 카드 (I-688)
- ⑧ 만료되지 않은 재입국 허가 카드 (I-327)
- ⑨ 만료되지 않은 난민 여행 서류 (I-571)

⑩ 만료되지 않은 노동허가증

☞ List B 서류

- ① 주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 ID 카드
- ② 정부 기관이 발행한 ID 카드
- ③ 사진이 있는 학생 신분증
- ④ 유권자 등록 카드
- ⑤ 학교 기록
- ⑥ 병원, 의사 기록
- ⑥ 캐나다 정부가 발부한 운전면허증

☞ List C 서류

- ① 소셜 카드, 단,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혀 있는 것 제외. 또한 원본이어야 함
- ② 해외 출생 인증서(FS-545, DS-1350)
- ③ 출생 증명서
- ④ 시민권 ID 카드(I-197)
- ⑤ ID 카드(I-179)
- ⑥ 이민국이 발부한 노동허가 서류

I-9을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SSN(Social Security Number)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미국 시민권자 중에서도 SSN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I-9과 함께 E-verify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SSN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고용 후 3일 이내에 I-9을 제출할 수 없다면, 근로자는 고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근로자(employee)는 반드시 I-9에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고용주의 의무

- ① 서류의 진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I-9의 Section 2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용이 시작된지 3일 이내)
- ③ I-9 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④ I-9은 채용된 이후 3년,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 1년 중 나중의 기간까지 고용주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⑤ 3년 이내에 똑같은 노동자격에 근거하여 재고용하는 경우 I-9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 6. 영주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하는 행위(Marriage Fraud)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영주권 취득의 4분의 1을 넘으며, 모든 종류의 취업이민을 다 합친 숫자보다도 더 많다. 밀입국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자 기간을 초과한 서류 미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받을 필요도 없이 신분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매력이 되기도 한다. 또한, 우선일자가 열리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즉시 신분조정을 신청하고 가장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다. 따라서 비록 대다수의 결혼이 진정한 사랑에 의한 결혼이지만, 일부에서는 위장 결혼을 시도 하고 있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위장 결혼의 유형 및 그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위장 결혼의 유형 및 특징

위장 결혼은 돈으로 시민권자를 매수하여 결혼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끼어들어 결혼한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짜고 순전히 영주권을 얻기 위하여 이혼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시민권을 획득한 후,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금전적인 이익 혹은 노예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혼을 위장하여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온 후,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돈으로 매수한 경우와 정반대되는 경우로, 진정한 사랑을 가장하여 결혼한 후, 시민권자를 버리는 위장 결혼도 있다.

서류미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위장 결혼의 유혹은 강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이민국에서는 위장 결혼을 적발하기 위하여,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하도록 신분조정 신청자로 하여금 갖가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는 부부로서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며 부부로서 공동체 생활을 함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서 입증하여야 한다. 진정한 관계가 없이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경우 서류를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이 의심을 갖게 된다. 심지어는 이른바 “별도 인터뷰”(“Stokes Interview”)로 불리는 테스트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 별도 인터뷰에서는 부부를 각기 다른 장소에 두고 같은 세트의 질문을 던진다. 만일 같은 질문에 대한 부부의 대답이 다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사기 결혼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보내질 수도 있다.

또한, “Body Heat” 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당신은 범죄때문에 일을 망치게 되는 길이 50가지도 더 생깁니다. 변호사인 당신이 그중 25가지를 계산해 내었다

면 천재에 들어갈 것입니다만, 당신은 천재도 아니네요” 라는 말처럼 아무리 정교하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 나. 위장 결혼의 결과

위장 결혼이 적발되는 경우 단순히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민국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라고 주장한 사람을 추방할 뿐만 아니라 평생 다시는 이민자 신분을 얻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만일 시민권자도 알고서 위장 결혼에 가담하였다면 두 사람이 모두 5년의 징역형 및 25만불까지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18USC § 1546(c))

위장 결혼에 대한 의심은 결혼으로 끝나지 않는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결혼 후 2년내에 무효가 되거나 법적으로 종료하게 되면, 애초의 결혼이 진정한 관계에 기하여 성립되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장 결혼을 한 것으로 판명되고 추방에 처해지게 된다. 결혼 후 2년이 되어, 진정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후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이 해제된다.

### 7. 허가 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행위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들은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가. 고용(employment) 및 허가 없는 고용의 의미

고용이라 함은 미국내에서 행하여진 서비스에 대하여 보상이 주어지는 어떠한 활동도 포함하며, 자원 봉사 활동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업무라면 고용으로 간주한다. (Matter of Hall, 18 I&N Dec. 203 (BIA1982)) 고용은 자영업(self-employment)을 포함하며, 금전 혹은 기타 대가를 받는 서비스의 제공이다. 예를 들어 아이를 돌봐주는 대가로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주는 경우 고용에 해당된다.

고용과 영업(business)는 구분된다. 미국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영업의 근거지 및 본사를 외국에 두고, 본사의 영업을 위하여 일하는 경우, 이민법상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B-1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제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허가 없는 고용이라 함은 노동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지 않고 고용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이 노동허가를 받는 것은 영주권을 받는 경우와 고용이 허용되는 비이민비자, 예를 들어 H1B 비자를 받는 경우,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비이민비자를 받은 후 고용에 종사하기 위하여 노동허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된다.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노동허가가 주어진 것이며, 비이민비자를 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적시되는 기간동안 노동허가가 주어지게 된다. 이 외의 노동은 모두 허가 없는 고용이 된다. 또한, H1B 비자 소유자의 경우와 같이, 사전 허가 없이 “지정된 고용주”를 위하여 고용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허가 없는 고용이 될 수 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고용에 종사하면 허가 없는 고용이 된다. E-verify를 통과하거나 I-9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허가 없는 고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 나. 허가 없는 고용의 결과

##### (1) 신분조정 신청의 제한

원칙적으로 허가 없는 고용에 종사한 것은 신분을 위반한 것으로 신분조정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INA §245(c)(2)) 또한, 신분조정을 신청해 놓고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 고용에 종사하는 행위도 신분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신분조정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 (2) 신분조정 신청 제한 예외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245(i), 245(k)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민법 §101(a)(27)(H), (I), (J), (K)에 해당하는 특별이민자의 경우, 허가 없는 노동에 종사한 경우에도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245(k)의 경우, 허가 없는 노동의 기간이 180일 이내여야 한다.

근친가족이라 함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시민권자 자녀가 21세 이상인 경우) 그 부모, 시민권자의 16세 미만의 입양 자녀를 말한다. 245(i)는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I-130 혹은 I-140을 접수한 경우를 말하며, 245(k)는 최종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불법체류의 기간이 180일을 넘기지 않은 사람으로 취업에 근거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민법 101(a)(27)(H) 특별이민자는 의사, 청소년 등 특별한 경우에 이민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허가 없는 고용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신청할 필요도 없이 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근친가족으로 인한 신분 조정 등의 경우에는, 허가 없는 고용이 신분조정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다. 고용의 양면성

서류미비자의 경우, 이민법에서는 한편으로 허가 없는 고용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을 억제하고 있는 반면 세법에서는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ITIN을 발부 받아 고용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한 기록은 차후 신분조정



시에 “훌륭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입증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는 이민법을 위반하여 이민법에 따르는 제한을 받게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용에 종사하기 위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SS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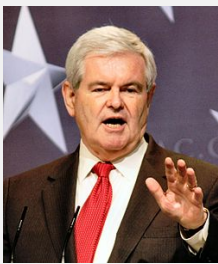
#### 8. 불법체류 자체 (비자 기간 초과)

이민법에서는 모든 이민자들로 하여금 이민서류를 지참하고 다니도록 요구하고 있고, 합법적인 이민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적 처벌이며 불법체류 자체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아리조나 등 일부주에서 불법체류 그 자체를 범죄로 만들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예는 없다. 아리조나 이민법의 경우 연방 정부가 다루어야 할 사안을 주 의회가 다루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비자기간 초과 불법체류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1년을 넘는 경우, 각각 3년/10년의 입국제한을 받는 사유가 되며, 원칙적으로 신분조정 제한 사유가 된다. 또한, 체류기간 초과로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은 상태에서 출국하여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거나 밀입국 한 경우, “평생” 입국이 제한되며 10년 이상 미국을 출국한 이후에 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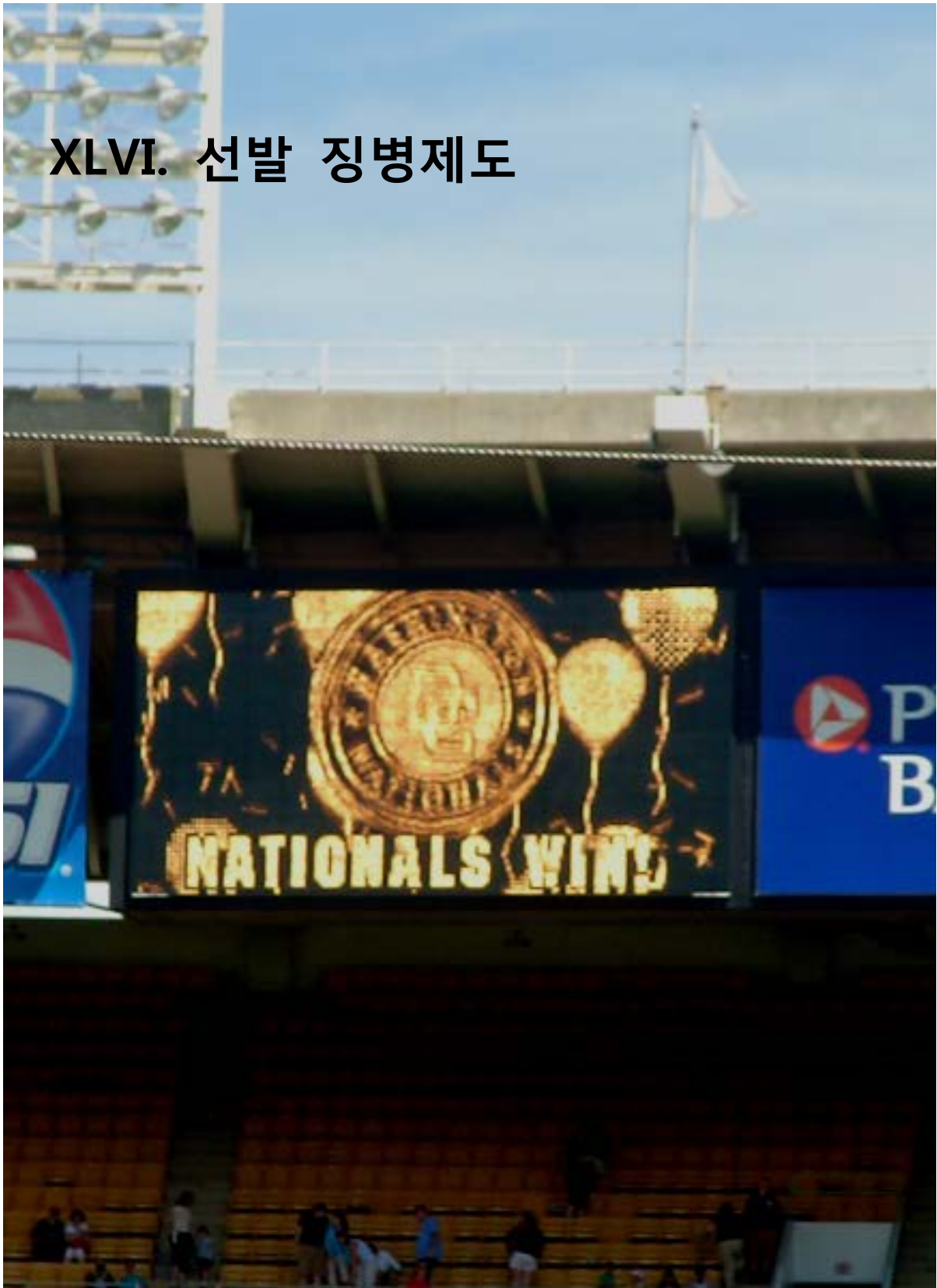
비자기간 초과 불법체류의 경우,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의 신분조정, 245(i), 245(k), 101(a)(27)(H), (J), (K)의 경우,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면제(waiver)를 받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Newt Gingrich



공화당원으로 하원의장을 지냈으며, 2012년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민개혁을 주장하면서 시민권의 부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극우 경향을 보이고 있는 Sarah Palin 후보와 대비되며 타협적이며, 현실적인 이민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사람중의 하나이다.

## XLVI. 선발 징병제도



시민권 취득의 요건이기도 하며, 드림법안의 요건이 되기도 하였던, 선택적 복무 시스템(Selective Service System, SSS)이라 함은, 미국에서 징집의 목적으로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법에 의하여 18~25세 미국인 남성의 경우, 18세 생일이 되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최초의 입법은 1917년 이루어진 바 있다. ([Selective Service Act of 1917](#))

이것은 또한, 정부의 혜택, 예를 들면, 학자금 용자, 정부기관에의 취업 혹은 시민권 취득시 요구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현재 약 1,400만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SS에서는 등록자 명부를 통합 홍보 연구소(Joint Advertising Marketing Research & Studies ([JAMRS](#)))에 보내어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1. 등록 의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서류미비자를 포함하여, 난민, 이중 국적자 중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자는 모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여자,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등록의무에서 제외된다) 미등록은 시민권 거부 사유가 된다. 단, 비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미국 정부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등록시 그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도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회피할 수는 없다.

이중 국적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밖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병원이나 감옥에 있는 젊은이의 경우, 그 기간동안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퇴원하거나 출소하게 되고 26세 이전이라면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기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군대에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방위군(National Guard)으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등록하여야 한다.

### 2. 미 등록

법률에서는 미등록에 대하여 최고 5년의 징역, 25만불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이 문제를 삼아 처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미등록이 “고의”, “의도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나서서 이를 주장하지 않는 한, 검찰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26세를 넘겨 버리는 경우, 26세 이후에 등록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정부의 혜택, 예를 들어, 장학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26세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 3. 징집

대통령의 요구 및 의회의 입법이 있는 경우, 징집이 시작된다. 징집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하되, 추첨은 생년자를 놓고 이루어진다. 징집이 개시된 해의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19세, 18세 순으로 징집이 이루어진다.

추첨은 먼저 20세 대상자들을 놓고 생일을 먼저 뽑고, 그 생일자들이 징집되는 순서를 두번째로 뽑는다. 예를 들어, 3월 16일자를 뽑고, 57번을 뽑았다면, 20세의 3월 16일 생의 대상자들은 57번째로 징집이 되는 것이다.

### 4. 미등록자의 대처요령

서류미비자로서 18~25세 사이의 남자라면 등록을 해 놓은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차후 통과될 수 있는 드림법안의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서도 등록 요건으로 규정된다. 또한, 차후 어떠한 경로로든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경우, 등록이 그 요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등록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체국에서 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보내고, 확인 메일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주소는 <https://www.sss.gov/RegVer/wfRegistration.aspx>이다.

### 5. 등록(증명)이 필요 없는 사람

- 가. 비 시민권자로서 26세가 된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
- 나. F, J, B, E 등 비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온 사람
- 다. 196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
- 라. 퇴역 군인

## XLVII. 군복무를 통한 시민권 획득





## 1. 영주권자

군대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이거나 최소한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서류미비자는 복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 다른 영주권자들보다도 빨리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전시(wartime)에는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평시(peace-time)에는 1년이상 복무한 사람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NA 328, 329)

군인으로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와 역사에 대한 이해(소양)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군인의 특성상 미국에의 체류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umber 13269](#))을 통하여, “실전”(hostility)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2001년 9월 11일 이후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A 329) 즉, 전투에 임하는 군인은 하루를 복무하였다 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체대한 군인이라면 “명예” 체대를 하였어야 한다. 이민법에서는 또한 영주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INA 329)

## 2. 비이민비자 소지자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서류미비자와 마찬가지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그러던 것이 2008년도에 일시적으로 영주권자가 아닌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전문인력 및 외국어 능력자를 모집한 적이 있다. “MAVNI”(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라고 이름 붙여진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 치과 의사, 마취 간호사, 외국어 능력자를 선발하여 입대시켰다. 이들은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어야 하며, 군 자격시험(Armed Forces Qualification Test)에서 최소 5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이전에 자격제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입대하여 일정기간 근무하면 “영주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있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였으며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모집인원은 1,000명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 ※ MAVNI 자격 요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비이민 비자로 신청 이전에 미국에 최소한 2년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었어야 한다. 다만, 한가지 종류의 비자로 계속하여 2년을 체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 전문가로 지원하는 경우, 4년 근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단, 외국어는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등 35개국어로 한정되어 있었다. 스페인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의사, 간호사로 지원하는 경우, 최소 3년 이상 근무하겠다는 서약을 하여야 하며, 영어에 능숙하고 의사, 간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952년에 제정된 이민법(INA 328)에 따르면, “현역”(active) 부대에서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서류미비자들에게는 매혹적인 말로 들리긴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이다. 따라서 서류미비자는 입대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군복무를 통하여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미군은 서류미비자를 군대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 알면서 서류미비자를 군에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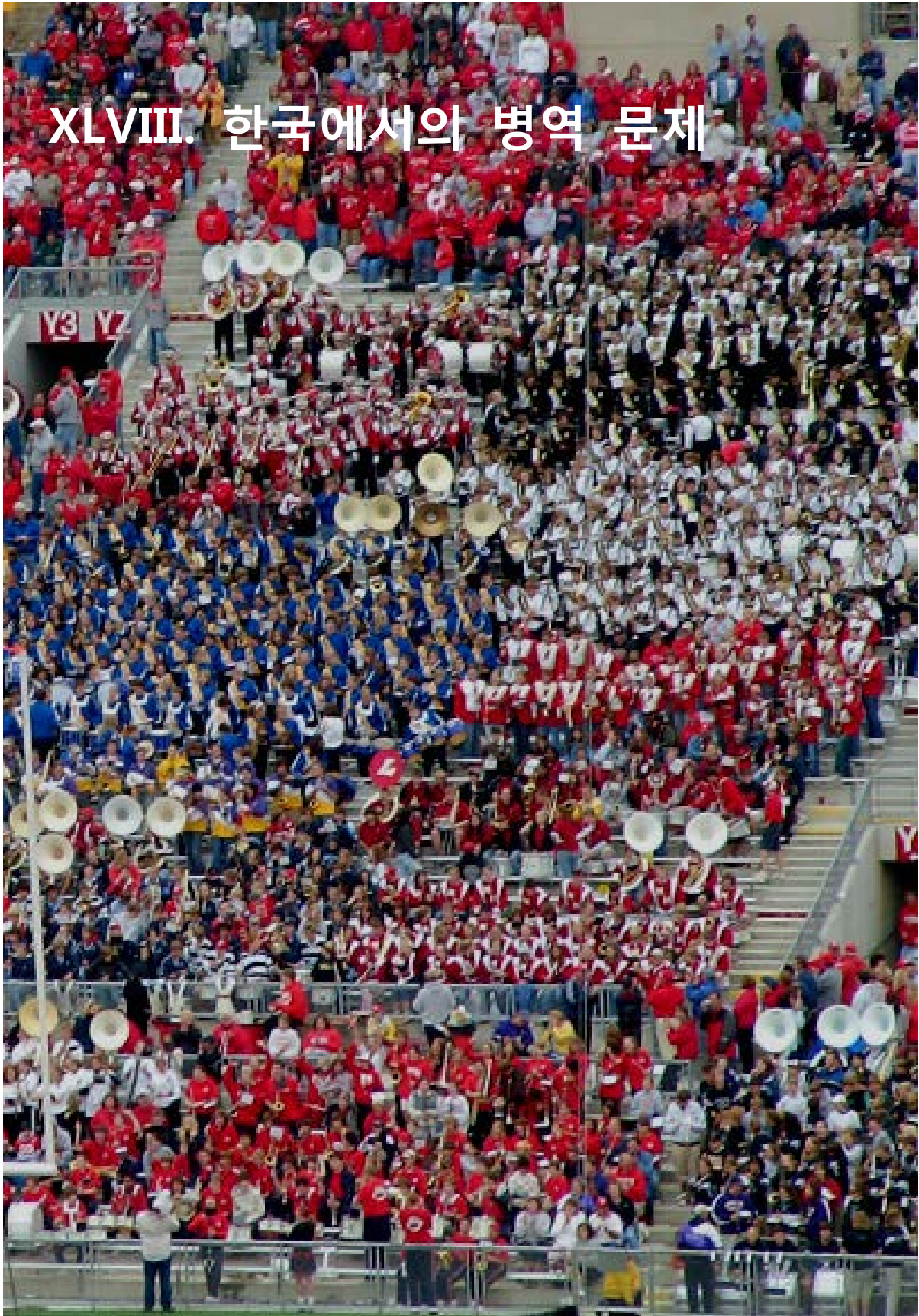
다만,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건수는 최근 10년 사이에 64,643건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류미비자였는지 여부는 추적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서류미비자임이 밝혀진 경우, 시민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군내부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져 통계마저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서류미비자가 군복무로서 시민권을 받은 것은 서류를 위조하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것으로 가장하고 입대하거나 타인의 신분증 혹은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복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서류를 위조하여 입대하게 되면 문제되는 것은 시민권을 신청할 때이다. 시민권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것을 인사 부서에서 확인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서류위조사실을 알고 이를 사유로 전역시킨 인사부서에서 명예 제대한 것으로 확인해 주기는 곤란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서류미비자들은 서류 위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시민권을 신청하였다가 서류미비자인 사실이 드러나 제대한 한 퇴역군인은 다행히 부대장이 “명예” 제대한 것으로 기록을 만들어 주어 이민국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지만 (INA 318) 군 복무로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주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서류미비자도 시민권의 부여가 가능하였다.

## XLVIII. 한국에서의 병역 문제



서류미비자의 경우 신분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입영을 연기한 경우, 귀국하면 병역의무를 아무런 문제없이 마칠 수 있다. 다만, 연기 기간을 넘겨 정당한 이유없이 귀국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가능한 한 입영을 연기해 놓는 것이 좋다. 병역의 연기는 영사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서류미비자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이중 국적자를 포함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의 병역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2중 국적자의 병역 의무

한국 부모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국가의 국적을 둘 다 받는 관계로 2중 국적자가 된다. 2중 국적자(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만일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2004년 사례> 한국에 원어민 영어교사로 취업했던 미 태생의 시민권자 한인청년이 한국군대에 징집 당하는 일이 벌어져 시민권자의 한국 방문 시 병역법에 대한 세밀한 확인절차가 요망된다. 한국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18세이전 국적 포기 또는 해외여행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병역제도를 모른 채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출국을 못하는 재외 동포 청년이 연 200명에 육박하며 이중 50~60명이 미국에서 온 사례라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미국 출생의 전모(25)군은 워싱턴대학(UW) 졸업 후 경기도 분당의 모 사설 어학원에 영어 원어민 교사로 채용돼 2002년 9월 이후 한국에서 생활해 오다가 한국 국적 이탈 신고가 돼있지 않아 지난달 29일 한국군에 징집됐다. 전군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돌아와 시애틀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 이탈신고를 하려 했으나 “병역을 필하지 않은 19세 이상 시민권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병역 연기신청서만 접수한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었다.

더구나 전군은 지난해 연말 미군에 입대, 1월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훈련소행 미군 수송기를 타기 위해 오산으로 갔다가 한국군 당국에 넘겨져 미 시민권자로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하다. 전군의 어머니 케이디 전씨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하는 아들이 한국군에 가서 왕따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비슷한 처지의 미국 교포들과 한국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력 대응의사를 밝혔다.

병무청은 그러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 태생 한인 2세들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지만 원칙적으로는 호적 등재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병무청의 원칙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병무청의 국외 지원과 손태수 담당관은 4일 본보와의 국제전화에서 “호적에 등재하지 않은

시민권자 남성에 대한 징집 문제가 발생한다는 시카고 총영사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나 아직 회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기본 입장은 속인주의이므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손 담당관은 그러나 “성실하게 호적 신고를 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호적에 올리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면 국민 차원을 떠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라며 법무부 회답까지는 기존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손 담당관은 또 “어떤 경우든 장기 체류시에 문제가 된다”며 단기 방문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주 한국일보 2004년 2월 4일-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땅을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자란 한국인 2세, 3세가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징집당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 재외국민 2세제도이다. 다만, 재외국민 2세는 6세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18세까지 체류하였어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모든 재외국민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2중 국적자라면 재외국민 2세의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자격을 미리 받아 여권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만일 재외국민 2세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병역을 기간에 맞추어 연기하고 있어야 한다. 병역을 연기하지 않고 귀국하여 장기체류하거나 영리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체류라 함은 1년중 6개월 이상을 체류하는 것을 말하고, 영리활동은 학원에서 강사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미국 국적 선택 절차

재외공간(영사관)에서 국적 이탈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한국내에서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남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 ※ 한국 국적 선택 절차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국적계에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2. 이중 국적 허용

2011년 1월1일부터 해외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쳐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적법이 2010년 4월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새 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 국가경쟁력 강화, 저 출산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법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 외에 외국인 우수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직장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한 미국에 체류할 때 태어난 자녀로 국내에서 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수십년전의 모든 국적 포기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남성의 경우 병역만 이행하면, 여성의 경우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 할수 있게 되었다. 즉, 한국에 체류하면서 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군복무후)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병역의무가 없는 여자 등)까지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돼 있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국국적, 미국국적을 이용해 먹는 이중적 행태를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서 복수 국적자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원정 출산의 경우 2중 국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이 국내에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병역을 마치도록 해 복수국적 허용이 병역 기피로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했다. 원정출산이라 함은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에 체류하여 출산한 경우를 말한다. 유학, 취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미국에 체류하면서 출산한 경우는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다.

### 3. 재외국민 2세제도

재외국민이라 함은 이중국적자나 장기 해외체류자로서 6세이전에 외국(미국)으로 출국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체류한 사람으로서(3년 혹은 그 이하로 한국에 체류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부모 및 본인**이 시민권, 영주권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류미비자의 경우 안타깝게도 재외국민 2세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재외국민 2세의 경우, 거주 여권에 재외국민2세임을 날인 받게 된다. 단,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18세 이전에 신분을 회복하여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는 경우, 재외국민 2세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한국으로 “영구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6세이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은 영주권을 반납하고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즉,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 체류 혹은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 제도는 장기 해외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나 정작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설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병역의무가 부활한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승인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재외국민 2세 신청은 영사관(한국 내의 경우 지방 병무청)에 재외국민 2세 여권기재 신청서, 부모 및 본인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 본인의 미국 내 체류기간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호적등본(6개월 이내 발행분), 본인 여권 등을 구비해 신청한다.

#### 4. 모국 수학제도

모국 수학제도 역시 영주권, 시민권을 얻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서류미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모국 수학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시민권으로 병역을 연기받고 있는 기간 중에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문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포함)에 등록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각 대학에서 해당자 명단을 병무청에 보내게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단, 졸업, 수료, 휴학, 퇴학 후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처가 1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수학기간 중 영리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 5. 입영의 연기

한국에서 대학 재학중인 경우 보다 1년의 기간을 더 주어 보호하고 있다. 즉, 대학 졸업은 만 25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대학원(석사)의 경우 27세, 박사과정은 원칙적으로 28세까지이나 29



세가 되는 해에 학위를 받는 경우, 29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입영의 연기는 신분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입학허가서 혹은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아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영사관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3/travel031/index.html](http://www.mma.go.kr/kor/s_navigation/travel/travel03/travel031/index.html)

## 6. 전문 연구 요원 및 산업 기능요원 제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이 그 자격이 되며, 지정업체에서 연구분야에 36개월 복무한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충역은 기술자격 없이)으로 지정업체에서 제조, 생산 분야에 34개월(보충역은 26개월) 동안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마치게 하는 대체복무제도이다.

## 7. 병역의무 미이행의 결과 (미귀국에 대한 조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 병역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 ※ 조치

허가기간(병역 연기) 만료 통지 (허가기간 만료 90일전 통보)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미귀국자의 경우, 병역법 94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단, 미국에서 체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4세까지는 병무청 직권으로 병역이 연기된다. 25세가 되는날 1월 1일까지 병역을 연기하지 않거나 귀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게 되며, 이후 검찰이 병역법 위반 수사를 하게 된다.

고발을 받은 검찰에서는 본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기소중지한다. 기소중지라 함은 본인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기소를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무는 37세까지 부담하도록 하여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에 복무할 의무는 없어지지만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적인 조치로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여권을 갱신할 수 없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 ※ 벌칙

- ☞ 3년 이하의 징역
- ☞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 ☞ 37세까지 병역 의무 부과
-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 ☞ 관허업 인, 허가 불허
- ☞ 국외 여행 제한(여권 갱신 불가)

병역에 관한 민원은 병무청 1588-9090 혹은 병무청 고객지원과 (국외여행 담당) 042-481-2755~6, (국외이주 담당) 042-481-2757~8으로 문의할 수 있다.

**반이민 개혁 주도 인물**  
Sarah Palin



Tea Party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인물로써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극우적인 경향으로 인하여 보수층에서도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와이의 주지사를 지냈으며, McCain 대통령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200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한편, Palin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무난히 대통령에 재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XLIX. 캐나다 이민



## 1. 의의

캐나다는 미국 못지 않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미국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이 가는 곳이다. 특히 서류미비자의 경우, 미국에서의 불법체류를 문제 삼지 않는 캐나다가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캐나다로의 이민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본다.

캐나다 이민은 크게 세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문직(skilled workers and professionals) 이민, 가족초청 이민, 투자이민이다. 가족 초청이민은 이미 가족관계가 있어야 가능하고, 투자이민은 적지 않은 금액의 투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쉽지는 않다. 전문직 이민도 간단하지만은 않은데, 아래에서 자격 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본다.

## 2. 전문직 이민 (Skilled Worker Program)

전문직 이민도 연방 전문직(Federal Skilled Worker), 퀘벡 전문직(Quebec Skilled Worker), PNP(Provincial Nomination Program) 전문직 등 세가지가 있다. 연방 전문직은 퀘벡을 제외한 지역에 이민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퀘벡 전문직은 퀘벡지역에의 이민을 위한 것이다. PNP 전문직은 주(province)별로 만들어진 전문직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특정 주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PNP 전문직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연방 전문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프로그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에 일정한 점수를 주고 그 점수의 합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자격을 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가. 연방 전문직

크게 두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직장경력 혹은 취업 제의가 있어야 하며, 두번째는 이민자격 점수(ICI)가 67점이 넘어야 한다.

직장 경력이라 함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미 지정된 29개 항목의 직업([http://www.globalvisas.com/canada\\_visas/federal\\_skilled\\_worker\\_occupations.html](http://www.globalvisas.com/canada_visas/federal_skilled_worker_occupations.html))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1년이상 풀타임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취업제의는 캐나다의 고용주가 풀타임으로 영구직 취업제의를 해 온 것을 말한다.

이민자격 점수(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s (CIC))는 언어능력, 나이, 직장 경력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환산된 점수의 합을 말한다. 연방 전문직 이민의 경우, 이 합이 67점 이상이어야 한다.

#### (1) 학력

| 학력  | 점    |
|---|------|
| <b>대학 학위</b>                                      |      |
| 박사, 석사, 그리고 17년 이상의 풀타임 교육                        | 25 점 |
| 2년 혹은 이상의 대학 학위 그리고 15년 이상의 풀타임 교육                | 22 점 |
| 2년제 대학 그리고 14년 이상의 풀타임 교육                         | 20 점 |
| 1년제 대학 그리고 13년 이상의 풀타임 교육                         | 15 점 |
| <b>직장 혹은 대학 외 자격증(certificate) 및 인증서(diploma)</b> |      |
| 3년 자격증, 인증서 혹은 수료증(apprenticeship) 그리고 15년 이상의 교육 | 22 점 |
| 2년 자격증, 인증서 혹은 수료증(apprenticeship) 그리고 14년 이상의 교육 | 20 점 |
| 1년 자격증, 인증서 혹은 수료증(apprenticeship) 그리고 13년 이상의 교육 | 15 점 |
| 1년 자격증, 인증서 혹은 수료증(apprenticeship) 그리고 12년 이상의 교육 | 12 점 |
| 고등학교 졸업   | 5 점  |

## (2) 언어 능력

언어 능력은 24점이 만점이며, 다른 시험 점수 결과로는 안되고, Test d'Evaluation de Français (TEF) 혹은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점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캐나다의 공식어인 영어 및 프랑스어 능력 두가지 모두를 측정한다. 자신이 잘하는 언어를 제1언어(First Language)로 지정하여야 한다.

| 언어 숙달 정도      | 점           |
|---------------|-------------|
| <b>제 1 언어</b> |             |
| 고급 (항목당)      | 4 점         |
| 중급 (항목당)      | 2 점         |
| 초급 (항목당)      | 1-2 점       |
| 구사 안됨         | 0           |
| <b>최고</b>     | <b>16 점</b> |
| <b>제2 언어</b>  |             |
| 고급 (항목당)      | 2 점         |
| 중급 (항목당)      | 2 점         |
| 초급 (항목당)      | 1-2 점       |

|                            |            |
|----------------------------|------------|
| 구사 안됨                      | 0          |
| <b>최대</b>                  | <b>8 점</b> |
| ○ 항목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포함됨 |            |

### (3) 직장 경력

지정된 직종(<http://www.canadavisa.com/immigration-eligible-occupations.html>)에 종사한 횟수에 따라 15점에서 21점이 부여된다. 취업제외로 이민하는 경우, 직장경력이 최소 1년이상이어야 한다. 전문직 이민자가 직장경력에서 0점을 받는 경우 이민신청이 거절된다고 보아야 한다.

| 경력    | 점    |
|-------|------|
| 4년 이상 | 21 점 |
| 3년    | 19 점 |
| 2년    | 17 점 |
| 1년    | 15 점 |

### (4) 나이

나이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에 차이가 있다. 가장 노동력이 왕성한 나이의 이민자들이 많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 나이              | 점    |
|-----------------|------|
| 16세 이하          | 0    |
| 17 세            | 2 점  |
| 18 세            | 4 점  |
| 19 세            | 6 점  |
| 20 세            | 8 점  |
| 21 세 에서 49 세 사이 | 10 점 |
| 50 세            | 8 점  |
| 51 세            | 6 점  |
| 52 세            | 4 점  |



|         |     |
|---------|-----|
| 53 세    | 2 점 |
| 54 세 이상 | 0   |

(5) 취업의 제의

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풀타임으로 취업제의를 받게 되면, 영주권(Permanent Resident)비자를 받을 수 있다. 취업제의를 받게 되면 이민자격 점수 10점을 추가로 받는다.

| 영주권 : 취업제의   | 점    |
|--|------|
| 캐나다 정부의 인적자원부(HRSDC)에서 승인한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영구 취업제의를 받는 경우 혹은,   | 10 점 |
| 캐나다 정부 인적자원부의 승인은 없었지만, 영주권 신청당시 그 고용주로부터 일시적노동자 허가(Temporary Work Permits)를 받고 이미 고용되어 있으며, 영구적 취업제의를 받은 경우 | 10 점 |

(6) 적응 요소

기타 현지 적응에 도움이 될 요소들이 있으면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추가 점수의 한도는 5점이다.

| 적응 요소               | 점     |
|---------------------|-------|
| 배우자 혹은 파트너의 학력      | 3-5 점 |
|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풀타임 고용  | 5 점   |
| 2년 이상의 캐나다에서의 고등 교육 | 5 점   |
| 비 공식적 직장 제의         | 0     |
| 취업 제의에서 받은 점수       | 5 점   |
| 캐나다에 있는 가족          | 5 점   |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은 이민국 관리의 재량에 따라 위의 환산 점수가 67점이 되지 않더라도 캐나다에서의 정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위의 조건 외에도, 캐나다에 정착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히 있다는 것, 건강 검진을 통한 건강의 확인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민비자는 신청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신청 및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이민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3. 가족 초청 (Family Class Immigration)

가족 초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하며, 재정보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가. 초청이 가능한 가족관계

초청이 가능한 가족관계는 미국에 비하여 다소 넓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며, 부모에 더하여 조부모도 가능하다. 자녀는 물론이고 형제 자매, 조카, 손주까지도 가능하다. 입양되는 경우 18세까지 가능하며, 이러한 가족, 친척이 없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는 친척도 1명에 한하여 가능하다.

#### 나. 초청자(sponsor)의 자격

초청하는 사람은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초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주권자인 경우 추방절차에 회부되지 않아야 하며, 중대한 범죄로 소추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 다. PNP 가족 초청

주(province)별로 약간씩 다른 가족 초청 제도가 있다. 희망하는 주가 있다면 그 주의 가족초청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 라. 처리시간 및 비용

신청 후 처리에 걸리는 시간 및 비용은 처리하는 장소에 따라 다르다.

### 4. 기업 이민 (Entrepreneur Program)

기업이민은 캐나다에서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캐나다의 경제에 기여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민이다. 능동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것이다. 기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만 2년 이상 캐나다 이민국에서 정해 놓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경력(Qualifying Business)이 있어야 하고, CDN \$300,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캐나다 기업에 대한 33%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종류의 이민과 달리 기업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캐나다에 정

작을 한 후 3년 이내 1년을 기준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체(Canadian Qualifying Business)를 운영해야만 하는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 운영자는 운영상황에 대하여 이민국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청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네 가지 요인은 과거 운영했던 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지분 비율에 따른 매출액, 당기순이익, 순자산, 고용인 수 이다.

#### 5. 투자 이민 (Investor Program)

순수투자이민은 위 기업이민과는 달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만 2년 이상 일정규모의 사업(Qualifying Business)을 한 경험이 있거나 직장에서 2년 이상 매니저로 근무 하며 5명 이상의 직원을 관리한 경험이 있으며, 합법적으로 축적한 CDN \$1,600,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것은 수동적인 투자를 위한 것이다.

직접 사업을 한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건이 없다는 것이 기업이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단, 순수투자이민 신청자는 자격심사에서 승인이 되면 CDN \$800,000을 캐나다에 5년간 투자(예치)해 두어야 한다.

단, 캐나다에 투자(예치)하는 금액 80만불중 22만불은 예치금(down payment)으로 예치하고 있어야 하나 나머지 58만불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금융기관 (CDIC Members)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6. 자영업 이민(Self-Employment Program)

자영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world-class level)으로 활동을 했거나 이 분야에 관련된 자영업을 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농장경영/관리(Farm Management) 분야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물론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에서도 문화, 예술, 체육, 농장 경영 관련된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최소한 자영업을 영위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기업이민과 달리 이민 신청을 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자산의 기준은 없으나 본인과 가족의 정착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농장을 경영했거나 현재 경영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운영이 상업적인 규모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 L. 불체자의 신고



서류미비자를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1-866-DHS-2-ICE (1-866-347-2423)로 이민국의 경찰청이라 할 수 있는 이민 집행국(ICE)으로 전화가 연결된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고하여야 ICE에서 조사를 행하며, 단순히 불체자가 있다는 신고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은 서류미비자에 한하지 않으며, 영주권자로서 범죄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 마약거래, 불체자 고용, 범죄 조직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 단, 신고 후 조치에 대한 사후 통보는 없으며, 허위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www.reportillegals.com](http://www.reportillegals.com) 등 일부 웹사이트에서도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는 다시 ICE, IRS 등에 신고하게 된다.

### Tea Party



보수적인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풀뿌리 단체로서, 행동은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직은 전국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작은 정부, 감세, 재정적자, 부채 축소를 외치고 있으며 포괄적 이민개혁에 대해서는 “사면”(amnesty)이라고 하며 반대하고 있다.

## 별첨

HR 5281 하원 통과 드림법안 (원문 번역)

### 1조 : 제목

본 법률은 ‘2010년 드림법안’ 이라 한다.

### 2조 : 목차

드림법안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1조. 제목
- 2조. 목차
- 3조. 정의
- 4조. 아동으로 미국에 입국한 장기 거주자에 대한 추방의 취소
- 5조.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
- 6조. 신분 조정
- 7조.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 연장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
- 8조. 배타적 관할
- 9조.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 10조. 정보의 보안유지
- 11조. 대학교육 재정지원
- 12조. 조건부 비이민자에 대한 처우
- 13조. 군입대
- 14조. GAO 보고

### 3조. 정의

본 법에서:

- (1) 개관 -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에서 이민법상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이민법에서 주어지는 의미에 따른다.
- (2) 군대 - 군대(Armed Forces)는 10 USC 101(a)에 나타난 군대(armed forces)의 의미이다.
- (3) 조건부 비이민자 -
  - (A) 정의 - “조건부 비이민자”라 함은 본 법에서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B) 설명- 조건부 비이민자는-

- (i) 이민법 목적상 비이민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 (ii)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질 수 있으며,
- (iii) 외국에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4) 이민법 - “이민법”의 의미는 이민법(INA) 101(a)(17)(8USC1101(a)(17))에서 주어진 의미이다.
- (5) 고등교육기관(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이라 함은 1965년 고등교육법(20. U.S.C1001) sec. 101에서 주어진 의미와 같다. 단 미국외에 있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 4조. 어린나이에 미국에 입국한 일부 체류자에 대한 추방의 취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한 본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국토안보부 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 입국이 불허되거나 추방될 수 있는 외국인이라도, 추방을 취소하고, 본 법 섹션 625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조건부 비이민자로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다.

(A) 최초 입국 당시 16세 미만의 자로서, 해당 외국인이 본 법이 입법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직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해 오고 있었으며,

(B) 최초 미국 입국 이후 해당 외국인이 건전한 도덕을 가진 사람이며,

(C) (i) 해당 외국인이 이민법 212(a) (1),(2),(3),(4),(6)(E), (6)(G), (8), (10)(A), (10)(C), 10(D)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는 사람이 아니며,

(ii) 이민법 237(a)(1)(E), (1)(G), (2), (4), (5), (6)의 규정에 따라 추방될 수 있는 외국인이 아니며,

(iii) 인종, 종교, 국적, 사회단체에의 가입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를 명령, 선동, 원조 혹은 기타 형태로 참여하지 않았어야 하며,

(iv) 아래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I) 연방 혹은 주 법에 따라 최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II) 셋의 다른 시일에 3개 이상의 연방, 주 범죄의 유죄를 받고, 90일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D)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i) 미국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허가를 받았거나,
- (ii)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거나 미국에서 GED 증서를 받았다.

(E) 해당 외국인이 추방, 입국거절의 사법, 행정적 최종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그 판결 이후 해당 외국인이 합법의 테두리에서 살았거나 위의 판결을 16세 이전에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입법일을 기준으로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2) 면제 -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법 212(a)(1),(4),(6) 및 237(a)(1)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적인 이유, 가족간의 결합 혹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면제해줄 수 있다.

(3) 절차 -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본 법률상의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추방 절차에 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4) 벌금 (surcharge) - 본 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서 국토안보부 장관은 신청당 525불의 벌금을 부과, 징수한다. 이러한 벌금은 신청에 대한 심판 및 처리 비용을 상계하기 위한 신청 수수료에 추가하여 부과된다. 이민법 286조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수된 벌금은 재무부 일반회계에 상계 수령으로 적립되며 다른 의무나 지출로 사용될 수 없다.

(5) 신청서 제출기한의 마감 - 해당 외국인은 추방의 취소 및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 신청을 아래의 사유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한다.

(A) 미국내 고등학교 졸업증서를 받은 날 혹은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증서를 받은 날.

(B) (d)항에 나타나는 임시 시행령의 발효일

(6) 생체 및 인적사항 관련 정보 제공 -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생체 정보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추방을 취소하고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부여할 수 없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취하는 대안적 조치에 대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7) 배경 조사

(A) 배경 조사 요건 - 국토안보부 장관은 주어진 생체정보, 인적사항 및 기타 정보를 이용하여 아래 배경조사를 행한다.

(i) 본 법에 따라 혜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보안(security) 및 범죄 경력(law enforcement background check) 조사;

(ii) 범죄로 인하여, 국가 안보상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당 외국인이 드림법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B) 배경 조사의 완료

위 (A)(i)에서 요구되는 보안 및 범죄 경력 조치는 본 법에 따라 추방의 취소를 행하기 전에 국토안보부 장관이 만족할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8) 건강 검진 - 본 법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은 건강 확인(observation) 및 검진(examination)을 거쳐야 한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보건 복지부 장관과 함께 건강검진의 성격, 횟수 및 시기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9) 선택적 군 복무 등록 - 본 법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되는 경우, 선택적 군 복무법(50 USC app.5451 이하)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b) 지속적인 거주 중단의 중단- 위 (a)에 따라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한 사람은, 본법에서 요구하는 지속적인 미국내의 거주나 물리적 존재가, 이민법 239(a)에 의하여 출두통지(notice to appear)를 받았다고 하여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c) 지속적인 거주 중단에 대한 조치

(1) 개관 - 본 법률에서 요구하는 지속적인 거주가 해당 외국인이 미국을 떠나 계속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하였거나 미국을 떠난 기간의 합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긴급 상황의 고려- 국토안보부 장관은 위 (1)절에 규정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인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질병, 부모, 조부모, 형제 혹은 자녀의 사망이나 심각한 질병 및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

(d) 시행령(regulation)의 제정 -

(1) 규정의 제안 - 본 법률이 입법된 이후 180일 이전에, 국토안보부 장관은 본 법을 시행하는 시행령(안)을 발표하여야 한다.

(2) 임시 시행령 - 이 시행령은 5 USC 55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표 즉시 유효하기 하나, 대중에게 공지하여 대중들이 논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개정 혹은 변경이 가능하다.

(3) 최종 시행령 - (1)에 따라 규정안이 발표된 이후 적절한 시간 이내에, 국토안보부 장관은 본 법을 시행하는 최종안을 발표하여야 한다.

(f)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신분(conditional status)을 신청하는 사람은

(1)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의 신청이 계류중이고

(2) (a)에 따른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외관상의 증거로 보여주는 한,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 외국인을 추방하지 못한다.

#### 5조.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

(a) 신분의 기간 - 4조에 따라 부여되는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은, 본조 (c) 항의 제한하에 최초 5년간 유효하다.

(b)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의 내용

(1) 고용 - 조건부 비이민자는 그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할 수 있다.

(2) 여행 - 조건부 비이민자는 미국밖으로 여행할 수 있으며, (다른 입국불허 사유가 없는 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다.

(A) 해당 외국인이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증명하는, 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유효한 서류를 지참하고 있으며;

(B) 해당 외국인이 미국밖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c) 신분의 종료

(1) 개요 - 국토안보부 장관은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분을 획득한 외국인의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국토안보부 장관의 판단으로 아래에 해당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A) 외국인이 4조 (a)(1)의 (B),(C)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B) 외국인이 공적 부담(pubic charge)이 되는 경우,

(C) 외국인이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하거나 명예로운 제대 이외의 사유로 제대하는 경우.

(2) 이전 이민신분예로의 복귀 - (1)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이 종료한 외국인은, 해당 외국인이 본 법에 따라 받았던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받기 직전의 신분으로 되돌아 가게 된다.

(d) 신분의 연장 (1) 자격 - 국토안보부 장관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건부 비이민자에 대하여 추가되는 5년에 대하여 신분을 연장하여야 한다.

(A) 해당 외국인이 조건부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전 기간동안 도덕적 품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B) 해당 외국인이 4조(a)(1)(C) 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C)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서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어야 한다. 본 항에서,

(i) 국토안보부 장관은 해당 외국인이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기간 전체에 걸쳐 미국외에서의 체류가 합이 365일을 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서의 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자신은 미국에서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미군에서의 복무를 사유로 미국으로부터 부재한 경우, 그 복무기간 동안 해당 외국인은 미국에서의 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D) 해당 외국인은 -

(i)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으로부터 학위를 받았거나, 학사 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위하여 2년이상,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수학한 경우, 혹은

(ii) 미군에서 2년이상 복무하였거나 만일 제대한 경우, 명예제대를 한 경우

(E) 해당 외국인은 자신이 다닌 각 중등학교(1965년 초, 중등교육법 9101조에 정의된 규정에 따라)의 리스트를 제출하는 경우.

(2) 벌금(surcharge) - 국토안보부 장관은 본 항에 따른 각 신청에 대하여, 심사 및 처리 비용에 대한 신청 수수료에 더하여, 2,000불의 벌금을 부가, 징수한다. 이민법 286조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수된 벌금은 재무부 일반회계에 상계 수령으로 적립되며 다른 의무나 지출로 사용될 수 없다.

(3) 극심한 곤란의 예외 - 국토안보부 장관은 재량으로, 아래의 경우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연

장해 줄 수 있다. 해당 외국인이;

(A) 위 (1)의 (A)(B)(C)를 충족하였으며,

(B) (1)(D)에 나타난 조건을 완수하지 못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C) 만일 해당 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추방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본인 혹은 영주권자 혹은 미국시민권자인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극심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 6조. 신분 조정

(a) 개관 - 조건부 비이민자는 (c)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3)절의 규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하여금 (b)(1)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증죄를 걸고, 필요한 사실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b) 신분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

(1) 개관 - 위 (a)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토 안보부 장관은 해당 외국인이 아래 (d)의 (1)에서 (4)까지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승인하는 경우 신분 조정 - 국토안보부 장관이 해당 외국인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 결정을 고하고 해당외국인을 그 결정이 있는 날을 기점으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여야 한다.

(3) 미승인의 경우 신분 종료 - 국토안보부 장관이 해당 외국인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 결정을 고하고 그 결정이 있는 날을 기점으로 해당 외국인의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종료하여야 한다.

(c) 신청 기간 - 해당 외국인은 최초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부여받은 지 10년이 되는 날 혹은 본 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이 만료하는 날로부터 1년 이전의 기간내에 신분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외국인은 신분조정 신청이 계류 중인 기간 동안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d) 신청의 세부 내용 - (a) 상의 신청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래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외국인이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전기간 동안 좋은 품성(good character)을 유지하고 있었다.

(2) 4조 (a)(1)(C)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

(3) 해당 외국인이 미국내의 주거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해당 외국인이-

(A) 조건부 비이민자 기간을 통틀어 730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난 경우, 본인이 주거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주거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B) 군대(armed forces)에서의 복무를 사유로 인하여 미국을 벗어난 사람은 그 복무기간 동안은 미국내에서의 주거지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 5(d)(3)의 극심한 곤란 예외 규정에 따라,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의 연장과 관련하여 5(d)(1)(D)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면제를 받은 경우, 또다시 영주권과 관련하여 5(d)(3)의 기준에 따라 면제를 받지 않는 한, 그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e) 시민권 요구조건

(1) 개관 - 아래 (2)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은 이민법 312(a)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 할 수 없다.

(2) 예외 - 위 (1)의 규정은 신체적, 성장적 장애 혹은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f) 연방 세금의 납부

(1) 개관 - 신분조정을 위한 신청이 접수되는 날 이전에 해당 외국인은 해당되는 모든 연방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모든 연방 세금의 의미 - 위 (1)에서 모든 연방 세금이라 함은, 1986년 IRS 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에 따라 부과된 모든 세금을 말하며, 이자 및 벌칙을 포함한다.

(g) 생체 정보 및 인적사항의 제공 - 국토안보부 장관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생체 정보 및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한, 해당 외국인의 신분을 조정할 수 없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생체 정보 혹은 인적사항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정한다.

(h) 배경 조사

(1) 배경 조사 요구 조건 - 국토안보부 장관은 아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체정보, 인적사항 및 기타 국토안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A) 본 조에 따라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보안 및 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위하여;

(B) 범죄, 국가안보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당 외국인이 신분조정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배경 조사의 완료 - 위 (1)에 따라 요구되는 보안 및 범죄 경력 조회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신분조정을 부여하기 전에, 국토안보부 장관이 만족할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i) 수적 한도 제한의 면제 - 본조 및 다른 법의 어떠한 규정도 본조에 따라 신분조정되는 외국인의 숫자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j) 귀화 자격 - 본 조에 따라 영주권자로 신분이 조정된 외국인은 이민법 316(a)의 (1) 규정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외국인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한 이후 계속하여 최소 3년이상 거주하였어야 하며, 최소 1년 반 이상을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어야 하며, 신청을 접수하는 주 혹은 그 지역 이민국 관할내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었어야 한다. 본 항에 규정된 외국인은 이민법 334조의 (a) 두번째 문장에 규정된 대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7 조.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 연장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

만약 해당 외국인이 본법이 입법되는 날 이미 4(a)(1) 및 5(d)(1)(D)의 조건을 이미 만족하고 있다면, 국토안보부 장관은 4조에 따라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부여하고 5(d)에 따라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외국인은 5(d)(1)의 (A)(B)(C)를 전체 비이민자 신분 기간동안 충족하고 있다면 6(a)에 따라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8 조. 전속적 관할

(a) 개관 - 본법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이 맡는다. 다만, 본법에 따른 추방의 취소 및 조건부 비이민자 신청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 혹은 후에, 외국인이 추방, 축출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예외이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 절차가 끝날때까지 본법에 나타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 권리 및 의무를 대신 맡게 된다. 그리고 추방, 제거의 최종명령이 내려진 경우, 본법에 따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국토안보부 장관이 되찾게 된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본법에 따라 구제를 부여하는 경우, 추방, 축출의 최종 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b) 초등 혹은 중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에 대한 추방의 중지(stay) -

(1)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추방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A) 4(a)(1)의 (A)(B)(C)(E)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며,

(B) 최소 12세 이상이며,

(C) 초등 혹은 중등학교에 풀타임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인 경우.

(2) 추방 절차에 놓여 있지 않은 외국인 - 추방절차에 있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 국토안보부 장관은 해당 외국인이 위 (1)의 (A)에서 (C)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하여 추방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c) 고용 - 위 (b)(1)에 따라 추방이 중지된 외국인은 노동법(29 USC 201 이하) 및 주, 지역법에 따른 최저 노동 연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에 종사할 수 있다.

(d) 추방 중지의 취소(Lift) -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b)에 따라 주어진 추방의 중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외국인이 더이상 초등 혹은 중등교육기관에 등록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위 (b)(1)에 나타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9조.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본법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면서 고의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알리거나, 숨기는 경우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 혹은 사기적인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혹은 허위 혹은 사기적 내용이 있는 줄 알면서 진술서 혹은 서류를 작성 혹은 사용하는 경우, 18USC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거나 5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양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 10조. 정보의 보안

(a) 금지- 어떠한 관리나 미국의 국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1) 본법에 따라 신청자가 구제 신청의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서에 적시된 대상자를 상대로 추방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2) 본법에 따라 신청을 한 개인이 제공한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없다.

(3) 관리나 미국국가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특정 기관과 함께 제출된 경우, 그 특정기관을 제외하고, 본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다른 사람이 검토하게 할 수 없다.

(b) 의무적 정보의 제공 - 법무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은 본 섹션에 따라 획득한 정보 및 그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다음의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민법 212(a) (2), (3)(8 USC 1182(a))에 적시된 범죄의 수사 및 소추와 관련된 정보를, 법 집행 기관, 정보 기관, 국가 안보 기관,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 법원, 배심에서, 범죄 수사, 소추 혹은 총기 안전법(Brady Act) 및 그 개정법에 따라 배경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혹은 국토의 보안 및 국가 안전과 관련하여, 정보의 요청이 있거나 정보 공유 약정 혹은 체계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검시관이 죽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정보를 검시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인이 범죄의 결과 죽었는지 여부)

(c) 신청절차 중의 사기 혹은 범죄 행위 - 본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 따라 혜택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그 혜택 신청에서의 사기 혹은 시기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이민법 집행, 법집행 혹은 국가 안보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공될 수 있다.

(d) 벌칙-누구라도 본 조에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정보를 사용, 공표 혹은 타인에게 적시하는 경우에는, 10,000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조. 고등교육 지원

고등교육법 5절의 고등교육 지원(20 USC 1070)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20 USC 1001 이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 따라 영주권자로 신분이 조정된 사람은 5절상의 다음 혜택에 한하여 받을 자격이 된다.

(1) Title V의 D, E에 따른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단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름

(2) Title V의 C에 따른 연방 고학 프로그램(work-study program)에 따른 지원, 단,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름.

(3) IV절상의 각종 서비스(services), 단 서비스의 조건에 따름

## 12 조. 특정 목적을 위한 조건부 비이민자의 처우

(a) 개관 - 본 법에 따라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받은 개인은, 그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의료보험 개혁법 1401조에 의하여 개정된 1986년 IRS 규정 36B (우선 세금 크레딧관련) 그리고,

(2) 의료보험 개혁법 1402조 (비용 공동부담 규정)

(b) PRWORA 상의 5년 대기 조항 - 본 법에 따라 조건부 신분 기간을 거쳐 영주권자로 신분조정된 사람은 그 신분조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PRWORA(개인 책임 및 고용기회 조정법)상의 5년 대기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13 조. 군대 등록

USC Title 10의 504(b)(1)은 그 끝에 다음 항목을 삽입함으로써 개정된다.

(D) 조건부 비이민자인 외국인(드림법 3조에 정의된 조건에 따라)

14 조. GAO 보고

본 법의 시행 7년후에 재정감독관(comptroller general of united states)은 상원의 법사위원회 및 하원의 법사위원회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4(a)에 따라 추방의 취소 및 비이민자 신분을 받을 자격이 되는 외국인의 숫자

(2) 4(a)에 따라 추방의 취소 및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을 신청한 외국인의 숫자

(3) 4(a)에 따라 조건부 비이민자 신분이 부여된 외국인의 숫자

(4) 6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권자로 신분이 조정된 외국인의 숫자